



업 통계 조사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22682

1. 조사 목적

광업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생산활동을 파악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투자, 생산등의 제반 상황을 측정 함으로써

가. 공업화의 정도와 구조의 변화를 매년 파악하고

나.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시책의 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통계법초 (抄)

제 2조(정의) ①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조(신고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 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2. 제 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자.

※ 조사 연혁(沿革)

광공업 센서스

1 회	1955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 "	한국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 "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 "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 "	"	" "
6 회	1968 "	"	" "

광공업 통계조사

1 회	1967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년	"	"

3. 조사 체계

가. 경제기획원 장관→시장 및 도지사→지도원→조사원→대상사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4. 조사 기준일 및 대상기간

가. 조사기준일 : 1970. 12. 31

나. 조사 대상기간 : 1970, 1, 1~1970, 12, 31

5. 조사의 범위(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Ⅱ」에 해당하는 「광업 및 채석업」과 대분류 「Ⅲ」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鑛),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鑛), 용해 및 건조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69(기타 광물 제조업)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서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든 집안에서 행하여 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漁家)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 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동 및 전선등으로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 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제조소매업으로 분류된다.

③ 그러나 1970년 광공업 통계조사에서는 제조소매업 일지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되 조사표(1)의 제 7란의 구분에 따라서 생산만

한다.

(바)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6.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97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 1) 1970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 2) 1970년 12월 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left(\frac{\text{조업일의 종업원수의 합계(12월)}}{\text{조업일수(1970. 12월중)}} \geq 5 \text{인 경우} \right)$$

- 3) 1970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가) 1970년 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나) 조업기간(操業期間)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 이었던 사업체

(예 : 제빙업)

- 4)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더라도 조업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아 (4) 해당에서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2) 공공 직업 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7. 조사 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수 있는 경우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서로 떨어져 서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

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다음의 포함하여야 할 항목이외 가능한데 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항목 : 사업체 및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수, 급여액,
연초 연말 재고액(품목별내역포함)

8. 조사표의 종류(調査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3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 조사표(I).....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II).....기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 본사와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조사표(II) 뿐만 아니라 분리된 관할 사업체별로 (I)표를 전부조사 하여야 한다.

다. 조사표(III).....표본 사업체에 한한다. (간접비 조사용)

9.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및 자계식(自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직접 대

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하거나 일부의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용지를 사업체에 배부하여 조사표를 기입케 한후 이를 회수하여 이기(移記)하는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10. 비밀보호(秘密保護)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漏洩) 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 통계법

제10조 : 비밀보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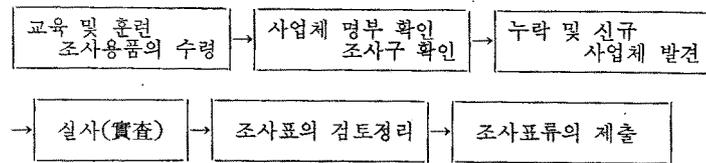
제11조 :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제21조 : 벌칙규정

Ⅱ.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 가. 조사원증
- 나. 사업체 명부
- 다. 조사표류
 - 1) 조사표(I)
 - 2) 조사표(II)
 - 3) 조사표(III)
- 라. 참고책자
 -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 마. 보조 인쇄물
 - 1) 실사일보
 - 2) 협조 의뢰문
- 바. 조사용품(비망록, 불펜, 연필, 소봉투 등)
- 사. 조사표 케이스

3. 사전 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
-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 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인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 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수 있도록 로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확인

강습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0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폐(存廢)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69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0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 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고란에 신규 또는 누락이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사업주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謬記) 사항을 사업체 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빠지지 않고 답사하여 사업체의 본사를 색출하여 사업체에 관한 사항과 본사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비고란에는 본사라고 기입한다)

4. 실 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證)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9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갱지조사표 및 본조사표 각 1매씩 교부한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 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수 있다. 단, 이와같이 하여도 시중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 사(實査)

(1) 조사원은 (Ⅲ)조사표 기입요령 (Ⅳ)조사표 검토 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 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 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사업체 및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 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나) 이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전 항목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②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③ 조직형태 ④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⑤ 창설년 ⑥ 종업원수 ⑦ 급여액

⑧ 연초, 연말 재고액(품목별 내역 포함)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 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 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로서 작성되므로 나머지 사업체만 구분하여 (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5. 실사 일보(實查日報)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등 조사 활동사항을 실사일보(소경양식)에 의하여 2일 간격으로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색출(70년창설), 누락(69년 이전 창설)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이들사항을 기록보고 하며 이들 중 동일기업체에 속하고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및 분공장(分工場)등이 다른 조사구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산품명 종업원

수, 가동여부를 조사하여 일보에 기재 보고한다.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 (1) 조사원은 사업체에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회수 즉시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 가를 검토한후 회수 한다.
이때에 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한다.
-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킨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조사표는 실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표 종류별로 사업체 명부의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케이스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 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 명부)와 함께 실사 완료일 (30일간)로 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지도책임자에게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 부터 회수한 조사표 중 재조사 해야할 조사표를 제외 (별도 제출)하고 교육실시 장소별로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 하여야 한다. (실사일로부터 40일 이내)

7. 기 타

-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할 것.
-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 다. 조사도중에 미흡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제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Ⅲ. 조사표 기입 요령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표는 실사 완료후 심사, 분류, 집계등 여러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 이므로 조사표의 기입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블렌」을 사용하여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 과 6, 1 과 7, 4 와 6, 4 와 9, 5 와 6, 5 와 8, 6 과 2, 3 과 8.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 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예 : 조사표 란의사항, 생산액, 부가가치

바. 해당사항이 없는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복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작성근거는 해당 사항에 ○표 한다.

2. 조사표(Ⅰ)의 항목(項目)별 기입 요령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울산공장」

-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재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	로	동	가
부산직할시	대전 (시)	은행	(동)	번136지의 16호
충청남도	군	읍	면	

-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본 사(본점) 명 및 소재지**
-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을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업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右段)에 「덕대」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조직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의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내에 ○표한다.

- 4)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 나) 1970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5) 주요생산품 및 생산공정 (生産工程)
- 가) 주요생산 품명
-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된 품목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입한다.
- (가) 1970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 (나)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0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마) 조서표(I) 15의 가항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항목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 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기입 한다.

예 : (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鑛)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도름)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澱粉)→당화→발효→농축→산분해(酸分解)→여과→농축→염산염(鹽酸鹽)→탈색→결정→구루타민산]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침전→전분→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 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탄산수주입→타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原綿)→면조(綿條 : sliver) →정방(精紡)→단사(單糸)→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면사(綿糸)」

⑤ 면직물(면포)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整經)→호부(糊付)→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휴지, 펄프를 용해시키는 작업)→초지(와이어에 의한 초지)→건조→완성→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선별→분쇄→약물배합→탈유(脫硫)→재생→포장→재생고무」

⑧ 리사지<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 황색 산화연> 연분식(鉛粉式)

「납→용융→성형→연분→산화→분쇄→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배합→성형→소성(燒成)→벽돌」

6) 제조소매업
구분 사항

양복점, 양과점, 양장점, 가구점, 양화점 등의 업종에 한하여 생산 활동만을 하는 사업체와 제조 및 소매를 동일한 장소에서 겸하는 사업체를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

한다. 그리고 제조 및 소매를 다하는 경우 어느것이 주된 것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7) 창설년
(創設年)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마) 장소를 시, 도(市, 道)의 경계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8) 종업원수
(從業員數)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여(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

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 생산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자와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 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제조업의 경우 :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 사무등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를 생산종업원 이라 한다.

광업의 경우 : 채광, 굴진(掘進), 갱내지주(抗內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 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등은 여기에 포함한다.

나) 평균 종업원수(平均從業員數)

1970년 매 4분기 말(3, 6, 9, 12월)란의 종업원수 합계를 산출(加算)한 수치(數値)를 「△」표로 표시한 휴업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分期)로 평균한다.

※ 4분기 합계 ÷ (4 - 휴업월) = 조업 기간중 평균 피고용자수

다) 사업주 및 무급종업원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 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9) 급여액
(給與額)

가) 1970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0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拂)된 것을 1970년에

지급된 것은 제외하며 1970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拂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
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
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 기입
한다.

10) **년간 주요** 1970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
생산비 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인건비 제외)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로
구분 조사하여 기입한다.

가) 원재료비(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0 년간에 실제
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2) 동일 기업체의 타사업체로 부타 무상(無償)으로 받
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을 겸영(兼
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기입한다.

(3) 위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 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하

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 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 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 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1) 1970년 간에 가열로(加熱爐)(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 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購入電力費)

(1) 1970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0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購入用水費)

1970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 생산비(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 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또한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轉賣品)일 때에는 위탁한 사업체의 생산품으로 보지 않고 수탁사

업체의 것으로 본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 됨으로서 회계상 유형고정 자산계정에 처리 되어야 할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7항 유형고정 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 시킨 경우는 17항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그러나 경비계정에 처리되는 것은 수리 및 유지비에 포함한다.

11) 연초, 연말 재고액
(年初, 年末 在庫額)

가) 연초 재고액은 1970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0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 본사 조사표 참조 (조사표Ⅱ)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 부터 지급 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2)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0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0년간에 일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 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0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건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것」 및 「사무용이나 종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않고 그대로 전매(轉賣)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인도 가격 광산품은 최근(驛渡)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 란에 기입한다.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기입한다

나) 폐품 판매액(廢品 販賣額)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 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受託製造 및 修理 收入額)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원제품출하액에 계상한다.

13) 내국소비세액 (內國消費稅額) 1) 완제품 출하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국소비세 즉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2) 원재료로서 구입한 외국수입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내국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에 대하여는 별책 부록을 참조하여 내국소비세 이외의 세금(법인세, 영업,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장부에 의하여 세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별책 부록의 품목별 세율표를 적용하여 환산 기입한다.

14) 생 산 액 가)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완제품출하액, 폐품 등 출하액, 위탁제조수입액 및 수

탁수리수입액 합계에서 연초 연말 재고액(합계)의 증감액을 가감(加減)한 것이다.

- 15) 부가가치
- 가)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 나) 생산액에서 직접 생산비의 합계액을 공제(控除)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에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내국 소비세액 및 간접생산비가 포함되어 있다.

- 16) 연간 완제품 출하액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1-가」 완제품출하액과 「10-가, 나」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1-가」와,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0-가, 나」와 각각 일치 한다.
 -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생산금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때의 구분이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7) 유형 고정자산 가)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토지(土地)와 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 권등의 무형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垆地), 사택대지(社宅垆地) 운동장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 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 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등을 말한다.

(3)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는 동력기계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爐), 가열로(加熱爐), 용광로(熔鑛爐),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傳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에는 내용 년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우마차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0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 비용임. 중고품일지라도 해외로부터 수입한 유형고정자산은 여기에 포함됨.

(2) 중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

(3) 평가(評價)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 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부로부터의「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의 완성여하를 불문하고 1970년간에 지출된 모든 비용에 의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0년간에 매각(賣却), 양도(讓渡), 재해(火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1) 평가 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3. 조사표(Ⅱ)의 항목별 기입요령

가. 일반사항

- (1)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 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 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한다. (기타사항은 (I)표로 조사하여야 함)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 (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별도 기입요령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조사표(I)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 (1) 항목 1, 2, 3, 4는 조사표 (I)의 기입요령을 참조한다.
- (2) 종업원수란(5항)은 본사의 피고용자 즉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 (3) 연간급여액(6항)은 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0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본봉, 임금, 수당 및 상여금과 그미불액 포함)을 말한다.
- (4)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7항)은 본사계정(計定)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 (5)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액(8항)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70년 취득설치 및 증축, 개축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과 매각, 양도, 재해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감소액을 기입한다.
그러나 본사와분리된 사업체 「공장」의 증축, 개축등의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기록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 (6) 조사표 작성근거(9항)은 조사표에 기록된 재고액 및 유형고정자산의 내역이 장부 또는 기억이나 추정에 의한것인가에 따라서 해당란에 ○표한다.
- (7) 관할사업체 명부(10항)란은
 -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산하(傘下) 사업체 가운데 「광업,

제조업 사업체」만을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다) 산하사업체와 본사와 같이 있는경우는 조사표(Ⅱ)는 조사하지 않는다.

4. 조사표 Ⅲ(간접생산비조사표)의 기입요령

가. 조사의 목적

본 간접생산비조사는 광공업센서스 및 광공업통계 조사의 부가가치(센서스부가가치)와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의 개념상 차이가 있는 비용항목을 조사하여 센서스부가가치와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를 상호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 기업경영실태의 일단을 계수적으로 파악코자 하는데 있다.

나. 제조업체 회계장부조직(손익계산서)

(1) 개요

(주의 : ☆표는 조사하지 않음)

순매출액 -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당기총이익

☆당기총이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2) 세분(손익계산서)

재무제표규칙에 의한양식

주의: ☆표는 조사조사하지 않는 항목임.

(가) 순매출액

(나) 제조원가

- ① 재료비 (I 표)
- ② 노무비 (I 표)
- ③ 경비
 - 전력비 (I 표)
 - 가스수도비 (I 표 수도료)
 - 운임
 - ☆ 감가상각비
 - 수선비 (I 표)
 - ☆ 조세공과
 - ☆ 지대, 집세
 - 보험료
 - 여비와 교통비
 - 통신비
 - 잡비

(다) 매출총이익

(라)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① 역원급여 (I 표)

- ② 급료와 임금
- ③ 종업원 봉급과 수당 (I 표)
- ☆④ 종업원 퇴직금
- ⑤ 복리후생비
- ⑥ 여비와 교통비
- ⑦ 통신비
- ☆⑧ 수도광열비
- ⑨ 소모품비
- ☆⑩ 조세공과
- ☆⑪ 지대, 집세
- ⑫ 사용료
- ☆⑬ 감가상각비
- ☆⑭ 수선비
- ⑮ 보험료
- ⑯ 교제비
- ⑰ 광고선전비
- ⑱ 보관비
- ⑲ 견본비
- ⑳ 포장비
- ㉑ 운반비
- ㉒ 납입시험비
- ㉓ 판매수수료
- ㉔ 잡비

(마) 영업이익

(바) 영업외수익

- ① 수입이자와 할인료
- ② 유가증권이자
- ③ 수입배당금
- ④ 수입지대 및 집세
- ⑤ 유가증권매출이익
- ⑥ 유가증권평가이익
- ⑦ 매입환인
- ⑧ 잡수입

☆ (사) 당기총이익

☆ (자) 당기순이익

☆ (아) 영업외비용

- ① 지급이자와 할인료
- ② 사채이자
- ③ 사채발행차금상각
- ④ 대손상각
- ⑤ 창업비상각
- ⑥ 유가증권매출손실
- ⑦ 유가증권평가손실
- ⑧ 물품평가손실
- ⑨ 매출환인
- ⑩ 잡지출

다. 조사표(Ⅲ)의 조사항목별 설명

본 조사표에 기입하는 내용은 장부상 영업비용으로서 조사표(Ⅰ)의 급여액, 연간주요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와 조사표(Ⅱ)의 급여액을 제외하고 또한 금융비용(지불이자 및 할인료 등)조세공과금, 제인건비(퇴직금등), 감가상각비, 모든임차료, 대손상각을 제외한 제비용으로써 장부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1) 경비 : 경비항목에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에 속하는 동일항목의 것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가) 복리후생비 : 공장관계, 일반관리 및 판매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법령으로서 또는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재해보험료등과 종업원의 의무, 위생보험, 위안등에 소비된 비용이다.

(나) 통신비 : 우편, 전화, 텔레팩스등 통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다) 보험료 : 상기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공장건물, 기계, 저장품등에 손해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이다.

(라) 지불운임 및 보관비 : 완제품의 운반 및 보관에 지출된 경비로서 완제품 출하액에 운임이나 보관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고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공품의 운반 및 보관에 대한 비용은 조사표(Ⅰ)의 연간주요생산비중의 원재료비에 해당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여비 및 교통비 : 공장관계, 일반관리 및 판매부문의 여비 및 교통비로 지출한 비용이다.

(바) 교제비 : 공장관계 또는 판매를 위한 교제비로서 정당하게 기장된 것에 한한다.

(사) 특허권사용료 : 타기업의 특허권을 사용하므로써 지출된 경비이다.

- (아) 잡비 : 차량유지비(조사표(I)표의 수리유지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 재물조사 감손비, 기부금, 사업체서비스비(변호사, 계리사등의 서어비스에 지출된 비용), 회의비, 행사비등과 기타의 경비와 일반 관리비 및 판매비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비용이다.
- (2)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동일명칭의 항목이 제조 경비에 있을 때는 경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사항을 기입한다.
- (가) 사무용품비 : 공장관계, 일반관리 및 판매부문에서 사용한 용지 및 문방구등의 사무용소모품비를 말한다.
- (나) 시험연구비 :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 (다) 판매수수료 : 판매를 위한 경비중 수수료로서 지출된 금액을 기입한다.
- (라) 광고선전비 : 제품판매를 위한 광고비로서 정당하게 기장된 것에 한한다.

Ⅳ. 조사표 검토 정리 요령

1. 조사표의 검토 정리 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 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 (○표)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5)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6) 주생산품명이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 하는가를 검토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종업원을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8)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 종업원이 있음을 유의할것.
- 9)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 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10)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 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사용분이 원재료비에 2중계산 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12)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3)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건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4)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완제품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5) (가) 「연간 주요 생산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검산하고,
 (나) 생산비 총계는 (연말재고액 합계—연초재고액합계+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6) (가) 완제품 출하액 15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폐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내국 소비세액은 완제품 출하액 중에 포함되어있는 물품세, 주세, 석유류세를 말하며 주로 물품세 부면에 대하여는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물품세 및 세율표를 참조하여 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조사 한다.
- 18) 부가가치 (생산액—생산비)는 8번의 연간 급여액합계에 내국 소비세액을 합한 것보다 반드시 커야한다.
- ※ 부가가치 (생산액—생산비) > 연간급여액 + 내국 소비세액.
- 19) 연간완제품 출하액 및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20)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 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토록 한다.
2.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특히 기계제조업)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할것.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란이 있는 경우는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함. 단 공란이 없는 경우는 우단 여백에 규격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3.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 혹은 자사업체에서 소비하기 위하여(재투입을 위하여) 생산하였을 경우는 생산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유고사업체 처리는 실사일보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연월일 및 이전장소를 보고 하고 휴업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품목명·단위는 기록보고한다.

(광업)

1. 조사표 상의 품목란에는 광석의 품위를 반드시 기입할것.
품위는 해당광석에 포함 되어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 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2. 금광·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혼합광석의 경우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4.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세멘트를 제 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되어야 한다.
5.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명
 - 가)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나)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 "
 - 다) 백토는 고령토에 " "
 - 라) 취수연은 모리부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마)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을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 바)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을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식료품)

1. 분유 및 연유는 분리하여 조사한다.
2. 냉동해산물 조사에 있어서 냉동해산물은 -20°C 로 얼린 것이며, 냉장은 -10°C 로 얼게 한 것이고,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섞어 부패치 않도록 하는 것임.
냉장과 빙장을 냉동해산물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빙장과 냉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확실한 냉동해산물만 조사보고 할것.
3. 해산물통조림의 단위를 筭, %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어류(魚類) 및 해산물 통조림에 소고기 통조림 등 육류(肉類)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통조림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5. 밀가루는 판수용, 민수용을 전부 조사한다.
7. 카스테라·빠다빵·안고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8.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과 고추장에 포함하여서는안된다.
9. 식빵의 단위를 봉지·상자·개 등으로 조사해서는 안되며 지정단위인 kg으로 환산하여 보고할것.
10. 도정료는 금액조사이며 반드시 원위단위로 조사하여야 한다.
11. 건빵·사탕·과자류도 “관” 또는 봉으로 조사하지 말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음료품)

1. 소주와 탁주의 경우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되는 사업체와 남아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탁주의 경우는 각 도시 단위까지는 통합이 완료 되었으니 합동관리위원회 산하에 포함된 사업체와 현재 생산중인 양조장을 구분하여 중복이 없도록 한다.
2. 탁주생산업체에서 약주도 생산하는 경우에는 탁주로 간주하여 조사하되 ()를 하고 “약주”라고 기입하여 보고한다. 사이다와 콜라는 민수와 군남을 포함하여 조사표에 기입하고 단위는 l·kl로 환산하기 곤란하면 몇 cc짜리 몇병하는 식으로 보고할것.
4. 소주·수정·탁주·청주·맥주·사이다·코카콜라의 지정단위는 kl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되”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로 환산하여야 한다.
 $1\text{되}=1.8\text{l}$ $1\text{kl}=556\text{되}$
5. 동일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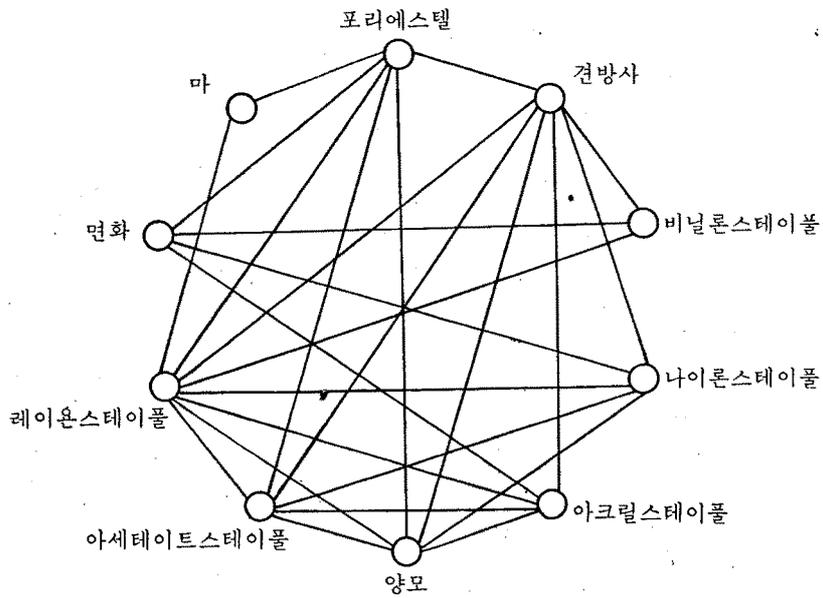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 ×	소 주	25°	kl	200
3131201 }	소 주	30°	kl	300
3131201 ○	소 주	25~30°	kl	500

섬 유 제 조 업

1. 섬유분류

방 직 섬 유	천 연 섬 유	식 물 성 섬 유	種子毛纖維—木花
			鞣 皮 " —亞麻·苧麻·大麻 葉 脈 " —말레지아삼·사이잘삼 果 實 " —야자·수세미 莖 乾 " —종여 등
방 직 섬 유	인 조 섬 유	화 학 성 섬 유	獸 毛—羊毛, 염소털(모헤어·카사미아) 낙타털·토끼털 등
			蠶 糸—家蠶絹糸·天蠶糸等 雜纖維—羽毛
			광물성섬유{石 綿
			비스코스레이온(Viscos Rayon)
		재 생 섬 유 (펄프)	스프사(Staple Fiber)
			큐프라레이온(Cuprammonium rayon)
			牛乳蛋白質섬유(Fibrolane)
		반 합 성 섬 유 (펄프)	아세테이트레이온(Acetate rayon)
			Polyamide fiber—나이론
			Polyester " —테레렌, 데드론
		합 성 섬 유 (석유화학)	Polyvinil alcohol fiber—미쿠론 비닐론
			Polyacrylic fiber—엑스란 캐시미론
			Poly propylene " —파이론, 오프론
			Polyethylene " —玩具·포장지·필립·어망사·건축재 등

2. 현재 각 섬유의 혼방되는 관계도표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혼방사는 상기 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혼방되는 섬유의 종류는 2종이상인 경우도 많다.

3.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중량 비율 (교직포함)

가)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

①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을 우선적

으로 호칭한다. (합섬·아세테이트·면·비스코스순)

② 면과 이종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섬유·아세테이트·면·비스코스순(이는 가격순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① 기준비율을 60(화섬):40(모)로 하고 동률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② 모와 이종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 미만일 경우에 한함.

4. 견과 화섬의 혼방

① 기준 중량비율을 30(견):70(화섬)으로 하고 동률일때 견을 채택한다.

② 견과 이종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하되

단, 견 3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견을 택한다.

5.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율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 혼방사 및 혼방직물 조사시는 조사표의 우측란에 반드시 혼방비율을 기록할것.

또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적요란에 원재료명과 혼방비율을 명기하고 견본을 조사표 후면에 첨부하여 보고할 것. 모든 혼방사 및 혼방직물(교직포함)은 상기 요령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한다.

6. 품목 구분 요령

견혼방사 : 누에고치로 된 견방사와 타섬유가 혼방되었으며, 견방사가 30% 이상을 차지할 때 견혼방사라 하고 인견사와 견방사를 제외한 타섬유와 혼방되었을 때 인견사의 혼방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견혼방사라 할수 없다(인견혼방사임)

면 사 : 순면사 및 면혼방사 포함

※ 면혼방사의 식별기준은 혼방사 구분요령에 의한다.

재생섬유사 : staple fiber (원료 : 펄프 linter 등의 섬유질) 만을 칭함.

비스코스인견사 : 비스코스 filament만을 칭함.

합성섬유사 : 석유화학 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 생성된 일체 섬유 즉, 재생섬유·반합성섬유를 제외한 섬유로 된 Fiber 및 filament를 칭함.

화학섬유방적사 :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을 완료한 사(糸)의 상태 단, 합성 장섬유사(filament)로서 직접 방적할 수 있는 합성섬유는 합성섬유에 포함 시킬 것.

亞 麻 糸 : 麻糸에는 亞麻·苧麻·黃麻·大麻·라미 등이 있으나 이중 亞麻를 材料로 하여 생산된 糸단을 칭함.

견 방 사 : 누에고치는 上繭·中繭·下繭·雙견으로 대별되며 이중 下견으로 만들어진 실.

上藏 : 건형이 바르고 견층이 두텁고 오염되지 않은 결점이 없는 고치

中藏 : 건형이 바르지 않고 얇으나 오염도가 적은 고치(簇着전 · 不正形전 · 오전 · 면전등)

下藏 : 死籠전 · 穴전 · 薄皮전 · 雙전等

순 소 모 사 : 비교적 길고 간추려진 섬유를 사용하며 방적공정에서는 섬유를 잘빚어 내려 평행직선 모양으로 간추려 단섬유를 제거하는데 노력한다. 이때, 단섬유로된 실이 순방모사가 된다.

각종 화학섬유연사 : 2 단사 이상을 꼬아 만든 실. 합사는 꼬지않고 합해 놓은 실.

타 울 : 일반세면용 타울(가로 84×세로 33cm정도) 1매=0.3m²정도로서 제반타울 제품도 포함한다.

화 섬유 양 말 : 단위는 필히 천족을 사용하고 순모 · 순면양말은 제외하며 화섬사 60%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한다.

(제재 및 목재)

1. 단위환산에 있어서 각 사업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m³를 才로 조사되는 곳도 있고 (1m³=303才), 합관 단위 m³를 사업체에 따라 B/F, S/F, 매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는바, 규격별로 조사하여 아래의 단위 환산에 의해 조사된 수치를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1B/F=0.002359m^3 (1^{inch} \times 1^1 \times 12^F)$$

$$1m^3=423.77B/F$$

$$1000S/F=157.48B/F(\text{기준환산 } B/F \ 4^F \times 8^F \times 4^{mm})$$

$$1\text{枚} = 0.017m^2$$

$$\text{하드보드 } 1\text{枚} = 0.019m^3$$

(가구 및 장치품)

1. 장농에는 철제 옷장을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찬장·대형 책장등을 포함시켜 조사한다.
2. 책상·의자·식상·침대는 반드시 목재와 철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책상에는 탁자·티 테이블등은 제외시킨다. 학생용 책·걸상은 “조”로 조사하지 말고 책상·의자로 각각 조사한다.
4. 목재 캐비닛은 금속 캐비닛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철제 옷장도 금속캐비닛으로 보고한다.

(지류 및 지류제품제조업)

1. 일반적으로 단위를 조사지침서에 있는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점을 유의하여 줄 것.
2. 백상지
모조지로 보고 하는바 지침서에 의한 지정품목을 사용할 것.
3. 인쇄용지
중질지 또는 로루지로 보고하는바 지정품목명을 사용하여 기입해야 한다.
4. 골판지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K원지 또는 B원지라고 도함)와 가운데의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로 구분되나 이를 합한 것이 골판지인바 혼동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할 것.

(인쇄 및 출판)

1. 일간신문 보고단위는 천부(千部)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한다.
2. 잡지 및 정기간행물이나 비일간신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우측란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3. 일반인쇄물을 권이나 부수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정단위가 연(連)이다. (투입용지의 양)
그러므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원재료 투입량으로 보고한다.

※ 단위환산법

1 마귀=2연(連)

(피혁 및 피혁제품)

1. 소가죽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수혁(갑피혁)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표면피혁 핸드백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애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나.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중창(구두)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이혁(Sole)

(용도) 작업용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 내고난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대(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라. 저혁

(용도) 창용·마깅·공업용혁벨트

(성질) 특수제조과정을 거쳐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 복수혁과 저혁을 합하여 우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소가죽의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정단위는 m^2 이므로 반드시 이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생산량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단위 환산법

$$\begin{aligned} 1\text{평} &= \begin{array}{c} 1\text{자} \\ \square \\ 1\text{자} \end{array} \quad \text{또는 } 1\text{평} = \begin{array}{c} 8\text{인치} \\ \square \\ 8\text{인치} \end{array} \\ 10\text{인치} &= 0.059m^2 \quad 8\text{인치} = 0.0929m^2 \\ 1\text{枚} &= 30\sim 40\text{坪}, \quad 1\text{枚} = 3.3m^2(30\text{坪}), \\ 1\text{枚} &= 3.7m^2(40\text{坪}) \end{aligned}$$

2.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이다.

그러나 사업체에는 많은 경우 자(尺)나 m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사업체에 문의하여 m/ply로 환산하여 생산량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비닐제트링크류에 있어서는 규격과 형태가 다양하다. 분류표를 참조하여 세분한다.

(고무제품)

1. 방한화는 고무제품이 많이 포함되면 장화에 포함시키고 섬유부분이 비중이 크면 운동화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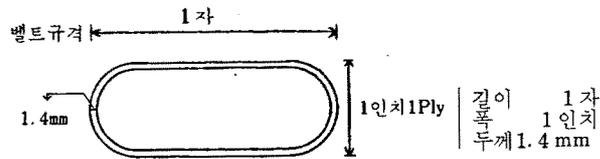
2. “평고무벨트” “V형고무벨트” “콘베아벨트”등을 고무벨트에 합산 기록하여서는 안된다.

3.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자(尺) 또는 m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ply = \text{폭(幅)} \times \text{포층수(布層數)} \times \text{길이}$$

$$1ply = 0.33m/plv$$

벨트규격



보통 평고무벨트는 두께가 3겹(1.4×3) 4겹·5겹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 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4.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m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권(卷)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권은 50척(尺)=15.15m

(화 학 제 품)

1. 유산(황산), 염산, 가성소다는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우측여백란).

(예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

유산(98%)

염산(35%, 100%)

가성소다(40%, 46%, 97%, 100%)

2. 압축산소는 7m³들이 본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체에서 m³이나 kg등으로 조사되면 반드시 7m³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아세치렌 gas는 kg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本), 또는 m³은 반드시 kg으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4. 석회질비료 : 토석 및 유리제품의 소석회와 구별하여야 한다.
사업체 방문시에 석회질비료는 소석회보다 더 작은 가루이므로 출하량도 구별될 수 있으며,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어도 석회질비료로 판매하였을 경우가 있으며 이 때는 석회비료로 기입하여야 한다.
5. 아마인유의 단위는 l로 할 것(1D/R=180l) kg이나 cc는 반드시 l로 환산해야 한다.
6. 그리세린은 비누공장에서 우지분해(牛脂分解)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는 그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7. 페인트는 수성과 유성을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8. 염료는 각종염료(적점염료, 산성염료, 유화염료, 형광염료)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9. 의약품 조사에 있어서 만일 반응품이 있을 경우 그것이 재출하 할 수있는지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 구분하여 조사한 후 폐기 처분을 한 양은 재고액에서 제외시킨다.
10. 향료에는 화장품의 향수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11. 화장수에는 밀크로손(milk lotion)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스킨로손(Skin lotion)만 포함하여 조사한다.
12. 화장크림조사는 바니싱크림, 폴드크림, 영양크림등 각종 고품크림을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다.
13. 화운데이션은 화장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4. 두발유에는 포마드와 헤어오일(Hair oil)도 포함시켜야 한다.

15. 성냥조사는 대형(大型) 성냥을 기준으로 1,000갑이 1단위가 된다.
16. 유산반토(Al_2SO_4)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을 겹해서 생산하는 사업체가 많은 편임.
특히 염산과 가성소다는 동일제조업체인 경우가 허다하니 이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17.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겨울철에는 유산, 가성소다 염산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유의하여 확인보고한다.
18. 감광지는 상자로 보고하여야지 kg로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19. 페인트, 와니스, 락카등을 혼합하여서 도료로 보고하여서는 안되며, 한가지씩 따로 조사하여야 한다.
20. 화장품류를 조사할 때는 단위를 지정단위 kg으로 하여야 하며, 개(個)라든가 타(打)등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22. 현재 아마인유 생산업체에서 미강유도 생산할 경우가 있음.
23. 유산·염산·가성소다·암축산소·아세틸렌·카바이트·호루마링·그리세린 P.V.C등 품목을 유의하여 구분 조사한다.

(석유및석탄제품)

1. 윤활유에는 구리스를 제외시킨다.
2. 각종 연탄은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시” 19공탄 220개=1%
31 " 180" =1"
49 " 80" =1"

(토석 및 유리제품)

1. 판유리는 2mm로 환산할 것(단위상자)
“예시” 규격 3mm,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환산하여
규격 2mm, $\frac{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환산한 수치인 규격 2mm, 300상자로 보고한다.
2. 시멘트 블럭 조사시에는 보도용시멘트 블럭은 구분 조사한다.
3. 타일조사시 오지타일 내장타일·외장타일·모자이크타일은 합산하여 보고할 것.
4. 유리제품은 유리식기·유리약병·유리술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애자는 고압(3,300V이상)애자와 저압애자(3,300V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전기스윗치용은 제외)
6. 벽돌(소성품): 각종 적벽돌(赤)은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와(오지벽돌)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7. 흙관, 스프레트연통은 콘크리트관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8. 소석회조사는 석회석 생산량도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석회질비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일 차 금 속)

1. 철근·환강·환철·평강·평철은 모두 봉강에 포함한다.
2. Angle, Channel(溝型鋼)은 형강에 포함한다.
3. 상수도관·구조관은 강관에 포함한다.
4. 이형관, Y관등은 주철관에 포함된다.
5.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등을 만드는 쇠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단주철을 생산하며 또한 금속관 이음쇠를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 품목이 가단주철과 금속관 이음쇠의 두가지가 되며 순수하게 출하된것만 각각 출하량에 기입한다.

6. 흑철선도 마찬가지로 흑철선으로서 쇠못을 만들거나 아연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단주철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또한 흑철선에는 경강선, 세선연선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선을 포함 하며 ACSR선(알미늄선), 진유선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7. 나동선의 경우 일차제품으로 나동선을 만들어 Cable선·합성수지 피복선·면 선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의하여 출하된 것만 조사한다.
8. 동판이라 하면 동이 95% 이상 섞인 것을 말하며 90% 정도는 단동, 70~80 %정도 섞인 것은 황동이라 하는데 조사할 때 이 세가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9. 기계용 주물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주물을 말하나 외부 에서의 주문등으로 기계에 준하는 주물을 만드는 것과 가마솥·화로·절구등을 만든것도 포함된다.

또한 위의 가마솥은 알미늄주물제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미늄 주물제품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0. 알미늄 주물제품과 Press(압연) 제품이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 제품은 알미늄괴를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고 던지면 깨지는 것으로 주로 양은솥, 두꺼운 주전자, 바깥스 및 밥그릇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으로 표면이 얇고 주로 노란칠을 한다. (알미늄 판으로 만듬)

또한 프레스제품은 식기와 용기,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밥그릇, 냄비, 도시락등 식탁에 올라가는 것은 식기에 포함하며 그밖에 양푼·바깥스·주전자 등

은 용기로 구분한다.

(금 속 제 품)

1. 석유스토브는 석유곤로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한 사업체에서 두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2. 방열기(라지에타) 중에는 콘벡타·월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포함조사하며 우측여백에 품목사항을 참고로 기록한다.
3. 스텐레스 스틸제 식기에서는 한식기(주전자, 밥그릇, 신선로 등)와 양식기(폭크·ナイ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할것.
4. 철망은 철사로 망을 뜬 것을 말하며 가시철망(유자철선)은 구분조사 한다.
5. 볼트 및 너트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와사·리벨트 등은 구분조사 한다.
6. 합마·드라이버는 공장용 수공구에 포함시키며 송곳은 제외한다.
7. 곡괭이는 농업용 수공구에 포함한다.

(기 계 제 조 업)

1. 공업용 보일러는 가정용보일러, 섹쇼날보일러, 공업용보일러등으로 세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2. 공업용보일러는 특히 수리와 생산을 엄밀히 구분 조사한다.
3. 현재권양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할 때는 권양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4. 절삭공구 조사시는 공구의 명칭을 세분하여 조사 기입한다.
5. 인력탈곡기와 동력탈곡기는 반드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6. 선반 및 프레스기 조사시는 수리품·완제품을 구분조사하고 각 규격별 종류를 우측여백에 명기한다

7. 압연기와 압축기조사는 반드시 적요란에 용도와 모양·규격등을 상세히 기입
토록 한다.
8. 종광과 샷들은 전부조사하되 확실히 구분하여 기입한다.
9. 정미기 및 경맥기에는 제분기·제승기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10. 활판인쇄기와 음쇄인쇄기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11. 동력펌프에는 자동식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시켜 조사한다.
12. 재봉틀에는 재봉틀두(미싱두)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13. 발브는 건축용·기계용·공업용만 포함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 발브가이드
는 조사하되 구분하여 보고한다.

(전기기계기구)

- 통신용케이블에는 전력용케이블(저압용 및 고압용 PEPVC, 특고압용 지하케
이블)을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 백열전구란 일반조명용의 백열전구로서 10W, 20W, 30W, 40W, 150W,
100W, 200W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축전지는 건전지와 달리 전지의 기전력(起電力)이 소멸 된 후 충전되는 성질
을 가지고 있다.
축전지는 광차용, 차량용, 고정, 가반축전지, 열차용축전지 등이 전부 포함
된다.
- 4. 전동기는 IP로 조사하여야 한다.

(수송용기기)

1. 철강화물선, 어선, 목조어선 등은 $\%(\frac{L}{T})$ 으로 환산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전차 차체는 사업체에서 차체와 완성차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출하시의 것
으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철강화물선의 경우, 출하는 완전히 배가 건조된 후 처리되어야 한다.

(기 타 제 조 업)

1. 탁상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궤종시계, 특수용시계(잠수·기록용) 등을 각각 조사표에 구분하여 기입보고 한다.
2. 연필의 단위환산 : 12자루=한타(打), 12타(打)=1 Gross=14자루
3. 헐타와 정돈모는 반드시 kg으로 환산보고 한다.

부록 1 주요상품 도매가격표

(1970년 6월말)

주요상품도매가격일람표

(1970. 6. 30 현재)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석탄 금속광류	무연탄	분탄5,300~ 5,600cal	%	2,563	—	—	—	
	적철광석	철함유량57%이상	%	3,260	—	—	—	
	자철광석	" 57% "	%	3,106	—	—	—	
	흑중석광석	함유량 70%	S/T	1,546,066	—	—	—	
	회중석광석	" "	S/T	1,767,566	—	—	—	
	망간광석	" 40%	%	10,000	—	—	—	
	동광석	동함유량 6%	%	23,477	—	—	—	
	연광석	연(鉛)함유량 66~67%정광	%	49,324	—	—	—	
	아연광석	아연함유량 46~47%정광	%	20,810	—	—	—	
	금속창연	99.99%	%	4,000,000	—	—	—	
	모리부레늄광석	90%이상의 정광	%	550,000	—	—	—	
	토사석류	대리석	10.89才(1才=1자 사방)24mm황용	m ²	19,000	—	—	—
견치석(大齒石)		1자×1자×1.5자 36개	평	2,520	—	—	—	
비금속류 광	인상흑연 (鱗狀黑鉛)	FC75~80% mesh -100	%	42,500	—	—	—	
	토상흑연	FC 함유량 75%	%	3,372	—	—	—	
	코링토	S.K 34번 Pink	%	2,500	—	2,620	—	
	활석광석	분말백색도 90	%	7,100	—	—	—	
	형석광석	과 CaF ₂ 80%이상	%	9,086	—	—	—	
	납석	S.K 34번 공납석	%	1,650	—	—	—	
	석회석	탄산석회분 40~ 80%함유	%	650	—	—	—	
	식료품 (食料品)	연유(煉乳)	397g	관(罐)	105	—	—	—
냉동새우		상급품(shell-on) 대(count당 1-15)	20kg	—	—	21,500	24,000	
꽂치보이루통조림		견 4호관 48관입	%	3,630	—	3,600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음료품 (飲料品)	조미오징어	상급품	10kg	3,733	—	—	—	
	쌀	가마도정료	가마니 (60kg)	118	—	—	—	
	밀가루	2등급계분율77%	포대 (22kg)	707	708	—	—	
	식빵	상급품	3.75kg	299	—	—	—	
	비스킷	"	"	732	—	—	—	
	정당	정백당	30kg (50근)	2,962	2,914	—	—	
	검	개당 3g갑당 5개	20갑	145	—	—	—	
	간장	중급품	180l	13,827	15,000	—	—	
	된장	이등급	3.75kg	253	220	—	—	
	구루다민산소오더	99%	kg	498	506	—	—	
	삭카린	결정품	Lbs	420	495	—	—	
	인조빙		%	—	2,500	2,750	2,700	
	전분	(콘스타지)A급	포대 (22kg)	1,629	1,650	—	—	
	엿	24kg들이 1급품	포관(罐)	2,190	—	—	—	
	한천	1등급품	Lbs	587	—	—	—	
	마아가린	450g들이 24개	산자	2,016	—	—	—	
	이스트	900g들이	관	583	—	—	—	
	사료	No. 365	포대 (15kg)	456	—	—	—	
	소주	30도	180l (1섬)	28,270	28,000	—	23,200	
	주정	94도	200l (1D/M)	31,888	—	—	—	
탁주	6도정도	18l	2,700	—	2,790	2,970		
청주	특급	18l (10병)	5,750	—	—	6,000		
맥주	3.55홉병24본들이	%	3,888	—	—	—		
국자	특호	섬(=80kg)	4,850	4,900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연초	맥아	맥주원료	%	76,555	—	—	—	
	사이다	상급품 2홉병30본입	%	1,125	545	—	—	
	휠타 달린 권련	신탄진(20본입)	갑	54.60	—	—	—	
	휠타 없는 권련	뱃조	"	18.20	—	—	—	
	각연	타이가	50g	72.80	—	—	—	
섬유품	면사	23수	고리 400lbs	54,400	—	53,760	—	
	스프사	30수	"	59,000	—	—	—	
	나이론사	휠라멘트나이론사 70denier	Lbs	325	—	—	—	
	소모사(梳毛糸)	48수합사 염색사	"	—	900	1,370	—	
	방모사(紡毛糸)	Wool 100% 16수 단사	"	—	700	600	—	
	아마사	SCL 30s	"	372	—	—	—	
	생사(生糸)	21중	kg	5,253	—	4,810	—	
	견방사(絹紡糸)	72수단사	"	3,073	—	—	—	
	어망사	나이론사210 denier	Lbs	186	—	—	—	
	광목	폭 35'' 16s×16s 30m	필(40 yds)	1,830	—	1,340	1,890	
	포프린	24×24 65×60 ×36''	필(30 yds)	2,850	—	—	—	
	본견양단	폭 29''	필(40 yds)	31,320	34,000	—	—	
	인견평직	폭 29''	필(40 yds)	10,500	—	—	—	
	나이론다후다	36''×36''	yds	—	—	—	80	
	소모동복지	폭 60'' 순모	필(30 yds)	75,000	84,000	87,000	—	
	나이론양말	중급품	타 (12족)	—	—	1,225	1,050	
	메리야쓰동내의	남자용상하크기중	족 (10착)	—	6,000	—	—	
타울	중급품 80g 정도	족 (10매)	—	750	800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화류, 의류, 신발	로우 푸	마나라마사 나이론사 210 denier 4ply 2 1/2" Mesh size	3.75 kg	656	650	—	—	
	어망	200코(Mesh Depth)100장대 (Length) 후색복수피중급품	필 (151.5 m)	—	7,000	8,470	—	
	남자용 피혁화	" " " 단화	족	3,050	—	3,300	—	
	여자용 "	" " " 단화	"	2,333	—	—	—	
	동(冬) 양복	순모50%이상, 신사복상하, 중급품	착	22,000	20,000	—	—	
	하(夏) 양복	" " " "	"	17,000	13,000	—	—	
제부 채 및 품	와이샤쓰	포푸린백색15"		1,300	—	—	—	
	육송각재	2.5cm×2.5cm×3 63.6cm	재(才)	55	—	—	—	
	육송판재	3분판	평	540	—	—	—	
	베니어합판	0.3cm×90.9cm×181.8cm (1분×3자×6자)	매	172	193	—	—	
가구 및 장	하드보오드	3mm×120cm×270cm (1분×4자×9자)	매	625	—	—	—	
	장凳	6×6×2.5 자정도 호마이카 중급품	대	75,000	27,000	—	—	
	경대	화장용2.5 자정도 높이 호마이카 중급품	대	20,500	10,000	—	—	
	책상	사무실용2.5×4×2.5자정도 목재	개(脚)	9,300	4,000	—	—	
	의자	철재사무회전용	"	—	4,666	—	—	
	금속캐비닛	3×6×1.2자 정도 중급품	대	6,600	—	—	—	
지류 및 지류제	신문용지	31 Roll	㉾	62,989	—	—	—	
	모조지	연당29kg(69g/m²)	㉾	100,168	—	100,000	—	
	크라프트지	지대용80~90g/m²	㉾	78,000	—	—	—	
	박엽지	27lbs 46판 (가로2자6치 세로3자6치)	연	2,234	1,180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쇄 및 판	마나라판지	연당 109kg (253g/m ²)	면	8,319	—	—	—		
	아트지	A지 양면 100g/m ² (연당 42,994kg)	"	7,645	—	—	—		
	창호지	3×1.9자 중급품	권 (20매)	180	—	—	—		
	은박지	Coil형 폭 90mm 길이 1.00m (Coil 당 6.3kg)	%	535,000	—	—	—		
	일간신문	1주당 36면 1개	부/월	168	196	—	—		
	교과서	국판 (가로 4치 9분) (세로 6치 9분) 110page 정도 활판인쇄, 국민학교용	권	15	—	—	—		
	서적	국판 소철 9p 활자, 간격 5호 4분 표지 모조 150Lbs, 용지 갱지 200page 부당 가격 (1,000부 기준 용지대 포함)	1,000부	287,945	—	—	—		
	일반인쇄	4×6배판, 갱지 1,000매 편면인쇄료 (용지대 포함)	권	1,880	—	—	—		
	피 및 피혁	우갑피 (牛甲皮)	복수피 2급품	평	162	—	—	—	
		우저혁 (牛底革)	홍저혁 (紅底革) 2급품	"	182	—	—	—	
고무제품	자동차타이어 및 튜우브달린것	750×20(12푸라이)	조	14,175	14,100	—	—		
	자전차용타이어 및 튜우브	26×1 ³ / ₈ (타이어) 26×1 ³ / ₈ (튜우브)	"	870	465	—	—		
고무신	고무신	10~11.5문 백색 남자용	100족	10,000	7,300	—	—		
	운동화	" " 흑색	"	11,300	13,000	—	—		
고무벨트	평형 고무벨트	평형 동력전도용	1''×1'×1' 푸라이본	6	7	—	—		
	V형 고무벨트	A형 50''	"	86	—	100	—		
	스폰지	고무스폰지 두께 2''	평 (1자×1자)	—	220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화학제품	농유산	98% 공업용	%	17,066	16,000	—	—	
	염산	35%	%	16,534	—	—	—	
	가성소오다	40%	%	11,600	—	—	—	
	카바이트	225kg들이	D/M	8,197	—	—	—	
	호루마링	37% 이상	%	28,000	—	—	—	
	압축산소	7m³ (99%)	본	570	—	—	—	
	요소비료	충주, 호남비료산	%	24,683	—	—	—	
	글리세린	250kg입 94%	D/M	75,000	61,250	—	—	
	페인트	백색오일조합페인트 외부용품	5G/A	7,400	7,400	—	—	
	에나멜도료	백색 A급 중품	"	6,800	6,800	—	—	
	직접염료	분말Direct Black EX	kg	900	—	—	—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성분합량정당 500mg)	1,000 T	483	—	—	—	
	종합비타민정	비타민 A 10,000 IU, B 2,000IU 포함	병 (100T)	475	—	—	—	
	오일페니시링주	병당 10cc 300만 단위	병	75	—	—	—	
	건위소화제	원기소, 그로민정	병 (1,000T)	246	—	—	—	
	포도당	20% 20cc 10앰플	갑	225	—	—	—	
	바니싱크림	병당순량 7.5g, 스테아린산 10~15% 함유	타 (12병)	1,960	—	—	—	
	연치약	본당 100g 일류우브	타 (12본)	702	—	—	—	
	B. H. C.	분제 1.5~2% 정도	kg	50	—	—	—	
	세탁용분말비누	400g 정도 합성세제	통	49	—	—	—	
세탁비누	개당 300g 정도 상급품	개	33	34	—	—		
화장비누	개당 80g 정도 중급품	개	32	25	—	—		
다이나마이트	22.5kg 교질(膠質)	상자	4,800	—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석유 및 석탄제품	통성냥	덕용성냥(대형)	개	14	15	—	—	
	인쇄용잉크	흑색활판용중급품	kg	266	—	—	—	
	P. V. C.	분말	%	120,000	—	—	—	
	감광지	확대지 8"×10" 상급품	상자(100매)	1,725	—	—	—	
	휘발유	석유공사제품	kl	24,870	—	—	—	
	등유	"	"	12,160	—	—	—	
	경유	"	"	11,320	—	—	—	
	중유	"	"	7,180	—	—	—	
	방카 C 유	"	"	4,470	—	—	—	
	연탄	19공탄 톤당200개	%	2,700	—	3,040	3,300	
토석 및 유리제품	마세크		"	4,950	—	5,000	—	
	벽돌	일등품 소성품 10cm×21cm×6cm	10매	71	110	—	100	
	타일	2"×2" 또는 2"×3.5" 외장용 S. K. 34번 병형 (並型)	평	1,566	1,500	—	—	
	내화벽돌	S. K. 34번 병형 (並型)	%	—	11,500	—	11,332	
	판유리	두께 2mm	상자(100평)	2,321	—	—	—	
	유리술병	4홉병	10본	215	—	—	—	
	도자식기	사발과대접중급품	한벌	220	—	—	—	
	시멘트	수경성(水硬性)	포대(42kg)	269	—	—	—	
	콘크리트블록	8"×16"×4"	10개	290	230	—	—	
	"기와	평당40매 흑색 중급품	10매	136	—	—	—	
"전주	10m×190mm×350kg	본	11,500	—	14,900	—		
제1차 금속제품	소석회	15kg들이	포대(15kg)	63	—	—	—	
	석면스레트	석면15~20% 함유 72cm×182cm	매	316	—	—	—	
	선철	주물용 1호	%	22,000	—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금속제품	강	피	No. 1 (Co 1~0.16 %합유	₩	41,500	40,000	—	—									
	철	근	직경 9mm 건축용	₩	46,895	—	—	—									
	선	재(線材)	" 4mm (8번선)	"	63,500	—	—	—									
	후	판	3'×6' 두께 9mm	₩	69,500	—	—	—									
	박	판	후박판 3'×6' 1급 품 두께 3.2mm 또는 2.3mm	₩	57,000	54,700	—	—									
	주	철	관	직경 8인치 정도	"	66,000	62,000	—	—								
	아	연	도	철	판	#31파형(波型)	매	332	353								
	석	도	철	판	3×6차 20'×28' 90 LBS	%	10,254	—	—								
	금	피	99.85%	g	737	—	—	—									
	은	피	99.97%	g	21.58	—	—	—									
	전	기	동	99.9%	₩	510,000	—	—	—								
	연	피	99.96%	₩	142,141	—	—	—									
	나	동	선	7~2.6mm (단면 적 38mm ²)	m	247	—	—	—								
	석	유	관	각형 5gal들이	개	—	200	—	—								
	삼	중	급	품 표준형	"	220	240	—	—								
	방	열	기	5C×650	매	950	—	—	—								
	알	미	눅	샷	슈	6063(AA Code)	₩	575,000	—	—							
	냄	비	알	미	눅	푸	레스	식	기	개	—	152	269				
	스	텐	식	기	50 Piece 양식기	조	1,050	1,100	—	—							
	쇠	못	2'~5'	A급	kg	66	72	—	—								
기계제조	와	이	어	로	우	프	6×19 직경 12mm	1Coil(200m)	—	20,300	—	—					
	볼	트	및	너	트	볼트	직경 15mm 길이 60mm정도	조	39	60	—	—					
	공	업	용	보	일	러	수	관	식	증	발	량	대	6,200,000	—	—	
	발	동	기	중	유	용	16HP	"	33,500	—	36,000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기기계구	인력탈곡기	2인용 족담식(足踏式)	대	11,000	—	10,000	—	
	분무기	인력용 배부식(背負式)	"	—	4,000	—	—	
	경운기	소요마력 3.5HP	"	380,000	—	—	—	
	선반	엔진달린 2륜 5척 평형	"	137,500	—	—	—	
	면직기	길이 45"×2×1	"	—	—	160,000	—	
	견직기	길이 73"(복 2개)	"	—	300,000	360,000	—	
	회편직기	개래식 30" 정도	"	—	—	20,000	—	
	정미기	본기 1호 소요마력 5HP	"	—	9,000	9,500	—	
	동력펌프	수두 20m 펌프구경 100mm 1분당 1톤	"	55,000	—	—	—	
	재봉틀	가정용 발틀 두부	"	8,200	7,875	—	—	
	블베아링	#6205	개	215	—	—	—	
	롤라베아링	#30304	"	440	—	—	—	
	변압기	주상용 15KVA 단상	"	64,000	—	—	—	
	전동기	10HP 220V 60Cycles 4Poles 반폐	"	50,300	—	—	—	
	충전기	24V 15A	"	—	—	—	—	
	선풍기	12"	"	10,680	—	—	—	
	라디오	5구 중파	"	4,300	—	—	—	
	전화기	일반용 수화기	"	7,665	—	—	—	
	고무절연전선	2mm복선	m	—	—	—	—	
	합성수지절연전선	P. V. C. 2mm(가정용)	"	30	—	—	—	
통신용케이블	2.9mm	"	160	—	—	—		
탕스텐전구	일반가정용 60W 100V	개	26	—	—	—		
형광전구	관구 FL20W	"	140	—	—	—		
축전지	12V 50AH	대	4,168	—	—	—		

구분	품목	규격	단위	가격 (원)				비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송용기구 기계	건전지	1.5VCM	개	26	—	—	—	
	선박용디젤기관	60HP중속(中速)	대	1,540,000	—	—	—	
	철강화물선	신조화물선	%	—	—	—	—	
	목조어선	신조어선	%	—	—	—	—	
	버스	국산조립 G. M. C. 대형	대	2,673,300	—	—	—	
	승용차	5인승 Corona 1500cc	"	1,165,500	—	—	—	
	삼륜화물차	TVA 12S	"	900,000	—	—	—	
	자동차엔진	DA 120	"	505,000	—	—	—	
	자동차	26" 실용차 중급품	"	12,500	—	—	—	
	기타제조	안경테	4mm 48~50 대리 스 중급품	개	—	—	395	—
프라스틱제 필립		P. V. C. 필립 두께 0.015mm 폭 45cm 길이 500yds (=457m)	권	1,860	1,854	—	—	
프라스틱 레자		일반용 두께 1m 폭 135cm	m	—	283	—	—	
프라스틱파이프		수도용 내경(內徑) 50mm 두께 3.5mm K. S 표시품	m	240	197	—	—	
연필		필기용 흑심 중급품	그로스	545	—	—	—	
볼펜		모나미 153	"	1,624	—	—	—	
정돈모(整豚毛)		2 1/2 inch 정도	Lbs	481	—	—	—	
가발		기체가 발길이 10" ~ 12" 50zs	개	1,397	—	—	—	
피아노		전형 1/4 (88鍵) 중량 260kg 높이 134cm 정도	대	155,500	—	130,000	—	
레코드판		12" LP Stereo 판	매	190	—	—	—	
울젠	6호 [61건 쌍열 (122 Reed) 5 Octave]	대	30,000	—	30,000	—		
윙타	본당길이 84mm 원주 22.5mm 1,000본	상자	—	—	557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 2 도량형단위환산표

길 이

	척(尺)	정(町)	리(里)	미(米) (m)	촌(吋) (in)	척(呎) (ft)	마(碼) (yds)	리(哩)
척(尺)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1	0.331403	0.000188
정(町)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척(ft)	1.00582	0.002793	0.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哩)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兩)	관(貫)	근(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兩) (영)	돈(兩) (미)
돈(兩)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斤)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와(g)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용 적

	홉(合)	승(升)	두(斗)	석(石)	입방미 (m³)	리터 (l)	개롱 (영)	개롱 (미)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m³)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6
리터(l)	5,543.52	0.55435	0.05543	0.005543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MEMO

<hr/>
<hr/>
<hr/>

1971년

광 공 업 통 계 조 사

조 사 요 령 서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목 차

I.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 근거.....	3
3. 조사 체제.....	4
4. 조사 기준일 및 대상기간.....	4
5. 조사 범위.....	5
6.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8
7. 조사 단위.....	9
8. 조사표 종류.....	10
9. 조사 방법.....	10
10. 비밀 보호.....	11
II. 조사원의 임무	
1. 조사 업무의 순서.....	15
2. 조사용품의 수령	15
3. 사전 조사.....	16
4. 실 사.....	17
5. 실사 일보.....	19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0
7. 기 타.....	21
III.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25
2. 항목별 기입요령	26
IV.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조사표의 검토정리 요령	51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52
부록 1. 주요상품 도매 가격표	77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99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광업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생산활동을 파악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투자, 생산등의 제반 상황을 측정 함으로써

가. 공업화의 정도와 구조의 변화를 매년 파악하고

나.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시책의 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 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통계법초 (抄)

제 2조(정의) ①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작성하 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조(신고의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 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2. 제 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자.

※ 조사 연혁(沿革)

광공업 센서스

1 회	1955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 "	한국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 "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 "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 "	"	" "
6 회	1968 "	"	" "

광공업 통계조사

1 회	1967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년	"	"
4 회	1971년	"	"

3. 조사 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시장 및 도지사→지도원→조사원→대상사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4. 조사 기준일 및 대상기간

가. 조사기준일 : 1971.12.31

나. 조사 대상기간 : 1971.1.1~1971.12.31

5. 조사의 범위(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Ⅱ」에 해당하는「광업 및 채석업」과 대분류「Ⅲ」에 해당하는「제조업」이다.

※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鑛),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鑛), 용해 및 건조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9(기타 광물 제품 제조업)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든 집에서 행하여 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漁家)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 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전'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동 및 전선등으로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 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 점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점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② 양부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도매 업자는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 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 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 농림어업 부문,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 :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는 하청업자 차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수리업(修理業) 또는 써비스업과의 관계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주요 활동 단위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하여 수선 써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 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바)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6.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97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 1) 1971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 2) 1971년 1년중 또는 12월 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left(\frac{\text{월간평균종업원수}}{12} \geq 5 \text{인 경우} \right)$$

$$\left(\frac{\text{조업일의 종업원수의 합계(12월)}}{\text{조업일수(1971. 12월중)}} \geq 5 \text{인 경우} \right) \text{ 또는}$$

- 3) 1971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 (가) 1971년 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 (나) 조업기간(操業期間)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 이었던 사업체
(예 : 제빙업)
 - 4)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더라도 조업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아 (4) 해당에서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 (2) 공공 직업 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7. 조사 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 (1) 단일 경제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수 있는 경우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서로 떨어져 서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다음의 포함하여야 할 항목의 가능한데 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항목: 사업체 및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조직형태, 창설년, 생산과정, 종업원수, 급여액, 연초 연말 재고액(품목별내역포함)

8. 조사표의 종류(調査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 조사표(I).....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II).....기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 본사와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조사표(II) 뿐만 아니라 분리된 관할 사업체별로 (I)표를 전부조사 하여야 한다.

9.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직접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개

입के 한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기입 할수 있다.

10. 비밀보호(秘密保護)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漏洩) 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 통계법

제10조 : 비밀보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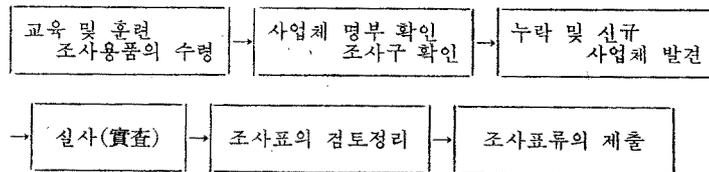
제11조 :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제21조 : 벌칙 규정

Ⅱ.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은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I)

2) 조사표(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1) 실사일보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표 케이스

3. 사전 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
-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 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인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 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수 있도록 로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사업체 명부확인
강습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1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히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폐(存廢)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3) 사업체명부 보완
 -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0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1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 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고란에 신규 또는 누락이라 표시한다.
 -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사업주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 사항을 사업체 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빠지지 않고 답사하여 사업체의 본사를 색출하여 사업체에 관한 사항과 본사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비고란에는 본사라고 기입한다)

4. 실 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證)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0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 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수 있다. 단, 이와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 사(實査)

(1) 조사원은 (Ⅲ)조사표 기입요령, (Ⅳ)조사표 검토 정리 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 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時收)에는 전후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사업체 및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 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나) 이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전 항목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②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③ 창설년 ④ 조직형태 ⑤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⑥ 종업원수 ⑦ 급여액

⑧ 연초, 연말 재고액(품목별 내역 포함)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 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 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
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
로서 작성되므로 나머지 사업체만 구분하여 (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때는 생산량을 파악한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
다.

5. 실사 일보(實查日報)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등 조사 활동
사항을 실사일보(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색출 ((71년창설), 누락(70년 이전 창설)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이들
사항을 기록보고 하며 이들 중 동일기업체에 속하고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
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및 분공장(分工場)등이 다른 조사구에 있음을 알

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산품명 종업원 수, 가동여부를 조사하여 일보에 기재 보고한다.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 (1) 조사원은 사업체에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회수 즉시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 가를 검토한후 회수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한다.
-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킨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조사하여야 한다.
- (4) 조사표는 실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표 종류별로 사업체 명부의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케이스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 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 명부)와 함께 실사 완료일(30일간)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지도책임자에게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 부터 회수한 조사표 중 재조사 해야할 조사표를 제외(별도 제출)하고 시·도 단위로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 하여야 한다. (실사일로부터 40일 이내)

7. 기 타

-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할 것.
- 나. 조사용지 결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Ⅲ. 조사표 기입 요령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표는 실사 완료후 심사, 분류, 집계등 여러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조사표의 기입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블랙」을 사용하여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 5입 하고, 4 사 5 입 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복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2. 조사표(Ⅰ)의 항목(項目)별 기입 요령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울산공장」
 -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 동 가
 대전(시) 은행 (동) 136번지의 16호

 충청남도 군 면
 -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본 사(본점) 명 및 소재지
-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와

기입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右段)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 (創設年)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조직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

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내에 ○표한다.

-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 나) 1971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6) 주요 생산품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 가) 주요 생산품명
-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된 품목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입한다.
- (가) 1971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 (나)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중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1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마) 조사표(1) 14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항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 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기입 한다.

예 : (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평(選鑛)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평→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澱粉)→당화→발효→농축→산분해(酸分解)→여과→농축→염산염(鹽酸鹽)→탈색→결정→구루타민산소다」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침전→전분→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 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탄산수주입→타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原綿)→면조(綿條: sliver)→정방(精紡)→단사(單糸)→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면사(綿糸)」

⑤ 면직물(면포)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整經)→호부(糊付)→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관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휴지, 칼프를 용해시키는 작업)→초지(와이어에 의한 초지)→건조→완성→관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선별→분쇄→약물배합→탈유(脫硫)→재생→포장→재생고무」

⑧ 리사지<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

황색 산화연> 연분식(鉛粉式)

「납→용융→성형→연분→산화→분쇄→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배합→성형→소성(燒成)→벽돌」

7) 사업체 부지 면적(광업 및 채석업제외)

가) 부지 면적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임차부지포함)의 전체 면적을 기록한다.

단, 주택, 기숙사, 운동장, 또는 복리후생 시설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생산설비(창고, 발전소등을 포함) 등의 부지와 도로,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나) 사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지로서 앞으로 1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구축 또는 설치할 부지도 포함된다.

다) 사업체의 공장시설물 구축물이 설치 또는 1년 이내에 설치될 부지만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크기나 층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목적 이외의 투자나 투기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라)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층○○평”으로 조사기록하고 2,3층 및 기타의 것은 제외한다.

8) 동력시설용량

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기, 원동기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능력은 그 시설을 제조 또는 시설한 규격 표에 표시된 마력수에 의한다. 수리중인 것과 예비용인 것 및 이동식 원동기도 포함하나 원동기 및 전동기 제작 회사에서 판매를 위하여 제작 보유하고 있는 것은(14) 항의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기재사항이므로 동력시설용량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나) 원동기

생산시설을 운전하기 위한 모든 동력기계를 말하며 전력을 사용하는 전동기와 발전기용, 차량용 및 선박용의 것은 제외한다.

다) 전동기

전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력기계를 말하며 전도 벨트, 또는 체인에 의하여 기계에 연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기계에 부착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생산기계 이외의 기기 즉 사무기계 및 실내 장치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9) 종업원수
(從業員數)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여(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자

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 생산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자와 자가 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 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 채광, 굴진(掘進), 갱내 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 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 사무등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 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 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

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종역등은 여기에 포함한다.

나) 사업주 및 무급종업원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 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다) 12월말 피고용자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10) 연간급여액
(年間給與額)

가) 1971년 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1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拂)된 것을 1971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1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拂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11) 연간 주요 경비
(인건비제외)

197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와 간접비(복리후생비, 지불운임 및 보관비 판매수수료, 임차료, 광고비, 기타)로 구분 조사한다.

주요생산비(직접비)

가) 원재료비(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2) 동일 기업체의 타사업체로 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기입한다.
- (3)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 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사업체의 원재료

로 계상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 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 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 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1) 1971년 간에 가열로(加熱爐)(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 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購入電力費)

(1) 197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1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購入用水費)

197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委託生產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轉賣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產)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 됨으로서 회계상 유형고정 자산계정에 처리 되어야 할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5항 유형고정 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5항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그러나 경비계정에 처리되는 것은 수리 및 유지비에 포함한다.

간접비

간접비는 기업활동에 소요된 모든 경비에서 급여액과 직접비(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하며 제조원가 보고서 항목인가,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항목인가를 불문하며 동일 성질의 항목이 제조원가 보고서와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양면에 있을 때에는 합하여 기재한다.

가) 복리후생비 : 종업원에게 지급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액, 후생비등을 포함한다.

(1) 법정복리비 : 근로 기준법등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액을 말한다.

(2) 복리시설 부담비 : 교육시설, 병원, 구매조합, 식당, 목욕탕, 기숙사, 도서실등 복리시설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3) 후생비 : 종업원의 의무, 위생, 보건, 위안 수양등에 요한 제비용을 말한다.

나) 지불운임 및 보관비

원재료의 반입과 공장내 운반 혹은 외주품의 운수등에 관하여 외부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임과 외부창고업자에게 지급한 창고료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것 가운데 원재료비에 계상된 것은 제외한다

다) 판매수수료

위탁판매를 위하여 사업체가 지정하는 판매 회사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와 공판회사등에 지불한 수수료를 말한다.

라) 임차료

토지, 건물, 구축물등의 임차료나 사용료를 말한다.

마) 광고비 : 제품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로서 종류와 금액에 있어 정당하게 계상된 것을 말한다.

바) 기타: 제조경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 중에서 급여액과 직접비(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 및 간접비(복리후생비, 지불운임 및 보관비, 판매 수수료, 임차료,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조세공과, 교제비, 잡비, 감가비 등)의 총계액을 기록한다.

12)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1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1년간에 일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 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1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전본 또는 선불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종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않고 그대로 전

매(轉賣)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역도(驛渡)가격)

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 란에 기입한다.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기입한다

나) 폐품판매액(廢品 販賣額)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 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완제품출하액에 계상한다.

**13) 연초, 연말
재고액
(年初, 年末
在庫額)**

가) 연초 재고액은 1971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1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 본사 조사표 참조 (조사표Ⅱ)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4)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

**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2-(1)」 완제품출하액과 「13-(1)-(가), (나)」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2-(1)」와,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3-(1)-(가), (나)」와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

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5) 유형 고정
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
분액**

가)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垡地), 사택대지(社宅垡地) 운동장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 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등을 말한다.

(3)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는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爐), 가열로(加熱爐), 용광로(熔礦爐),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傳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에는 내용 년수 1년 이상이고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우마차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각 취득액

연각 취득액이라 함은 1971년 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 비용을 말하며 중고품일지라도 해외로부터 수입한 유형고정자산은 여기에 포함된다.

(2) 중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한다.

(3) 평가(評價)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 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성하였을때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건설이나 생산중의것은 건설가계정에 기록함).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1년 간에 매각(賣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1) 평가 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라) 건설가계정

(1)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총당된 재료 및 기계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하거나 기계설비등이 입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2) 건설가계정연간 증가

197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3)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4)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임으로 건설가계정의 연말 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3. 조사표(Ⅱ)의 항목별 기입요령

가. 일반사항

- (1)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 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 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한다. (기타사항은 (Ⅰ)표로 조사하여야 함)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별도 기입요령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조사표(Ⅰ)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 (1) 항목 1, 2, 3, 4는 조사표 (Ⅰ)의 기입요령을 참조한다.
- (2) 종업원수란(5항)은 본사의 피고용자 즉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 (3)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6항)은 본사의 업무 종사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조

- 사표(I)의 사항을 참조한다. 이항목에는 제조원가의 사항은 전부 제외된다.
- (4)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7항)은 본사계정(計定)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 (5)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액(8항)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71년 취득설치 및 증축, 개축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과 매각, 양도, 재해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감소액을 기입한다.
- 그러나 본사와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 개축등의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기록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 ※ 건설가계정은 조사표(I)을 참조한다.
- (6) 관할사업체 명부(9항)란은
-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체에 소속된 산하(傘下) 사업체 가운데 「광업, 제조업 사업체」만을 기입한다.
- (나)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 (다) 산하사업체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II)는 조사하지 않는다.
- (7) 비고란은 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실적동향, 사업체의 유고사항등을 기록한다.

Ⅳ. 조사표 검토 정리 요령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토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회된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5)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6) 주생산품명이 “완제품 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 하는가를 검토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종업원을 잘못 포함시키지 쉬우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8)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 종업원이 있음을 유의할 것.
- 9)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 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10)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2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토한다.
- 12)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3)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4)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완제품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5) (가) 「연간 주요 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검산하고,
 (나) 경비 총계는(연말재고액 합계—연초재고액합계+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6) (가) 완제품 출하액은 14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연간완제품 출하액 및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8)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 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사항

-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할 것.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함. 단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여백(또는 후면)에 규격, 금액을 참고로 기입 하여야 한다.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원재료비에 2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 사업체는 사실일보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연,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 하고 휴업 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광 업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인데 연탄(354010

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 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 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소분류 230(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품목란에는 광석의 품위를 반드시 기입할 것.

품위는 해당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 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는 순도 또는 함유량을 여백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니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을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을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취수연은 모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소분류 290(비금속 광업)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대리석 및 돌조각품)에 분류한다.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관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 되어야 한다.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두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 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피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 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

1) 소분류 311~312 (식료품 제조업)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缶, C/S로 기입하여서는 없으며 반드시 kg

으로 기입 하여야 한다.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품목만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란 (12-③)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벼, 보리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각종 가루 부산물)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료는 3122001에 분류한다.

라) 빠다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함시키지 말고 3121299(기타의 장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31213)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산 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에, 들친은 3511915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봉지”로 조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소분류 313(음료품 제조업)

가) 알콜 1% 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이하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이 사업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지도원은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합하여 조사

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ℓ임으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ℓ로 환산하여야 한다.

$$1\text{되}=1.8\ell \quad 1\ell=0.556\text{되}$$

마) 환타, 오란 C 등의 정량음료는 유우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 ^x	25°	ℓ	200
3131201		30°	ℓ	300
3131201 0		25°~30°	〃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의 분류

섬유를 대별하면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천연섬유는 식물섬유, 동물섬유, 광물섬유로, 인조섬유는 무기섬유와 유기섬유로 분류된다. 섬유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유기섬유의 분류임으로 유기섬유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별표 분류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유기섬유의 생산업체명은 별표 (66p)를 참조할것).



(註) () 品質表示法에 의한 呼稱
 [] 別名
 [] 商標名
 ○○ 姓名

나) 섬유의 통일명칭

섬유의 종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저마)	마	Linen &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銅)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테이트 섬유	아세테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V.A.
폴리 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V.C
폴리염화 비니리덴계 섬유	염화 비니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로나이트릴계 섬유	아크릴	Polyacryl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폴리청화 비니리덴계 섬유	청화 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비고 : 기타 섬유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면포 평방미터 환산표(綿布平方米 換算表)

幅 (in)	幅 (cm)	平方米/碼	平方米/40碼
30	76.20	0.666772	27.99012
30.5	77.47	0.708385	28.33543
31	78.74	0.711000	28.79994

幅 (in)	幅 (cm)	平方米/碼	平方米/40碼
31.5	80.01	0.731611	29.26444
32	81.28	0.743224	29.72896
32.5	82.55	0.754837	30.19348
33	83.82	0.766450	30.65800
33.5	85.09	0.778063	31.12252
34	86.36	0.789676	31.58704
34.5	87.63	0.801289	32.05156
35	88.90	0.812902	32.51608
35.5	90.17	0.824697	32.98788
36	91.44	0.836127	33.44508
36.5	92.72	0.847740	33.90960
37	93.98	0.859353	34.37142
37.5	95.25	0.870966	34.83864
38	96.52	0.882579	35.30316
38.5	97.79	0.894192	35.76768
39	99.06	0.905805	36.23220
39.5	100.33	0.917417	36.69668
40	101.60	0.929030	37.16120
40.5	102.87	0.940643	37.62572
41	104.14	0.952256	38.09024
41.5	105.41	0.963869	38.55476
42	106.68	0.975481	39.01924
42.5	107.95	0.987095	39.48380
43	109.22	0.998708	39.94832
43.5	110.49	1.010321	40.41284
44	111.76	1.021933	40.87732
44.5	113.03	1.033546	41.34184
45	114.30	1.045159	41.80636
45.5	115.57	1.056772	42.27088
46	116.84	1.068385	42.73540
46.5	118.11	1.079998	43.19992
47	119.38	1.091611	43.66444
48	121.92	1.114836	44.59344
48.5	123.19	1.126449	45.05796

幅 (in)	幅 (cm)	平方米/碼	平方米/40碼
49	124.46	1.138062	45.52248
49.5	125.73	1.149675	45.98700
50	127.00	1.161288	46.45152

라)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50으로 하
되 동류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 한다. (합
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 테이
트, 면, 비스코스순(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 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를 우선
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
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
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호칭
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률일 때 견을
택한다.

(나) 견이 30% 미만인 경우에 견과 이종이상의 타 화학섬유와 혼방
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다) 견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물일 때는 견을 택한다.

(4)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물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마) 면사 생산업체

경성방직 (영등포)	동일방직 (인천, 안양)
전남방직 (광주)	삼호방직 (대구, 대전)
금성방직 (안양)	홍한방직 (인천)
내외방직 (대구)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안)	태평방직 (안양, 청주)
풍한산업 (대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등포)	삼화방직 (부산)

바) 항목별 유의사항

- (1) 면혼방사는 면사에 포함 한다.
- (2) 화학섬유 방직사는(32164-01, -02, -03, -04, -05, -06) 일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정을 완료한 사(絲)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화학섬유(35133)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²임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4) 각종 세폭직물(3217501)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 미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 (5) 표백, 염색 및 정리업(32180)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 등의 표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홀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9520에 분류).

4) 소분류 322(의복제 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편직업)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9520에서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메리야스제 내의 편조업 : 32133

편직물장갑제조업 : 32132

고무장갑제조업 : 35593

메리야스제모자 : 32134

5) 소분류 323(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역,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거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평” 또는 “매”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2 임으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단위환산법 (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르다).

1 평 = $0.093m^2$

1 매 = $3.7m^2$ (40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 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

서 자(尺)나 m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m/ply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플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제조업)

가) 플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 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 (제재, 톨크 및 나무제조업)

가) 판재라하면 넓이가 두께의 3배 이상인 되는 목재를 말하며 각재란 넓이가 두께의 3배 미만의 것을 말한다.

나) 각재와 판재는 m^3 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m^3 = 303\text{才}$$

다) 합판 및 하드 보드도 m^3 로 환산기록 하여야 한다.

$$\text{합판의 경우 : } 1\text{매} = 0.013m^3$$

$$\text{하드 보드 : } 1\text{매} = 0.019m^3$$

8) 소분류 332(가구 및 건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2(금속가구 및 건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칠기제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 341(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권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권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는 골판지원지(3411302)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골판지(3411303)에 분류한다.

다) 갈포벽지는 섬유제조업(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840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인쇄비 등)를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수수료만을 수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 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을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조달하였을 때든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 항) 인쇄소에서 이중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11) 소분류 351(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조사표 여백에 함량별 불량 및 가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함으로 분류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합성그리세린(3511914)과 그리세린 {유지 분해 부산물(3523306)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3523306)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그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석회질소비료(3512104)와 석회질비료(3512301)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비료는 소석회(3692201)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 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 보다 더 짧은 가루임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 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를 조사한다.

바) 각종 수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35131)에 속하는데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35600)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사) 화학섬유(35133 : 세르로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와 화학섬유 방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참조)

아) 화학섬유 생산업체
우리나라의 합성섬유는 주 나이론 (Filament) 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근래기타 섬유의 시설이 급격이 확장되었다.

品	種	別	業	體	名
合成纖維	나	일론	韓	國	나 이 론
			韓	一	나 이 론
			東	洋	나 이 론
	아	크릴릭	韓	一	합
			東	洋	합
		S.F			纖
					纖

合成纖維	폴리에스터	S.F	大 韓 化 織 三 養 社
		Filament	鮮 京 合 織 大 韓 化 織 三 國 養 社 韓 國 國 家 이 른 三 德 國 Polyester 太 平 洋 貿 易 織
	폴리프로필렌	Fiber	高 麗 合 織 第 一 化 織 其 星 化 織 他
		Filament	第 一 化 織 其 他
	P.V.A.	Filament	韓 國 國 家 이 른
半合成纖維	아세테이트	Filament	鮮 京 化 織
再生纖維	비스코스	Filament	興 韓 化 織
合 計			17個社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351807) ($Al_2 SO_4$)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3511101)를 첨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3511102)과 가성소다 (3511108)는 동일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로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 (35292)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임으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 (35293)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3) 소분류 354(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 19공탄 220개 = 1%

31 " 180개 = 1%

49 " 80개 = 1%

14)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동화에 포함한다.

나) 털신(고무신안에 털을 넣은 것)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로 m/ply 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 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ply = 폭 \times 포층수 \times 길이$

$1/ply = 0.33m/ply$

라)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 임으로 "권"으로 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m

15) 소분류 356(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 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32129)에 직물제품 외에 프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시트 (프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에 가죽제품 외에 프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가죽트렁크(프라스틱제, 비닐제 합성가죽제 포함)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에 프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지갑 (프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 (39098)에 프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 (39099)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고압 애자(3, 300V 이상)와 저압애자(3, 300V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브릭에서 보도용브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소성품)에 휘장연와(오지벽돌)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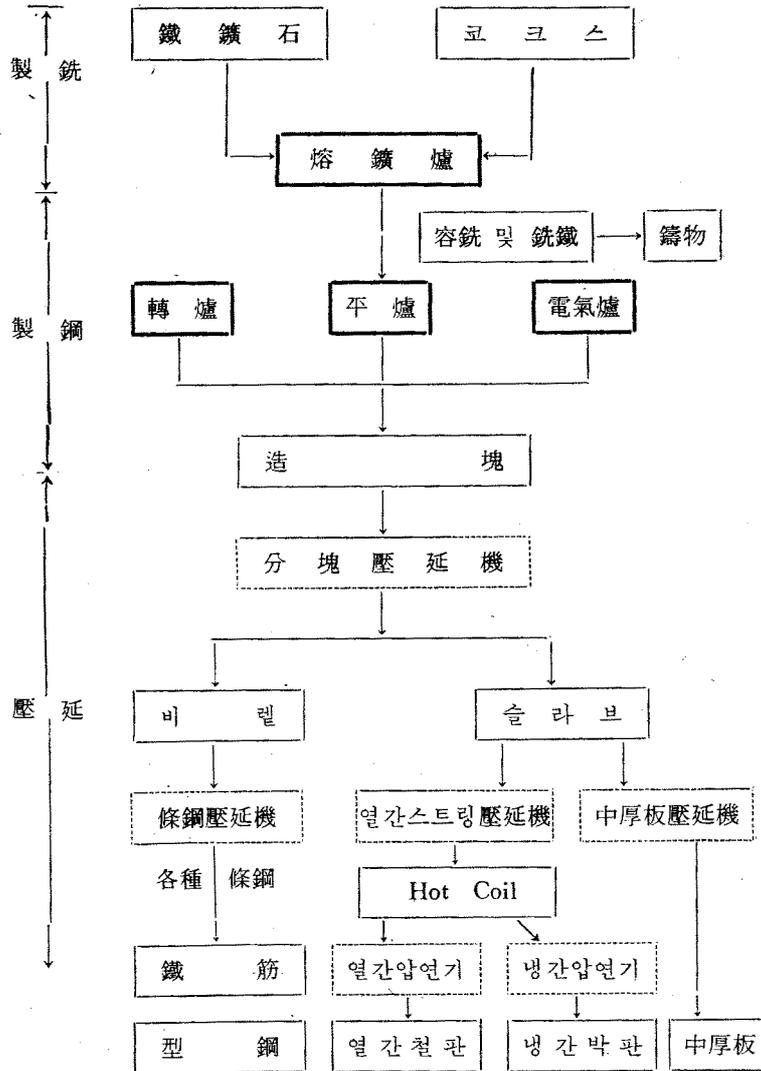
17) 소분류 371(제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製銑)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381)에 분류한다.

※ 제1차 철강공업 공정도

제1차 철강공업공정도



나) 품목구분

(1) 강반성품 : 강괴는 크고 무거움기 때문에 직접 조강(條鋼)이나 강판(鋼板) 등의 강재제품(鋼材製品)을 만들기 어려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눈것이다. 강편(鋼片)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 두께 3.2~6mm의 강판

박판 : 두께 3.2mm 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판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 (제일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미늄 주물 제조업(37203)과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제품 제조업(프레스 가공 제품 제조업 : 38192)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우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이다.

17) 소분류 381 (금속제품 제조업)

가) 석유스토브는 석유공로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임으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20)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 가) 보일러는 공업용보일러 (3821101)와 건물용보일러 (3813003)로 구분하여 조사 한다.
-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 (3821105)에 포함 조사한다.
- 다)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라) 활판인쇄기 (3824906) 음쇄인쇄기 (3824907)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 마)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 바)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두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 사) 피스틴 (389906) 및 피스틴링 (3829911)과 자동차용 피스틴 (3843205) 및 자동차용 피스틴링 (3843222)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아) 기계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 21) 소분류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 (3831901 단위 : KVA)와 저압축전기 (3831902, 단위 : μ F)로 구분 조사하고, 가변축전기 (3831909), 통신용 축전기 (3832901)(콘덴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필라멘트 전구)로서 10w, 20w, 30w, 100w, 150w, 200w 등을 포함 한다.
-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전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 (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 (38412 및 38413)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L/T 임으로 “척” 등으로 조사된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더는 기차용 (3842210)과 자동차용 (3843221)으로 구분조사 한
다.

23) 소분류 390 (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자루=1타

12타=1 그로스=144자루

나) 필타는 “상자” 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단위 kg
으로 환산하여 조사할 것.

부록 1 주요상품 도매가격표

(1971년 6월말)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 일람표

(1971.6.30 현재)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210. 석탄 광업						
부연탄	%	3급탄, 분탄 5,300~5,599cal	2,700			
230. 금속 광업						
적철광석	%	철 함유량 56% 이상	4,264			
자철광석	"	"				
흑중석광석	S/T	함유량 70%	1,118,220			
회중석광석	"	"	1,118,220			
망강광석	%	함유량 30%	6,000			
동광	"	동함유량 6%	24,000			
연광	"	연 함유량 60% 정광	49,210			
아연광	"	아연 함유량 46~48% 정광	22,964			
금속장연	"	99.9%	3,796,097			
모리부품광석	"	Mo 함유량 90%이상의 정광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산	광
290. 토사석채굴업						
대리석	m ²	10.89자(1才=1자 사방)24mm 황용	19,000			
견치석	평	1자×1자×1.5자 36개	2,500			
영규암	%	SiO ₂ 99.5% Al ₂ O ₃ 0.1%, Fe ₂ O ₃ 0.1% 이하	4,087			
장석	"	Fe ₂ O ₃ 1%이상, SiO ₂ 6%이상, Ac ₂ O ₃ 30%이상	5,000			
290. 비금속광업						
인상	%	Fc 75~80% mesh-150		65,000		
토상	"	Fc 함유량 75%	4,700			
고령	"	SK 35번 백색	3,700		3,300	
활석	%	분말 백색도 80정도 2급				
형석	"	과CaF ₂ 80% 이상	16,000			
납석	"	SK 32번 홍담석				4,000
석회	"	탄산석회분 95%이상				
311~312. 식료품제조업						
연유	유	관(缶) 397gr	105			
분유	유	" 450gr들이	345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생동새우	20kg	상급품(shell-on) 대 (Count 당 1~15)			21,500	24,000
팽치보이 부통조림	c/s	진 4호판 48판(銜)들이	4,080			
조미오징어	10kg	상급품	7,500		3,840	
쌀	가마니 (60kg)	가마당 도정료	107			118
밀	가마니 (60kg)	종력분 2등급 제분율 77%	784			
식빵	3,75kg	상급품	317			
비스킷	3,75kg	상급품	700			
정당	30kg	정백당, 상급품	3,100	3,189		
견과류	20갑	개당 3gr 갑당 5개	145			
스프링	kg	엿 25%, 실당 65%	212			
간장	180/병	중급품	15,193	15,000		
된장	병	중급품, 병당 900ml/들이	77			
구르타민산소다	3,75kg	이등품	336	220		
카린	kg	99%	506	506		
인조얼음	lbs	결정품	441	490		
	%	—		2,500		2,50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구	주
진	포	콘스타치 A급	1,619	1,650		
한	관(缶)	24kg들이, 1급품	2,150		456	620
마	lbs	1등급				
아	상자	450gr 들이 24개	2,112			
이	관(缶)	900gr 들이	747			
조	포	산란용, 단백질 15%	640			
제	포	개 120gr, 상자당 50食入	900			
사	상자					
면						
라						
313. 음료품 제조업						
소	주	180/	28,750	28,000		23,200
주	정	30도				
정	주	200/	34,251			
주	주	심 (180/)	2,700			2,970
정	주	18(10명)				6,300
정	주	상자				
맥	주	병당 640ml, 24병들이	3,888			
포	주	"	1,900	1,920		
포	자	12도, 4홉병, 24병들이		5,700		
포	자	심(80kg)				
맥	아	%	84,533			
맥		맥주원료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산	광
사 이 다	상 자	상급품, 360ml(2홉병), 24병들이	890		829	
라	"	24병들이	936		855	
314. 연 초 제 조						
필 타 달 린	켄	신탄진 (20본들이)	54.60			
없 는	켄	백조 (20본들이)	18.20			
각	연 50gr	타이가	72.80			
321. 섬 유 제 조						
면	사	23수	64,780.80			64,800
스	사	30수	61,440			
소	사	수편사, 18수 4합사, 염색사	800			1,430
방	사	수편사 wool 100% 12수 2합사	700			600
아	사	SCL 30s	425			
생	사	21중	6,700			5,249.12
견	사	72수단사	2,742.67			
비 스 코 스	인	120 denier cake 1급 (90.72kg)				
아 세	테	120 denier 96.7kg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폴리에스테르사	lbs	Filament 사, 75 denier (SD 75/36) 1A 正統	501.46				
폴리에스테르사	kg	스프사, 75 denier	859				
카시미론사	"	염색사					
나이론사	lbs	Filament 나이론사 70 denier A 급					
어망	"	나이론사 210 denier					305
광목	필 (=30m)	lbs x lbs 35"	2,100		2,100		
포플린	"	순면, 32s x 30s, 98 x 62 (94 x 64), 가공한 것	2,640		2,700		
내광목	"	$\frac{16s \times 16s}{44 \times 44}, 35"$	1,849				
소모동복지	필 (30Yds)	목 60", 순모, 52수 2합사사용	78,000	84,000	90,000		
모혼방하복지	"	毛 38~40%, 테도론 60~62%, 有色 60" (신사복지)	30,000	42,000	55,500		
본견양단	필 (40Yds)	목 29"		34,000			
비스코스인견적물	Yd	36" 비스코스인견사 120 denier 사용	63	125			
나이론다후다	Yds	36" 70 denier 염색가공			60		
폴리에스테르직물	필 (30Yds)	44" (양고라)					
나이론양말	타(12족)	중급품, 춘추용, 남자성인용			1,250		1,150
메리야쓰동내의	족(10좌)	남자용, 면제품, 상하, 크기중		6,20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산	광
베리야쓰여름내의	쪽(10매)	면 40s, 남자상인용, 반소메런닝				
타울	쪽(10매)	면사 23's, 정파일, 87gr/매 84cm×33cm 세수용수건	1,588			
로프	3.75kg	마니타마사		720		
어망	필 (151.5m)	나이론사 210 denier, 4ply 2 $\frac{1}{2}$ " (Mesh size), 200코 (Mesh Depth) 100장대 (Length)		7,000	8,470	
322~324. 화류, 의류 및 장신품 제조업						
남자용 피혁 화	족	흑색, 복수피, 중급품	3,300			3,300
여자용 피혁 화	"	흑색, 복수피, 중급품, 미들폼	2,300			2,600
동양	착	순소모복지 사용(제일모직 보통제품사 용)	22,000			
하양	"	모혼방복지 사용데드론 (60~62%, 모 38~40%, 제일모직제품)	1,8000			
와이샤쓰	매	P.P. 와이샤쓰, 백색 15", 긴소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1,300			
남자용 학생복	착	면, 흑색, 5호(중고교생용)	1,560			
남방샤쓰	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크기중, 중급품	1,500			
331. 제재 및 국제품 제조업						
옥송각재	재(才)	1치×1치×12자	60			85
옥송판재	평	3분판	630			880
미송각재	재(才)	1치×1치×12자	71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울	부	산
미송판	평	3분판	762			
나왕각재	재(才)	1치×1치×12자	88	86		
나왕판재	평	3분판	945	990		
베니아합판	매	0.3cm×90.9cm×181.8cm(1분×3자×6자) 1급		195		
하드보드	"	0.4cm×120cm×270cm(1분×4자×9자)	625			
332. 가구 및 장치품제조업						
장경대	대	6×6×2.5자정도, 호마이가 중급품	30,000	24,000		
경책상	"	화장용 2.5자 정도높이의 호마이가 중급품	16,000	13,000		
철제책상	개	목제, 사무실용, 2.5자×4자×2.5자정도높이(우측설합 3좌측설합) 호마이가 중급품	4,000	4,000		
철제 의자	개	사무실용, 106cm×76cm×76cm(우측설합 3, 좌측설합 1)	10,500			
금속캐비닛	개	사무실용, 회전식, 중급품, 크기: 중 3×6×1.2자 정도, 중급품	4,500			
			7,200			
341.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						
신문용지	박	31 Roll, (신문사 판매가격)	69,000			
모조지	"	연량 30kg (70gr/m ²)	120,000		110,00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주
크타프트지	"	지대용, 80gr/m ²	85,000		
박엽지	연	연당 15lbs, 46판	1,050		
마니라관지	연	연당 109kg (253gr/m ²)	8,855		
창호지	지	3×1.9자, 중급품, 사입 (糸入) 안된것			150
아트지	연	A지, 100gr/m ² (연당 42,994kg)	7,820		
은박지	꺾	coil 형폭 90mm, 길이 1,000m (coil 당 6.3kg)	554,000		
인쇄용지 (중질지)	연	46판, 연당 26kg (60gr/m ²)	2,700		2,700
크타프트지대	매	시멘트포머 (70×42×7.5cm 4ply)	26.50		
342. 인쇄, 출판 및 동류사업					
일간신문	부	1주당 46면, 부당가격	168		196
교과서	권	국판, 110 page정도, 활판인쇄, 국민학교용 (3-1학년)	17.30		
시적	1,000권	국판소설 9p활자, 간격5호4분, 표지모조 150 lbs 200page정도, 용지계지	360,000		
비일간신문	부	주간 36면, 부당가격 (주간신문)	12		
잡지	권	국판, 450 page 정도, 월간	200		
일반인쇄물	연	4×6배판, 개지연당 편면활판인쇄료 (용지대포함)	1,800		3,350
323. 피혁 및 피혁제품 제조업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출	부	광
우갑	평	복수피, 2급품	190			
우저	"	홍지력, 2급품	220			
합생용가방	개	여합생용	600			
355. 고무제품제조업						
자동차용타이어	조	750×20, 12ply, (3중), 튜브보달린것	14,100	141,000		
자전거용타이어	조	26×1 $\frac{3}{8}$ (타이어), 26×1 $\frac{3}{8}$ (튜브)		620		
고무신	100쪽	백색, 남자용 240mm(10분), 인장강도 40	10,000	7,300		
운통	100"	흑색남자용, 먼포지, 240mm	13,500	15,500		
고무화	쪽	흑색, 에나멜입힌것, 240mm, 먼베리아		313		
평형고무벨트	1"×1'×1'타이	평형 동력전도용	7.40		7.50	
V형고무벨트	본	A형 50", 동력전도용		120	100	
스폰지	평(=1자×1자)	고무스폰지 두께 2"		260		
351~352. 화학제품 제조업						
농유	산 %	98% 공업용	8,500	9,000		
염	산 "	35%	14,922			
가성소다	다 "	40%(46%)	20,00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카바	D/M	225kg 1호				
호루	ㄱ	37% 이상	400	24,000		
암축	본	7m³블이, 99%				
요소	ㄱ	질소질 46%	22,458			26,909
글리	D/M	250kg 94%	75,000	65,000		
유페	5G/A	백색, 오일조합페인트, 외부용, 상품	7,400	7,400		
에나	"	백색 A급, 중품	6,800	7,200		
직접	kg	분말, Direct Black EX	990			
복합	ㄱ	전질소 22%, 가용성인산 22%, 수용성인산 11%	31,950			
인산	"	인산 20%, 설회 28%, 고토 12~17%, 규산 24~25%	18,051			
해열	1,000T	아스피린(성분함량정당 500mg)	380			
진통	100T	비타민 A 10,000IU, 비타민 B 2,000IU 포함	550			
중합	병	병당 100cc 300만단위	75			
오일	1,000T	원기소, 그로민정, 비타이스트	280			
진위	갑	20%, 20cc 10염물	290			
포도	1,000T	트란케타이저, 정량 10mg	1,25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산	광
자양강장 변질제	10병	드링크류, 병당 100ml	364			
바니싱 크림	림타(12병)	병당 순량 75gr 스테아린산 10~15% 함유	1,800			
연키약	타(12분)	본당 100gr들이, 뷰우브,		686		
B. H. C.	kg	분제 1.5~2%	50			
세탁용합성분말세제	통	500gr 정도	60	48		
세탁비누	개	개당 300gr 정도, 상급품		32		
화장비누	개	개당 80gr 정도, 중급품	28	25.50		
다이나마이트	상자	22.5kg 교질	4,800			
통성냥	개	덕용성냥(8자)	17			
인쇄용잉크	kg	흑색, 활판용, 중급품	250			
P. V. C.	ㄱ	분말	120,000			
광지	상자(=100매)	확대지 8"×10" 상급품	2,600			
353~354. 석유 및 석탄 제품제조업						
휘발유	ㄱ/	중급품	29,730			
등유	ㄱ/	—	16,950			
경유	ㄴ	—	13,530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	부	산	광
중유	"	-	8,580			
방카유	"	-	5,270			
윤활유	D/M	모터오일	17,050			
나프사	kg	-	5,170			
연탄	200개	19공탄	2,800		3,400	3,660
마세크탄	%	-	5,500		5,500	
361~369. 토석 및 유리제품제조업						
별타	10매	일등급, 소성품, 21cm × 10cm × 6cm	75	105		100
"	경	2" × 2" 또는 2" × 3.5" 이장용		1,500		
"	"	내장 3.6각, 도기백색, 110mm × 110mm 평당 260매		1,500		
내화유리	%	SK 34번 병형	11,500			14,800
관유리	자 (100평)	두께 2mm 맑은 유리	2,437			
유리	10병	4홉병	215			
"	"	2홉병	100			
도자	기	사발과 대접종류품				220
시멘트	환포 (=42kg)	수경성	269		247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 격	가 격 (원)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콘크리트블록	10	S.B-4, 10.2×20.3×40.6cm 압축강도 60kg/cm ²	240		240	
콘크리트외벽	10매	평당 40장, 후색, 증압품				
콘크리트전주	본	10m×190mm 350kg	17,000		22,000	
콘크리트벽돌	10개	210mm×100mm×60압축강도 40kg/cm ²	45	55		
흙	m	C.R관(보통용하수도관), 600mm×2.5m	7,750			
소석	포	15kg				
석면스레트	매	소판6면(73cm×182cm×0.65cm), 석면 15~20% 함유	328			
371~372. 제1차 금속 제조업						
선	℥	주물용 1호	30,000			
강	피	No. 1 (C 0.1~0.16% 함유)	38,500	36,556		
철	근	직경 9mm 0.559kg/m	42,300			
선	재	S.R. 6mm	51,000			
비	렛	S.S. 1~2호	54,000			
산	강	65×65×6mm 단위중량 5.91kg/m	50,500			
후	관	915×1830mm, 두께 9mm	67,000			
박	관	후박관 915×1,830mm(3'×6'), 두께 3.2mm 42.1kg/매	57,000	54,700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술	부산	대구	광주
주철	㎏	직경 8"	70,000	67,000		
장관	m	수도용 백관 25.4mm × 1.5mm	161	183		
아연도철관	매	# 31, 좌형 3 × 6자	298	315		
석도철관	㎏	20" × 28" 90lbs 1급품	10,700			
주철	"	F.C. 13~15				
품은	gr	99.85%	628.74			
전	"	99.97%	22.64			
연	㎏	99.9%	460,000			
아연	"	99.96%	133,004			
알미	"	99.9%	170,000			
합판	"	0.45m × 915 × 1820mm	280,000		370,000	
381. 금속 제품제조업						
석유	개	각형 5gal 들이		200		
드럼	개	아스팔트공드럼, 3' × 6' 200/들이 0.5mm 철판	1,100			
드럼	"	윤활유 공드럼 3' × 6' 200/들이 1.2mm 철판	3,400			
삼	"	증류품, 표준형, 둥근것		24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주
			서	부	산	구	
방열기	매	5c/650	600			650	
석유보일러	대	반사식, 발열량 3,500kcal/h 정도	9,800				
석유보일러	대	발열량 2,200~2,300kcal/h, 연료소비량 0.17~0.26l/h 탱크용량 4.5~3.5l	3,800				
알루미늄샷슈	kg	6063(AA Code)	600,000				
납	개	알미늄푸레스식기 직경 20cm	152			269	
스테인레스틸제식기	조	50piece 양식기 A급	1,100		1,100		
"	벌	대추발(추발, 대접), 두께 1.5mm					
외국	kg	2"~5"	65.09		72		
와이어로프	coil(=200m)	3호(6×19), 나선, 직경 12mm, Z꼬임 2중			21,600		
P. C. 강선	kg	7.0mm 단선	103,000		90,000		
흑철선	kg	#10(3.25mm) 15.62m/kg, 64.71kg/m	64		65		
용접봉	kg	E4301 3.2mm	100		105		
볼트 및 너트	조	볼트 직경 12mm 길이 200mm	28		75		
지퍼	10inch	5호알미늄 제품	18				
공업용보일러	대	382. 기계 제조업 수관식 증발량 5000kg/hr	7,600,000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출	부산	대구	광주
공업용 보일러	대	수판식 증발량 2000kg/hr	4,030,000			
발동기	"	중유용 16HP			10,000	10,000
인력발동기	"	2인용 축담식			95,000	61,000
동력발동기	"	5HP		4,000		
분무기	"	인력용 배부식 프라스틱제				
경운기	"	소요마력 8HP, 엔진달린 2륜(CT-85)				
선반	대	5축명형				
"	"	6축				430,000
프레스기	"	동력 프레스, 50Ton	400,000			
면직기	"	45"×2×1			160,000	
전직기	"	63"×1×1m(ALB)	383,500		360,000	
"	"	73" (북 2개) 제래식			320,000	
평면직기	"	32"	15,000			
"	"	30"				
정미기	대	반기 1호 소요마력 5HP		9,000	9,000	10,000
동력펌프	"	수두 20m 펌프구경 100mm 1분당 1ton	55,000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서출	부산	대구	광주
제	대	두부, 신형, 가정용 발블	8,400	9,632		
불	개	# 6205	215			
베	"	# 30304	440			
라	"	포금액, 스팀발브 1 1/2"	1,020	1,000		
발	"					
383.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						
변	대	주상용 15KVA, 단상	76,800			
압	"	10HP, 220V, 60cycles 4poles 반폐	60,000			
동	"	12", 속도조절장치 및 수신장치 달림	10,300			
봉	"	트랜지스터식, 7석, 스피커 2band, 다	2,485			
터	"	이나릭 5"				
오	"	19", 대형	89,700			
T. V. 수	"	<신제1호> 자동식, 흑색	7,600			
상	"	용량 140(120), 100w 자동온도 조절	95,700			
기	"	기달림				
장	m	단선 wo 2.0mm				
고	m	P.V.C. 피복 ow 2mm	25			
선	m	0.65 x 20P	233			
나	m	6.9KV 19/1.6 x 3C	1,849			
합						
성						
수						
지						
절						
연						
전						
선						
통						
신						
용						
케						
이						
불						
전						
력						
용						
케						
이						
불						

품목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주
			서	부	산	광	
형광등	개	일반가정용 100V 60W	28				
축전지	개	판구 FL 20W	150				
"	대	12V 50AH(2SM)	4,700				
"	대	12V 45AH(2HN)	4,000				
망강전선	개	1.5VCM	25				27
저산전력체	대	단상 2선식 100V 5A	2,580				
384.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선박용디젤기관	대	60HP 중속					
질강화물선	G/T	신조화물선	120,000				
목조어선	G/T	신조어선					
버선	대	디젤버스	3,000,000				
승용차	"	총배기량 1,500cc~1,600cc	1,300,000				
트럭	"	CARGO TRUCK 7.5~8ton	2,300,000				
삼륜화물차	"	4기통 총배기량 1985cc(T-2,000)	955,000				
자동차엔진	"	DA120	505,000				
모터사이클	"	배기량 50cc(CD-50)	145,000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가격 (원)			
			시울	부산	매구	광주
자전차	"	26" 실용차, 중급품	13,500			
390. 기 타 제 조 업						
안경	개	4mm 48~50 배리스 중급품			400	
치솔	대	접시지저저술, 팔달림 10kg, 편면 P.V.C 필립 두께 0.015mm 폭 45cm 길이 500Yds	1,500			
프라스틱제 필립	권	0.8mm x 91.4cm	1,916	250		
프라스틱제 레이저	m	수도용 내경 50mm 두께 3.5mm K.S 표시품	206	246		
프라스틱제 파이프	m	필기용 HB 흑심 고무달림, 중급품	600			
연필	그로스	연필형	2,080			
볼펜	"	2 1/2 inch 정정모	613.49	1,142.16		
정돈	lbs	합성섬유제 기계가발 4"~6" 4~5ozs	1,377			
가피	개	어프라이트형 88진, 높이 125cm 정도, 중량 220kg 정도	155,000		130,000	
피울레	대	6호[61진 쌍역(122Reed) 5octave]	31,100		30,000	
손패	"	12" Lp Stereo 판	5,000			
종이	매	남자용, 스테레오스틸제 케이스, 원형, 방수 21식 ADW	4,300			
종이	개	30일전 DW, 크기, 중 호마이카케스	616			
필	"	본당길이 84mm 원주 22.5mm 1,000본			616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 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촌 (寸)	척 (尺)	마 (碼)	리 (哩)
척 (尺)	1	0.00277	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 (町)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寸) (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척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哩)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 (匁)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 (兩)	돈 (兩)
돈 (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 (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斤)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램 (g)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兩) (성)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兩) (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용 적

	홉 (合)	승 (昇)	두 (斗)	석 (石)	입방미 (m³)	리 (ℓ)	개 룡 (英)	개 룡 (미)
홉 (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 (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 (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 (m³)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
리터 (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 룡 (英)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 룡 (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1972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2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계	4
5. 조사 시기	5
6. 조사 범위	5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8
8. 조사 단위	9
9. 조사 사항	10
10. 조사표 종류	10
11. 조사 방법	11
12. 집계 및 공표	11

II. 조사원의 임무

1. 조사 업무의 순서	15
2. 조사용품의 수령	15
3. 사전 조사	16
4. 실 사	17
5. 실사 일보	20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0
7. 기 타	21

III.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25
2. 항목별 기입요령	26

IV.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47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48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 가격표	67
-----------------------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85
------------------	----

부록 3. 조사표류	89
------------	----

I. 조 사 개 요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광공업통계조사는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생산활동을 파악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투자, 생산등의 제반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가. 공업화의 정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매년 파악하고

나.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시책의 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980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漏洩)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제 11조 :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규정, 제21조 : 벌칙 규정)

<통계법(초)>

제 2조(정의) 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조(신고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 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다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자.

제10조(비밀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조사 연혁(沿革)

광공업 센서스(지정통계 제 6호)

1 회	1955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년	한국 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년	"	"
6 회	1968년	"	"

광공업 통계조사(지정통계 제17호)

1 회	1957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년	"	"
4 회	1971년	"	"
5 회	1972년	"	"

4. 조사 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시장 및 도지사→지도원→조사원→대상 사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다. 조사원

조사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조사시기

가. 조사기준일 : 1972. 12. 31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2. 1. 1~1972. 12. 31까지 (1개년간)

다. 조사 실시시간 : 1972. 4. 1~4. 30일까지 (1개월간)

6. 조사의 범위(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에 해당하는 「광업 및 채석업」과 대분류「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 표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鑛),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鑛), 용해 및 건조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사업자가 하던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기타광물제품 제조업(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화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던, 집에서 행하여 지던 이를 가리지 않는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漁家)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 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5명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션, 전등 및 전선등으로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接客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接客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물 주로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위탁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위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수리업(修理業) 또는 써비스업과의 관계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서비스업(951)에 분
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 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
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
한다.

(바)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지역식당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
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것은 그 주된 산
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972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가. 1972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나. 1972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다. 1972년 12월 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1) 1972년 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2) 조업기간(操業期間)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 이었던 사업체.

(예 : 제빙업 사업체)

라.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더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인 사업체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군(軍)이 징역하는 사업체
- (2)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8. 조사 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 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

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 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과정, 종업원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데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9. 조사사항

가. 사업체 특징에 관한 사항. 마. 연초, 연말재고액.

나. 종업원수. 바. 연간완제품출하 및 연초연말 재고의 품목별 내역.

다. 급여액. 사. 연간 주요 생산비.

라.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아.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10. 조사표의 종류(調査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조사표(Ⅰ)………본사 이외의 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Ⅱ)………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2) 관하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

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한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직접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기입 할수 있다.

12. 집계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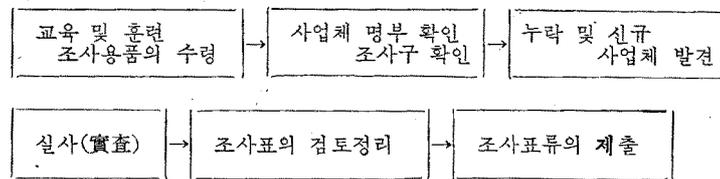
전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체표과정을 거쳐 I.B.M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II. 조사원의 임무

Ⅱ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탄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 가. 조사원증
- 나. 사업체 명부
- 다. 조사표류
 - (1) 조사표(Ⅰ)
 - (2) 조사표(Ⅱ)
- 라. 참고책자
 -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 마. 보조 인쇄물
 - (1) 실사일보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표 케이스

아. 기타

3. 사전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 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수 있도록 로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확인

강습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2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1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2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 사항을 사업체 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빠지지 않고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히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마) 담당 조사구내에 1973년에 신설사업체가 발견 될때도 명부 후단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3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4.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정중한 태도로써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證)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1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 하여 성의(誠意)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 사(實査)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 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나) 이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②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③ 창설년 ④ 조직형태 ⑤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⑥ 종업원수 ⑦ 급여액 ⑧ 품목별 출하및 연초, 연말재고액 ⑨ 연초, 연말재고액(품목별 내역 포함)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 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 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표(Ⅱ)는 관한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

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실사 일보(實查日報)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등 조사 활동 사항을 실사일보(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관할조사원으로부터 실사일보를 수집하여 문제조사구에 대해서는 지도지침에 의거 처리한후 실사진도와 함께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한다.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호번은 반드시 재확인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한다.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킨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4) 조사표는 실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1) 조사는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표 종류별로 사업체명부의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케이스 표지(表紙)에 기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 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 명부)와 함께 실사 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완료하여 시, 도 단위로 조사완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다. 조사도중에 미흡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바. 배부하고 남은 협조의뢰공문이나 조사원증은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 기입요령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 완료후 심사, 분류, 집계등 여러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블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깨끗히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 5입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상에 ※는 조사원이 기입하고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그으며(/)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적색으로 (=)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단위는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Ⅰ)의 항목(項目)별 기입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 ××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동 가
 시 대전(시) 은행 (동) 136번지 의 16호(통 반)
충청남(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 사(본점) 명 및 소재지**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右段)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한 사업체가 없이 직접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
(創設年)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 월 일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조직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 내에 ○ 포함다.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나) 1972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6) 주요 생산품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가) 주요 생산품명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가) 1972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

있던 생산품.

(나)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
적에 관계없이 1972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
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
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 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
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
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마) 조사표(I)11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항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
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기입 한다.

예: (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鑛)까지 일관작업을 하
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澱粉)→당화→발효→농축→산분해(酸分解)→
여과→농축→염산염(鹽酸鹽)→탈색→결정→구루타
민산소다」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침전→
전분→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침가물배합→여과→원액저장
→원액주입→탄산수주입→타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原綿)→면조(綿條: sliver)→정방(精紡)→단
사(單糸)→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면사(綿
糸)」

⑤ 면직물(면포)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整經)→호부(糊付)→직조→정리→면직
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초지(와이
어에 의한 초지)→건조→완성→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선별→분쇄→약물배합→탈유(脫硫)→재생
→포장→재생고무」

⑧ 리사지<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항색 산화연> 연분식(鉛粉式)

「납→용융→성형→연분→산화→분쇄→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배합→성형→소성(燒成)→벽돌」

7) 종업원수 (從業員數)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료(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 생산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자와 자가 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 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등은 여기에서 제외

한다.

광업의 경우 : 채광, 굴진(掘進), 갱내 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
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
(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
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 사
무등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 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 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
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
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등을 말하며 법인체
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등은 여기에 포함
한다.

나)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
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
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
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 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다)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 기입하고 12월말 피고용자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만은 남, 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연간급여액
(年間給與額)**

가) 1972년 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2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拂)된 것을 1972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2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拂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9)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2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출하액,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2년간에 일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

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2년 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증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않고 그대로 판매(轉賣)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驛渡)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 란에 기입한다.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기입한다

나) 폐품판매액(廢品 販賣額)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 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 완제품출하액에 계상한다.

10) 연초, 연말
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2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2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 및 연료」

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Ⅱ 참조)
-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에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11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11)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9-(가)」완제품 출하액과 「10-(가)-(1), (2)」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9-(가)」와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0-(가)-(1), (2)」와 각각 일치한다.
 -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

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2) 연간 주요 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2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2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2) 동일 기업체의 타사업체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기입한다.
- (3)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 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련 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1) 1972년 간에 가열로(加熱爐)(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 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購入電力費)

(1) 1972년 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2년 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서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12항(나)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 용수비(購入用水費)

1972년 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

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위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轉賣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 됨으로서 회계상 유형 고정자산계정에 처리 되어야 할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3항 유형고정 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3항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그러나 경비계정에 처리되는 것은 수리 및 유지비에 포함한다.

**13) 유형 고정
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가)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垡地), 사택대지(社宅垡地)운 동장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 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등을 말한다.

(3)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爐), 가열로(加熱爐), 용광로(熔礦爐),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傳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 년수 1년이상이고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2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 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 비용을 말한다.

(2) 증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증고자산 취득액을 말한다.

(3) 평가(評價)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 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성하였을때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2년간에 매각(賣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1) 평가 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나. 조사표(Ⅱ)의 항목별 기입요령

1) 일반 사항

가)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 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나) 산하 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한다. (기타사항은(Ⅰ)표로 조사하여야 함)

다)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별도 기입요령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조사표(Ⅰ)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항목 1, 2, 3, 4는 조사표(Ⅰ)의 기입요령을 참조한다.

나) 종업원수란(5항)은 본사의 피고용자 즉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

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다) 연간급여액은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2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봉급, 임금, 수당 및 상여금과 그미불금도 포함한다.

라)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7항)은 본사계정(計定)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마)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액(8항)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72년 취득설치 및 증축, 개축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과 매각, 양도, 재해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감소액을 기입한다.

그러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 개축등의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기록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바) 관할사업체 명부(9항)란은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체에 소속된 산하(傘下) 사업체 가운데 광업, 제조업 사업체만을 기입한다.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3) 산하사업체와 본사와 같이 있는 경우는 조사표(Ⅱ)는 조사하지 않는다

사) 비고란은 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실적동향, 사업체의 유고사항등을 기록한다.

Ⅳ. 조사표 검토 정리 요령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회된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5)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6) 주생산품명이 “완제품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칭 일치 하는가를 검토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8)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9)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10)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 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

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토한다.

- 12)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3)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4)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5) (가) 「연간 주요 생산 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검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급여액 총계는(연말재고액 합계-연초재고액합계+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6)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연간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8) 품목별 출하액 합계는 9항의 (가)금액과 일치하며 품목별연초, 연말재고액도 10항의 (가)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19)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사항

-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 하여야 한다.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 사업체는 실사일보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연,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 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광 업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연탄(354010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소분류 230(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조사항목 11(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에는 광석의 품목명을 기재한후 괄호하여 품위를 기입한다. 품위는 해당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도 순도 또는 함유량을 괄호안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취수연은 모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소분류 290(비금속 광업)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대리석 및 돌조각품)에 분류한다.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관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 되어야 한다.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두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띄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

1) 소분류 311~312(식료품 제조업)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can) 또는 상자(C/S)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품목란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 (19-㉓)(다)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벼, 보리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각종 가루 부산물)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씨는 3122001에 분류한다.

라) 빠다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함시키지 말고 3121299(기타의 장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31213)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 산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에, 들친은 3511915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봉지”로 조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엿의 단위는 kg이다. 물엿 역시 kg으로 환산조사 한다.

2) 소분류 313(음료품 제조업)

가) 알콜 1%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이하 함

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이 사업체에서 이종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잡하여 조사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l임으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l로 환산하여야 한다.

1되=1.8l 1l=0.556되

마) 환타, 오란 C등의 청량음료는 주우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산량
3131201	소 주	25°	l	200
3131201		30°	l	300
3131201 0		25°~30°	l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의 통일명칭

섬 유 의 종 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저마)	마	Linen & Ramie

섬유 의 종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銅)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테이트 섬유	아세테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V.A.
폴리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V.C
폴리염화비니리덴계 섬유	염화 비니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로나이트릴계 섬유	아크릴	Polyacryl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폴리청화 비니리덴계 섬유	청화 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비고 : 기타 섬유 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
되 동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 한다(합
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테이
트, 면, 비스코스순(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 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를 우

선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물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호칭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물일 때 견을 택한다.

(나) 견이 30% 미만인 경우에 견과 이종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다) 견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물일 때에는 견을 택한다.

(4)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물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다) 면사 생산업체

경성방직 (영등포)	동일방직 (인천, 천안)
전남방직 (광주)	삼호방직 (대구, 대전)
금성방직 (안양)	홍한방직 (인천)
내외방직 (대구)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안)	태평방직 (안양, 청주)
풍한산업 (대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등포)	삼화방직 (부산)

라) 항목별 유의사항

- (1) 면혼방사는 면사에 포함한다.
- (2) 화학섬유 방직사는(32164-01, -02, -03, -04, -05, -06)알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정을 완료한 사(絲)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각종 화학섬유(35133)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²입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4) 각종 세폭직물(3217501)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미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 (5) 표백, 염색 및 정리업(32180)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등의 표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훌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9520에 분류).
- (6) 갈포벽지는 지정단위가 m²인데 사업체에서 1Roll로 응답하면 1Roll=6.6885m²으로 환산한다.

4) 소분류 322(의복제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편직업)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9520에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메리야스제 내의 편조업 : 32133

편직물 장갑 제조업 : 32132

고 무 장갑 제조업 : 35593

메 리 야 스 제 모 자 : 32134

5) 소분류 323(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
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평” 또는 “매”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² 임으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
다.

※ 단위환산법(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
르다).

$$1 \text{ 평} = 0.093\text{m}^2$$

$$1 \text{ 매} = 3.7\text{m}^2(40\text{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
서 자(尺)나 m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
하여 m/ply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플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제조업)

가) 플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제재, 톨크 및 나무제조업)

가) 판재라하면 넓이가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목재를 말하며 각재란
넓이가 두께의 3배 미만의 것을 말한다.

나) 각재와 판재는 m³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text{m}^3 = 303\text{才}$$

다) 합판 및 하드 보드도 m³로 환산기록 하여야 한다.

$$\text{합판의 경우} : 1\text{매} = 0.013\text{m}^3$$

$$\text{하드 보드} : 1\text{매} = 0.019\text{m}^3$$

8) 소분류 332(가구 및 건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금속가구 및 건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칠기제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341(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편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편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는 골판지원지(3411302)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때는 골판지(3411303)에 분류한다.

다) 갈포벽지는 섬유제조업(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341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 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인쇄비 등)를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수수료만을 수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 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출판하였을 때는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 항)인쇄소에서 이종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11) 소분류 351(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품목명을 기재한 후 팔호하여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도는 황산 (98%, 35%, 40%)등이 있는데 98%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염산 (35%, 100%)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기재하고 가성소다는 40%, 46%, 97%, 100%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기입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함으로 분류에 특히 주의할 요한다.

다) 압축산소는 m^3 으로 조사하고 사업체에서 본(本)으로 응답하면 1본이 $7m^3$ 이니 환산토록하고 아세치렌가스도 kg이니 본 또는 m^3 은 반드시 kg으로 환산 기입한다.

라) 합성그리세린 (3511914)과 그리세린[유지 분해 부산물 (3523306)]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 (3523306)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그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소비료 (3512104)와 석회질비료 (3512301)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석회질비료는 소석회 (3692201)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 보다 더 굵은 가루입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 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로 조사한다.

사) 각종 수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 (35131)에 속하는데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아) 화학섬유 (35133 : 세트로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와 화학섬유 방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참조)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351807) ($Al_2 SO_4$)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3511101)를 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3511102)과 가성소다(3511108)는 동일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료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 (35292)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 (35293)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3) 소분류 354(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 19공탄 220개 = 1%

31 공탄 180개 = 1%

49 공탄 80개 = 1%

14) 소분류 355(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동화에 포함한다.

나) 털신(고무신안에 털을 넣은 것)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ply 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 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라)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임으로 “권”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m

15) 소분류 356(기타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프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 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 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32129)에 직물제품 외에 프라스틱제를 포함 한다.

예 : 시트(프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에 가죽제품 외에 프라스틱제를 포함한다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32339)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지갑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39098)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39099)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고압애자 (3,300V 이상)와 저압애자 (3,300V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콘크리트 브릭에서 보도용브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소성품)에 휘장연와(오지벽돌)를 포함한다.

17) 소분류 371(제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製銑)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381)에 분류한다.

나) 품목구분

(1) 강반성품 : 강괴는 크고 무거울기 때문에 직접 조강(條鋼)이나 강판(鋼板)등의 강제품(鋼材製品)을 만들기 어려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눈것이다. 강편(鋼片)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 두께 3.2~6mm 의 강판

박판 : 두께 3.2mm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판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제 1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37203)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제품 제조업[프레스 가공 제품 제조업(38192)]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웁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루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이다.

17) 소분류 381 (금속제품 제조업)

가) 석유스토브에 석유콘로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구분조사한다.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임으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다) 농업용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목제농업용수공구는 제외한다.

20) 소분류 382(기계제조업)

가) 보일러는 공업용보일러(3821101)와 건물용보일러(3813003)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3821105)에 포함 조사한다.

다) 탈곡기는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활판인쇄기(3824906) 음쇄인쇄기(3824907)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

여야 한다.

마)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 (수리관계용)를 포함하여 조사 한다.

바)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두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피스틴(389906) 및 피스틴링 (3829911)과 자동차용 피스틴 (384305) 및 자동차용 피스틴링(3843222)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할것.

아) 기계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21) 소분류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 (3831901 단위 : KVA)와 저압축전기(3831902, 단위 : μF)로 구분 조사하고 가변축전기 (3831909), 통신용 축전기 (3832901)(콘덴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것.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필라멘트 전구)로서 10w, 20w, 30w, 100w, 150w, 200w등을 포함 한다.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건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 (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 (38412 . 38413)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G/T임으로 “척”등으로 조사된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더는 기차용(3842210)과 자동차용(3843221)으로 구분조사 한다.

라)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기입한다.

23) 소분류 390(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자루=1타

12타=1 그로스=144자루

나) 킬타는 “상자”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단위 kg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다) 시계조사는 손목시계, 께종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전기시계로 구분 조사한다.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 가격표

〈1972년 평균〉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 가격 일람표

(1972년 평균 가격)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210. 석탄 광업			
무 연 탄	석탄, 3급탄, 분탄, 6,300~5,600cal ^{민영}	%	3,299
무 연 피 탄	석공 1급탄, 5,900~6,200cal	"	5,249
조 개 탄	5,700cal이상	"	6,359
230. 금속 광업			
철 광 석	56%	%	3,200
동 광 석	동 6%	"	21,981
연 광 석	동 50%	"	44,201
290. 비금속 광업			
고 령 토	SK#34 분홍색	%	2,500
"	SK#35 백색	%	3,700
규 사	23목(目)이하	"	3,000
311~312. 식료품 제조업			
소 세 이 지	포크 소세이지, 개당100g	kg	767
분 유	국산조제분유, 판(缶)당 450g	"	800
콩 처 튕 조 립	4호판(425g), 상자당 48개 (20.4kg)	"	180
생 선 목	개당 150g	개	85
참 기 림	상품, 용기대제외	l	1,061
채 종 류	상품, 용기대제외	"	257
미 강 유	식품, 용기대제외	"	207
아 마 인 유		"	193
마 아 가 린	450g포장	kg	203
쇼 트 닝	제과용, 상자당 4.5kg	"	229
소 맥 분	중력분, 2등급, 제분율 77%	대 (22kg)	1,005 1,120
식 빵	상품, 개당 450g~550g, 비닐포장	kg	96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카스 테 라	비닐포장, 개당55~56g 생산자배달	kg	288
"	비닐포장, 개당 80~87g 생산자배달	"	195
비 스 켈	개당 470g, 상자당 20개, 생산자배달	"	} 370
"	개당 28.8g, 상자당 300개, 생산자배달	"	
국 수	순소맥분, 375g, 비닐포장	"	55
당 면	상품	"	131
라 면	개당120g, 상자당 50개	"	153
설 탕	정백당, 당도 99.9%이상,	"	152
엿	특급, 통당 24kg들이, 용기대포함	"	98
식용포도당	고형(固形), 당도 70%	"	121
카 라 멜	갑당 640g 상자당 15갑, 생산자배달	"	} 616
"	갑당 17.5g 상자당 300갑 생산자배달	"	
드롭프스	봉당 1,000g, 상자당 8봉, 생산자배달	"	} 400
"	봉당 91g, 상자당 120봉, 생산자배달	"	
껌	갑당 260g, 상자당 60갑, 생산자배달	"	} 514
"	갑당 274g, 상자당 40갑 "	"	
인 조 빙	식용, 개당 300lb	%	2,790
원 장	상품, 비닐포장	kg	84
고 추 장	상품, 비닐포장	"	160
사 카 린	순도 98%이상	"	1,183
전 분	고구마전분, 상품	"	76
두 부	목판당 약 1.8kg	"	67
정 제 염	상품, 염도 85~90%	"	26
이 스투	건(乾)이스트, 판당 100g, 상자당 200개	"	1,420

313. 음료품 제조업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주 정 소	주정분 94%, 용기대제외, 생산자배달 30도, 병당 640ml, 상자당 24병, 생산자배달	l	191
고 량 주	병당 250cc, 상자당 40 병 "	"	558
포 도 주	병당 640ml, 상자당 24병 "	"	141
맥 주	4도, 양주 640ml, 상자당 24병 "	"	292
탁 주	약 6도, 상품 생산자배달	"	20
약 주	약 11도, 상품, 생산자배달	"	57
청 주	특급청주, 1.8l 상자당 10병, 생산자배달	"	371
누 록	상품	kg	88
맥 아	순맥	"	98
사 이 다	병당 340ml, 상자당 24병, 용기대포함 생산자배달	l	131
콜 라	병당 236ml, 상자당 24병, 용기대포함	"	165
주 스	병당 190ml, 상자당 24병, 용기대포함	"	218
분 말 커 피	가정용, 개당 450g 상자당 24개	kg	1,225
홍 차	봉지당 1.4g, 상자당 2,700봉지	"	2,262
321. 섬유 제조업			
시 트 카 바	Bed seat cover, 면 23수, 245cm×170cm 생산자배달	매	1,350
면 양 말	갑중면사60수, 100%, 420g, 생산자배달	족	100
화 섬 사 양 말	여름용, 혼방, nylon 60%, 면(30수)40%, 420g 생산자배달	"	83
"	겨울용 혼방, nylon 50%, 모 50%, 540g, 생산자배달	"	105
스 타 킹	여자용, nylon 20denier 50%, 40denier 50%, 10filament, 생산자배달	"	110
면 장 갑	면사 16수, 130돈(488g), 생산자배달	조	32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메 리 야 스 동(冬)내의	면사 30수, 유색 180톤(675g), 생산자배달	매	840
메 리 야 스 하(夏)내의	면사 30수, 남자용 T셔츠, 백색 310톤 (1,163g) 생산자배달	"	171
마닐라로프	아바카, 어망용, 6/10"(18mm) 생산자배달	kg	209
어 망	Nylon 210denier, 24 filament, 50(目)× 500(feet), 명태용, 생산자배달	필	1,231
소 모 사	18수 4합, 염색수편사(手編糸)	kg	3,480
아 마 사	14수, 생산자배달	"	1,013
나 이 론 사	70denier, 34filament	"	905
아 크 릴 사	76수 2합, 백사(白糸)	"	1,176
포리에스터사	75denier, 백사	"	1,209
생 ' 사	21중, B격(格)	"	7,992
면 봉 사	면 60수 3합, 공장용, 생산자배달	권(卷)	216
면 봉 사	면 38수 2합, 가정용, 생산자배달	권(卷)	178
용	면사, 20수×10수, 밀도 40×42, 36"×30m 생산자배달	m ²	124
골 덴	면사, 12수×16수, 밀도 32×134, 36"× 30m생산자배달	"	246
면 북 지	면사 20수, 36"×30마, 생산자배달	"	260
면 혼방직물	면35%, 포리에스터 65%, 36"×30yd, 생 산자배달	"	248
견 혼방직물	silk 50%, viscose75denier 50%, 생산자 배달	필(40yd)	40,000
세 폭 직 물	면테이프 50mm×25m 생산자배달	롤(Roll)	350
포리에스터 직	포리에스터 75denier, 밀도100×150, 60"× 30마, 마당 280g	m ²	718
카 시 미 직	양장지, 동(冬), 60"×30마, 생산자배달	m ²	933
"	양장지, 하(夏), 60"×30마, 생산자배달	"	789
용 단	대폭(大幅), 기계, 생산자배달	평(坪)	20,60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가 제	면사 36수, 16"×30yd, 생산자배달	필(30yd)	1,012
322. 의복제조업			
와 이 사 쓰	백색, 면 35%, 포리에스터 65%, 긴팔, 생산자배달	매	872
남 방 사 쓰	성인용 15 $\frac{1}{2}$ ", 모시 35%, 포리에스터 65% 생산자배달	"	1,325
잠 바	성인용, 포리에스터 100%	"	3,100
여 자 용 부 라 스 우	TC210, 면 35%, 포리에스터 65%, 긴팔 생산자배달	"	850
넥 타 이	silk 100%, 52"×3.5" 생산자배달	"	542
"	테트론 100%, 52"×3.5", 생산자배달	"	308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가죽제품 제조업			
렌 드 백	합성인조피(에나멜제), 중품	개	3,587
트 링 크	비닐레자제, 대형	"	4,000
324. 가죽신 제조업			
남 자 용 가 죽 신	복수(천연우피)	족	3,533
여 자 용 가 죽 신	합성인조피(에나멜)	"	3,330
331. 제재, 톨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육 송 각 재	9자	m ³	22,916
육 송 판 재	6자×5치×5푼	"	23,334
미 송 각 재	12자이내	"	27,312
미 송 판 재	12자이내	"	31,503
나 왕 각 재	만각(挽角)	"	29,600
나 왕 판 재	7푼~8푼	"	38,466
소 할 재 나 왕	7~9자, 1치5푼각(角)	"	29,067
후 로 링 나 왕	9자×3.5치×6푼	"	32,763
합 판	요소합판, 1푼×3자×6자, 3ply	"	51,852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341.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모 조 지	70g/m ² , 4×6판, BSP 70%, GP30%, 유광(有光)	연(連)	4,038
신문 용 지	SKP30%, GP70%, 4×6판	%	83,833
크라프트지	양면, 폭 35"~45", roll형 (80~100g/m ²)	%	92,000
선 화 지	백색, 4×6판, 지설 100%	연(500)	1,094
유선하드용지	크라프트 펄프 80%, 지설 20%	연(500)	2,300
박 엽 지	연당 6.8kg, 4×6판, BKP 100%	%	189,559
권 련 지	2급지, 27.5mm×5,000mm	롤(Roll)	1,167
판 지	마니라판지, 4×6판, 300g/m ² , 생산자배달	연(500)	12,318
골판지원지	파강(破强) 2.3, 240g/m ² , 생산자배달	%	62,194
크라프트지대	시멘트용, 4합, 27.5"×16.5"×3", 생산자배달	매	29
벽 지	필벽지(泥壁紙), 하품, 필당 1.75자×15자 생산자배달	m ²	15
은 박 지	알미늄박지(박엽지 붙은것), 665mm×508mm	연	6,500
등사원지	상품, 백색, 기계용, 갑당 100장	갑	1,072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황 산	공업용, 98%, Be' 용기제의 도착역도	kg	9
염 산	공업용 35%, 용기제의 도착역도	"	10
암 모 니 아	공업용 99.8%	"	40
소 오 다 회	중회 99.8%	"	32
산 소	99.8%, 용기제의, 통당 6,450l 주입	통	528
아 세 칠 렌 스	아세칠렌 99.8%	kg	323
메 타 놀	공업용, 98%이상	"	40
무수푸탈산	순도 99.8%	"	155
직 접 염 료	흑색, 상품	kg	99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산성염료	10B, 흑색, 상품	kg	1,000
염기성염료	Metyle violet	"	1,275
형광염료	2B, conc, 백색, 상품	"	764
레이크안료	적색, Toluidin, 상품	"	1,600
아연화	특급, 99.5%	"	181
카바이트	No.2, 난괴, 가스발생 220l/kg, 1급품	"	34
탄산칼슘	96%, 경탄	"	24
규산소오다	3호, 용기제외	드람	4,336
가 소 제	D.O.P.	kg	197,326
카시미론수	카시미론화이바 100%, 생산자배달	"	531
포리스치렌수	G.P. grade, 생산자배달	"	145
포리에치렌수	필름용	"	167
포리푸로피렌수	Fiber grade (virgin), filament 용	"	255
포리푸로피렌수	Blowing extrusion or film	"	260
P.V.C.추지	Uncompounded, #800, 생산자배달	"	134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수성페인트	백색, 외부용 A급	l	338
바 니 스	페놀수지, 비휘발분 70%, 중품	"	239
에 나 멜	백색, 광택, 외부용, 중품	"	395
락 카	백색, A급	kg	527
화장비누	순비누분 85-90%	개	35
"	순비누분 98%	"	105
세탁비누	KS표시품, 2호, 백색	"	33
세탁용분말비		kg	50
합성세제	갑당 500g, 가정용, 분말	"	148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향 료	액체 5cc	갑(500g)	700
그 리 세 린	94%, 정제	kg	283
화 장 수	120cc 여자용	병	350
화 장 크림	90g용기, 플라스틱 12개입	타	4,800
화 장 백분	화운데이션 30g	개	145
포 마 드	개당 60g, 12개입	kg	3,000
치 약	보통치약, 50g, 튜우브입	"	750
아 교	상품	"	278
다이 나 마 이 트	니트로그리세린 26~40%	상 자 (22.5kg)	5,730
뇌 판	전기뇌판	3m	44
초 안 폭 약	니트로 화합물 7%, 니트로그리세린 5%	상 자 (22.5kg)	4,300
도 화 선	제2중 도화선	m	16
성 양	대형, 갑당 400~450개비, 상자당 200갑	상 자	2,307
활 성 탄 소	탄소 70%, 수분 30%	kg	170
인 화 지	밀착지(密着紙) 상품, 4.5"×6"	타	130
인쇄용잉크	흑색, 활판인쇄용, 중품	kg	268
양 초	12시간용, 개당약 65g, 상자당 336개	"	299
353. 석유 정제업			
부 탄	특수가공연료용, 용기제외	l	18
프 로 판	가정용, 용기제외	"	22
나 프 사	원료용, 도착역인도	l	7
휘 발 유	고급, 옥탄가 95이상, 용기제외	"	46
"	보통, 옥탄가 86~94, 용기제외	"	39
젯 트 유	JetA-1, 용기제외	"	11
등 유	가정용, KSM2613, 용기제외	"	22
용 제	솔벤트, 250F, 도착역인도	"	23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경 유	디젤엔진용, KSM2610, 용기제외	l	18
중 유	연료용, 용기제외	"	11
방 카 C 유	연료용, 용기제외	"	7
방 카 A 유	선박용, 용기제외	"	12
윤 활 유	공업용, harmony, 도착역인도	"	98
구 리 스	기계용, Crown grease #2, 도착역인도	%	318,868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연 탄	5,000cal기준, 톤당 242개,	%	4,743
아스팔트	AP ³ , 용기제외 도착역인도	l	9
루 핑 지	12평/20kg, 매당 91cm×44cm, 시판용, 생산자배달	m ²	1,286
355. 고무제품 제조업			
자 전 거 타	13/8"×26", 2ply, 상품,	본	835
자 전 거 타 우 브	13/8"×26", 상품	"	266
고 무 신	남자용, 백색, 240mm이상, 상품	족	121
고 무 신	여자용, 백색 210mm이상, 상품	"	106
운 동 화	남자용, 흑색, 240mm이상, 상품	"	153
우 화	남자용, 장화, 흑색, 240mm이상, 상품	"	348
평 형 고 무 벨트	KS-2종	ply	12
V형고무벨트	A형, KS표시품	ply ¹	3
콘베어벨트	KS-2종	"	8
고무호오스	용수용, 5/8"×1ply	m	44
재 생 고 무	흑색, 상품, 일반고무재생	%	35,556
고무스폰지	두께 2inch	평 (918cm ²)	16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356. 기타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비닐레터	0.2mm×91.4cm, 일반레터	m ²	228
아크릴판	두께 3mm, 109cm×133cm(3.6자×4.4자)	〃	1,596
프라스틱 스폰지	10mm×1자×1자	평	11
포리에틸렌 필	0.03mm×90cm×91m, PE필립, 농업용,	m ²	12
〃	0.03mm×10cm×457m, PE필립 포장용	〃	13
프라스틱 호	16mm×19mm×50cm, 생산자배달	m	2,600
프라스틱 기	Bucket, 15ℓ들이, 생산자배달	개	230
프라스틱 샌	「소프트」, 여자용	컬레	110
프라스틱 낙시대	2.5간(間)	개	2,791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정용 도자기 제품	커피셀트(6개입), 전자지사용품, 생산자 배달	조	867
애자	고압핀애자, 6.9KV용, 생산자배달	개	300
토기항아리	중품	자리	672
변기	수세식, 소형소변기, 생산자배달	개	1,650
369. 기타 광물 제품 제조업			
적벽돌	1등급	매	10
기와(소성품)	1등급	〃	24
타일	백색, 내장품, 활강, 108mm×108mm(3.6 각), 평당260장	m ²	600
내화벽돌	SK #34, 보통형, 생산자창고인도	개	53
〃	SK #32, 보통형, 생산자창고인도	〃	43
레미콘	자갈 467, 시멘트 320kg, W/C 56.3%, 생산자배달(10km이내)	m ³	5,476
콘크리트전주	9m×170mm, 설계하중 300kg, 적재비포함	본	14,65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흡 관	하수관, 직경 600mm×길이 2.5m, KS표시 품, 적제비포함	본	9,351
콘크리트 벽	5치×3.5치×2치, 강도 40kg	매	3
콘크리트 보	8", 강도 60kg	"	46
콘크리트 보	6", 강도 60kg	"	32
콘크리트 와 기	흑색	"	17
콘크리트관	직경 5치, 5치×2자	본	107
석면스레트	골판스레트, 백색, 6mm×72.7cm×213cm (장) 소골 7척	m ²	281
"	망형스레트, 백색, 40cm×40cm×48mm(장) 생산자배달	m ²	307
371. 제1차 철강 제조업			
선 철	주물용 1호	%	30,000
강 피	일반구조용	"	38,833
강 관	직경 900mm, 두께 9mm, 6m(상수도)	개	186,142
"	직경 25mm, 아연도백관(상수도)	m	250
봉 강	19mm	%	43,903
"	12mm	"	43,903
"	9mm	"	43,903
형 강	65×65×6mm (중형)	"	49,958
"	50×50×6mm (중형)	"	50,833
와이어로드	6mm, 수입비렐제품	"	50,000
중 판	3.2mm, 3'×6'	%	55,778
박 판	0.45mm, 3'×6'	"	79,516
"	0.23mm, 3'×6'	"	88,736
대 강	0.9mm, 폭 3'	"	76,914
주 철 관	상수도관, 100mm×4,000mm	"	65,00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주 칠 관	배수관, 4"×5'	개	1,697
주 칠 물	기계용 주물	ㄲ	71,200
"	일반주물	"	71,200
아연도철판	#31, 파형(波型)	장	335
주석도철판	508mm×710mm(708g), 0.25mm H.D. (Hot dip timplate)	ㄲ	168,898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	99.98% 이상.	g	846
은	99.98%	"	28
전 기 동	99.96%이상	kg	559
연 피	99.95%이상	"	157
알 미 늄 피	99.81%이상	"	283
동 판	98~99%(전기동), 1mm×1.5'×6'	"	699
알 미 늄 판	3'×6', 0.45mm	kg	1,112
"	2'×6', 1.0mm	"	406
381.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면 도 날	양면 면도날, 고탄소강	개	5
출	철공용, 평형, 12", 상(거칠)중	"	151
삽	환삽, 1.6mm	"	208
꼭 팽 이	손잡이 불포함	"	300
낫	개량낫	"	105
자 물 쇠	아연정, 40mm	"	700
철제 책상	편수책상, 3.5'×2.5'×2.5', 알미늄테	"	12,360
철제 의자	소회전의자	"	3,993
서류보관함	2.8'×5.9'×1.2', 철판(0.7mm)	"	7,500
샷 터	스프링 샷터(반자동), 설치비포함	평 (1'×1')	523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알미늄샷취	샷취 Bar, 70mm	kg	600
통 조 립 관	4호관(425cc), 백관(인쇄안될것)	개	23
석 유 통	백관, 18l	개	201
드 럼 통	윤활유통, 200l	"	4,050
알미늄납비	14cm, 황색	"	1,573
알미늄식기	주발(12.8cm) 및 대접 (16.5cm)	벌	165
병 마 개	콜라병마개, 생산자배달	개	1.18
스텐레스식기	두께 1.5mm(SUS-27), 주발, 대접, 뚜껑	벌	325
P. C. 강선	7.0mm	kg	122
나 동 선	2m×7(22square)	"	799
못	No.12, 2"	"	78
용 접 봉	4mm	kg	111
와이어로프	12mm, 6가닥×24가닥×200m, 생산자배달	환 (Roll)	28,000
"	16mm, 6가닥×24가닥×200mm,	"	45,000
바 늘	횡기침(횡침), 12gauge	개	4.50
금속관이음쇠	강관이음쇠, elbow32mm	"	132
작크(지퍼)	브라스(Brass)제, 4호, 10inch	"	24.32
석유스토우브	난방면적 2~5평	"	11,220
연탄 난로	주물제 (22공탄용)	"	975
방 열 기	5C, 650mm(높이), KSN0. 217 및 374	족	1,050
382. 기계 제조업			
중유발동기	8HP, 700rpm 2200	대	153,000 217,220
보 일 러	수관식, 증발량 5,00kg/h 상용압력 10kg/cm ² , 생산자배달	대	7,980,000
동력탈목기	선일식	대	23,000
"	해륙식	"	93,056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경 운 기	8HP, rpm2, 200, 디젤엔진	대	353, 707
경 운 기	8HP, rpm2,000, 등유엔진	대	404, 251
선 반	고속정밀선반 6자, motor부	"	620, 417
형 식 반	710mm(ram의 최대행로), 650×500×450mm(테이블크기), motor제외	"	645, 833
보 오 링 반	19mm(천공능력) 3/4HP, motor부	"	112, 202
"	13mm("), 1/4HP, motor부	"	36, 500
프 레 스 기	파워프레스기, 50T	"	381, 806
연 사 기	100g용, 200추, motor부, 2h.p., 견직용,	"	380, 000
면 직 기	54", 1×1, motor부, 1h.p.	"	265, 000
견 직 기	63", 2×1, motor부, 1h.p.	"	385, 000
정 미 기	본기(本機)1호, 소요마력 5h.p.	"	9, 861
제 분 기	원기(原機), 소요마력 5h.p.	"	18, 417
사출성형기	용량 3온스, 사출장치: 부란자, 금형제결 장치: 토글(toggle)식, 작동 장치: 완전자동	"	850, 000
복 사 기	전자복사기	"	480, 000
인쇄용기기	활판인쇄기, 체인식, 4×6판전지, 5h.p. 대형	"	2, 300, 000
인쇄용기기	활판인쇄기, 체인식, 4×6판전지, 5h.p. 소형	"	160, 000
송 풍 기	터보후엔, 4SS형, 풍량 235m ³ /min, 풍정 압(風靜壓) 50mm/Ag	"	111, 250
"	다이후엔, #4 풍량 190m ³ /min, 풍정압 50mm/Ag	"	150, 000
공기압축기	횡형단기통수냉식, 30h,p 공기탱크 및 motor 제외	"	402, 222
발 브	B C gate valve 1/2"	개	442
"	C.I sluice valve 4", 주철 10kg/cm ²	"	4, 900

383. 전기기기 제조업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전 동 기	10HP, 220V, 60싸이클, 1800rpm 4극, 반폐형	HP	6,375
용 접 기	20KVA, 10kw, 240A, 교류용	"	57,500
정 류 기	0.50volt, 200A, 완전자동	"	400,000
변 성 기	1FT 10mm A,B,C, 발전코일, 라디오용,	조(4개)	170
저 항 기	탄소체, 고정저항기 $\frac{1}{4}W$	개	4
"	가변저항기, 직경 24φ, 스위치 없는것	"	80
레 코드판	LP형, A급가수, 국내취입, stereo	매	480
전 기 콘로	4각형, 600W, 표면도금, 열조절용 스위치부	개	1,000
선 풍 기	12", 40W, 속도조절장치, 수진장치 및 시간조절 장치부	대	11,686
냉 장 고	GB-161, 용량 160L, 95W	"	147,459
합성수지절연선	2mm, I.V. indoor vynil insulated	m	29
"	2mm×7(22square)	"	212
전력케이블	600V.E.V, 38square, 3chore	"	1,200
통신케이블	알미늄차폐, 0.65mm, 50p	"	700
필라멘트구	백열 100V, 30W~60W	개	37
형광등관구	FL-20D, K.S. 표시품	개	190
연 축 전 지	승용차용, 2HN 45AH 12V	대	5,503
극 판	축전지용, H극판 2mm	개	49
소 켓 트	Key 소켓트, 6A	"	45
스 윗 치	3P, 60A, 카바스윗치, 250V	"	600
384. 수송용기기 제조업			
선 박 용 소 옥 기 판	어선용, 10h.p.	대	180,000
버 스	시내버스용, 국산	대	3,840,000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트 릭	화물차, 적재적량 6톤(6ton-cargo)	"	2,688,000
"	화물차, 적재적량 7.5톤 (D-750)	"	2,890,000
삼 륜 차	T2000, 81마력, 12S, 적재량 2,000kg	"	1,060,000
자동차피스톤	코로나 78mm STD	조	3,800
"	이스즈 DA-120 100mm	"	7,200
"	도요다 2-D 105mm	"	8,250
자동차기어	Pinion and ring matched gear set GMC용	개	3,250
자동차스프링	Bus용, front assembly	조(13개)	10,910
자동차슬리브	Corona	조(6개)	3,600
자 전 거	26", 완성차, 전등장치제외, 반케이스웨이 인	대	12,000
모터싸이클	90cc(CL-90)	"	197,976
385 사진, 과학기기, 과학적계측 및 조정용기기 제조업			
온 도 계	5.5~6mm, 길이 30cm, 알콜한난계 0°~ 100°C	개	56
택 시 미 터	크기 125×110×75mm, 중량 1.95kg, 요 금표시용	대	30,000
손 목 시 계	남자용, 19석, 일자요일표시, 수동, 방수	개	17,000
벽 시 계	패종시계, 수동식, 중급	"	5,400
390. 기타 제조업			
배 구 공	경기용, 우피제	개	658
연 필	필기용, HB, 흑심, 지우개고무붙임, 상품	타	576
블 펜	Knock 식, Pencil 형	본	14
비 널 우 산	중품	개	22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 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촌 (町)	척 (尺)	마 (碼)	리 (哩)
			(m)	(in)	(ft)	(yds)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3.3	0.009166	0.000354	1	39.3707	3.28039	1.09363	0.000321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1.00382	0.002793	0.0000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368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 (匁)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 (兩)
						(pi)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66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12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용 적

	흙 (合)	승 (昇)	두 (斗)	석 (石)	입방미 (m³)	리 (리)	개 룡 (영)	개 룡 (미)
흙 (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9
승 (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 (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 (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 (m³)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6
터터 (리)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 룡 (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 룡 (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부록 3 조 사 표 류

지정통계
제 17 호

1972년

광공업통계조사표 (I)

통계법의 규정과 다르 미 조사표에
기재하는 내용은 통계작성법상 사용
하여 그 밖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 1. 작성 년월일	2. 응답자 주소	3. 응답자 성명	4. 조사원 기명년월일	5. 조사원 기명년월일
1973년 월 일	과 가	인	인	인
심사에 관한 사항				
심사 구분	1 차	2 차	3 차	
심사 가				
심사 결과				
적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1. 구분이 없는 품목명: 2. 사업체 사용단위: 3. 유고사유: 4. 기 타: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 분류	조리 형태	창 설 년	차 분 계 중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구 동 가 전 화 주 부산광역시 도 시군 구·읍·면 동 리 (동 반)						
2. 본사업 및 소재지 본 사업 서울특별시 구 동 가 전 화 주 부산광역시 도 시군 구·읍·면 동 리 법 지 의 조						
3. 창 설 년 19 년 월 일						
4. 조 지 형태 해당항의 ()안에 ○표한다. (가) 주회회사() (나) 기타법인() (다) 개인()						
5.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72. 12. 31 현재 출자액 또는 출자금액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가) 주요생산품명: 1) 2) 3) (나) 생산 공정:						

주(※) 1. 00원은 소수점의 첫번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2. 00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 제 기 획 원

7	종업원수	구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비고	(가) 퇴고종사 ○비고종사: 종업원인 사업장내 ○종업원: 종업원인 사업장내 ○종업원: 종업원인 사업장내					
		(나) 사업장별 종업원수	○사업장별 종업원수					
		합	계					

8	연간급여액 (1971.1~12.31)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비고종사	○비고종사: 종업원인 사업장내 ○종업원: 종업원인 사업장내 ○종업원: 종업원인 사업장내							
		(나) 사업장별 연간급여액	○사업장별 연간급여액							
		합	계							

9	연간총급여액 기타수입액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나)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다)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10	연속연장제고액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나)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다)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11	연간제출해야 할 연초·연말제고액의 총액별 내역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나)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다)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12	연간종업원수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나)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다)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13	연간취득자산의 연간취득액 및 처분액	구분	본	계약	역	선임	역	선임	역	선임
		정산종업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원세액							
		(나)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다)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1972년

광공업통계조사표(II)

(본사·본점 조사용)

지정통계
제 17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
하여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창설년	자본계종	사업체번호 I	사업체번호 II	사업체번호 III																																										
*	*	*	*	*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_____ 대표자 _____ 전화 국 번 _____ 서울특별시 _____ 구 _____ 로 _____ 동 _____ 부산직할시 _____ 시 _____ 군 _____ 읍 _____ 동 _____ 도 _____ 시 _____ 군 _____ 읍 _____ 동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2. 조직형태 해당란의 ()안에 ○표한다. (가) 주식회사() (나) 기타법인() (다) 개인()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72년 12월 31일 현재 법인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 창설년 (법인의 경우는 법적설립년월일을 기록한다) 19 ____ 년 ____ 월 ____ 일																																														
5. 종업원수 (본사 또는 본점 종업원에 한함) (가) 피고용자(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란에 △표한다) ① 3월말 ② 6월말 ③ 9월말 ④ 12월말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나) 사업주 및 두급가족종사자 (연말 현재) 합 계 _____ 명					6. 연강금여액 본사(본점)의 임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2년간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임금, 봉급, 수당 및 상여금, 장제보조금과 그 이불금도 포함)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8. 유형고정자산의 연간취득액 및 처분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본사(본점)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72년 취득, 설치 및 증축, 개축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과 개기, 양도, 폐회 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감소액을 각각 기입한다.					7.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본사(본점)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계고액을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연 초 _____ 명 연 말 _____ 명																																														
9. 관할 사업체 명부 (회사(법)에 속하는 영업, 직영업 및 계고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입한다. (소업, 휴업은 해당란에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체명</th> <th>대표자명</th> <th>소재지</th> <th>주요생산품명</th> <th>종업원수</th> <th>조업</th> <th>휴업</th> </tr> </thead> <tbody> <tr><td>①</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②</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③</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④</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⑤</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명	종업원수	조업	휴업	①							②							③							④							⑤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명	종업원수	조업	휴업																																													
①																																																			
②																																																			
③																																																			
④																																																			
⑤																																																			
비고 _____					1. 조사표작성년월일 1972년 ____ 월 ____ 일 2. 응답자 소속 _____ 파 (전화) _____ 3. 응답자 성명 _____ 인 4. 조사원 기명 날인 _____ 인 5. 지도원 기명 날인 _____ 인																																														

주(註): 1. ※받은 조사철이 기입한다.
 2. ※빈칸은 기입하지 않는다.

조사요령서

1973년 3월 12일 인쇄

1973년 3월 20일 발행

발행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쇄소 삼원인쇄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동1가99의6

1973년

광공업센서스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3년

광공업센서스

조사요령서

— 목 차 —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5
2. 조사의 법적 근거	5
3. 조사 연혁	6
4. 조사 체계	7
5. 조사 시기	7
6. 조사 범위	8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3
10. 조사표 종류	15
11. 조사 방법	16
12. 집계 및 공표	16
II. 조사원의 임무	17
1. 조사업무의 순서	19
2. 조사용품의 수령	19
3. 사전조사	20
4. 실 사	21
5. 실사진도 보고	24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5
7. 기 타	26
III. 조사표 기입요령	27
1. 일반적 유의사항	29

2. 항목별 기입요령.....	30
가. 조사표Ⅰ (5인이상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0
나. 조사표Ⅱ (본사 또는 본집용)의 기입요령.....	57
다. 조사표Ⅲ (4인이하 영세사업체용)의 기입요령.....	63
Ⅳ. 조사표 검토 정리오령.....	73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75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77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표.....	95
부록 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113
부록 3. 도량형 단위 환산표.....	145
부록 4. 조사표류.....	149

I.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광공업 센서스는 주로 광공업부문의 산업구조 및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 (1) 산업별·지역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측정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임금수준 파악
- (3) 주요 품목별 제품 및 원재료의 기초통계 작성과
- (4) 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본 센서스는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경제계획의 수립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측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생산구조 및 수준의 국제간 비교자료로 이용되고 도매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 각종 주요지수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본 센서스는 통계법(법률 제980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6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센서스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漏洩)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 11 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제 21 조: 벌칙 규정)

〈 통계법 (초) 〉

제 2 조 (정의) 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 조 (신고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 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20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제 10 조 (비밀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조사 연혁 (沿革)

광공업 센서스 (지정 통계 제 6 호)

1 회	1955 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 년	한국 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 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 년	〃	〃	〃

- 6 회 1968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7 회 1973 년 경제기획원 주관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 통계 제 17 호)

- 1 회 1967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2 회 1969 년 경제기획원 주관
- 3 회 1970 년 #
- 4 회 1971 년 #
- 5 회 1972 년 #

4. 조사 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시장 및 도지사→지도원→조사원→대상사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 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할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다. 조사원

조사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조사 시기

가. 조사기준일 : 1973.12.31 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3.1.1 ~ 12.31 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74.4.1 ~ 4.30 일 까지 (1개월간)

6. 조사의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대분류 「 2 」에 해당하는 「 광업 및 채석업 」과 대분류 「 3 」에 해당하는 「 제조업 」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 (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 (석탄가스), 액체 (원유), 고체 (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섶광 (碎鉱), 세척 (洗條), 체질, 선광 (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 사업자가 하던 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던, 집에서 행하여 지던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 (農林水産業)과의 관계

- ① 농가, 어가 (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 ② 어선(漁船)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柵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건물 및 전선 등으로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공,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소도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입가공업(價加工業)과의 관계

타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 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입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 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수리업(修理業) 또는 서서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빙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서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 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바)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

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업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조사대상 사업체는 전수조사 사업체(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와 표본조사 사업체(종업원 4인이하 영세사업체)로 구분한다.

가. 전수조사 사업체(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의 결정

197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 1) 1973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 2) 1973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 3) 1973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가) 1973년 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나) 조업기간(操業期間)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이었던 사업체 (예: 제빙업 사업체)

- 4)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도 하더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나)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다)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학교 실습장

나. 표본조사 사업체(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체)의 결정

1)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 조사에서는 1973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된 상주인구조사에서 작성된 광공업 영세 사업체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지역」이 추출되었다.

2) 영세사업체의 결정은 제 6 항 조사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에 따라서 종업원 5인 이상의 전수조사 사업체와 동일한 요령으로 결정하되, 추출된 표본지역내에 실재하는 4인 이하의 광공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조사대상 사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모집단 명부로부터 영세사업체의 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 표본지역내에서 신규 영세사업체(미확인 된 것과 73년중에 신설된 것)를 모두 색출하여 이를 포함 조사한다.

4) 종업원 5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조사와 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체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조사원은 표본추출된 지역 이외에서 영세사업체조사가 수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조사 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 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데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 종업원 4인이하 영세사업체에서는 본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업체로 본다.

9. 조사사항(調査事項)

가. 종업원 5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조사표 I)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2) 본사명 및 소재지
- 3) 창설년월일
- 4) 조직형태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6)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7) 종업원수
- 8) 월별 조업일수
- 9) 연간 급여액
-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11) 연초, 연말 재고액
- 12) 연간 주요 생산비
-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15) 동력시설
- 16) 건설가계정
- 17) 조사표 작성근거
- 18) 유형 고정자산

나. 종업원 5인이상 본사, 본점 (조사표Ⅱ)

- 1) 본사, 본점명 및 소재지
- 2) 창설년월일
- 3) 조직형태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 7) 관할 사업체 명부

- 8) 건설가계정
- 9) 조사표 작성근거
- 10) 유형 고정자산

다. 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조사표Ⅲ)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2)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과정
- 3) 연간 조업월수
- 4)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 5) 완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 6) 수탁제조 의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 7) 월평균 주요 생산비
- 8) 유형 고정자산

10. 조사표의 종류 (調査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3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 조사표 (Ⅰ)..... 본사 이외의 종업원 5인 이상 대상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 (Ⅱ)..... 종업원 5인 이상 대상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하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사업체

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 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다. 영세사업체 조사표(Ⅲ)..... 종업원 4인 이하의 표본 영세사업체에 적용한다.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직접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 후 이를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기입할 수 있다.

12. 집계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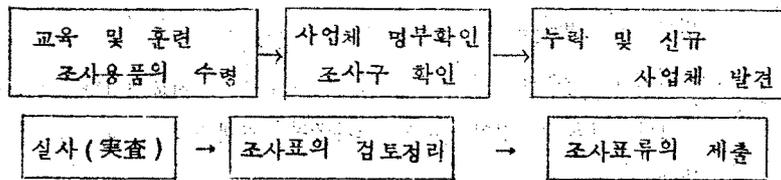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제표과정을 거쳐 I. B. M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Ⅱ. 조사원의 임무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3) 조사표 (I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센서스 조사요령서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1) 실사일보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포 케이스

아. 기타

3. 사전조사 (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및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살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강습기간 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3년도 광공업센서스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2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3년도에 신설된 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간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사항을 사업체 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閉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 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빠지지 않고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마) 담당 조사구내에 1974년에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될 때도 명부 후단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4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놓는다.

(바) 영세사업체는 계절성이 극심하고 폐업, 신규, 이전등이 빈번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사는 7번째 조사이며 지난번과 같이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보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實査)

-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取時)에는 전후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 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 (나) 이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 ②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 ③ 창설년월일
 - ④ 조직형태에 관한 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5) 본사의 조사
 - (가) 산하 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 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4)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분점)……① 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 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영세사업체의 조사

추출된 표본지역내의 모든 4인이하 영세사업체(광공업부문)를 이미 작성된 영세사업체 명부를 기초로 하여 조사한다.

5. 실사진도보고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및 기타 조사 활동 사항을 실사진도보고(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관할조사원으로부터 실사진도보고를 수집하여 문체조사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치하고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보고한다.

라. 실사진도보고 제출일자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조 사 원	4 월 6 일	4 월 16 일	4 월 26 일
지 도 원	4 월 8 일	4 월 18 일	4 월 28 일
책임지도원	4 월 10 일	4 월 20 일	4 월 30 일

6. 조사포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포 회수

- (1) 조사포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적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포회수시 완결된 조사포를 조사포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포를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하도록 한다.
-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킵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포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 (4) 조사포는 실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포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포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포 종류별로 사업체명부의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포 케-스 포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 명부)와 함께 실사 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 완료하여 시, 도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책임지도원은 조사완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통계법 참조)

바. 배부하고 남은 협조의뢰공문이나 조사원증은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 조 사 표 기 입 요 령

Ⅲ . 조 사 표 기 입 요 령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완료 후 심사, 분류, 집계 등 여러 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도박도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 칸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칸은 사선을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그 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적색으로 복선(=)을 긋고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단위는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 I (5인이상 사업체용) 의 기입요령

- 1) 사업체명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및 소재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전해공장」

「주식회사 ××산업사 울산공장」

-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통 가
 시 대전(시) 은행 (동) 136 번지의 16 호 (통 반)
 충청남도(도) 군 읍·면 리

-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칭란 우단(右段)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 3) 창설년월일(創設年月日)
-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월일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위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 4) 조직형태(組織形態)
-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조직형태를 말한다.
-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대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 내에 ○표한다.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나)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불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가) 주요생산품명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2) 두 종류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가) 1973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나)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3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질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사업을 결국 임업(林業)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리) 조사표(1) 13의 (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및 ②번항목의 완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목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기입 한다.

예:(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풍(選鉦)까지 일관작업

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 (구루타민산 나트륨) 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 (澱粉) →당화→발효→농축→산분해 (酸分解) →여과→농축→염산염 (鹽酸鹽) →탈색→결정→구루타민산 소다」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 (磨碎澱粉乳) →침전→전분→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탄산수주입→타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 (原綿) →면조 (綿條: sliver) →정방 (精紡) →단사 (單糸) →합사 (合糸) 또는 연사 (撚糸) →면사 (綿糸)」

⑤ 면직물 (면포) 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 (整經) →호부 (糊付) →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 (유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 → 초지
(와이어에 의한 초지) → 건조 → 완성 → 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 → 선별 → 분쇄 → 약물배합 → 탈유 (脫硫) →
재생 → 포장 → 재생고무」

⑧ 리사지 (別名 일산화연 (一酸化鉛), 금밀타 (金
密陀) 항색 산화연) 연분식 (鉛粉式)

「납 → 용융 → 성형 → 연분 → 산화 → 분쇄 → 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 → 배합 → 성형 → 소성 (燒成) →
벽돌」

7) 종업원수
(從業員數)

가)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사업체의 소유주 (출자자 포함) 와 그 가족 (동거
자 포함) 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義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용자 (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
금이나 급료 (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위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할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다)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 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용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월별조업일 개 1973년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 수(月別操業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예, 상업·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연간급여액
(年間給與額)

가) 1973년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과 강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3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3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3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3년도 1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3년간에 길어남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3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종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轉売)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驛渡)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가격에 이 내국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란에 기입한다.
-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7) 완제품 출하액은 13의(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집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폐품판매액 (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인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품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제조업의 정의 참조)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 완제품 출하액에 계상한다.

11) 연초·연말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3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Ⅱ 참조)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에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의 수탁제조에서는 직접 원재료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제조업 정의 참조)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13의 (2) 및 (3)의 품목별 완제품 연초·연말재고액·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12) 연간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3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 (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3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2) 동일 기업체의 타 사업체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임업·수산업·광업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거입한다.

(3) 위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

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서비스업·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1) 1973년간에 가열로(加熱爐)(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구입이 아님)한 연료의 사용 수량과 금액을 석탄류, 유류 및 기타 연료별로 기입하며 금액은 구입가격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나) 구입전력비 (購入電力費)

(1) 1973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3년간에 지출한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12항(2)란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 (購入用水費)

1973 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 (委託生產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 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

을 때에는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轉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유형고정자산」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0-(1)」 완제품 출하액과 「11-①-(1), (2)」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0-(1)」과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1-①-(1), (2)」와 각각 일치한다.
-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라) 각 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이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조사항목번호 「12-(1)」 원재료비와 「11-③-(1), (2)」의 연초·연말 원재료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는 「12-(1)」과 품목별 원재료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1-③-(1), (2)」와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명을 부록「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사용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사용한 원재료는 생산된 완제품과의 투입연관성에 유의하여 생산에 관계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거나 투입된 원재료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부록2 참조)

사) 구입사용한 원재료가 외산품이면 1에, 국산품이면 2에 ○표하여 동일한 품목으로 외산품과 국산품이 병행하여 사용된 경우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다음란에 기입한다.

아) 외산품이라 함은 그 사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상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외국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1차 사용되었던 것이나 가공된 것을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외산품이라 하더라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자) 직접 수입한 것은 수입가격을 그 당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평가하고 그 외는 운임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차) 만약 그 사업체에서 사용한 원재료가 「산업분류 및 품목 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때에는 구분의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5) 동력시설 수리중인 것과 예비용의 것을 포함하여 사업체가 1973.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동기(電動機) 및 원동기(原動機)와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기(發電機)에 대하여 그 능력을 기입한다. 능력은 원제작자가 붙인 규격표에 의하여 발전기 및 원동기에 대해서는 마력(HP)으로 발전기에 있어서는 Kw로 조사한다.

(1) 전동기(電動機)

전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력기계를 말하며 전도(伝導)벨트에 의하여 기계에 연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기계에 부착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생산기계 이외의 기계 즉 사무기계 및 실내 장치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2) 원동기(原動機)

전동기 이외의 생산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모든 동력기계를 말한다.

그러나 발전기용, 차량용 및 선박용의 것은 제외한다.

(3) 발전기(發電機)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입한다.

16)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중당될 재료 및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입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라)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스포시를

한다.

마)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 7) 조사표 작성근거
-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고 1968년 광공업센서스의 장부조직과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출하액 및 재고액」과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 18) (A) 유형고가 자산분류
정 자산 (법인사업체용) 제 18(B)항 유형고정자산란 우측의 <자산분류>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3. 건물부속설비」는 장부상 계정과목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만 기입하고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2. 건물」에 포함한다.

나)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

1973년 12월 31일 현재물 기준으로 장부가격은 기입하되 회계년도가 상이하야 연말현재가액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다) 연간취득액

연간취득액이라 함은 1973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 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및 증개축한 부분을 말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 수입품도 신 품에 포함한다.

(2) 중고품

신품이외의 중고자산을 말한다.

(3) 평가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당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 건설 또는 자가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간 처분액

1973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당시의 가격으로 기입한다.

(1) 신품 및 중고품

신품 및 중고품의 구분은 라)항 연간취득액의 구분방법과 동일하다.

(2)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로 매매가 없었을 경우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한다.

마) 연간 감가상각액

1973 년간에 발생한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액을 기입한다.

바)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액)

(1)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은 연간취득액에서 연간처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되며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스포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2) 연도별 순 자산취득액을 기입할 때에는 연도별 예비자산포 작성시 대변과 차변의 차액을 기입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연간취득액 및 연간처분액의 개념은 라)항 연간
취득액 및 마)항 연간처분액의 개념을 참조한다.

가) 1968년말 현재 총 평가액

196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기입하되 회계연도가 상이하여 연말현재가액을 작성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기입
한다.

아) (19년)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은 자산을 재평가하기
직전의 자산평가액과 재평가한 직후의 자산평가액을
기입한다.

(1) (19년)란에는 1965년 1월 1일 이후에 실
시된 자산 재 평가중 최근의 자산 재 평가를 실
시한 연도를 기입한다.

(2) 「재 평가직전 기말잔고」는 최근의 자산 재 평
가를 실시할 당시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
한 잔액을 기입한다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3) 「재 평가직후 기말잔고」는 최근의 자산 재
평가가 실시된 이후의 재 평가된 자산액을 기입
한다.

18) (B) 유형고 가) 자산분류

정 자산
(개인사업체용)

자산분류는 조사표 우측의 <자산분류>를 참조하여 분류하도록 하며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사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당자산(차용한 부분 포함) 중에서 시가가 큰 자산부터 기입하고, 공란(空欄)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자산을 합산하여 기타란에 기입한다.

나) 수 량

(1) 「1. 토지」는 부동산투자용 위한 것을 제외한 총 평수(㎡)를 기입하고 「2. 건물」은 동수와 총 연면적을 기입하며 「3. 구축물」은 구축물의 총 건수를 기입한다.

(2)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해당자산의 단위와 수량을 기입하고, 기타는 총 건수를 기입한다.

다) 소유관계

(1) 소유관계는 해당자산의 소유 또는 차용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2) 자산분류별로 「소유」와 「차용」이 중복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것의 해당번호에

○표한다.

예 : 「2. 건물」에서 소유부분이 100 만원이고 차
용부분이 150 만원일 경우 차용(2)에 ○표한다.

라) 취득시기 및 신고부분

(1) 취득시기

해당자산을 취득한 연도를 기입하고 동종(同種)
의 자산의 취득연도가 상이할 경우 취득액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입한다.

(2) 신·중고부분

취득당시 해당자산이 신품이나 중고품이냐로 구분
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신품과 중고품이 중복
될 경우 자산평가액이 많은 것을 택한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신품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도 신품으로 간주한다.

마)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현시가)

1973년말 현재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해당자산
(차용한 부분을 포함)의 시가를 기입한다.

바) 1973년 유형고정 자산

(1) 연간 취득액

1973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
치 및 증개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신품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 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 비용을 기입하고 중고품은 신품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기입한다.

(2) 연간 처분액

1973 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 자산의 실질적인 감소액을 기입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부분은 제외한다.

나. 조사표 II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II)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조사시 조사표(I)에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 (I) 의 제 2 항과 동일
- 2) 창설년월일 : 조사표 (I) 의 제 3 항과 동일

- 3) 조직형태 : 조사표(I)의 제 4항과 동일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조사표(I)의 제 5항과 동일
-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7항과 동일하다.
- 나)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3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9항과 동일하다.
-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 7) 관할사업체 명부
-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산하(傘下)사업체가운데 광업·채석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기입한다.
- 나) 산하사업체 2개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 다)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II)는 조사하지 않는다.

8) 건설가계정 조사표(I)의 제 16항과 동일

9) 조사표 작성 근거 가) 조사 결과의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 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고 1968년 광공업 센서의 장부조직과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나) 「원재료 및 연료채고액」과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0) 유형고정자산 가) 유형고정 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 자산에 한한다.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18(A)항과 동일하다.

다. 조사표Ⅲ (4인이하 영세사업체) 용의 기입요령

일반사항

- 1) 조사표(Ⅲ)은 종업원 4인이하의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단편적인 기록이나 기억 또는 추정에 의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적인 조사항목만을 조사한다.
- 2) 일단 선정된 조사항목은 조업기간중 월간평균수치(月間平均數值)를 조사하여 연간조업월수(年間操業月數)로 곱하여 연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므로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 3) 조사항목의 정의가 조사표(Ⅰ)과 상이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완제품 판매액
완제품 출하액은 영세사업체 조사에서는 그 개념 및 자료수집에 난점이 있으므로 완제품 판매액만을 조사한다.
 - 나) 수탁제조수입액
영세사업체에서는 수탁제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완제품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으로부터 독립된 별도항목으로 조사한다.
 - 다) 주요생산비
영세사업체의 주요생산비는 「원재료」와 「연료」사용액을 위주로 조사한다.
- 4) 기타유의사항은 Ⅲ. 조사표 기입요령중 Ⅰ. 일반적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기입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 ××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동 가
 시 대전(시) 은행(동) 136번지의 16호(통반)
충청남(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카)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가) 주요생산품명

①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② 두 종류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1973

년중 판매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한다.

나) 생산과정

생산과정은 주된 품목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기입한다.

※ 최초의 투입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① 규석의 채굴부터 선광(選畝)까지의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예

「채굴→선광→규석」

② 건조멸치를 제조하는 경우

「생멸치→염포→건조멸치」

③ 남자용 양복을 제조하는 경우

「모혼방직물→재단→재봉→남자용 양복」

④ 여자용 가죽신을 제조하는 경우

「소가죽→재단→제화→여자용 가죽신」

⑤ 비닐 우산을 제조하는 경우

「대나무→비닐→절단→접착→비닐 우산」

⑥ 각종 죽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대나무→쪄갠→엮음→죽제품」

⑦ 장독을 제조하는 경우

「고령토→옹기→가열→장독」

⑧ 부로크를 제조하는 경우

「세멘트, 모래→배합→성형→건조→부르크」

3) 연간조업월수 가) 조업월이라 함은 15일 이상 작업한 달(月)을 말한다.

나) 연간 조업월수는 연간추정치 산출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4) 종업원수 및 가) 종업원수

월평균급여액

① 유급종업원이라 함은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을 분문하고 노무의 대가를 지급하는 피고용자 전체를 말한다.

② 해당 종업원수에 ○표하고 5인이상으로 판명된 사업체는 비교란에 종업원수를 별도로 기입한다.

나) 급여액

① 급여액에는 유급종업원에게 조업기간중 지급한 월 평균급여액을 기입한다.

② 자체생산된 제품 또는 기타 현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③ 1973년 이전의 급여로서 채분(滯払)된 것을 1973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3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5) 완제품의 월 가)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중에서 1973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한다.

나)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 제조한 완제품을 제외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 수탁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의 기입은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품목명칭과 수량단위를 기입하고 구분이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단위를 기입한다.

라) 완제품 판매량은 월 평균판매량을 기입하고 판매액은 월 평균 판매액을 기입한다.

6) 수탁제조의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제공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나) 그러나 타 산업·주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완제품 판매량 및 원재료 사용액을 모두 조사하여 제 5항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에 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임가공업(賃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제 5항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에 기입한다.

라) 특히 수탁제조수입액은 수탁제조한 완제품이 가격의 아니라 가공임(加工賃)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월평균 주요 가) 1973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 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생산비인 원재료와 연료사용액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원재료비

①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3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

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② 외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임업 수산업·광업등을 경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가 자가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

③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의 위탁제 조인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는 제외하며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서비스업·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는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④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구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대) 연료비

(1) 가열로(加熱炉)(난방포함) 및 동력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기입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라 기 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조업기간중 월 평균 지불액을 기입한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중 가구사용분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지불액만을 기입한다.

8) 유형고정 자산 가) 유형고정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및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 자산은 제외한다.

(1) 토지, 건물 및 구축물

토지는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垵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부동산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건물은 공장, 사무소, 기타 부속 건물과 냉방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고 구축물은 담장, 우물, 도로 등을 말한다.

(2) 기계기구 및 장치

기계는 동력기계, 제조기계, 가공기계 등을 말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또는 기타의 운반구를 말한다.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정리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 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5)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6) 주생산품명이 「완제품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지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8)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9)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10)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 원재료비는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내역을 참조하여 제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12)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여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3)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4)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5) 대 「연간 주요 생산 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집계액을 검산하고
- (나) 주요 생산비와 금액액 총계는(연말재고액 합계-연초재고액 합계+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6) 폐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연간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18)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
| 10 항 | (1)완제품 출하액 | - | 13 항(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
| 11 항 | (1)완제품 재고액 | - | 13 항(2), (3)품목별 완제품 재고액 |
| 11 항 | (3)원재료 재고액 | - | 14 항(2), (3)품목별 원재료 재고액 |
| 12 항 | (1)원재료비 | - | 14 항(1)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

19) 유형고정 자산 조사표 검토정리 요령

가) 유형고정 자산 (A)

- ① 1973 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자산분류별로 유형고정 자산 수량과 비교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한다.
- 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도별 순자산취득액은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은 負 (마이너스) 로 나타날 수도 있다.
- ④ 자산분류별로 1973 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1968 년말 총 평가액에 연도별 순자산취득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즉, $1973 \text{ 년말 현재 총 평가액} \leq 1968 \text{ 년말 현재 총 평가액} + \text{연도별 순 자산취득액}$
(69-72) + 1973 년 취득액과 처분액의 차
- ⑤ 자산재평가가 있었을 경우 자산재평가액에 그 이후의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을 합하면 같게 된다.

나) 유형고정 자산 (B)

- ① 1973 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자산분류별로 유형고정 자산 수량과 비교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반드시 현 시가를 기입한다.
- ②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주요품목 (자산액이 큰 것) 부터 빈칸을 작성한 후 나머지만 기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2.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개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 사업체는 실사일보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연,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 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광업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연탄(354010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소분류 230 (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조사항목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에는 광석의 품목명을 기재한 후 괄호하여 품위를 기입한다. 품위는 해당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도 순도 또는 함유량을 괄호안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 [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취수연은 모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소분류 290 (비금속 광업)

-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 (대리석 및 돌조각품) 에 분류한다.
-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반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되어야 한다.
-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두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 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피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 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

1) 소분류 311~312 (식료품 제조업)

-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 (can) 또는 상자 (C/S) 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품목란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 (19-③) (다) 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배, 보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구분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 (각종 가루 부산물) 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료는 312201 에 분류한다.

라) 빠다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함시키지 말고 3121299 (기타의 장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31213)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산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에, 들친은 3511915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병지」로 조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옛의 단위는 kg이다. 물엿 역시 kg으로 환산 조사한다.

2)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가) 알콜 1%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이하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통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이 사업체에서 이층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합하여 조사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정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ℓ임으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ℓ로 환산하여야 한다.

$$1\text{되} = 1.8\ell \quad 1\ell = 0.556\text{되}$$

마) 환타, 오란C 등의 청량음료는 쥬우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

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25°	ℓ	200			
3131201					30°	ℓ	300
3131201 0					25° ~ 30°	ℓ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의 통일명칭

섬 유 의 종 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거마)	마	Linen &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 (銅) 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테이트 섬유	아세테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 V. A.
폴리 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 V. C.
폴리 염화비니리덴계 섬유	염화 비니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 로니트릴계 섬유	아크릴	Polyacryl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섬유 종류	통일 명칭	
	국문	영문
폴리청화 비나리덴계 섬유	청화 비나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athane

비고: 기타 섬유 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으로 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합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순(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에 따라 호칭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률일 때 견을 택한다.

(나) 건이 30% 미만인 경우에 건과 이종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나) 건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건) : 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건을 택한다.

(4)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 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다) 면사 생산업체

경성방직 (영등포)	동일방직 (인천, 천안)
전남방직 (광주)	홍한방직 (인천)
합동방직 (대구, 대전)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안)	대능방직 (안양, 청주)
풍한산업 (대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등포)	삼화방직 (부산)

라) 항목별 유의사항

(1) 면 혼방사는 면사에 포함한다.

(2) 화학섬유 방적사는(32164 - 01, -02, -03, -04, -05, -06)

일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정을 완료한 사(絲)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각종 화학섬유(35133)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²임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세폭직물(3217501)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미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5) 표백, 염색 및 정리업(32180)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 등의 표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수료를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홀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9520에 분류).

(6) 갈포벽지는 지정단위가 m^2 인데 사업체에서 1 Roll로 응답하면 1 Roll = 6.6885 m^2 으로 환산한다.

4)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편직업)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9520에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요한다.

메리야스제 내의 편조업 : 32133

편직물 장갑 제조업 : 32132

고무장갑 제조업 : 35593

메리야스제 모자 : 32134

5)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m^2 또는 m^3 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2 임으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단위환산법 (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르다).

1 평 = 0.093 ㎡

1 매 = 3.7 ㎡ (40 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서 자(尺)나 m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m/ply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프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 제조업)

가) 프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 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 (제재, 롤크 및 나무제조업)

가) 판재라 하면 넓이가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목재를 말하며 각재란 넓이가 두께의 3배 미만의 것을 말한다.

나) 각재와 판재는 ㎡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 ㎡ = 426 才

다) 합판 및 하드 보드도 ㎡로 환산기록 하여야 한다.

합판의 경우 : 1 매 = 0.013 ㎡

하드보드 : 1 매 = 0.019 ㎡

8) 소분류 332 (가구 및 건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 (금속가구 및 건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철기계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 권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환권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폴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는 폴판지원지(3411302)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폴판지(3411303)에 분류한다.

다) 갈포벽지는 섬유제조업(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341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 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인쇄비 등)을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 수수료만을 수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 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출판하였을 때는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함)인쇄소에서 이중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11)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품목명을 기재한 후 괄호하여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도는 황산 (98 % , 35 % , 40 %)

등이 있는데 98 %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염산 (35 % , 100 %) 등이 있는데 35 %로 환산 기재하고 가성소다는 40 % , 46 % , 97 % , 100 % 등이 있는데 100 %로 환산 기입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함으로 분류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압축산소는 kg 으로 조사하고 사업체에서 본(本)으로 응답하던 1본이 7본이 환산토록 하고 아세치렌가스도 kg 이 본 또는 kg 은 반드시 kg 으로 환산 기입한다.

라) 합성그리세린 (3511914) 과 그리세린 [유지 분해 부산물 (3523306)] 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 (3523306) 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사에는 그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소비료 (3512104) 와 석회질비료 (3512301) 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석회질비료는 소석회 (3692201) 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 보다 더 굵은 가루임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 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로 조사한다.

사) 각종 수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 (35131) 에 속하는데 프라스
틱 제품제조업 (35600) 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
음으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아) 화학섬유 (35133 ; 세르보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와 화
학섬유 방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분류 321 섬유제조
업 참조)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
이 일반적임으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 (351807) (Al_2SO_4) 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 (3511101) 를 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 (3511102) 과 가성소다 (3511108) 는 동일업체에서 생산
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료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
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 (35292) 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 (35293)
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할 요한다.

13) 소분류 354 (석유 및 석탄의 잠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 로 조사하여야 한
다.

예 : 19 공탄 220 개 = 1 %

31 공탄 180개 = 1 %

49 공탄 80개 = 1 %

14)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동화에 포함한다.

나) 털신 (고무신안에 털을 넣은것) 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ply 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라)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임으로 권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 m

15)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32129) 에 직물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시트 (플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 에 가죽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 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지갑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39098)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39099)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고압애자(3,300V이상)와 저압애자(3,300V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콘크리트 브릭에서 보도용브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소성품)에 휘장연와(오지벽돌)를 포함한다.

17) 소분류 371 (제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製銑)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381)에 분류한다.

나) 품목구분

(1) 강반성품: 강편은 크고 무거움기 때문에 직접 조강(鑄鋼)이나 강판(鋼板) 등의 강재제품(鋼材製品)을 만들기 어려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눈 것이다. 강편(鋼片)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두께 3.2~6mm의 강판

박판: 두께 3.2mm 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편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 가단 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 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 방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 (제 1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37203) 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제품 제조업(프레스 가공제품 제조업(38192)) 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울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수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루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쪼그러지는 것이다.

19) 소분류 381 (금속제품 제조업)

가) 석유스토브에 석유근로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구분조사한다.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임으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다) 농업용 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목제농업용 수공구는 제외한다.

20)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가) 보일러는 건물용보일러(3819701) 와 산업용보일러(3813003) 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3821105) 에 포함 조사한다.
다) 탈곡기는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활판인쇄기(3824906) 읍셀인쇄기(3824907) 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매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계용) 를 포함하

여 조사한다.

배)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두부류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피스틴(389906) 및 피스틴링(3829911)과 자동차용 피스틴(384305) 및 자동차용 피스틴링(3843222)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할것.

아) 기계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21) 소분류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3831901, 단위: KVA)와 저압축전기(3831902, 단위: MF)로 구분 조사하고 가변축전기(3831909), 통신용 축전기(3832901) (콘덴서)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것.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필라멘트 전구)로서 10 w, 20 w, 30 w, 100 w, 150 w, 200 w 등을 포함한다.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 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건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 (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38412, 38413)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G/T임으로 #척#등으로 조사된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더는 기차용(3842210)과 자동차용(3843221)으로 구분

조사한다.

라)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기입한다.

23) 소분류 390 (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 자루 = 1 타

12 타 = 1 그로스 = 144 자루

나) 윗타는 #상자# 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단위 #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다) 시계 조사는 손목시계, 패중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전기시계로 구분 조사한다.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표

< 1973년도 >

부록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 일람표

(1973년 평균가격)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111 농업 및 축산업			
쌀	일반미 중품 도매상인도	80 kg	9,728
낙 화 생	상품 볶은것 "	75 kg	25,622
타	재래종 암탉 약 1.7 kg 도매상인도	마 리	588
달 갈	중품 도매상인도	10 개	148
누 애 고 치	생추잠 4 등급 또는 생추잠 3 등급 농 협 구매	kg	883
면 화 솜	상품	kg	409
업 연 초	황색종 화건 3 등품, 전 개청수남	kg	528
210 석 탄 광업			
무 연 탄	석공탄, 3급탄, 분탄 5,300~5,600 Cal	%	3,560
무 연 피 탄	석공 1급탄 5,900~6,200 Cal	"	5,660
조 개 탄	5,700 Cal 이상	"	6,872
230 금속 광업			
철 광 석	56 %	%	3,429
동 광 석	동 12 %	"	22,442
연 광 석	연 60 %	"	46,933
290 비금속 광업			
고 령 토	SK # 34 분홍색	%	2,700
"	SK # 35 백 색	"	4,056
규 사	23 목 (目) 이하	"	3,00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천 일 염	1등급 도매상인도	60 kg	784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참 기 림	상품 용기대 제외	l	1,076
채 종 유	상품 용기대 제외	"	292
미 강 유	식품 용기대 제외	"	207
아마인유		"	266
마아가린	450 g 포장	kg	203
쇼 트 닝	제과용 상자당 4.5 kg	"	280
두 부	목판당 약 1.8 kg	"	67
정 계 염	상품 염도 85 ~ 90 %	"	25
배합사료	성계 산란초기용 단백질 15 %이상	"	52
당 면	상품	"	206
라 면	개당 120 g 상자당 50 개	"	170
설 탕	정백당, 당도 99.9 %이상	"	160
엿	특급, 용기대포함	"	105
인 조 빙	식용, 개당 300 lb	%	3,125
된 장	상품, 비닐포장	kg	90
고 추 장	상품, 비닐포장	"	160
313 음료품 제조업			
포 도 주	병당 640 ml, 상자당 24 병 생산자 배달	l	141
백 주	4도, 양조주 640 ml, 상자당 24 병	"	299
탁 주	약 6도, 상품 생산자배달	"	21
약 주	약 11도, 상품, 생산자배달	"	59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청 주	특급청주, 1.8 l 상자당 10 병, 생산자배달	l	371
누룩	상품	kg	112
맥아	순맥	"	104
사이다	병당 340 ml, 상자당 24 병, 용기대포함 생산자배달	l	134
주스	병당 190 ml, 상자당 24 병, 용기대포함	"	284
홍차	봉지당 1.4 g, 상자당 2,700 봉지	"	2,262
321	섬유 제조업		
면양말	갑종면사 60수, 100%, 420 g, 공장인도	족	121
화섬사양말	여름용, 혼방, nylon 60%, 면 (30수) 40%, 420 g 공장인도	"	85
스타킹	여자용, nylon 20 denier 50%, 40 denier 50%, 10 filament, 생산자배달	"	110
메리야스 동(冬)내의	면사 30수, 유색 180돈 (675g)	매	924
마닐라로프	아바카, 어망용, 6/10" (16 mm)	kg	259
아마사	14수, 생산자배달	"	1,014
아크릴사	76수 2 합, 백사 (白糸)	"	1,198
생사	21 중, B 격 (格)	"	8,555
면복지	면사 23수, 36" x 30마	m ²	271
면혼방직물	면 35%, 포리에스터 65%, 46" x 30 yd	"	200
제폭직물	털테이프 50 mm x 25 m 생산자배달	롤(Roll)	350
포리에스터 직물	포리에스터 75 denier, 밀도 100 x 150, 60" x 30마, 마당 280 g	m ²	74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어 망 사	면 20수 12 합 도매상인도	3.75 kg	4,668
"	나이론 210 D 24 filament		
광 목	면사 16수 비표백 35" × 30 m 도매상인도	필	3,894
모혼 방직물	모 40 % 포리에스터 60 % 60" × 30 yd	"	54,825
322 의복제조업			
남 방 사 쓰	성인용 15 $\frac{1}{2}$ " , 모시 35 % , 포리에스터 65 % 공장인도	매	1,325
잠 바	성인용, 포리에스터 100 %	"	3,100
여 자 용 부 라 우 스	PC 210, 면 35 % , 포리에스터 65 % , 긴팔 생산자 배달	"	850
323 가죽, 가죽대 용품 및 털가죽제품 제조업			
핸 드 백	합성인조피 (에나멜제) , 중품	개	5,164
트 럽 크	비닐레자제, 대형	"	4,556
324 가죽신 제조업			
남자용가죽신	복수 (천연우피)	족	3,853
여자용가죽신	합성인조피 (에나멜)	"	4,040
331 제재, 콜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육송 각 재	9 자	m	40,280
육송 판재	6 자 × 5 치 × 5 푼	"	43,248
미송 각 재	12 자이내	"	50,032
미송 판재	12 자이내	"	60,632
나왕 각 재	만각 (挽角)	"	54,696
나왕 판재	7 푼 ~ 8 푼	"	68,264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소할재나왕	7~9자, 1치5분각 (角)	m ²	49,184
푸로링나왕	9자×3.5치×6분	"	55,120
34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모조지	70g/m ² , 4×6판, BSP 78%, GP 30%, 유광 (有光)	연 (連)	4,676
신문용지	SKP 30%, GP 70%, 4×6판	%	93,139
크라프트지	양면, 폭 40", roll형 (80g/m ²)	%	116,975
선화지	백색, 4×6판, 지설 100%	연 (500)	1,556
유선하드용지	크라프트 펄프 80%, 지설 20%	연 (500)	2,533
박엽지	연당 6.8kg, 4×6판, BKP 100%	%	203,095
권련지	2급지, 27.5mm × 5,000mm	롤 (Roll)	1,143
판지	마니라판지, 4×6판, 300g/m ² , 생산자배달	연 (500)	14,237
골판지원지	파강 (破強) 2.3, 240g/m ²	%	70,708
크라프트자재	시멘트용, 4합, 27.5" × 16.5" × 3"	매	32
벽지	필벽지 (正壁紙), 중품, 필당 1.75차×18차	m ²	12
은박지	알미늄박지 (모조지 붙은것), 66.5mm × 508mm	연	7,000
등사원지	상품, 백색, 기계용, 갑당 100장	갑	1,100
35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황산	공업용, 98%, B8' 용기계의 생산자배달	kg	16
염산	공업용 35%, 용기계의 도착역도	"	17
암모니아	공업용 99.8%	"	40
소오다회	중회 99.8%	"	33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산 소	99.8 %, 용기제의, 통당 6,450 l 주입	통	408
메 타 놀	공업용, 98 % 이상	kg	42
무수 푸탈 산	순도 99.8 %	"	127
직접 염료	흑색, 상품	"	990
가성 소 다	공업용 액체 40 %	250 kg	5,354
활성 탄소	탄소 70 % 수분 30 %	%	170,000
포르마린	37 % 직매점인도	"	30,260
초 산	공업용 42° 수입품 도매상인도	"	80,546
메 타 놀	공업용 98 % 이상	kg	42
크 테 졸	원액 수입품 도매상인도	"	315
스 티 렌	공업용 Monomer 도매상인도	"	152
8 소 비료	질소 46 % 농협창고인도	포대 (25 kg)	968
용성 인 비	인산 20 % "	kg	11
중 파 석	인산 46 % "	"	22
가 리 비료	염화가리 60 % "	"	12
복합 비료	질소 22 % 인산 22 %		
	가리 11 % 농협창고인도	"	28
살 충 제		100 cc	123
살 균 제	유제	100 cc	85
계 조 제	입제 PCP 13.4 %		
	MCP 1.2 %	kg	112
산성 염료	10 B, 흑색, 상품, Nylon 사용 (糸用)	"	1,000
염기성 염료	Metyls violet	"	1,27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형광염료	MB, conc, 백색, 상품	kg	725
레이크안료	적색, L. C. L	"	1,600
아 연 화	특급, 99.5 %	"	271
탄 산 칼슘	96 % 경탄	"	27
규산소오다	3호, 용기제외	드 랫	4,853
가 소 제	D. O. P.	kg	198
포리스치렌수지	G. P. grade	"	147
포리에치렌수지	필름용	"	164
포리프로피렌수지	Fiber grade (virgin), filament 용	"	172
P.V.C.수지	P. 1,000	"	141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수성페인트	백색, 외부용 A급	l	356
바 니 스	페놀수지, 비휘발분 70 %, 중품	"	240
에 나 멜	백색, 광택, 외부용, 중품	"	356
락 카	백색, A급	"	430
세탁비누	KS표시품, 2호, 백색 350g	"	38
합성세제	갑당 500g, 가정용, 분말	"	135
그리세린	94%, 정제	kg	306
다이아미트	니트로그리세린 43%	상 자 (22.5 kg)	5,755
뇌 관	전기뇌관	3 m	44
초안폭약	니트로 화합물 7%, 니트로그리세린 5%	상 자 (22.5 kg)	4,317
도 화 선	제 2종 도화선	m	16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인쇄용잉크	흑색, 활판인쇄용, 중품	kg	263
353	석유 정제업		
부 탄	특수가공연료용, 용기제외	l	33
프 로 판	가정용, 용기제외	"	46
나 프 사	원료용, 도착역인도	"	7
휘 발 유	고급, 옥탄가 95 이상, 용기제외	"	54
"	보통, 옥탄가 86 ~ 94, 용기제외	"	45
젯 트 유	Jet A-1, 용기제외	"	12
등 유	가정용, KSM2613, 용기제외	"	26
용 제	솔벤트, 250 F, 도착역인도	kg	26
경 유	디젤엔진용, KSM 2610, 용기제외	l	21
중 유	연료용, 용기제외	"	13
방카 C 유	연료용, 용기제외	"	8
방카 A 유	선박용, 용기제외	"	14
구 리 스	기계용. Crown grease	can (15.9 kg)	5,490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연 탄	5,700 cal 기준, 개당 4 kg	%	5,052
아스팔트	AP ^B , 용기제외	kg	11
355	고무제품 제조업		
고 무 신	남자용, 백색, 240 mm 이상, 상품	족	142
"	여자용, 백색, 210 mm 이상, 상품	"	126
우 화	남자용, 장화, 흑색, 240 mm 이상, 상품	"	423
평형고무벨트	KS-1 중	ply	16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V형고무벨트	A형, KS 표시품	ply	3
콘베어벨트	KS-2중	"	9
고무호오스	용수용, $\frac{5}{8}$ " x 1 ply	m	55
재생 고무	후색, 상품, 일반고무재생	%	50,819
자동차타이어	8.25" x 20" 12 ply 상품	개	20,601
" 튜브	8.25" x 20" 상품	개	2,522
천연고무	Rss No.1 도매상인도	%	267,431
합성고무	1778호 또는 1712호	"	173,431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닐레더	0.2 mm x 91.4 cm, 일반레더, 생산자배달	m ²	223
플라스틱 스폰지	10 mm x 1 자 x 1 자	평	11
플라스틱식기	Bucket, 15 l 들어, 생산자배달	개	237
플라스틱샌달	「소프트」, 여자용	켤레	181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정용도자제품	커피세트 (6개입), 전사지사용품, 생산자배달, 중급품	조	925
애자	고압핀애자, 6.9 KV용, 생산자배달	개	200
토기항아리	중품	자리	714
369	기타 광물 제품 제조업		
적벽돌	1 등품	매	9
타일	백색, 내장품, 활강, 108 mm x 108 mm (3.6 자), 평당 260장	m ²	654
내화벽돌	SK #34, 보통형	개	5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내화벽돌	SK # 32, 보통형	개	45
레 미 콘	자갈 467, 시멘트 320 kg, W/C 56.3%, 생산자배달 (10 km 이내)	m ³	5,530
훈 관	하수관, 직경 600 mm × 길이 2.5 m, KS 표시 품, 적재 비포함	본	9,401
시멘트벽돌	6 × 10 × 21 cm, 강도 40 kg	매	5
시멘트브록	8", 강도 40 kg	"	47
"	6", 강도 60 kg	"	34
시멘트기와	흑색 340 mm × 300 mm × 15 강도 80 kg	"	17
콘크리트관	직경 127 mm, 127 mm × 606 mm	본	109
석면스레트	골판스레트, 백색, 6 mm × 72.7 cm × 213 cm (장) 소골 7 척	m ²	281
"	망형스레트, 백색, 40 cm × 40 cm × 48 mm (장) 생산자배달	장	48
371	제 1 차 철강 제조업		
선 철	주물용 1호	%	31,222
강 피	일반구조용	"	39,972
강 관	직경 900 mm, 두께 9 mm, 6 m (상수도)	개	212,713
"	직경 25 mm, 아연도백관 (상수도)	m	288
봉 강	19 mm, 12 mm, 9 mm	%	67,553
중 판	3.2 mm, 3' × 6'	"	73,473
대 강	0.9 mm, 폭 3'	"	91,713
주 철 관	배수관, 4" × 5'	개	1,89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아연도철판	#31, 파형 (波型)	장	409
주석도철판	508 mm × 710 mm (708 g), 0.25 mm H. D. (Hot dip timplate)	㉔	210,734
372 제 1 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	99.98 % 이상	g	980
은	99.98 %	"	33
전 기 동	99.98 % 이상	kg	733
연 피	99.95 % 이상	"	170
알미늄피	99.7 % 이상	"	287
381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면도날	양면 면도날, 고탄소강	개	5
샷터	스프링샷터 (반자동), 설치비포함	평 (1' × 1')	575
알미늄샷쉬	샷쉬 Bar, 70 mm	kg	613
통조림판	4 호판 (425 cc), 백판 (인쇄 안된것)	개	26
석유통	백판, 18 l	"	240
드럼통	윤활유통, 200 l	"	4,389
병마개	콜라병마개, 생산자배달	"	1
스텐베스식기	두께 1.5 mm (SUS-27), 주발, 대접, 뚜껑	벌	366
P. C. 강선	7.0 mm	kg	144
못	No. 12, 2"	"	114
와이어로프	12 mm, 6 가닥 × 24 가닥 × 200 m, 생산자배달	환 (Roll)	30,972
"	16 mm, 6 가닥 × 24 가닥 × 200 mm,	"	50,672
바늘	황기침 (황침), 12 gauge	개	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삭유스토포브	년방면적 2~5명	개	9,800
연탄난로	주물제 (22공단용)	"	1,111
방열기	5C, 650mm (높이), KS No. 217 및 374	쪽	1,329
382 기계 제조업			
보일러	수관식, 증발량 5,000 kg/h 상용압력 10 kg/cm ² , 생산자배달	대	7,980,000
동력탈곡기	자동식	대	23,000
"	동력식	"	90,000
분무기	등침형, 공병식, 가솔린, 1~2 HP	"	43,260
양수기	공병식유엔진 5HP 고무호스부	"	26,000
경운기	8HP, 디젤엔진	"	352,358
"	8HP, 등유엔진	"	402,734
선반	고속정밀선반 6자, motor부	"	625,000
형삭반	710mm (ram의 최대행로), 650 × 500 × 450mm (테이블크기), motor부	"	655,000
보오링반	19mm (천공능력) 3/4 HP, motor부	"	115,000
프레스기	파워프레스기, 10 T	"	380,000
연사기	100g용, 200추, motor부, 2HP, 견직용	"	380,000
면직기	54", 1 × 1, motor부, 1HP	"	265,000
견직기	63", 2 × 1, motor부, 1HP	"	385,000
정미기	본기 (本機) 1호, 소요마력 5HP	"	10,000
제분기	원기 (原機), 소요마력 5HP	"	18,75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사출성형기	용량 3 온스, 사출장치 : 부란자, 금형세결 장치 : 토글 (toggle) 식, 자동장치 : 완전자동	대	850,000
복 사 기	전자복사기	"	480,000
인쇄용기기	활판인쇄기, 체인식, 8 절지, 5 HP, 대형	"	2,300,000
"	활판인쇄기, 체인식, 8 절지, 5 HP 소형	"	160,000
송 풍 기	터보후앵, 4 SS형, 풍량 235 m ³ /min, 풍정압 (風靜壓) 50 mm/Ag	"	150,000
"	다이후앵, # 4 풍량 190 m ³ /min, 풍정압 50 mm/Ag	"	100,000
공기압축기	횡형단기통수병식, 30 HP 공기탱크 및 motor 제외	"	402,222
발 브	BC gate valve ^발	개	442
383 전기기기 제조업			
변 압 기	단상 50 KV 3,300 - 6,600 V 공판장인도	대	197,000
망간전지	DM 1.5V 상품	개	40
전 화 기	체신 1호기 흑색 자동식	대	8,371
적산전력계	단상 2 W 100 V 60 싸이클 20 (10 A)	"	2,440
변 압 기	단상 50 KV 3,300 - 6,600 V	"	197,000
전 동 기	10HP, 220 V, 60 싸이클, 1,800 rpm 4극, 반폐형	"	62,500
용 접 기	20 KVA, 10 kw, 240 A, 교류용	"	55,000
정 류 기	0.50 volt, 200 A, 완전 자동	"	400,00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변 성 기	1 FT 10 mm A, B, C, 발진코일, 라디오용	조(4개)	170
저 항 기	탄소체, 고정저항기 1/4W	개	4
"	가변저항기, 직경 24 φ, 스위치 없는것	"	80
레코 드 판	LP형, A급가수, 국내취입, stereo	매	480
전 기 관 로	4각형, 600 W, 표면도금, 열조절용 스위치부	개	1,000
선 풍 기	12", 40 W, 속도조절장치	대	11,740
냉 장 고	GR-161, 용량 160ℓ, 95 W	"	148,600
할라멘트 전	백열 100 V, 30 W ~ 60 W	개	41
형광등관구	FL-20D, K. S. 표시품	"	190
연 축 전 지	승용차용, 2HN 45 AH 12 V	대	5,530
극 판	축전지용, H극판 2 mm	개	50
소 켓 트	Key 소켓트, 6 A	"	50
384	수송용기기 제조업		
버 스	시내버스용, 국산	대	3,840,000
트 러	화물차, 적재적량 6톤 (6 ton-cargo)	"	2,688,000
"	화물차, 적재적량 7.5톤 (D-750)	"	2,890,000
삼 륜 차	T2000, 81 마력, 12 S, 적재량 2,000 kg	"	1,060,000
자 동 차 피 스톤	코로나 78 mm STD	조	3,800
"	이스즈 DA-120 100 mm	"	7,200
"	도요다 2-D 105 mm	"	18,250
자 동 차 기 어	Pinion and ring matched gear set GMC용	"	13,000
자 동 차 스프링	Bus용, front assembly	조(13개)	10,91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자 전 기	26 [#] , 완성차, 전등장치제외, 반케이스체인	대	12,000
모터싸이클	90 cc (CL-90)	"	198,030
385	사진, 과학기기, 과학적계측 및 조정용기기 제조업		
온 도 계	5.5 ~ 6 mm, 길이 30 cm, 알콜한냉계 0° ~ 100°C	개	55
택 시 미 터	크기 125 × 110 × 75 mm, 중량 1.95 kg, 요금 표시용	대	30,000
390	기타 제조업		
배 구 공	경가용, 우피제	개	942
엔 필	필기용, HB, 흑심, 지우개고무붙임, 상품	타	58
을 건	61 건, 쌍열, 직매접인도	대	50,000
필 터	84 mm, 1000개 들어, 전매칭인도	상 자	661

부록 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 이용상 유의사항

1. 본 연관표는 광공업부문의 주요 완제품과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광공업부문의 완제품은 약 2,000여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각 품목별 완제품의 산업전반에 대한 생산액의 비중, 전략적으로 중요시 되는 품목, 투입되는 원재료의 산업전반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16개 주요 완제품을 선정하였다.
3. 완제품 품목별로 투입원재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분류(1개) 또는 소분류(14개)별로 투입 원재료를 분류하였다.
4. 투입원재료는 산업전반에 대한 중요성과 각 품목별 완제품 생산을 위한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주요 투입원재료가 가능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생산공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입 원재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5.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동일한 단위로서 사업체의 단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환산하여야 한다.

부록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1220004	경목	m
			3529205	폭약	kg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소분류 311-312	식료품제조업				
3112901	조제분유	kg	1112101	원유	kg
			3118102	설탕	"
			1112101	유당	"
			3118301	포도당	"
3115301	마아가린	kg	3115304	경화유	kg
			3115101	유지	"
			3111301	돈지	kg
			3115199	어유	※
			3115202	콩기름	ℓ
3117102	식빵	kg	3116201	밀가루	㎏
			3121904	이스트	kg
			3118102	설탕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117303	라면	kg	3118301	포도당	kg
			3115305	쇼트닝	kg
			3115301	마아가린	kg
			3116201	밀가루	kg
			3115305	쇼트닝	kg
			3115	식용유	ℓ
			3121701	정제염	kg
3118102	정당	kg	3118101	원당	kg
			2909907	규조토	kg
			3529402	활성탄소	kg
			3121701	정제염	kg
			2904101	생석회	kg
			3412101	지대	개
			3121101	인조빙	%
3511203	탄산가스	m ³			
2903001	소금	kg			
3121303	구루타민산소오다	kg	3118103	당밀	kg
			3121401	전분	kg
			3511102	염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완제품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121401	전분	kg	3511108	가성소다	kg
			3511105	액체암모니아	kg
			1111106	옥수수	kg
			1111105	밀	kg
3122001	배합사료	kg	1111106	옥수수	kg
			1111102	보리	kg
			1111105	밀	kg
3131101	주 (에칠알콜)	ℓ	1111109	고구마	kg
			3118103	당밀	kg
			11111 -	잡곡	kg
3133001	맥주	ℓ	1111102	보리	kg
			1111415	호프	kg
			31219 -	효모	kg
			3121401	전분	kg
소분류 314	담배제조업		31400 -	잎담배	%
			3909903	필타	%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중분류 32	섬유의복및가죽공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3216101	면사	kg	1111408	원면	kg
			3216405	포리에스텔 SF	kg
			3216407	P.V.A SF	kg
3216205	소모사	kg	3216202	Raw wool	kg
			3530201	Spinning oil	"
			35114	Acetic Acid	"
3216206	혼방모사	kg	3216202	원모	kg
			3216405	폴리에스텔 SF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비스코스 SF	kg
			3216407	아세테이트 SF	kg
3216207	방모사	kg	3216203	지방양모 (脂付羊毛)	kg
			3216299	모설	※
32164-	나이론		2101001	석탄	※
			3511101	황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64	비스코스인견사	kg	3511212	카프로락담	kg
			34111 -	필 프	kg
			3511108	가성소다	kg
			3511822	이유화탄소	kg
			3511101	유 산	kg
3216601	면 봉 사	kg	3216101	면 사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비스코스 SF	kg
3217101	광 목	m	3216101	면 사	kg
			3216407	P. V. A SF	kg
			3511115	표 백 분	kg
			35117 -	염 료	kg
			3511108	가성소다	kg
3217107	포 푸 린	m	3216101	면 사	kg
			3116201	소 맥 분	kg
			35119 -	화 공 약 품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73 -	소모직물	m ²	(순모의경우)		
			3216205	소모사	kg
			3530201	Spinning oil	"
			35114 -	Acetic Acid	"
			(Tetron소모 복지의경우)		
			3216205	소모사	"
			3216405	Tetron 糸	"
3511713	염료	※			
3217303	모혼방직물	m ²	3216207	방모사	kg
			3216405	포리에스텔SF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P. V. A SF	kg
			3216405	폴리프로필렌 SF	kg
			3216405	비스코스인견사	kg
			3216405	아세테이트인견사	kg
32176 -	어망지	kg	3216405	나이론어망사	kg
			3511999	수지가공약품	※
3217602	나이론직물	m ²	3216405	NYLON Filament	kg
			3511713	염료(기타)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7603	아세테이트직물	m	3216407	아세테이트사	kg
			3216405	나이론사	kg
			32164-	비스코스사	kg
3217604	혼방직물	m	3216202	원모	kg
			3216405	화학섬유사	"
			3216503	인견사	"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3217-	혼방직물	m
			32171-	면직물	m
			3217301	소모직물	m
			3217302	방모직물	m
			32176-	화학섬직물	m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가죽제조업	m	32310-	원피	m
			3231001	우혁	m
			3231004	우원피	m
			3511110	소오다회	kg
			3529914	탄닝액	kg
			3692201	소석회	%
			3511101	황산	kg
			3511816	중크롬산소다	kg
			3511812	유화소다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324	가죽제조업		3231001	우혁	m ²
중분류33	재재 나무제품 및 가구제조업				
소분류331	재재골크 및 나 무제품 제조업		3511402	호르마린	kg
			1220099	원목	m ³
			3511401	메타놀	kg
3311201	합판	m ²	12200 -	원목	m ³
			3511918	요소	kg
			3511402	접착제	kg
소분류332	가구및가구제조업		1220099	원목	m ³
중분류34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				
소분류341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				
3411101	쇄목 펄프	Mt	1220005	펄프용원목	m ³
			2904101	석회석	Mt
			3511101	황산	kg
			3511108	가성소다	kg
			3511208	염소	m ³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 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411102	화 학 필 프	%	3511115	표 백 분	kg
			3511110	소 다 회	kg
			3511812	유 화 소 다	kg
			3523299	계면활성제	※
3411103	신 문 용 지	%	3411101	쇄 목 필 프	%
			3411102	화 학 필 프	%
			3411103	지설 및 고 지	%
			2909201	활 석	%
			3511807	유 산 반 토	kg
			3411301	판 지	%
3419999	인 쇄 용 지	%	3411101	쇄 목 필 프	%
			3511818	규 산 소 다	kg
			2909202	Talc.	%
			3513199	Resin	※
			34111 -	표 백 필 프	%
			2909202	Talc (활석)	%
			3511811	Alum (명반)	kg
			3529102	Starch(풀)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42	인쇄출판및관련업		3411103	신문용지	%
			3411201	백상지	%
			3419999	인쇄용지	%
			3411206	아트지	%
			3411207	박엽지	%
			3529702	인쇄잉크	kg
중분류 35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프라스틱제 품 제조업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kg	2902005	유황	%
			2902009	황화광석	%
3511101	유산	kg	3511808	유황	kg
3511102	염산	kg	2903001	소금	%
3511103	질산	kg	3511105	암모니아	kg
			3511201	산소	m ³
3511105	암모니아	kg	3530102	납사	%
			3530108	방카 C 유	ℓ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108	가성소오다	kg	2903001	천 일 염	%
			3511110	소 다 회	kg
			3511102	염 산	kg
3511110	소오다회	kg	2903001	소 금	%
			3511105	암 모 니 아	kg
			2904101	석 회 석	%
			3540901	코크스고정탄소	%
3511304	반 겐	kg	3530102	나 프 사	g
3511305	토 류 엔	kg	3530102	나 프 사	g
3511306	키 씨 렌	kg	3530102	나 프 사	g
35114 -	에 타 늘	kg	3511301	에 치 렌	kg
3511401	메 타 늘	kg	3511202	수 소	m ³
			3511844	일 산 화 탄 소	kg
3511402	호 르 마 린	kg	3530102	남 사	%
			3511401	메 타 늘	kg
3511404	V . C . M	kg	3511301	에 치 렌	kg
			3511609	E . D . C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405	폴리에치렌	kg	3511301	정제에치렌	kg
			3511201	酸 素	kg
3511410	에치렌그리콜	kg	35111 -	차아염소산	kg
			3511301	에치렌	kg
3511506	알킬벤젠	kg	3511302	Propylene Tetramer	kg
			3511304	벤젠	kg
3511508	무수프탈산	kg	3511399	O- Xylene	※
			3511299	N ₂ Gas	※
3511512	카프로락담	※	3511504	싸이크로헥산	kg
			3511505	암모니아	kg
			3511808	유황	kg
35117 -	염료	kg	3511304	벤젠	kg
			3511305	토류엘	"
			3511919	나프타린	"
			3511307	안드라센	"
35117 -	안료색소	kg	3511102	염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727	무기 안료	kg	3511901	초 산	kg
			3511108	가성 소다	"
			3511101	유 산	"
			351111 -	p-chloro-o-Nitroaniline	"
			3511111	Aceto-Acet-o-chloronilide	"
			35111 -	Sodium Dichromate	kg
			3511103	Nitric Acid	"
			3720105	연 피	"
			3511101	유 산	"
			3511110	소 다 회	"
3511801	카바이트	kg	2904101	석 회 석	%
			2101001	무 연 탄	"
			3540901	코 크 스	"
			3511905	사 카 린	kg
3511905	사 카 린	kg	3511514	O. T. S. A	kg
			3511515	무수 크롬산	"
			3511108	가성 소다	"
			3511101	유 산	"

사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 칭	단위	품목번호	원 재료 명	단위
3512101	요소비료	%	3511101	암모니아	kg
			3511203	탄산가스	m ³
3512104	석회질소비료	%	3511801	분말카바이트	kg
			3511299	질소개스	※
3512106	용성인비	%	2902002	인광석	%
3512201	복합비료	%	3530102	나프사	kg
			2902002	인광석	%
			3511808	유황	kg
			3511832	염화加里	kg
3513102	요소수지	kg	3511918	요소	kg
			3511402	포르마린	kg
			3411199	인견펄프	※
3513103	메라민수지	kg	3513102	요소	kg
			3511105	암모니아	"
3513111	P. V. C	kg	3511404	V. C. M	kg
			3511801	카바이트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 칭	단위	품목번호	원 재료 명	단위
			3511202	수 소	kg
			3511208	염 소	m ³
			3529402	활 성 탄	kg
3513201	S . B . R	%	35409 -	Butadiene	%
			35409 -	Styrene	%
			35299 -	공 업 용 염	%
			3511108	가 성 소 다	%
3513301	비스코스레이온섬유	kg	3411101	펄 프	%
			3511108	가 성 소 다	%
			3511822	이 유 화 탄 소	kg
			3511101	유 산	kg
3513302	아세테이트케이온 섬유	kg	35133 -	아 세 테 이 트	kg
			3511601	아 세 톤	kg
3513303	폴리 에 스틸	kg	3511509	P . M . T	kg
			3511410	에 치 렌 그리 콜	kg
			3511105	암 모 니 아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35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5231 -	비누	kg	3115101	우지	kg
			3115299	야자유	※
			3511108	가성소다	kg
			3511814	탄산소다	•
			3511818	규산소다	•
			3523306	그리세린	•
			35233 -	향료	•
			3511110	소다회	•
3523201	합성세제	kg	3511304	알킬벤젠	kg
			3511108	가성소다	•
			3511105	수산화암모늄	•
			3511810	무수망초	•
			3511818	규산소다	•
			3511814	탄산소다	•
			3511104	인산염	•
3523306	그리세린	kg	3511101	유산	kg
			3692201	소석회	※
3529201	다이 나 마 이 트	kg	3523306	그리세린	kg
			3511901	초산	kg

사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29301	성냥	1000갑	3511101	유 산	kg
			3512112	초 안	kg
			3511918	요 소	kg
			3121401	전 분	kg
			3511803	적 린	kg
			3530901	파 라 핀	kg
			3511832	염 소 산 칼 리	kg
			3511816	중 크 림 산	kg
			3511824	이 산 화 망 간	kg
			3511726	산 화 철	kg
3529401	카본블랙	kg	3620402	유 리 가 루	※
			2101001	석 탄 개 스	kg
			3511204	아 세 치 렌	m ³
			3530105	석 유	ℓ
			3530102	납 사	ℓ
소분류353	석유정제업		2210001	원 유	ℓ
35301 -	석유제품	ℓ	2210001	원 유	ℓ
			3511916	스 테 아 린 산	kg
			3529501	몬 탄 왁 스	kg
			3529917	지 방 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101	유 산	kg
			2902012	백 토	%
			3511108	수산화나트륨	kg
3530201	윤활유	ℓ	2210001	원유	ℓ
소분류354 35409 -	석유및석탄의잠재 품제조업 D . M . T	kg	2904202	백토	%
			3692201	소석회	%
			2909907	규조토	%
			3511101	유산	kg
			2101001	무연탄	%
소분류355	고무제품제조업		35111 -	Telephthalic Acid	kg
			3511401	메타놀	kg
			35118 -	硫酸	kg
			3216101	면사	kg
			3559908	생고무	%
35511 -	타이어	본	3513299	합성고무	%
			32164 -	화학섬유사	kg
			3529401	카본블랙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511-	튜브	본	3529401	카본블랙	kg
			3511903	노화방지제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513201	부틸고무	kg
35591-	고무신 및 운동화	족	3529401	카본블랙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559501	재생고무	%
			3511715	아연화	kg
			3511808	유황	kg
			32171-	면직물	m ²
			32176-	합성섬유직물	m ²
35592-	각종 고무벨트	ply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21-	범포지	m
			3529401	카본블랙	kg
			3559501	재생고무	%
			3216101	면사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56	가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3108	폴리에치렌	kg
			3511408	폴리프로피렌	kg
			3513110	폴리스치렌	kg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3513111	P. V. C	kg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2901201	점 토	※
			2904201	고령 토	※
			2904301	장 석	※
			2904402	규사 및 규석	※
			2909908	석 고	※
3610101	도 자 기	※	2904202	백 토	※
			2901201	점 토	※
			2904301	장 석	※
			2909903	규 석	※
36102 -	애 자 개		2904202	백 토	※
			2909903	규 석	※
			2904301	장 석	※
			2901201	점 토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610901	위생도기 ※		2904201	고령토	※
			2901201	점토	※
			2909903	규석	※
소분류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904101	석회석	※
			2904301	장석	※
			2909903	규사 및 규석	※
			29099 -	초석	※
			2909301	형석	※
3620101	판유리 상자		2904401	규사	※
			2904101	석회석	※
			2909904	백운석	※
			3511110	소다회	kg
			3511809	망초	kg
			3511924	아미산	kg
			3620402	유리 및 유리설	※
소분류 369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2904301	장석	※
			2902012	백토	※
36913 -	타일	m ²	2901201	점토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 칭	단위	품목번호	원 재 료 명	단위
3692101	시멘트 및 크링카	%	2909201	남 석	%
			2904101	석 회 석	%
			23010 -	철 광 석	%
			3692302	석 고	kg
			3412101	지 대	개
3699205	석 먼 스투트	m ³	3692101	시 멘 트	%
			3699603	석 먼	kg
			34111 -	팔 프	%
중분류37	제1차 철강제조업				
소분류371	제1차 철강제조업				
3710101	선 철	%	23010 -	철 광 석	%
			3540901	코 크 스	%
			2904101	석 회 석	%
			3710905	고철 및 철 설	%
			2909301	형 석	%
			2909201	남 석	%
			2302201	망 강 광 석	%
			2904401	규사 및 규사석	※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10102	강괴	%	3710101	선철	%
			3710905	고철 및 철설	%
			2904101	석회석	%
			2909301	형석	%
37102 -	형강 및 강반성품	%	3710102	강괴	%
			3710104	강반성품	%
37102 -	특수강	%	3710905	고철	%
			3720108	망간괴	kg
			3691403	내화물	%
			3692202	생석회	%
			2904101	석회석	%
			2909301	형석	%
3710207	선재	%	3710102	강괴	%
소분류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720104	동괴 및 천기동	kg	2302401	동광석	%
			2904101	석회석	%
			3511101	황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20105	연 피	kg	3540901	코 크 스	%
			2302911	연 광 석	%
			2904101	석 회 석	%
			3710905	고 철	%
			3720106	아 연 피	%
			3540901	코 크 스	%
			3511101	유 산	kg
3720106	아 연 피	kg	2302501	아 연 광	%
			2101001	석 탄	%
			3540901	코 크 스	%
3720109	알 미 늄 피	kg	2302901	보오키사이트	%
			3511108	가 성 소 다	kg
3720201	구리 판 및 관	kg	3720104	동 피	kg
			3720103	진 유 피	kg
			3720106	아 연 피	kg
			3720108	망 간 피	kg
			35118	인	kg
			3530901	파 라 핀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표 명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20203	알미늄판	kg	3720109	알미늄피	kg
			3720301	알미늄주물	kg
중분류 38	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장비제조외)				
3813003	보일러	대	37102	철	kg
			3710201	파이프	kg
			3691499	내화물연와	kg
			38197	버너	개
			38311	모타	개 (마력)
3819506	와이어로드	kg	3710207	와이어로드	kg
			3530202	그리스	kg
			3530107	경유	ℓ
			3530101	방커유	ℓ
			3720106	아연피	kg
			3720105	연피	kg
			3511712	염산	kg
3819601	기계나사 (볼트 나트)	kg	3710202	환강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82 3821103	일반기계제조업 디젤기관	대	3530109	방카 C 유	ℓ
			3540901	코크스	ℓ
			3819505	용접봉	kg
			35210 -	페인트	ℓ
			3710203	육각강	ℓ
			3710302	주철	ℓ
			3710903	단강	ℓ
			3710204	기계구조용탄소강	ℓ
			3720104	황동	kg
			3720201	동판	kg
			37101 -	Stainless 봉	ℓ
			37102 -	철판	ℓ
			3720201	동판	kg
3822002	동력탈곡기	대	3311107	목재	※
			37102 -	철판	ℓ
			3843299	베어링	※
			3710199	철강	※
			3819405	철선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23204	압축기대		3710302	주철주물	%
			3720104	붕동	"
			37102 -	강판	"
			38311 -	모타	HP (마력)
			3829902	베아링	kg
3825004	복사기대		38392 -	수은등	개
			3829999	스퀴즈로라	※
			3839903	스위치	개
			38311 -	모타	HP (마력)
			3819706	히터	개
			3832901	콘벤서	"
			3842210	시린더	대
			3233101	벨트	ply
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31102	전동기 (마력)		3720201	규소동판	kg
			3839999	전기동	※
			3829902	불베아링	kg
			3720109	알미늄괴	kg
			3710199	철강재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31201	변압기	K.V.A	3720201	규소동판	kg
			3839999	전기동	※
			36102 -	특고애자	개
3831904	전기용접기	대	3720201	규소동판	※
			3720104	동	kg
			381	기타철재	※
3831907	정류기		37102 -	규소강판	※
			37102 -	철판	※
			3720201	동판	※
			3832409	트랜지스터	개
			3832901	콘덴서	개
			3710302	주철물	※
3832411	계전기 및 계측기	대	3720201	규소강판	※
			3710212	대 (帶鋼)	※
			3720109	알미늄	※
			3530201	복수윤활유	ℓ
3839103	합성수지절연전선	kg	3720104	동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39105	전력케이블	kg	3819406	선	kg
			3513108	포리에치렌수지	kg
			3513111	P.V.C수지	kg
			3513201	합성 고무	kg
			3720104	동 피	kg
			3819406	동 선	kg
			3513108	포리에치렌수지	kg
			3513111	P.V.C수지	kg
3839106	통신용케이블	kg	3720105	연 피	kg
			3720109	알미늄 피	kg
3839301	축전지	개	3511101	황 산	kg
			3720105	연 피	kg
			3720207	극 판	kg
			2302910	안티몬	kg
			3530902	핏치	※
			3529401	카본블랙	kg
3839401	건전지	개	3720207	아연판및선	kg
			3720108	망강피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29401	카본블랙	kg
			3710902	석도철판	%
			3699901	탄소분	kg
			2101001	무연탄	%

부록 8.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척 (尺)	정 (町)	리 (里)	미 (米)	촌 (寸)	척 (尺)	파 (浬)	리 (哩)
척 (尺)	1	0.00277	0.00077	0.30303	11.5905	0.5942	0.331403	0.000188
정 (町)	360	1	0.02777	109.09	4,294.99	367.916	119.306	0.067784
리 (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4.99	2.46033
미 (米)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寸) (in)	0.066818	0.00232	0.000006	0.025999	1	0.08333	0.27777	0.000015
척 (尺)	1.00582	0.00293	0.000474	0.304974	12	1	0.33333	0.000189
파 (浬)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哩)	5,310.73	14	0.469779	1,609.31	63,960	5,280	1,760	1

중량

	돈 (匁)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 (兩)	돈 (兩)
돈 (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 (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斤)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0.000661
그램 (g)	2,266.66	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6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1.693.41	453.592	16	1	0.000466	0.00005
돈 (兩) (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兩) (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1

용적

	홉(舍)	승(昇)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개롱(영)	개롱(미)
홉(舍)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9
승(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185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185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부록 4. 조사표류

(2)

1.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재한다.
○ 품목별 원재료 품목 출하액 합계는 100(100)이며, 품목별 원재료 품목 출하액 합계는 100(100)과 같아야 한다.

입력 번호	품목분류번호	외세 품명	단위	(1) 품목별 원재료 출하액			(2) 품목별 원재료 재고액			(3) 품목별 원재료 연말 재고액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1	3216101	머사	kg	3065.650	183.3	2.8	5967.8	82.262	40	1.2	8	
2	3216114	반론반격물	kg	89.091	6.6	0.1	1307.9	21.242	1	0.03	8	
3	3216104	기라아변조	kg	188.560	3.4	0.1	846.1	10.088	1	0.03	1	
4												
5												
6												
7												
8												
합계				3519.1	1.5		91.5			22.2	0.2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생산원재료 품목 및 품목분류에 의한다.
○ 품목별 원재료 품목 사용액 합계는 100(100)이며, 품목별 원재료 품목 사용액 합계는 100(100)과 같아야 한다.
○ 품목별 원재료 품목 사용액 합계는 100(100)과 같아야 한다.

입력 번호	품목분류번호	원재료 명	구분	단위	(1)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2) 품목별 원재료 재고액			(3) 품목별 원재료 연말 재고액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1	111408	쇠	2	kg	6527.96	80.3	1.6	512.796	6.3	0.7	4		
2	3216105	포리메스칼사	2	kg	1221.523	6.1	0.2	122.766	7.2	0.8	0		
3	3216107	P.V.A 사	1	kg	1.819.514	6.1	0.0	1.66.089	4.1	0.2	4		
4	3216102	쇠	1	kg	2.809.714	4.0	0.2	486.667	5.1	0.0	0		
5	3216105	화강 석양사	1	kg	413.121	3.1	0.0	41.613	3.2	0.0	1		
6	3216103	인견사	1	kg	1.48.444	1.0	0.0	14.567	1.0	1.0	0		
7	3216119	기라아면직물	1	kg		3.0	0.2			1.0	0		
8			2								2		
9			2										
10			2										
11			2										
12			2										
13			2										
14			2										
15			2										
16			2										
17			2										
합계					1363.2091	2.8	0.6	135.498	2.6	0.4	1.9		

15. 동력시설

○ 수리중인 것과 예비용을 포함하여 1973. 12. 31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력시설의 능력을 기재한다.
○ 동력기에는 사무용 기계나 실내강제에 부착된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에는 차량용과 선박용을 제외한다.

입력 번호	동력기	원동기	(3) 자가발전능력											
												HP	KW	원동기
1	700	HP	8	8	8	8	8	8	8	8	8	8	8	8
2														
3														
4														
5														
6														
7														
8														
합계												700	8	8

16. 건설기계

○ 건설기계는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출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입력 번호	건설기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 건설기계			(2) 건설기계			(3) 건설기계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1																
2																
3																
4																
5																
6																
7																
8																
합계								1363.2091	2.8	0.6	135.498	2.6	0.4	1.9		

17. 조차료 작성근거

○ 조차료 및 재고액과 제18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 () 안에 표시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조차료는 복차료를 말한다.

입력 번호	조차료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 출하액 및 재고액			(2) 유형고정 자산		
								수	액	비율	수	액	비율
1													
2													
3													
4													
5													
6													
7													
8													
합계								3658.927			40		

18(A) 유형 고정자산
(법인사업비용)

- 본란은 제17항(연도별)에 1년 초과한 또는 사업해제 대상이다.
- 자산분류(3) 적용대상인 경우, 본항을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2) 적용에 포함한다.
- (2)항의 적용대상인 경우, 본항을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2) 적용에 포함한다.
- (3)항도 본항과 같이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본항을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2) 적용에 포함한다.
- (5)항도 본항과 같이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본항을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2) 적용에 포함한다.
- 1973년 및 1990년 현재 종말가액은 연도별 현재가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종말가액이 연도별 현재가액을 초과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표시한다.

자산분류	(1)1973년말 현재총액가액	(2)1973년 유형 고정 자산 취득액 및 처분액						(3)연도별 순자산취득액(연간취득액-연간처분)					(4)1968년말 현재총액가액	(5)1973년 자산취득가액 유형 고정자산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계정가액전기말잔고		취득가액후기말잔고	
		신	중고	신	중고										
1. 토지	8,990명		2,520명		1,320명		820명	190명	780명	100명	8,920명				
2. 건물	3,200명		500명		800명		2,000명	1,000명	4,900명	800명	2,000명				
①채권상조 및 환급조	3,200명		500명		800명		2,000명	1,000명	4,900명	800명	2,000명				
②토비·목조 및 목구조															
3. 건물부속설비	12,210		2,040		1,000		2,100	1,400	2,220	1,200	8,230				
4. 구 축물	9,820		1,300		500		520	940	600	2,000	5,241				
①차기발전 및 급수시설	9,000		800		900		2,200	600	900	1,000	5,241				
②교통신선 및 기타	820		540		100		300	340	900	1,000	1,241				
5. 기계 및 장치	99,940		9,940		20,000		9,820	9,840	20,000	9,800	99,940				
6. 공구·기구및비품	9,010		9,010		3,010		9,010	9,010	3,010	3,010	4,200				
7. 차량 및 운반구															
8. 선박															
합계	124,015		18,290		10,640		13,830	12,940	7,280	1,040	133,741				

주 의

1. 본조사표는 조사표(1)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시과정에서부터 조사표 제출 및 심사과정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 조사표 우측상단의 「조사구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란은 제외).

8B: 유형 고정 자산
(계정: 기업채용)

○ 본질은 제17장(2)항에서 2) 또는 ③에 의해 모든 사업에 해당한다.
○ 자산분류(4, 기계 및 장비, 5, 동구, 도구 및 비품, 선박, 선박 및 운반구)에는 기계의 큰 자산부의 자산명, 수량 및 금액으로 기입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입한다.
○ (2)항의 건물에는 모든 구입품(의류, 가구, 차량, 차량용 부품 포함)과 증, 개조액을 포함한다.
○ (3)항 목적에 사용되는 비품에는 해당 유형 고정 자산의 명칭과 함께 구입 이용되는 비품을 부록으로 표시한다.
○ (1)소유권과 (2)지, 종교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예: 토지는 종교번호로 2에 표시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년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자산분류	수량	(1)소유권		(2)목적		(3)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품	(4)1973년 말 현재		(5)1973년 유형 고정 자산		인건처분액
		차용	취득 시기	취득 시기	취득 시기		신분	중고 품	취득액	잔액	
토지	90평	2	1965년	1	2	15%	2,000	2,000	2,000	2,000	500
건물	1,000평	2	1966년	1	2	15%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계, 차량 및 장비	2	2	1967년	1	2	15%	800	800	800	800	800
① 선박	2	2	1967년	1	2	15%	200	200	200	200	200
② 프로세서	2	2	1967년	1	2	9%	190	190	190	190	190
③ 가스공급기	2	2	1968년	1	2	9%	190	190	190	190	190
④ 전동기	2	2	1968년	1	2	9%	90	90	90	90	90
⑤ 합축기	2	2	1969년	1	2	5%	80	80	80	80	80
기타	2	2	1969년	1	2	5%	80	80	80	80	80
공구, 도구 및 비품	2	2	1966년	1	2	10%	200	200	200	200	200
① 특수정확도	2	2	1966년	1	2	10%	200	200	200	200	200
② 현수공구	2	2	1968년	1	2	5%	40	40	40	40	40
③ 개비 및	2	2	1970년	1	2	4%	80	80	80	80	80
④ 습도	2	2	1970년	1	2	4%	80	80	80	80	80
⑤ 의자	2	2	1970년	1	2	3%	60	60	60	60	60
기타	2	2	1970년	1	2	3%	60	60	60	60	60
차량, 선박 및 운반구	2	2	1970년	1	2	2%	40	40	40	40	40
①	2	2	1970년	1	2	2%	40	40	40	40	40
②	2	2	1970년	1	2	2%	40	40	40	40	40
③	2	2	1970년	1	2	2%	40	40	40	40	40
합계							6,200	6,200	6,200	6,200	6,200

적요: 구분이 힘든 품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입한다.
장부가 및 기타 관련 항목이 때때로 공적으로 다루어 드리는 자산에 대하여
수입에 취득한 자산은 본래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량 x 가격 (수량 x 가격) 하여
취득액, 수입으로 자산 재평가를 하였다.

4. 본 조사항은 조사표(1)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사과정에서부터 조사표 제출 및 실사과정까지 서로
관련조사표, 우측 상단의 「조사표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상관없는 제외)

조사표번호	조사표명	조사표번호	조사표명	조사표번호	조사표명	조사표번호	조사표명
271	조사표명	272	조사표명	273	조사표명	274	조사표명
275	조사표명	276	조사표명	277	조사표명	278	조사표명
279	조사표명	280	조사표명	281	조사표명	282	조사표명
283	조사표명	284	조사표명	285	조사표명	286	조사표명

1973년

광공업센서조사표 (II)

(본사·본점 조사용)

공제법의 공제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작성제안사용하에 그 이용은 원대 보장된다.

결재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 번호	조사표 번호	사업체 번호	사업체명	상설사	기준계월
1112001	3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 한국 X X 주식회사
 대표자명 : 홍 권 등
 전화번호 : 53. 4327 /

2. 창설년월일

1949년 4월 24일

3. 조직형태

법인단체 (1) 주식회사() (2) 기타법인()
 (3) 개 인()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하여 1973.12.31년
 재발행이 완료된 금액

액의십의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단위
3	5	8	0	0	0	0	0	0	0

5. 종업원수 및 연금급여액

(본사·본점만에 한함)
 ○ 사업주 및 부가가공 종사자는 직종(4시간 이상 종사)이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게는 상용임시직 및 일용직과 별가, 단기종업원과 피고용자 및 피고용자 모두 포함하며, 장기 종업원은 제외한다. (유연한 월에는 피고용자 수 일제 스프레드한다.)
 ○ 연간 급여액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월보로 지급한 것과 미분배한 포함한다. (퇴직연금과 장기연금과 및 조부부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	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	가	금	액	단	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사업주및부가가공종사자	3	2	2	2	3	2	3	2	1					
(2)	피고용자	160	158	162	157	159	150	37	0	4	1	2	9		
합	계	163	160	164	160	162	38	37	0	4	1	2	9		

6. 원재료 및 연료제조액

○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연초 재고액은 1973.1.1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3.12.31 현재로 기입한다.
 ○ 금액은 장부기록에 의하거나 이에 의하지 않으면 되는 각자 시가로 명한다.

구	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①	원	계	4	2	1	0	0	0	0
②	연	1	2	1	0	1	3	0	1
합	계	3	6	3	1	3	4	0	1

주(註) : *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7. 판매 사업체명부

○ 1973.12.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장기불공구분한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시한다.
 ○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非)광공업과의 경계인 경우에는 비(非)광공업에 표시한다. (주요생산품명은 기입한다.)
 ○ 비(非)광업의 경우에는 비(非)광업에 해당 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도매업, 무역업, 건설업 등)

사	업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계	지	종	경제활동 구분				비	
										원	수	평	공		경
①	한국 X X	주	식	회사	본	사	55	5	190	0	0	0	0	0	0
②	한국 X X	주	식	회사	대	리	24	3	200	0	0	0	0	0	0
③	한국 X X	주	식	회사	인	건	2	100	160	0	0	0	0	0	0
④	한국 X X	주	식	회사	과	경	2	100	160	0	0	0	0	0	0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건설기계장

○ 건설기계장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더라도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구	분	(1) 건설기계장		(2) 건설기계장		(3) 연간증감	
		백	십	천	만	백	십
①	원	5	0	0	0	0	0
②	연	0	0	0	0	0	0
합	계	5	0	0	0	0	0

9. 조사표 작성근거

○ 제공한 원재료 및 연료제조액과 제1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 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경우는 부가기표를 말한다.

구	분	(1) 원 재료 및 연 료 조 직 고 액		(2) 유 형 고 정 자 산	
		①	②	①	②
①	장	부	(0)	장	부 (0)
②	연	부	기	연	부
③	기	액	()	추	경 ()

10. 유형고정자산

① 자산분류종류 (1) 건물부속품에는 장부상 부분이 곤란할 경우 12 항목에 포함한다.
 (2) 건의 건물에는 모든 수입품(의류, 의구, 의구, 의구)과 조립된 의구(의구, 의구)를 포함한다.
 ② 임대료 수입 자산 취득에 있어 연건위특액이 연건위특액보다 많을 경우 「△」표로 표시한다. 그 차액을 기입한다.
 ③ 자산취득가액 유형고정자산에서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취득의 취득가액이 전과목 기입한다.
 ④ 1973년 및 1968년 말 현재 종결가액은 연말현재로 기입한다. 다만, 종결가액이 곤란할 경우 동결가액으로 장부금액을 기입한다.
 ⑤ 해당 사항이 없는 단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자산분류	(1) 1973년말 현재종결가액		(2) 1973년말 현재종결가액		(3)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액)		(4) 1968년말 현재종결가액		(5) 1968년말 현재종결가액		자산취득가액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
	신	중고품	신	중고품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1. 토지	8,970 평	2,520 평	1,320 평	1,320 평	520 평	670 평	980 평	100 평	5920 평	XXXXXX	XXXXXX
2. 건물	1,190 평	500 평	260 평	260 평	1,040	1,340	1,560	200	1,2840	9020	1,0970
3. 건물부속	3,200 평	500 평	200 평	200 평	2,000	1,000	1,900	800	2,000	1,8270	1,9290
4. 구축물	1,250 평	2,050 평	1,800 평	1,800 평	2,100	1,400	2,220	1,200	6230	5620	5,980
5. 기계및차	9,7340	1,240	1,060	1,060	520	800	600	200	5240	4800	4,970
6. 공구·기구	1,690/10	1,5290	1,060/4	1,060/4	13/83	12/140	2280	240	12904	117364	12,2433
7. 자산및											
8. 선박											
합계											

① 작성년월일 1974년 4월 9일
 ② 응답자소속 총무. 차 (전화 13.4321)
 ③ 응답자 성명 김사각
 ④ 조사원 성명 손도음
 ⑤ 지도원 성명 김도영

적요: 유고사유, 기타 참고 사항등을 기입한다.
 전액가액감공하는 부속품은 570평이 들었으며 장치는 기계및차로

1974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 개요	3
1. 조사 목적	5
2. 조사의 법적근거	5
3. 조사 연혁	6
✓ 4. 조사 체계	7
5. 조사 시기	7
6. 조사 범위	8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3
10. 조사표 종류	14
11. 조사 방법	14
12. 집계 및 공포	15
II. 조사원의 임무	17
1. 조사 업무의 순서	19
2. 조사용품의 수령	19
3. 사전 조사	20
4. 면접요령 및 실사	22

5. 실사 진도보고	25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5
7. 기 타	26
Ⅲ. 조사표 기입요령	29
1. 일반적 유의사항	31
2. 항목별 기입요령	32
가. 조사표Ⅰ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2
나. 조사표Ⅱ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52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55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57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59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 가격표	81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93
부록 3. 조사표류	97

I 조 사 개 요

I.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광공업통계조사는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생산활동
을 파악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투자, 생산등의 제반 상황
을 측정함으로써,

가. 공업화의 정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매년 파악하고

나. 정부의 장단기 경제정책 입안과 경제시책의 효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 (법률 제 980호) 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
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 (漏洩) 하거나 도용 (盜用)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懲役) 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 (罰金) 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통계법제11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규정, 제21
조: 벌칙 규정)

< 통계법(조) >

제2조(정의) 본법에서 지정 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

제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조 (신고 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10조 (비밀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懲役) 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조사연혁 (沿革)

광공업 센서스 (지정통계 제 6호)

1 회	1955 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 년	한국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 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4 회	1963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 년	"	" "
6 회	1968 년	"	" "
7 회	1973 년	경제기획원	주관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7 호)

1 회	1967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 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 년	"		
4 회	1971 년	"		
5 회	1972 년	"		
6 회	1974 년	"		

4 . 조사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 → 시장 및 도지사 → 지도원 → 조사원 → 대상 사
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 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등의 사무에 종사
하며 관할 조사원을 지도 감독 한다.

다. 조사원

조사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 하고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 조사시기

가. 조사기준일 : 1974. 12. 31 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4.1.1 ~ 1974.12.31 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75.4.1 ~ 4.30 일까지 (1개월간)

6. 조사의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에 해당하는 「광업 및 채석업」과 대분류「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 (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 (석탄가스), 액체 (원유), 고체 (석탄 및 금속) 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채광 (採鑛), 세척 (洗滌), 체질, 선광 (選鑛), 용해 및 건조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사업자가 하든 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3699) 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든, 집에서 행하여 지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 (農林水産業) 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 (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 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정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동 및 전선등을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거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위탁제조는 임가공로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 소매업 부문에서 위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수리업(修理業) 또는 써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 써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백, 염색, 정리(整理) 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배)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지역식당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974년 12월 31일현재 국내에 실재(實在) 하는 사업체로서,
가. 1974년 12월 31일현재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체
나. 1974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다. 1974년 12월말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1) 1974년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2) 조업기간(操業期間)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이었던

사업체,

(예 : 제빙업 사업체)

라. 제염사업체(製鹽事業休)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더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8. 조사 단위 (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
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
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
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
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데 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9. 조사 사항

가. 조사표〔Ⅰ〕(사업체용)

- | | |
|------------------|------------------------|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 ⑩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 ② 본사명 및 소재지 | ⑪ 연초 연말 재고액 |
| ③ 조직 형태 | ⑫ 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 ④ 창설년월일 | ⑬ 주요 생산비 |
|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⑭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 ⑥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⑮ 건설가계정 |
| ⑦ 종업원수 | ⑯ 조사표 작성근거 |
| ⑧ 월별 조업일수 | |
| ⑨ 연간급여액 | |

나. 조사표〔Ⅱ〕(본사(본점)용)

- | | |
|-----------------|--------------|
| ①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③ 조직 형태 |
| ② 창설년월일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⑤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⑧ 건설가계정
- ⑥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⑨ 조사표 작성근거
- ⑦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⑩ 관할 사업체 명부

10. 조사표의 종류 (調查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 가. 본 조사표(Ⅰ).....본사 이외의 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 나. 본사 조사표(Ⅱ).....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할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Ⅰ)에 작성한다.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조사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

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자계식(自計式) 조사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12. 집계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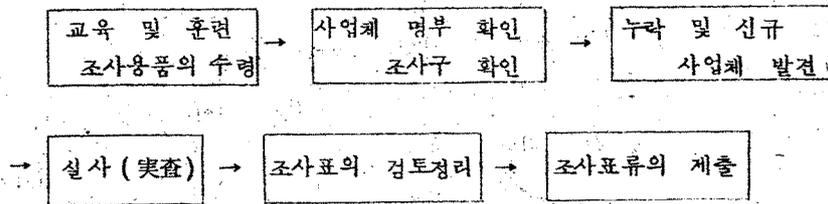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Ⅱ 조 사 원 의 임 무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 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라. 참고 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1) 실사진도 보고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표 가방

야. 기타

3. 사전조사 (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교육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4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 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4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4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하고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 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토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마) 담당 조사구내에 1975년도에 신설사업체가 발견될 때

명부 후단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5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4. 면접요령(面接要領)과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 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3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선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實査)

-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방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나) 이 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①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②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③창설년월일 ④조직형태 ⑤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⑥종업원수 ⑦급여액 ⑧품목별 출하액 및 연초, 연말재고액 ⑨연초, 연말재고액(품목별 내역 포함)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 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자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
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 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 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실사진도보고 (實查進度報告)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 등 조사활동사항을 실사진도보고(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관할 조사원으로부터 실사진도보고를 수집하여, 문제조사구에 대해서는 지도지침에 의거 처리한 후 실사진도와 함께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한다.

라. 실사진도보고 제출일자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조 사 원	4 월 6 일	4 월 16 일	4 월 26 일
지 도 원	4 월 8 일	4 월 18 일	4 월 28 일
책 임 지도원	4 월 10 일	4 월 20 일	4 월 30 일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조사원 입회하에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 한다.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킨 사업체를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조사표를 4월 30일 이내에 완전히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체명부의 조사표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가방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실사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지도원은 지도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완료하여 시,도 단위로 조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용지 결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転写)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제법참조).
- 바. 배부하고 남은 첩조의뢰공문이나 배부된 책자는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기입요령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 완료후 심사, 분류, 집계 등 여러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인크」나 「블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깨끗히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등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과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적색으로(=)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단위는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단 환산이 극히 복잡하여 어려울 때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요란에 기입하도록 노력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 (I) 의 항목 (項目) 별 기입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 (또는 사업주) 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의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대전시	은행동	136번지의	16호(2통3반)
충청남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

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계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계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 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월일(創設年月日)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월일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조직 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 (기업체) 의 법적조직 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 (商法) 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合名會社), 합자회사 (合資會社), 유한회사 (有限會社) 와 민법 (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 (法人格) 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 (任意團體) 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 (기업체) 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 내에 ○표한다.

5) 자본금 (資本金) 또는 출자금액 (出資金額)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나) 1974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6) 주요 생산품 및 생산공정 (生産工程)

가) 주요 등산품명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가) 1974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나) 만일 (가) 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 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4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 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 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리) 조사표(I)13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항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 사용 원재료명

- (1) 이 항목은 원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
지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다.
- (2)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두 종류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사용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마) 생산공정 (生産工程)

-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
(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 한다.

예: (가) 광업의 경우

-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畝)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澱粉)→당화→발효→농축→산분해(酸分解)→여과→
농축→염산염(鹽酸塩)→탈색→결정→구루타민산소다」

-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침전→전분→

정제→생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
→탄산수주입→탄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原綿)→면조(綿條: sliver)→정방(精紡)→단사
(單糸)→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면사(綿糸)」

⑤ 면직물(면포)을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整經)→호부(湖付)→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초지(와이어에
의한 초지)→건조→완성→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선별→분쇄→약물배합→탈유(脫硫)→재생→포장
→재생고무」

⑧ 리사지 < 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 함색
산화연 > 연분식(鉛粉式)

「납→용융→성형→연분→산화→분쇄→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배합→성형→소성(燒成)→벽돌」

7) 종업원수(從業員數)

가)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

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만으로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용자(被雇傭者)

-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료(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교(日雇)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1)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 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内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공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등을 말하며 법인에게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종역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다)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용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월별조업일수(月別操業日數)

가) 1974년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경영(兼營)하는 경우(예, 상업·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연간급여액(年間給与額)

가) 1974년 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4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4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4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4 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 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4 년간에 일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4 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선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증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転売)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駅渡)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内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란에 기입한다.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기입한다.

(7) 완제품 출하액은 13항의 (가)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폐품판매액 (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 받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가) 완제품출하액에 제상한다.

11) 연간 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4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4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2) 동일 기업체의 타사업체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기입한다.
- (3)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 (상업, 서비스업, 건설업) 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 (總投入量) 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 (時價) 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나) 연료비 (燃料費)

- (1) 1974 년간에 가열로 (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 (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 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 (購入電力費)

- (1) 1974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4 년 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購入用水費)

1974 년 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販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제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서 회계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4 항 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4 항 유형고정 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12) 연초, 연말 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4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4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 II 참조)

-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13 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말재고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3)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0-(가)」 완제품 출하액과 「12-①-(가), (나)」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당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과 합계는 「10-(가)」와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2-①-(가), (나)」와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가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4) 유형고정 자산의 연간신규취득액 (연간중고취득액) 및 연간처분 및 손해액

가) 유형고정 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 자산은 제외한다.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貸地), 사택대지(社名貸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 건물과 승강기

(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건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3)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炉), 가열로(加熱炉), 용광로(熔礦炉),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装置)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 연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4 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増改築) 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2) 중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한다.

(3) 평가(評價)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경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4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1)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칠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15)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 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증당된 재료 및 기계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입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라)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표시를 한다.

마)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16) 조사표 작성 근거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적 요

가)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 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극히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 다) 이상 가), 나) 외에도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만한 것은 기입한다.

나. 조사표 Ⅱ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시 조사표(Ⅰ)에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Ⅰ)의 제2항과 동일
- 2) 창설년월일 : 조사표(Ⅰ)의 제3항과 동일

3) 조직 형태 : 조사표 (I) 의 제 4 항과 동일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조사표 (I) 의 제 5 항과 동일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 (I) 의 제 7 항과 동일하다 .

나) 연간급여액

본사 (본점) 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4 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 (I) 의 제 9 항과 동일하다 .

6) 원재료 및 연료 개고액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각 연초·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

7) 유형고정 자산

가) 유형고정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 (공장) 의 증축·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

다)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14항과 동일하다.

8) 건설가계정 : 조사표(I)의 제 15항과 동일

9) 조사표 작성근거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10) 관할사업체 명부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傘下)사업체를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 2개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다)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II)는 조사하지 않는다.

라)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IV 조사표검토정리요령

IV.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정리 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 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 명부상 조사표번호 = 요계표 번호 = 조사표상 조사표 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5) 사업체 명부상 명부기입요령에 의거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6) 사업체 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7)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8) 주생산품명이 "완제 품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9)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10)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11)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

한다.

- 12) 위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3)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14)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여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5)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6)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가) 「연간 주요생산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검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급여액 총계는 (연말재고액 합계 - 연초재고액 합계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8)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19) 연간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별,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치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20)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항 (가) 완제품출하액 - 13 항 (가) 품목별 완제품출하액

12 항 ①, (가), (나) 완제품고액 - 13 항 (나) 품목별 완제품고액

21)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2.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 생산도량명표로*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사업체는 실사진도보고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년,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광업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연탄(354010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소분류 230 (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조사항목 13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에는 광석의 품목명을 기재한 후 팔호하여 품위를 기입한다. 품위는 해당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 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도 순도 또는 함유량을 발호안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분류
36
분류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취수연은 모리브테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소분류 290 (비금속 광업)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 (대리석 및 돌조작품)에 분류한다.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관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되어야 한다.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두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면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

1) 소분류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판(can) 또는 상자(C/S)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99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하므로 품목란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10-다)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벼, 보리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산
물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 (각종 가루 부산물)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료는 3122001에 분류한다.

라) 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마)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
함시키지 말고 3121299 (기타의 장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 (31213)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 산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에, 돌린은
3511915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봉지"로 조
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엿의 단위는 kg이다. 불엿 역시 kg으로 환산조사 한다.

산
물

1kg 이상 주류

2)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가) 알콜 1%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이하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사업체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
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 (현재 생산하는 사업체)
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
이 사업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합

하여 조사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ℓ임으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ℓ로 환산하여야 한다.

$$1 \text{ 되} = 1.8 \text{ ℓ}$$

$$1 \text{ ℓ} = 0.556 \text{ 되}$$

마) 환타, 오란 C 등의 청량음료는 쥬우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25°	ℓ	200
3131201 } ×				
3131201	소 주	30°	ℓ	300
3131201 ○	소 주	25°~30°	ℓ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분류

방직	천	연	섬	유	{	식물성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자모섬유 - 목화 靛皮 " - 아마, 저마, 대마 엽맥 " - 말뚝지아삼, 사이잘삼 과실 " - 야자, 수세미 莖 乾 " - 중여등
						동물성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사 - 양모, 염소털 (모헤어, 카시미아) 낙타털, 토끼털등 잠 사 - 가잠견사, 작잠사, 천잠사등 잠 섬유 - 羽 毛
						광물성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 면
						화학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섬유 (펄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스코스 레이온 (Viscos Rayon) 스프사 (Staple Fiber) 큐프라 레이온 (Cuprammonium Rayon) 牛乳蛋白섬유 (Fibrolane) 반합성섬유 (펄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테이트 레이온 (Acetate Rayon) 합성섬유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yamide fiber - 나이론 Polyester fiber - 테레렌 메드론 Polyvinyl alcohol fiber - 미쿠론 비닐 Polyacrylic fiber - 액스란 개시미론 Polypropylene fiber - 파이론 오프론 Polyethylene fiber - 玩具, 포장지, 필름, 어망사, 건축재등

나) 섬유의 통일명칭

섬 유 의 종 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저마)	마	Linen &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銅) 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트레이트 섬유	아세트레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이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V.A.
폴리 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V.C.
폴리 염화비니리덴계 섬유	염화 비니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 로니트릴계 섬유	아 크 릴	Polyacryl
폴리에스텔계 섬유	폴리에스텔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폴리청화 비니리덴계 섬유	청화 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비고 : 기타 섬유 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혼방사 및 혼방적물의 기준량 비율(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
으로 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파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합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
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률일 때는 합성
섬유,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순(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화섬) : 40(모)로 하고 동률일 때에
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이상의 타 섬유
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
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호칭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
률일 때 견을 택한다.

(나) 견이 30% 미만인 경우에 견과 이종이상의 타화학섬
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다) 견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견을 택한다.

(4) 이종의 화섬혼방

등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여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타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라) 면사 생산업체

경 방 (영 등포)	동일방직 (인천, 안양)
전 방 (광 주)	한일방직 (인천)
합동방직 (대구, 대전)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 안)	대동방직 (안양, 청주, 대구)
풍한산업 (대 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 등포)	국제방직 (마산) < 75년 가동예정 >
윤성방직 (구 미)	영남방직 (대구) "
삼화방직 (부 산)	영화방직 (월성) "

마) 항목별 유의사항

- (1) 면혼방사는 면사에 포함한다.
- (2) 화학섬유 방직사는 (32164 -03 , -04 , -05 , -06 , -07 , -08) 일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 정을 완료한 사(糸) 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각종 화학섬유 (35133) 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m²임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4) 각종 세복직물 (3217501) 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이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 (5) 포백, 염색 및 정리업 (32180) 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등의 포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

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
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롤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하
다. (9520 에 분류)

(6) 갈포벽지는 지정단위가 m^2 인데 사업체에서 1 Roll로 응답
하면, 1 Roll = 6.6885 m^2 으로 환산한다.

4)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 (편직업)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9520 에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베리야스제 내의 편직업 : 32133

편직물 장갑 제조업 : 32132

고무 장갑 제조업 : 35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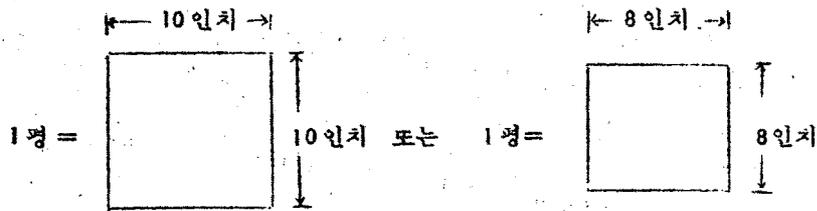
베리야스제 모자 : 32134

5)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평」 또는 「매」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2 임으로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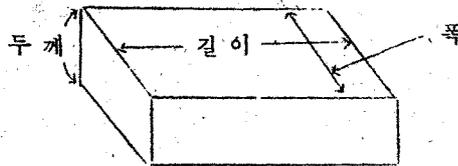
※ 단위환산법 (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르다)



- ① 사방 10인치인 경우 = $0.0645 m^2$ ② 사방 8인치인 경우
 1매 = 30 - 40평 = $0.0413 m^2$
 1매 = $3.7 m^2$ (40평) 1매 = $3.3 m^2$ (30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 / ply 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서 자(尺)나 m 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m / ply 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Ply의 규격 : 길이 1자, 폭 1인치, 두께 1.4 mm
 m / Ply 의 규격 : 길이 1m, 폭 1인치, 두께 1.4 mm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프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제조업)

가) 프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 (제재, 롤크 및 나무제조업)

이 산업에 속하는 각재, 완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단위는 m^2 인바, 아직도 才, 매, B/P, S/P 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m^2 로 환산하여야 한다.

$$\text{즉, } 1\text{才} \approx 0.00334\text{ }m^2 \quad 1\text{ }m^2 \approx 300\text{ 才}$$

$$1\text{ B/P} = 0.002359\text{ }m^2 \quad 1\text{ }m^2 = 423.77\text{ B/P}$$

한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환산한다.

규격			1매당 m^2	좌기두께의 1 S/P당 m^2
가로 (P)	세로 (P)	두께 (mm)		
4	8	3.2	0.0095232	0.0002976
3	6		0.0053568	
4	8	3.6	0.0107136	0.0003348
3	6		0.0060264	
4	8	4	0.011904	0.000372
3	6		0.006696	
4	8	6	0.017857	0.000558
3	6		0.010044	

8) 소분류 332 (가구 및 전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2 (금속가구 및 전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칠기제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 (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 권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수도 있음으로 반드시 한권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 (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 (S원지)는 골판지원지 (3411303)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골판지 (3411304)에 분류한다.

다) 갈포벽지는 섬유제조업 (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 (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41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 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 (인쇄비 등)을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 수수료만을 위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 (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출판하

였을 때는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항)
인쇄소에서 이종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
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11)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
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품목명을 기재한 후 발호하여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도는 황산(98%, 35%, 40%)
등이 있는데 98%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염산(35%, 100%) 등이 있는데 35%로 환산 기재하고 가성
소다는 40%, 46%, 97%, 100% 등이 있는데 100%로 환산
기입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분류에 특히 주의를 요
한다.

다) 압축산소는 μ 으로 조사하고 사업체에서 본(本)으로 응답하
면 μ 로 환산토록 하고 아세치렌가스도 μ 이나 본 또는 μ 은
반드시 μ 으로 환산 기입한다.

※ 1.본 = 7 μ

라) 합성그리세린(3511914)과 그리세린(유지분해 부산물(3523306))
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3523306)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그리
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소비료 (3512104) 와 석회질비료 (3512301) 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석회질비료는 소석회 (3692201) 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보다 더 굵은 가루임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로 조사한다.

사) 각종 수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 (35131) 에 속하는데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 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아) 화학섬유 (35133 :세르로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와 화학섬유 방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참조) .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 (3511807) (Al_2SO_4) 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 (3511101) 를 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 (3511102) 과 가성소다 (3511108) 는 동일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료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35292)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35293)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3) 소분류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 19 공탄 220 개 = 1%
 22 공탄 277 개 = 1%
 31 공탄 180 개 = 1%
 49 공탄 80 개 = 1%

14)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송화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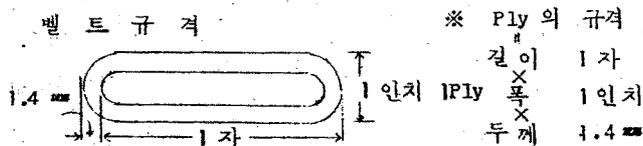
나) 털신 (고무신안에 털을 넣은 것)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ply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Ply = 폭(幅) \times 포층수(布層數) \times 길이$$

$$1 Ply = 0.33 m/Ply$$



보통 고무벨트는 두께가 3점 (1.4 × 3) 4점, 5점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라)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이므로 "권"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m

15)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32129)에 직물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시트 (플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에 가죽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지갑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 (39098)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 (39099)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고압애자 (3,300 V 이상)와 저압애자 (3,300 V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콘크리트 브럭에서 보도용브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 (소성품)에 휘장연와 (오지벽돌)를 포함한다.

17) 소분류 371 (제 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 (鑿銑) 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381)에 분류한다.

나) 품목구분

(1) 강반성품: 강괴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직접 조강(條鋼)이나 강판(鋼板) 등의 강재제품(鋼材製品)을 만들어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눈 것이다. 강편(鋼片)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두께 3.2~6mm의 강판

박판: 두께 3.2mm 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판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판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제1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 및 알루미늄합금제품 제조업(프레스 가공 제품 제조업(38192))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우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술, 두꺼운 주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루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찌그러지는 것이다.

19) 소분류 381(금속제품 제조업)

- 가) 석유스토브에 석유관을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구분 조사한다.
-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이므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 다) 농업용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목제농업용수공구는 제외한다.

20) 소분류 382(기계제조업)

- 가) 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3821106)와 건물용보일러(3813003)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3821104)에 포함 조사한다.
- 다) 탈곡기는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라) 활판인쇄기(3824906) 음쇄인쇄기(3824907)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 마)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제용)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 바)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두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 사) 피스톤(3829906) 및 피스톤링(3829911)과 자동차용 피스톤(3843206) 및 자동차용 피스톤링(3843222)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 기계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21) 소분류 383(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3831901 단위: KVA)와 저압축전기(3831902, 단위: MF)로 구분 조사하고 통신용 축전기(3832901)(콘덴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필라멘트 전구)로서 10w, 20w, 30w, 100w, 150w, 200w등을 포함한다.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 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건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38412, 38413)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G/T임으로 "척"등으로 조사될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더는 기차용(3842210)과 자동차용(3843221)으로 구분 조사한다.

라)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기입한다.

23) 소분류 390(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 자루= 1 타

12 타 = 1 그로스= 144 자루

나) 필타는 “ 상자 ”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 단위 kg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다) 시계 조사는 손목시계, 캐종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전기

시계로 구분 조사한다.

부록 1. 주요상품생산자판매가격표

부록 1 .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 일람표

< 1974 년 7 월 ~ 8 월 평균가격 >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210			
유 연 탄	%	24,500	7,300 cal 이상
무 연 탄	%	5,100~5,390	3 급 5,300 Cal 이상
290			
소금(천일염)	%	1,478	천일염 2 등품
311 ~ 312			
아 마 인 유	kg	381	180 kg : 68,500 원
밀 가 루	%	1급: 91,908 2급: 85,544	1 급 22kg들이 1 포대, 2,022 원 2 급 22kg들이 " , 1,882 원
라 면	kg	250 ~ 292	
국 수	"	121	24 kg들이 상자, 2,900 원
쏘세지(햄)	"	1,100	
닭고기(가금)	"	684	
쇠 고 기	"	1,417	
돼 지 고 기	"	750	
설 탕	"	406 ~ 412	15 kg들이, 6,096 ~ 6,179 원
포 도 당	"	263	20 kg들이, 5,255 원
참 기 림	ℓ	1,100	20 ℓ 초유, 22,000 "
비 강 유	"	283	200 ℓ들이, 56,670 "
채 종 유	"	415	200 ℓ들이, 82,924 "
배 합 사 료	kg	72	25 kg, 1,8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전 분	kg	157 ~ 175	1 급품 22 kg : 3,450 원
간 장	ℓ	150	900 ml 들이 12 병, 1,620 원
된 장	kg	138	500g 들이 24포, 1,650 원
고 추 장	"	270	500 g 들이 비닐포장 24 포, 3,240 원
식 초	"	444	180 ml × 30개 들이 = 2,400 원
소금(재제염)	"	40	60 kg에, 2,400 원
연유뒫분유	"	연유: 1,075 분유: 1,044	연유 397 g 48개, 12,960 원 분유 450 g 24개, 11,280 원
313			
탁 주	ℓ	32 ~ 35	탁주 20 ℓ, 650 원
약 주	"	95	20 ℓ, 1,900 "
청 주	"	432 ~ 575	특급 1.8 ℓ 10 병, 10,350 원 1급 1.8 ℓ 10 병, 7,770 원
백 주	"	358	640 ml 들이 24 병, 5,497 원
포 도 주	"	239	" " , 3,671 원
사 이 다	"	206	340 ml 24 병, 1,680 원
콜 라	"	325	190 ml 24 병, 1,480 원
쥬우스(환타)	"	190	355 ml 24 병, 1,622 "
커피	kg	9,067	150 g 들이 24 병, 32,640 원
메칠알콜	"	193	에틸 94% 200 ℓ, 38,500 원
321			
면 사	kg	648 ~ 718	23 S 단사 ~ 30 S 단사
아크릴릭사	"	1,320	453.6 g , 598 원
인 견 사	"	1,450	90.7 kg , 131,6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아세타이트사	kg	1,125	90.7 kg, 102,000 원
포레스텔사	"	1,429~1,344	453.6 g, 636 원 " , 609 원
나이론사	"	1,068~1,052	453.6 g, 384 "
혼방모사	"	3,532	18S 4 합 453.6 g, 1,600 원
어 망 사	"	838	210 D/24 F 453.6 g, 380 원
양 말	족	280~300	
스 타 킹	"	132	
런닝샤쓰 (메타트래의)	매	310	남자용 반소매 38 S 10 매, 3,100 원
광 목	m ²	약 133	생지 30 m, 3,600 원
내 광 복	"	약 122	2 호생지 30 m, 3,348 원
포 플 린	"	170	30 S × 30 S 30 m, 4,600 원
응	"	195	백색용 36.5 m, 6,400 원
메 트 론	"	307	백색 2.75 m, 7,587 원
나이론다후다	"	103	27.5 m, 2,550 원
솜	kg	500	A 급 3 kg들이 10 포, 15,000 원
화 학 솜	"	625	A 급 2 kg들이 10 포, 12,500 원
322			
남자용내의	착	1,200~2,500	남자용 춘추복 1,200 원 " 겨울용 2,500 원
와 이 샤 쓰	매	1,600	
323			
피 력	m ²	6,040	
324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구 두	족	4,500	
331			
육송각재	m ²	44,910	6 × 6 × 273 cm 0.334 m ² 15,000 원
나왕각재	"	60,060	6 × 6 × 273 cm 0.334 m ² 20,000 원
미송각재	"	52,395	6 × 6 × 273 cm 0.334 m ² 17,500 원
미송판재	"	53,892	9 mm 0.334 m ² 18,000 원
합 판	"	18,921	0.36 × 121 × 242 cm 100 장, 63,600 원 1.2 × 121 × 243 cm 100 장, 20,000 원
하드보드	"	96,969	0.3 × 121 × 273 cm 100장 96,000 원
칩보오드	"	50,000	0.95 × 121 × 242 cm 100장 139,000 원
342			
노 우 트	권	15~40	국교생용 ~ 중교생용
351			
규산소오다	kg	455	330 kg, 150,000 원
복합비료	ㄱ	35,600	25 kg 100 포대, 89,000 원
요소비료	"	38,960	질소 46% 25 kg들이 100 포대, 97,400 원
살충제	kg	1,100	MFP 유제 50% 100cc 50 병들이, 5,500 원
스테아린산	"	250	공업용 ㄱ당, 250,000 원
황 산	"	18	98% ㄱ당, 18,000 원
염 산	"	20	35% ㄱ당, 20,000 원
인 산	"	370	85% ㄱ당, 370,000 원
빙 초 산	"	274	공업용 99% ㄱ당, 273,874 원
질 산	"	55	외산공업용 42% ㄱ당, 55,0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암모니아수	kg	60	27% 20kg들이 병당, 1,200원
유 황	"	60	98% 분말 ㄱ, 60,000원
아 연 화	"	630	99% ㄱ, 630,000원
합성 고무	"	410	ㄱ, 410,000원
고무가황촉진제	"	500	M형 20kg, 10,000원
라 텍 스	"	600	158.4 l, 95,000원
탄 산 칼슘	"	50	ㄱ, 50,000원
그 리 세 린	"	1,800	250kg (94%), 450,000원
붕 산	"	200	94% ㄱ당, 200,000원
중 조 (중탄산소다)	"	59	98% ㄱ당, 59,000원
포 르 마 린	"	16	37% ㄱ당, 16,000원
가 성 소 다	"	75	액체 99.9% 250kg, 18,750원
소 다 회	"	54	중 98% ㄱ당, 54,380원
표 백 분	"	225	외산 60% ㄱ당, 225,000원
메 칠 알 칼	"	100	메칠 98% 15kg 15,000원
황 연 안 료	"	3,600	황연 10kg, 36,000원
직 접 염 료	"	1,280	직접염 GW상품 100kg, 128,000원
유 화 소 다	"	80	48% ㄱ당, 80,000원
청 화 소 다	"	26	외산공업용 98% ㄱ, 26,000원
염 화 칼슘	"	21	72% ㄱ, 20,500원
탄산마그네슘	"	100	탄산마그네슘분말 ㄱ, 100,000원
가 소 제 (D.O.P)	"	400	DOP 200kg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올리에치렌	kg	221	L.D ₩당 , 221,463 원
플라스치렌수지	"	481	GP ₩당 , 480,579 원
폴리염화비닐수지	"	224	중합도 \$ 1,000 ₩당 , 224,444 원
카 바 이 트	"	76	과 5 mm 이상 A급 225 kg , 17,000 원
아 세 치 렌	"	567	순도 99 % 이상 6 kg들이 100 병 , 340,000 원
352			
카 본 블랙	kg	173	
(제라진) 다이내마이트	"	324	제라진 다이내마이트 22.5 kg들이상자 , 7,280 원
보 관 개	개	137	100개 , 1,365 원
도 화 선	m	20	제 2 종 100 m , 1,987 원
파라핀왁스	kg	280	국산 140도 ₩당 , 280,000 원
성 량	1,000갑	42,998	8 각성량 120 갑들이 , 5,160 원
방 수 액	kg	111	Sp 2 호 180 l , 20,000 원
에나멜페인트	l	903	외부용백색 18 l , 16,250
바 니 스	"	625	페놀수지 18 l , 1,250 원
잉크(통사용)	kg	320	1 kg들이 10 통 , 3,197 원
세 탁 비 누	"	157	350 g 63 개 , 3,465 원
세 탁용 합성세 제	"	221	500 g들이 24 봉 , 2,650
화 장 비 누	"		
치 약	"	780	150 g 알미늄튜브 60 개 , 7,020
353			
등 유	l	67	200 l , 13,454 원

품명	단위	가격	비고
경유	ℓ	60	200 ℓ , 12,012원
휘발유	"	167~198	고급 200 ℓ , 39,526 원 보통 200 ℓ , 33,474 원
중유	"	38	
방카유	"	31	
윤활유	"	258	
구리스	kg		
354			
연탄	℥	6,240~9,900	22 공탄 100개 , 2,600 원 31 " 100개 , 5,500
마세크탄	"	13,533	5,600 Cal 이상
코우크스	"	53,000	외산주물용 상품
355			
고무신	족	185~2,100	
운동화	"	505~770	농구화 770
369			
석면스레트	m ²	333	KS 소골 72 × 182 (cm) 100 장 , 43,600 원
시멘트	℥	11,425	40 kg 100 포대 45,700
백시멘트	"	36,300	40 kg 100 포대 145,200
소석회	"	1,200	(10 kg 내외) 100 포대 1,200
적벽돌	매	18	
기와	1,000매	30,000	시멘트제 적색 100 장 3,000
타일	m ²	1,149~ 1,210	
브로크	1,000	59,000	B - 6 15 × 19 × 3.9 cm 100 매 5,900 원

품 명	단 위	가 격	비 고
홍 관	본	9,000	KS 보통관 6 kg/cm ² 60 × 5 × 243 cm 10 개 90,000 원
콘크리트전주	"	7,700	KS 14 cm × 7 m × 150 kg 10 개 77,000 원
콘크리트관	"	2,400	철근입 60 × 100 cm 10 개 24,000 원
372	-	-	-
금 피	g	2,099	순도 99 %
은 피	"	68	순도 70 %
전기동	kg	1,240	99.9 % 이상 ₩ 1,240,000 원
연 피	"	340	99.9 % 이상 ₩ 340,000 원
알미늄 피	"	283	99.5 % 이상 ₩ 282,500 원
아연 피	"	436	99.9 % 이상 436,000 원
주석 피	"	4,000	99.9 % 이상
니켈 피	"	2,400	99.9 % 이상
망 강	"	190	고탄소 73 ~ 75 % ₩당 190,000 원
연 판	"	400	91 × 182 cm 2mm 100 kg 40,000 원
숫 쇠 판	"		
381			
알미늄샷쉬	kg	8	100 kg 750 원
철정 (쇠못)	"	158	5 cm 50 kg 7,900 원
전기용접봉	"	210	KSE 4301 4 mm 100 kg에 21,000 원
383			
라 디 오	대	8,300	트랜지스터식 (소매)
T V 수상기	"	112,000	트랜지스터식 48.26 cm (소매)

품명	단위	가격	비고
390 연필	타	167(연필) 167(색연필)	HB 및 사무용 적색
볼펜	개	23	
크레파스	갑	180	24색 1타 2,160원
만년필	개	390	파이롯트 만년필
백묵	갑	30	20본드리 100갑 3,000원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 이

	척(尺)	정(町)	리(里)	미(米) (m)	촌(寸) (in)	척(呎) (ft)	마(yds)	리(里)
척(尺)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町)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49.306	0.067784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83
미(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5	1.09363	0.000621
촌(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27777	0.000015
척(ft)	1.00582	0.002793	0.000077	0.304974	12	1	0.33333	0.000189
마(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983	36	3	1	0.000568
리(里)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匁)	관(貫)	근(斤)	그램(g)	온스(oz)	파운드(lbs)	톤(噸) (公)
돈(匁)	1	0.001	0.008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관(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근(斤)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그램(g)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3.3495	1	0.0625	0.000027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66
톤(噸)(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톤(噸)(미)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용 적

	홉(合)	승(昇)	두(斗)	석(石)	입방미(斗)	리터(ℓ)	개(명)	개(㎡)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9
승(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15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15	47.6567
입방미(斗)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명)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99	1

부록 3. 조 사 표 류

부록 3. 조 사 표 류

1974년 10월 10일

8. 월별조업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8	20	28	27	26	28	28	27	27	26	26	26	308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구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가) 판매액	액	1,117	75	1,191	1,117	1,158	515	643						
(나) 판매액	액	75	75	75	75	76	60	16						
(다) 판매액	액	1,261	1,261	1,261	1,261	1,234	575	659						

12. 연초 연말 재고액

구분	연초	연말
① 완제품	143	88
② 반제품	131	45
③ 원재료	31	55
④ 연료	288	139
합계	693	327

7. 종업원수

구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① 생산종업원	1,191	1,117	1,158	515
② 사무종업원	75	75	76	60
합계	1,261	1,261	1,234	575

9. 연간 급여액

구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① 생산종업원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② 사무종업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합계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1. 연간 주요 생산비

구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① 원재료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② 연료	300,000	300,000	300,000	300,000
③ 구입원재료	400,000	400,000	400,000	400,000
④ 구입용수	100,000	100,000	100,000	100,000
⑤ 기타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합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3. 판매물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품목	연간	연간	연간	연간
① 완제품	1,117	75	1,191	1,117
② 반제품	75	75	76	60
③ 원재료	1,261	1,261	1,234	575
④ 연료	288	139		
합계	3,741	3,741	3,741	3,741

최요 ○ 탐고사성(간합사업체의 특정 연간 실적 동향등)

조사에 관한 사항				
1. 작성 연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 성명	4. 조사원 성명	5. 지도원 성명
1975년 4월 15일	충주국과 전화(74-8462) 전화 100	박영익인	홍사영인	이우석인

지정통계
제 17 호

1974년

광공업통계조사표 (II)

(본사 본점 조사용)

동계년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
에만 사용하며 그 이외의 용도에
장용하지 않는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통
111-01	10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한주 X 주식회사
 대표자명 윤서운 (전화 94구 9462번)
 소재지 충주 X 거문도구 동·면 가동리 (90번지의 1번)
 도 충청북도

2. 창설년월일

19 54 년 8 월 15 일

3. 조직 형태

해당안에 O표

(가) 주식회사 (O) (나) 기타법인 () (다) 개인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관하여
1974.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천억	억	천만	백만	십만	천
1	5	0	0	0	0	0

주 (註)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8.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은 인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별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며 유의한다.
 ○ 연간총가액이 연간잔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총가액에 스스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가) 건설가계정 연소증가		(나)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다) 연간 증감 [(가)-(나)]	
액의	잔액	액의	잔액	액의	잔액
200000				200000	

9. 조서표 작성 근거
 ○ 해당항에 ○표

1. 장 부(○) 2. 일부거액() 3. 거액()

5. 영업원수 및 연금급여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사업주 및 부가가액 총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금액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용종업원과 별가자, 단기휴가자 및 피업종인 자도 포함하여 장기계근자 및 근무부자는 제외한다(유일한 월에는 피고용자 수 안에 스포츠를 한다)
 ○ 연금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원물을 지급한 것과 미분액을 포함한다(퇴직과 장기 계근자 및 근무부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급여액
				액	잔액	액의	
① 사업주 및 부가가액총사자							
② 피고용자	110	110	110	76	14		64840
합계	110	110	110	76	14		64840

10. 관할사업체 명부
 ○ 1974. 12. 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경제활동 구분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 한다.
 ○ 풍공업 또는 풍공업과 이(非)풍공업과의 경계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 안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안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부역업, 도매업 등)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경제활동구분		주요생산품명
					풍공업	기타	
① 연(주) 부산공정취부산	취부산	23-4371	부산 영도구 동삼동 501	1709	○		연사
② 대구공정취부산	취부산	4-1234	대구 북구 권선동 110	2500	○		연사
③ 대전공정취부산	취부산	3-2145	대전 중구 대동로 247	1500	○		연사
④ 인천공정취부산	취부산	2-2100	경계 인천 주안동 111		○		도매업

6. 원재료 및 연료제조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본사 재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제조액을 기입한다.
 ○ 연초 제조액은 1974. 1. 1 현재로, 연말제조액은 1974. 12. 31 현재로 기입한다.
 ○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각자 시가로 평가한다.

구분	연초 제조액			연말 제조액		
	액의	잔액	액의	액의	잔액	액의
① 원재료						
② 연료	10000			20000		
합계	10000			20000		

7. 유형고정 자산의 연감취득액 및 처분액
 ○ 신규취득액: 한년도 사용한 것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의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물 포함)
 ○ 증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증고자산 취득 및 설치비
 ○ 처분액: 매각, 양도, 제해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관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구분	연간신규취득액		연간증고취득액		연간처분 및 손해액	
	액의	잔액	액의	잔액	액의	잔액
① 토지			10000			
② 건물 및 구축물			6000			
③ 기계기구및장치	40000					
④ 차량및운반구	8000				1000	
합계	48000		15000		1000	

8.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은 인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별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며 유의한다.
 ○ 연간총가액이 연간잔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총가액에 스스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가) 건설가계정 연소증가		(나)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다) 연간 증감 [(가)-(나)]	
액의	잔액	액의	잔액	액의	잔액
200000				200000	

9. 조서표 작성 근거
 ○ 해당항에 ○표

1. 장 부(○) 2. 일부거액() 3. 거액()

조사요령서

1975년 2월12일 인쇄

1975년 2월20일 발행

발행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쇄소 주식회사 범신사
(75 - 3192)

1975년

광 공 업 통 계 조 사

조 사 요 령 서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1975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요령서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계	5
5. 조사 기간	6
6. 조사 범위	7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3
10. 조사표 종류	14
11. 조사 방법	15
12. 집계 및 공표	16
II. 조사원의 임무	17
1. 조사 업무의 실시 순서	17
2. 조사용품의 수령	17
3. 사전 조사	18
4. 면접요령 및 실사	20
5. 실사 지도보고	24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4
7. 기 타	27
Ⅲ. 조사표 기입요령	29
1. 일반적 유의사항	29
2. 항목별 기입요령	31
가. 조사표Ⅰ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1
나. 조사표Ⅱ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54
Ⅳ.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58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 요령	58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60
부록 1. 조사표류 기입예시	63
부록 2. 조사표 작성 및 심사 요령도	67
부록 3. 도량형 단위 환산표	69

I.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광공업부문의 고용·급여·생산·출하·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의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동부문의 생산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장단기별 제반 경제계획수립과 동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통계물 작성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동자료는 당해 분야 개개기업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서도 널리 이용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2779 호)에 의하여 지정 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職務遂行過程)에서 지득(知得)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계법 제 8 조; 비밀의 보호(秘密保護)
- " 제 9 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 " 제 17 조, 동 18 조; 벌칙 규정(罰則規定)

< 통계법 초(抄) >

제 2 조(정의) 본 법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기획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사(調査)통계와 보고(報告)통계를 말한다.

제 4 조(신고의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법인(法人)이나 단체(團體)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8 조(비밀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秘密)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保護)되어야 한다.

제 9 조(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 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

- (1)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申告)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虛偽)의 신고를 한 자
- (2)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妨害)한 자
- (3)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檢査)를 거부(拒否) 방해 또는 기피(忌避)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陳述)을 한 자

3. 조사 연혁(沿革)

가. 광공업 센서스(지정통계 제 6 호)

1 회 1955 년 한국은행 주관

- 2 회 1958 년 한국산업은행 주관
- 3 회 1960 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4 회 1963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5 회 1966 년 " " "
- 6 회 1968 년 " " "
- 7 회 1973 년 경제기획원 주관

나. 광공업 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7 호)

- 1 회 1967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2 회 1969 년 경제기획원 주관
- 3 회 1970 년 "
- 4 회 1971 년 "
- 5 회 1972 년 "
- 6 회 1974 년 "
- 7 회 1975 년 "

4. 조사체계(調查體系)

가. 체 계

(1) 일반사업체(一般事業體)

경제기획원장관 → 시장 및 도지사 → 지도원 → 조사원 → 대상사업체

(2) 광공업 동태(鎭工業動態)조사 대상사업체

경제기획원장관 → 시·도지방통계사무소장 → 광공업동태조사원 → 대상사업체

나. 지도원

- (1) 일반 지도원 ~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票類)의 배부(配付), 수집(蒐集) 확인 및 내용검사 등의 사무에 종사(從事)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 (2) 시도지방통계사무소장 ~ 광공업동태조사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의 광공업동태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 및 내용검사 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하 광공업동태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다. 조사원

- (1) 일반 조사원 ~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임명하며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 (2) 광공업동태조사원 ~ 경제기획원 직원인 광공업동태조사담당조사원은 관할 조사구 내의 광공업동태조사대상사업체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조사기간

가. 조사 기준일 ; 1975.12.31 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5.1.1 ~ 1975.12.31 일까지의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76.4.1 ~ 4.30 일까지의 1개월간

6. 조사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75.12.30 개정)에 따른 대분류「2」에 해당하는 「광업」과 대분류「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참조)

가. 광업의 정의(定義)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 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鉱),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 사업자가 하던 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비금속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던, 집에서 행하여지던 이를 가리지 않는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 ① 농가, 어가(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 ② 어선(漁船) 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전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정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등 및 전선 등을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

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소매업자 또는 행상인에게 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 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㉑) 수리업(修理業) 또는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 서어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은 표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㉒)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㉓)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㉔) 군수(軍需)산업과의 관계

- ① 군(軍)에서 직영(直營)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製造納品)하거나 임의(任意)로 군수품(軍需品)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는 모두 제조업(製造業)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② 군(軍)으로부터 원재료(原材料) 또는 중간제품(中間製品)이나 반제품(半製品)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受託業체)라도 이는 정부와 제조업체 사이에 위탁(委託)받은 경우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원재료를 수탁업자 자신이 구입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조출하하는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7. 조사대상사업체의 결정

- 가. 197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國內)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 나. 1975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從業員數)가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다.
- 다. 1975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지시받은 업체, 즉 조사대상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는 폐업(廢業) 전업(轉業) 또는 다른 산업에 속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 라. 1975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 마. 1975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 (1) 1975 년중의 조업일수가 90 일 이상이고 ,
- (2) 조업기간(操業期間)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 인 이상이었던 사업체 (예 : 제빙업 사업체)
- (3)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 일 미만(未滿)이라 하더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 인 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 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원(再活院)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8. 조사 단위 (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内)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 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 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 데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9. 조사사항

가. 조사표 [I] (사업체용)

- | | |
|-----------------|---------|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 ③ 창설년월일 |
| ②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④ 조직형태 |

-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
- ⑥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 공정
- ⑦ 종업원 수
- ⑧ 월별 조업일수
- ⑨ 연간 급여액
- ⑩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⑪ 연간 주요 생산비
- ⑫ 연초 연말 재고액
- ⑬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⑭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⑮ 건설가계정
- ⑯ 조사표 작성근거

나. 조사표(Ⅱ) [본사(본점)용]

- ①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② 창설년월일
- ③ 조직 형태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
- ⑤ 종업원 수 및 연간 급여액
- ⑥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 ⑦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⑧ 건설가계정
- ⑨ 조사표 작성근거
- ⑩ 관할 사업체 명부

10. 조사표의 종류(調査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2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 가. 사업체용 조사표(Ⅰ) 본사 이외의 모든 대상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용 조사표(Ⅱ) 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할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Ⅰ)에 작성한다.

11. 조사방법

가. 타계식(他計式)조사방법 적용

일반 사업체(조사구별 사업체명부의 비교란에 *동*자 표시가 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하여는 타계식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조사대상사업체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帳簿)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자계식(自計式)조사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나. 자계식 방법 적용

광공업동태(鉞工業動態) 조사대상사업체(조사구별 사업체명부상, 비교

란에 「동」자 표시가 된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당 조사통계국 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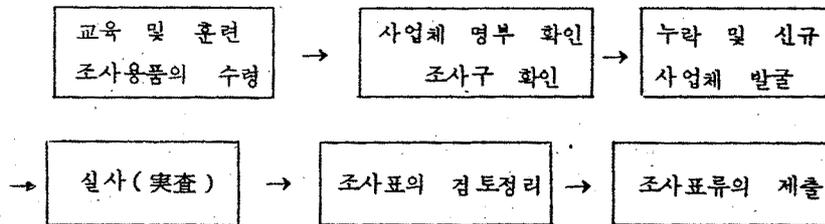
12. 집계 및 공표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 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Ⅱ.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Ⅰ)

(2) 조사표 (Ⅱ)

라. 참고책자

-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 (2) 사업체용 조사표 기입요령서(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에 한함.)
- (3)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 (1) 실사진도 보고
-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3. 사전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읍·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파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교육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5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폐(存廢)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 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를 하여 1975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5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특히 군수(軍需)사업체 등 특수사업체라도 명부에 누락된 업체를 빠짐없이 발굴보완(發掘補完)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월(月)을 표시한 다음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 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

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바) 담당 조사구내에 1976년도에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될 때도 명
부후단(名簿後段)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6년 설립(設立)”
이라고 적어 넣는다. 그러나 조사표 작성대상(作成對象)
이 아님을 유의한다.

4. 면접요령(面接要領)과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
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4번째 조사이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
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
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편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
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實査)

-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
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
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ㄱ)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ㄴ) 이 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2.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3. 창설년월일
4. 조직형태
6. 주요생산물명 및 생산공정
7. 종업원수
9. 급여액
12. 연초, 연말재고액
13. 품목별 출하액 및 연초, 연말재고액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5) 본사의 조사

ㄱ)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ㄴ)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I)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계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 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덕대계 채택광산이란 광업권자가 여러 하청업자에게 일정한 임대료(賃貸料) 또는 이익분할 조건으로 일정구역을 채광경영케 하는 제도이다.)

(7)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

현존(現存)사업체중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사업체 명부의 비교란에 "동"자 표시된 업체)는 당 조사통제국직원(광공업 동태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따라서 일반조사원은 이를 유의하여 중복(重復)조사되지 않도록 일반사업체(사업체 명부의 비교란에 "동"자 표시가 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조사한다.

(8) 군수(軍需)산업체 조사

(가) 피조사자(被調査者)가 응답을 주저하거나 조사상의 애로가 발생하면 통제조사의 목적과 비밀(秘密)의 보호(保護)를 주저시켜 보안상(保安上)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사표의 항목을 조사한다.

(나) 계속 비협조적이며 불응하면 지도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조사표의 13항중 품목별 완제품의 출하(出荷) 및 재고(在庫)량을 제외한 여타(餘地)항목을 조사토록하고 이것 역시 불응하면 13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을 반드시 조사하고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5. 실사진도보고 (実査進度報告)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조사표의 교부 및 회수 등 조사활동사항을 실사진도보고(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관할조사원으로부터 실사진도보고를 수집하여 문계조사구에 대해서는 지도지침에 의거 처리한 후 실사진도와 함께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수시로 보고한다.

라. 실사진도보고 제출일자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조 사 원	4 월 11 일	4 월 26 일
지 도 원	4 . 13 "	4 . 28 "
책 임 지도원	4 . 15 "	4 . 30 "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실사지도 및 조사표 심사 요령」에 의하여 조사원 임회하에 재심사(再審査)하고 분와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하도록 한다.
- (3)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누락(調査漏落)시킨 사업체를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回收)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광공업동태(動態) 조사대상업체는 중복(重復) 여부(與否)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체명부의 조사표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조사표제출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2) 책임지도원은 지도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완료하여 시도 단위로 조사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친 후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표 제출일정

(가) 일반사업체 조사표

① 조사원 → 지도원 5.1 ~ 5.7

② 지도원 → 책임지도원 5.1 ~ 5.10

③ 책임지도원 → 시·도지사 5.11 ~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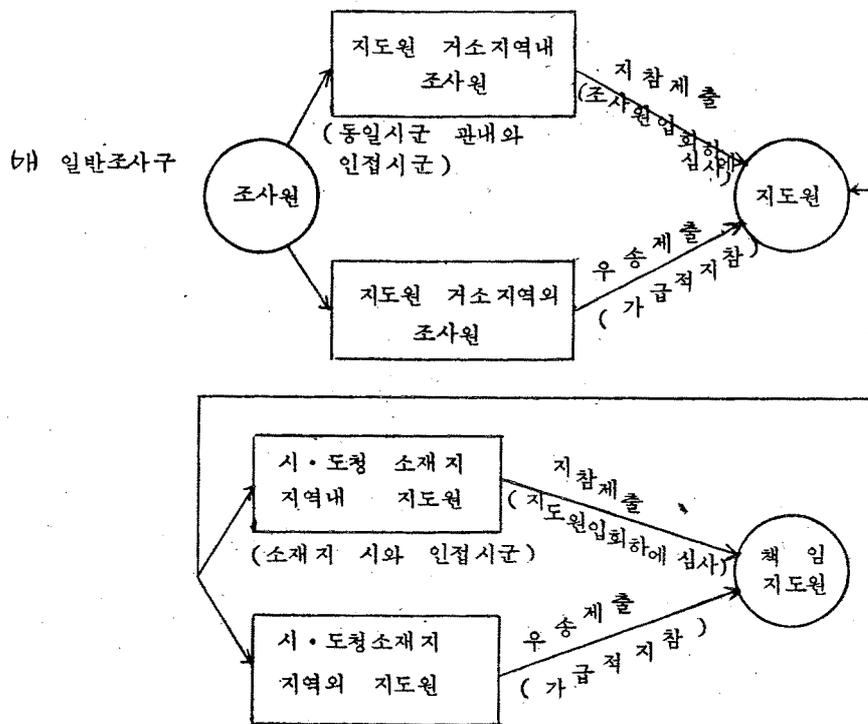
④ 시·도지사 → 경제기획원장관 5.21 ~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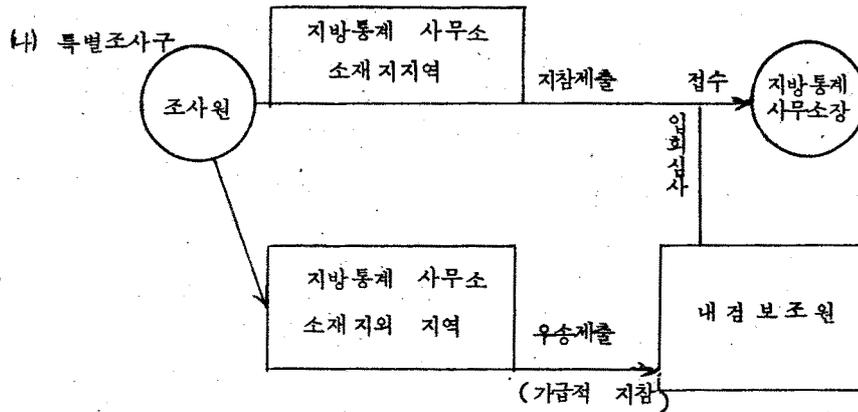
나) 광공업동태 조사대상사업체 조사표

① 상주조사원 → 지방통계 사무소장 5.1 ~ 5.10

② 지방통계사무소장 → 경제기획원장관 5.11 ~ 5.25

※ 조사표 수집체제





7. 기타

-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 다. 조사도중에 미흡한 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록 사업체에서 취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통제법 참조)

바. 배부하고 남은 조사용품이나 배부된 책자는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 기입 요령

1. 일반적 유의 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 완료후 심사·분류·집계 등 여러 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과6, 4와6, 1과7,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등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

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복선으로(=)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조사표 기재시 착오(錯誤)나 오기(誤記)를 정정(訂正)할 경우를 감안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여백)를 남겨두고 기록한다.

($\frac{1}{2}$ 정도)

자. 단위(單位)는 품목분류표(品目分類表)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相異)할 때는 지정단위(指定單位)로 환산(換算)하여야 한다.

단, 환산이 극히 복잡(複雜)하고 어려울 때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수량으로 기록한 다음 사업체에 문의(問議)하여 그 단위의 규격(規格)과 환산가능(換算可能)한 방법을 모색(模索)하여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차. 각 항목별 합계란의 검산(檢算)을 철저히 하여 계수(計數)의 정확을 기한다.

카.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訂正)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합계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訂正)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I)의 항목(項目)별 기입요령

○ 조사표 번호, 조사구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조사구일람표(調査區一覽表) 및 사업체명부(事業體名簿)와 일치 되도록 기재한다.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대전[㉠] 은행[㉡] 136번지의 16호(2통3반)
충청남[㉢]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本社)가 따로 "없는가?"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여 해당란에 "○"표한 다음

(가)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 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월일(創設年月日)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設立年)월일을 기입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조직형태 (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② 기타 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내에 ○표 한다.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出資金)

(가) 이 항목은 주식(株式)회사와 기타 법인(法人)에 한해서만 조사 기입하고 개인사업체(個人事業體)와 비법인조합(非法人組合)은 자본금이 있더라도 조사치 않고 사선(\)을 긋는다.

(나) 1975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6)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가) 주요 생산품명

①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②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제 13항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중 동일한 완제품(完製品)으로서 같은 품목분류번호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는 같은 번호의 금액끼리 합산하여 큰 순위(順位)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1975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④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

이 1975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㉔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 제조를 일관(一貫) 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 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 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㉕ 조사표(I) 13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품목과 주요 생산품명의 ①번 품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품목분류번호(品目分類番号)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주요 사용 원재료명

① 이 항목은 원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4종류 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다) 생산공정(生産工程)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 : (i) 광업의 경우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畝)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채굴 → ② 선광 → ③ 무연탄

(ii)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로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㉞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경우

① 전분(澱粉) → ② 당화 → ③ 발효 → ④ 농축 →
⑤ 산분해(酸分解) → ⑥ 여과 → ⑦ 농축 → ⑧ 염산염
(鹽酸鹽) → ⑨ 탈색 → ⑩ 결정 → ⑪ 구루타민산소다

㉟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① 고구마 옥수수 → ② 마쇄전분유(磨碎澱粉乳) → ③ 침
전 → ④ 전분 → ⑤ 정제 → ⑥ 생전분

㊱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① 설탕물 → ② 용해 → ③ 여과 → ④ 첨가물배합 →
⑤ 여과 → ⑥ 원액저장 → ⑦ 원액주입 → ⑧ 탄산수주입
→ ⑨ 타전 → ⑩ 콜라

㊲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① 원면(原綿) → ② 면조(綿條: Sliver) → ③ 정방
(精紡) → ④ 단사(單絲) → ⑤ 합사(合絲) 또는

연사(撚絲) → ⑥ 면사(綿絲)

㉔ 면직물(면포)를 제조하는 경우

① 면사 → ② 정경(整經) → ③ 호부(糊付) → ④ 직조
→ ⑤ 정리 → ⑥ 면직물

㉕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① 조성(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 → ② 초지(와이어에 의한 초지) → ③ 건조 → ④ 완성 → ⑤ 판지

㉖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① 폐고무 → ② 선별 → ③ 분쇄 → ④ 약물배합 →
⑤ 탈유(脫硫) → ⑥ 재생 → ⑦ 포장 → ⑧ 재생고무

㉗ 리사지<별명 일산화연(一酸化鉛), 금밀타(金密陀) 항색

산화연> 연분식<鉛粉式>

① 납 → ② 용융 → ③ 성형 → ④ 연분 → ⑤ 산화 →
⑥ 분쇄 → ⑦ 리사지

㉘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① 점토, 규사, 골재 → ② 배합 → ③ 성형 → ④ 소성
(燒成) → ⑤ 벽돌

(7) 종업원수(從業員數)

㉔ 3, 6, 9, 12월말중 휴업(休業)한 달은 휴업표시(△)하고

조업(操業)한 3, 6, 9, 12월말(各分期末) 현재의 종업원

(從業員)을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事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

생산(生産)종업원, 사무 및 기타(事務 및 其他)종업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되 2분기 이상 휴업한 업체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요란에 기재한다.

(내) 특히 유의할 것은 1월과 2월은 조업(操業)을 하고 3월은 휴업(休業)하였으나 종업원을 해고(解雇)치 않고 급여(給與)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휴업표시(△)한다.

(나) 사업주 및 무급가족(無給家族)종사자

① 사업체의 소유주(所有主, 出資者包含)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從事)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賃金)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名義)만으로도 사업주(事業主)이고 1주일에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 취업(就業)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주식회사(株式会社)나 법인(法人)은 사업주가 유급(有給)이므로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個人)사업체는 사실상의 사업주가 타 직업(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업감독상(監督上) 가족(家族)중의 1인은 1주당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적어도 1인은 있음에 유의한다.

※ 이익금(利益金)과 임금(賃金)을 혼동치 말 것.

(라)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료(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및 병가 자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内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천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㉔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태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 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고용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월별 조업일수(月別操業日數)

가) 1975년의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태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예: 상업, 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연간급여액 (年間給與額)

(가) 1975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봉급·상여금(賞與金)·각종 수당·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환산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5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5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5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마) 급여액이 7항의 종업원수(從業員數)와 비교하여 현실적(現實的)인 급여수준(給與水準)에 미달하거나 초과(超過)하는 경우 1인당 월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가를 재 질문(再質問)하여 비교 확인한다.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가) 1975년 1년간의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제조(受託製造) 및 수리수입액(修理收入額)을 말하며, 1975년 1년간에 일어난 출하(出荷) 및 수탁제조(受託製造) 또는 수리(修理)에 대한 미수금(未收金)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나) 이 항목의 합계금액은 9항의 연간 급여액과 11항의 연간 주요 생산비 합계액(主要生産費合計額)보다 커야만 정상운영(正常運營)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작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저요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例); 재고증가(在庫增加), 유실(流失), 도난(盜難), 화재(火災))

① 완제품 출하액(完製品 出荷額)

㉞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他)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중에서 1975년 1년만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특히 완성이 아닌 중간제품(中間製品)이라도 그 업체의 생산공정(工程)이 종료(終了)되어 다른 업체(동일기업 포함)로 출하되는 것과 위탁판매·직접 판매 또는 현금판매·의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㉟ 동일 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전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종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㊱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転売)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㊲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取扱) 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内国消費稅)가 부과

(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㉞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란에 기입한다.

㉟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㊱ 완제품 출하액은 13항의 (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㊲ 완제품 출하액이 있으면 11항의 연간 주요생산비 조사시 원재료비(原材料費)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출판업(出版業)은 없을 수도 있다.)

② 폐품판매액(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絲),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㉚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

(상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㉔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1)항의 완제품 출하액에 계상한다.

(11) 연간 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5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연료비·구입전력비·구입용수비·위탁생산비·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 (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5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부분품·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①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② 동일 기업체의 타 사업체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임업·수산업·광업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 기입한다.

㉓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㉔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㉕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 때 수탁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㉖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 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㉗ 1975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의 구입가격

을 합산 기입한다.

- ②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타) 구입 전력비 (購入電力費)

- ① 1975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5년 1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②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2)항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타) 구입용수비 (購入用水費)

1975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로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타) 위탁생산비 (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 ①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1)항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②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위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 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
한 전매품(転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
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①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처리되
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4항 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②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4항 유
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2) 연초, 연말 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5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5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와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아직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Ⅱ참조)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 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은 다음 13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연초재고액은 75년 1월 1일 현재로 조사되므로 75년도 창설업체(創設業體)는 연초재고가 있을 수 없다.

(13)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0-(1)」 완제품 출하액과 「12-(1), (2)의 ①」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0-(1)」과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2-(1), (2)의 ①」과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빠)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매한 품목(品目)에 대하여 조사원과 응답자(回答者)가 임의(任意)로 결정하여 적당한 품목분류를 택함으로써 차질(蹉跌)을 초래(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상의 명칭(名稱)과 수량단위(單位)를 기입하고 품목분류번호는 생략(省略)한다.

이 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이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4) 유형고정자산의 연간신규취득액, 연간중고취득액, 연간처분 및 손해액

나)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있는 건물 및 부대설비와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다) 75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취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계약(賃貸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대상황을 기록한다.

①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貸地), 사택대지(社宅貸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부대설비와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 탱크(木槽),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등을 말한다.

③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爐), 가열로(加熱爐), 용광로(熔礦爐),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裝置)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 년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나)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5 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①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한다. (외국으로

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② 중고 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土地)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中古取得)란에 기입한다.

※ 평가(評價)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간 처분액 및 손해액

1975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15)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총당된 재료 및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

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인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5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5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4항의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신규와 중고취득액(토지계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라)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반드시 △표시를 한다.

(마)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16) 조사표 작성근거

조사결과의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적 요

- 가)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도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 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극히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 다) 적자요인(赤字要因)과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임차경영(賃借經營), 건설가계정(建設仮計定)의 연간감소의 내용 등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 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나. 조사표Ⅱ(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시 조사표(I)에 기입한다.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I)의 제2항과 동일
- (2) 창설년월일 : 조사표(I)의 제3항과 동일
- (3) 조직형태 : 조사표(I)의 제4항과 동일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조사표(I)의 제5항과 동일
-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7항과 동일하다.

나)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5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9항과 동일하다.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ㄱ)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ㄴ)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7) 유형고정자산

ㄱ) 유형고정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ㄴ)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ㄷ)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14항과 동일하다.

(8) 건설가계정 : 조사표(I)의 제 15항과 동일

(9) 조사표 작성근거

조사결과의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10) 관할사업체 명부

ㄱ)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傘下)사업체를 기입한다.

ㄴ)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Ⅱ)는 조사하지 않는다. (경영장부와 기타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장 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라)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IV.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요령

- ① 조사표가 오손(汚損) 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②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③ 조사구별로 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④ 사업체 명부상 조사표 번호 = 요제표 번호 = 조사표상 조사표 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⑤ 사업체 명부상 명부 기입요령에 의거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⑥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⑦ 자본금, 출자금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⑧ 주생산품명이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 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⑨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⑩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⑪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⑫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 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⑬ 원재료비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⑭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⑮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⑯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⑰ (가) 「연간 주요생산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계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급여액의 합계액은 (연말재고액 합계 - 연초재고액 합계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⑱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⑲ 연간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별, 단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검정하여야
한다.

㉔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항(1) 완제품 출하액과 - 13항(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
12항(1), (2)의 ① 완제품 재고액과 - 13항(1), (2)의
품목별 완제품 재고액 합계

㉕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② 제철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 ③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 ④ 유고사업체는 실사진도보고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년,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1-1) 조사표류 기입예시

14. 유형고정 자산의 연간취득액 및 처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취득액: 한번호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 포함) 중고취득액: 신규 이외의 중고 자산 취득 및 설치비 처분액: 매각, 양도, 재해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구분	(1) 연간 신규 취득액				(2) 연간 중고 취득액				(3) 연간 처분 및 손재액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토지														
②건물 및 구축물			1	2	4	6	8							2
③기계기구및장치			1	1	5	5	0				8	5	0	0
④차량선박및운반구					5	0	0	0						1
합계			2	9	0	1	8				4	4	9	6
15. 건설가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대설치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감액적으로 처리하는 제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가액 합계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 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3) 연간 증감 [(1)-(2)]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2	6	5	3			2	4	0	1	8	
16. 조사표 작성 근거 해당란에 ○표														
(1) 장 부 (○) (2) 일부기역 () (3) 기억 ()														
<p>주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이 어려운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기타 적자요인 등 참고사항을 두괄적으로 기입한다. <p>건설가계정 연간감소 ~ 74년도에 신규주인 건물과 키러 설비가 75년도에 완공되어 고정자산의 분해점으로 대체된 것임.</p>														
조사에 관한 사항														
1. 조사표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성명	5. 지도원성명										
1976년 4월 6일	충무파 전화 (수원 A228)	윤일동 ㉓	김천석 ㉓	박천동 ㉓										

지정통제 제 17 호

통계법 제8조 및 동 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75 년

광공업통계조사표 (I)

조사표번호						사업체고유번호					
144						115					
(사업체 조사용)											
조사구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승						
3111 → 02	☆	☆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한국 XX 주식회사 수원공장					
대표자명						최광산 (전화수원국 8228번)					
사무처별시						구 도·동 가 136번지의 10호					
부산지할지						구 매관 (1동 2번지)					
청기호						읍·면 리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해당란에 ○표						본사명 한국 XX 주식회사					
(1) 본사가 따로 없다. () 면 본란은 차선						대표자명 최광산 (전화수원국 7447번)					
(2) 본사가 따로 있다. (○) 면 본란을 기재						사무처별시 중구 남대문 (구 동 5동 111번지의 36호)					
부산지할지						구 동 5동 2번지					
청기호						읍·면 리					
3. 창설년월일											
19 65 년 4 월 1 일											
4.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 (2) 기타 법인 () (3) 개인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법인에 한함)											
1975.12.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5 5 7 0 0 0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 생산품명						① 싸인펜 ② 연필 ③ 만년필					
(2) 주요사용원재료명						① 프라스틱 ② 흑연 ③ 잉크					
(3) 생산공정						① 프라스틱 → ② 사출 → ③ 압출					
(생산단계 또는 과정)						④ 잉크젯제조 → ⑤ 조립 → ⑥ 싸인펜					

주(註)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본 조사에 관한 문의는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직통 74 - 8176
교환 75 - 5371 ~ 5375

7. 종업원 수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수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구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금액을 받지 않는 자. ○ 피고용자 상용, 임시 및 일용종업원과 별가자, 단 기 유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 절근자 및 군복부자는 제외. ○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기술적, 전 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구 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계	남	여
	(2) 피고 용자	① 생산종업원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	675	678	676	286	390
합 계		△	717	719	716	342	404	

8. 월별 조업일수
○ 조업일수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한다.
○ 휴업일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9	26	31	27	28	26	28	27	27	28	26	29	301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완제품 출하액은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위탁 생산한 완제품 중에서 1975년 1년만에 출하한 것을 기입한다.
○ 외상판매, 건물 및 선물용, 사무용 및 급여용, 동일 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도 포함하며 특히 완성품이 아닌 중간제품(반제품)이라도 그 업체의 생산공정이 종료되어 다른 업체(동일기업 포함)로 출하되는 것도 포함.
○ 완제품 출하액은 13항의(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9. 연간 급여액
○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원물로 지급한 것과 미분액을 포함한다.
○ 퇴직금과 장기 절근자 및 군복부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생산종업원			2	4	3	3	6	5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2	5	2	8	3
합 계			2	6	8	6	4	8

12. 연초 연말 재고액
○ 연초 재고액은 1975.1.1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5.12.31 현재로 소재 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 소유의 재고품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입한다.
○ 위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포함하고 수탁으로 인한 재고품은 제외한다.
○ 완제품의 재고액은 13항의(2), (3)의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완제품출하액: 동량인도가격으로 출하액, 수제, 직유류제, 직물제, 등이 포함된 금액			1	3	1	2	3	7	1
(2) 제품 판매액: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합격품 및 제품 등의 판매액							1	4	0
(3)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수탁 생산하고 받은 가공임, 수리 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								7	7
합 계			1	3	1	3	7	7	1

11. 연간 주요 생산비
○ 1975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 자가생산된 중간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최초의 원재료비만 기입한다.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원재료비: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운임 포함)				7	4	2	6	3	0
(2) 연료비: 석유, 석탄 기타 연료						4	2	4	2
(3) 구입전력비: 전기요금(사무실포함) 미분금 포함						9	8	6	2
(4) 구입용수비: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							8	2	0
(5) 위탁생산비: 가공임(위탁생산을 위해 제공한 원재료비는 제외)									
(6) 수리유지비: 유형고정자산의 수리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				1	1	4	2	9	
합 계				7	6	8	9	8	3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완 제 품				5	7	2	1	1		7	2	9	9	8		
② 반 제 품 및 제 공 품						2	6	2	2			3	2	4	1	
③ 원 재 료				2	7	4	2	9				1	8	6	2	4
④ 연 료						2	4	2						2	7	9
합 계				7	7	5	0	2				9	5	1	4	2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제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단위로 기입하고 주요란에 자세한 내용을 명기한다.

☆이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완 제 품 명	☆이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단 위	(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2) 품목별 완제품 연초 재고액					(3) 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수 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수 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수 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39092122	싸인펜		타	124,251			5	8	2	7	5	3			8,682			2	1	7	1	0			9,749			2	9	2	4	7	
	②	39092114	연필		타	1612,261			4	9	6	2	7	8			96,822			2	4	2	1	0			98,652			2	9	5	9	6	
	③	39092112	만년필		개	152,628			1	4	2	3	7	9			7,522				6	0	1	9			8,025			7	6	8	2		
	④	39092115	코어피스		개	162,250			4	8	7	0	5				8,272				2	0	6	8			8,674			2	6	0	2		
	⑤	39092113	볼펜		개	1,246,440			3	7	3	9	2				17,678				2	9	4	2			118,421			3	5	5	3		
	⑥	39092900	기타의 사무용품		*	-					4	8	6	2			-										-					3	1	6	
	⑦																																		
	⑧																																		
	⑨																																		
	⑩																																		
	⑪																																		
	⑫																																		
		합	계			3,409,940			1	3	1	2	3	7	1		239,000				15	7	2	1	1			243,521			7	2	9	9	8

(10항의)과 일치) -64- (12항의)의(1)과 일치) (12항의)의(2)의(1)과 일치)

제 요

o 참고사항 (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 실적 동향 등)

(1) 한국 XX 주식회사 수원공장	사인원 등 사무용품 제조업체 75명 1,329,777천원
(2) 한국 XX 주식회사 부산공장	사인원 등 사무용품 도매업체 75명 574,625천원
(3) 한국 XX 주식회사 안양공장	반년필 등의 사무용품 제조업체 75명 482,624천원
(4) 주식회사 한국 XX 서울공장	사인원 등 사무용품 도매업체 75명 246,226천원

조사에 관한 사항

1. 조사표 작성년월일	2. 응답자 소속	3. 응답자 성명	4. 조사원 성명	5. 지도원 성명
1976년 11월 8일	총무과 전화 (74-7447)	박영우 ㉑	윤현등 ㉑	김갑동 ㉑

지정 통계
제 17 호

통계법 제8조 및 동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75년

광공업통계조사표 (II)

(본사 본점 조사용)

조사표번호						기업체 고유번호
18						46
조사구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112-11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한국 XX 주식회사

대표자명 최발산 (전화 74국 7447번)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동 5가 11번지의 36호 (5층 2반)
부산직할시 동구 유년리

2. 창설년·월·일

1963년 8월 15일

3. 조직형태

해당란에 O표

(1) 주식회사 (O) (2) 기타 법인 () (3) 개인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함)

1975.12.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5	5	7	0	0	0

주(註)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 제 기 획 원

본 조사에 관한 문의는 조사통계국 산업과
직통 74-8176
교환 75-5371-5375

5.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 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고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표 표시를 한다)
 - 연간급여액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을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퇴직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 급여액												
				계	남	여	십억	억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	천원						
(1)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2) 피고용자	62	62	61	60	48	12			4	27	8	3							
합계	62	62	61	60	48	12			4	27	8	3							

6.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연초 재고액은 1975.1.1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5.12.31 현재로 기입한다.
 -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작가시가로 평가한다.

구분	(1) 연초 재고액					(2) 연말 재고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원재료																	
② 연료						3	2	5							3	8	6
합계						3	2	5							3	8	6

7.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신규취득액: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
 - 중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 및 설치비
 - 처분액: 매각, 양도, 재매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구분	(1) 연간신규취득액					(2) 연간중고취득액					(3) 연간처분및손해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토지																		
② 건물 및 구축물						2	7	5	2	4								
③ 기계기구및장치																		
④ 차량선박및운반구									2	4	5	0			1	2	0	0
합계						2	7	5	2	4					2	4	5	0

8. 건설가계정 (본사·본점분에 한함)
-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부자 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축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 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3) 연간 증감 ((1) - (2))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7	5	2	4	
											△	2	7	5	2	4

9. 조사표 작성 근거
- 해당란에 ○ 표
- (1) 장 부 (○) (2) 일부기억 () (3) 기억 ()

10. 관할사업체 명부
- 1975.12.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경제활동 구분란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 한다.
 -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非)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란에 해당 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무역업, 도매업 등)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경제활동 구분			주요 생산품명
					광공업	겸업	기타	
(1) 한국XX(주)수원공장	최발선	수원 822	경기도 수원시 배관동 136-10	718	○			사면
(2) 한국XX(주)부산총판	문갑부	22-3456	부산광역시 영도 남동동 15-2	74			○	도매업
(3) 한국XX(주)안양공장	최발선	안양 2345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246	186	○			반도체
(4) 주식회사 한국XX서울총판	신사필	24-65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가 824	85			○	도매업
(5)								
(6)								
(7)								
(8)								
(9)								
(10)								
(11)								
(12)								
(13)								

광공업통제조사표작성 및 심사요령도 (조사표 I)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본사 (본점) 명 및 소재지
 (1) 본사가 따로 없다 (0) **소재지 기재불요**

3. 창설년월일
12월의 연조가산 있어야 한다.
25년 창설이면 일반화 3월

4. 조직형태
 (1) 주식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있어야 한다 (1) & (2) → **있어야 한다** (3) → **있어야 한다**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있어야 한다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 **품명이 밝혀져야 한다.**
 (2)
 (3)

7. 총업원수

구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2) 피고용자	① 생산종업원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합계				

8. 월별조업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① 8월을 3, 6, 9, 12월이 휴일이면 다른 달(월)에 조업하였다든 7월의 인은 3, 6, 9, 12월 총업원수 사선(\\)
 ② 월별조업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재확인

9. 연간금액

구분	금액
(1) 생산종업원	인당연 6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이면 재확인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인당연 12만원 미만, 240만원 이상이면 재확인
합계	

10.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구분	금액
(1) 완제품출하액	()
(2) 제품 판매액	(1)의 완제품출하액의 10% 이상이면 재확인
(3) 위탁제조 및 수취수입액	
합계	

11. 연간수요생산비

구분	비율
(1) 원재료비	30% 이상 50% 이상
(2) 연료비	
(3) 구입전력비	40% 이하 20% 이하
(4) 구입용수비	
(5) 위탁생산비	
(6) 수리유지비	40% 이하 10% 이하
합계	수준보다 그 이상이면 재확인

12. 연초 연말 재고액

구분	(1) 연초재고액	(2) 연말재고액
① 완제품	()	()
②		
③		
④		
합계	()	()

13. 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완제품명	(1) 품목별 완제품출하액	(2) 품목별 완제품연초재고액	(3) 품목별 완제품연말재고액
①			
②			
③			
합계	()		

14. 유형고정자산의 연간취득 및 처분액
14항의 취득액 기재 불요

15. 건설가계정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감소	(3) 연간증감 (1) - (2)
()	()	() > (1)이면 Δ ()

16. 조사표작성근거

작성에 관한 사항

17.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8. 주요생산품명

19. 품목별 완제품출하액

20. 품목별 완제품연초재고액

21. 품목별 완제품연말재고액

22. 기타사항

(부 록 3) 도량형 단위환산표

길 이

	척(尺)자	정(町)	리(里)	미(米)m	촌(寸)척	척(尺)척	마(碼)Yds	리(哩)
척(尺)자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미(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寸)척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척(ft)	1.00582	0.002793	0.0000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마(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哩)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 (匁)	관 (貫)	근 (斤)	그 램 (g)	온 스 (oz)	파운 드 (LBS)	돈 (噸) (영)	돈 (噸) (미)
돈 (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 (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斤)	160	0.16	1	600	21.1643	1.32277	0.00059	0.000661
그 램 (g)	0.26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0.000001
온 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 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噸) (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噸) (미)	241,916	241.916	1,511.97	907,185	32,000	2,000	0.892857	1

용 처

	홉 (合)	승 (升)	두 (斗)	석 (石)	입방미 (㎥)	리 터 (㏏)	개 룡 (영)	개 룡 (미)
홉 (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 (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두 (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석 (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입방미 (㎥)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리 터 (㏏)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개 룡 (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 룡 (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1976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6년

광 공 업 통 계 조 사

조 사 요 령 서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5
4. 조사 체계	6
5. 조사 기간	9
6. 조사 범위	9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4
8. 조사 단위	15
9. 조사 사항	16
10. 조사표 종류	17
11. 조사 방법	18
12. 집계 및 공표	19
II. 조사원의 임무	20
1. 조사 업무의 실시순서	20
2. 조사용품의 수령	20
3. 사전 조사	21
4. 면접요령 및 실사	23
5.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8

6. 기 타	29
III. 조사표 기입요령	31
1. 일반적 유의사항	31
2. 항목별 기입요령	33
가. 조사표 I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3
나. 조사표 II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61
IV.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65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 요령	65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67
부록 1. 조사표류 기입예시	69
부록 2. 조사표 작성 및 심사요령도	73
부록 3. 도량형 단위 환산표	75

I.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광공업부문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생산비 및 유형고정 자산 등의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동부문의 생산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장단기별 제반 경제계획수립과 동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동자료는 당해 분야 개개기업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서도 널리 이용된다.

2.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2799호)에 의하여 지정 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職務遂行過程)에서 지득(知得)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계법 제 8 조 ; 비밀의 보호(秘密保護)

- 통계법 제 9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 통계법 제 17조, 동 18조; 벌칙규정 (罰則規定)

< 통계법조 (抄) >

제 2조 (정의) 본 법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사(調査) 통계와 보고(報告) 통계를 말한다.

제 4조 (신고의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法人)이나 단체(團體)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8조 (비밀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秘密)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保護)되어야 한다.

제 9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한다.

- (1)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申告)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虛偽)의 신고를 한 자
- (2)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妨害)한 자
- (3)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檢査)를 거부(拒否) 방해 또는 기피(忌避)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陳述)을 한 자

3. 조사 연혁

가. 광공업 센서스 (지정 통계 제 6 호)

- 1 회 1955년 한국은행 주관
- 2 회 1958년 한국산업은행 주관
- 3 회 1960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4 회 1963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5 회 1966년 " " "
- 6 회 1968년 " " "
- 7 회 1973년 경제기획원 주관

나. 광공업 통계 조사 (지정 통계 제 17 호)

- 1 회 1967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 2 회 1969년 경제기획원 주관
- 3 회 1970년 "
- 4 회 1971년 "
- 5 회 1972년 "
- 6 회 1974년 "
- 7 회 1975년 "
- 8 회 1976년 "

4. 조사 체계

가. 조사 체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실시총괄

<각 지방 통계사무소>

1. 관내조사 총괄지휘 추진
2. 조사원 및 보조원 추천
3. 교육장소 선정 및 계출
4. 조사표류등 배부 및 계출
5. 실사지도
6. 질의조회 보조
7. 조사표류 내검
8. 자체적 조사구 보완등

<보조원>

1. 조사표류내용검사
2. 각종부호점사
3. 기타관계 업무보조

우편조사

<상주조사원>

1. 지정사업체 조사
2. 자체식대상처 조사표 배부 및 계출
3. 우편조사대상처 사후보완

<임시조사원>

지정사업체 조사

<대상사업체>

◎ 자체식조사대상처
200 인이상 사업체중
비광공업동태조사업체

◎ 자체식조사대상처
200 인이상 사업체중
광공업동태조사대상업체

※ 타제식조사대상처
200 인미만 업체중
(주로) 시부업체

※ 타제식조사대상처
200 인미만 업체중
(주로) 군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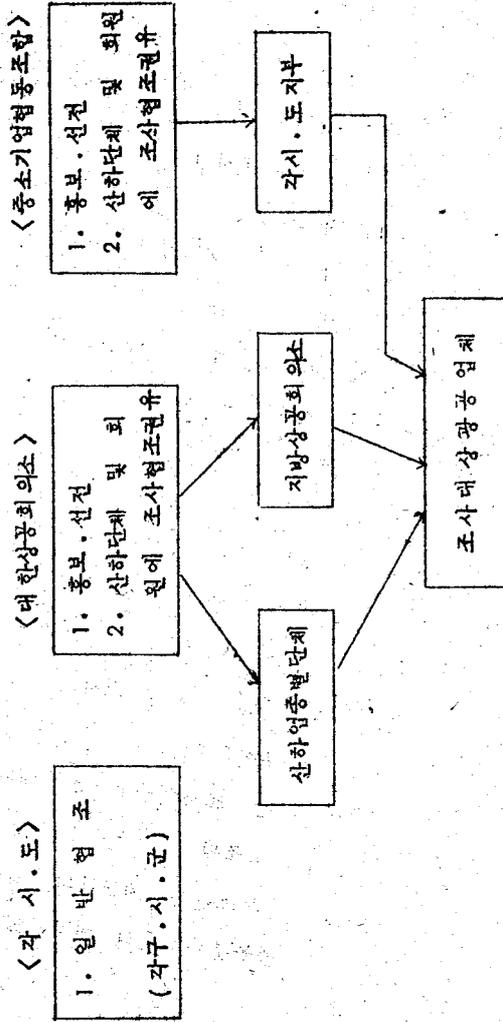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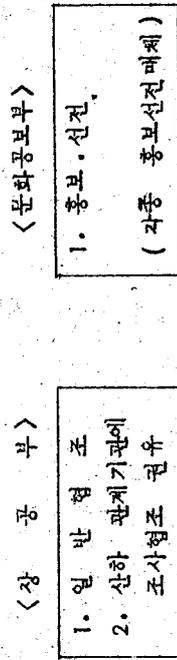
사후보완

사후보완

타제식조사

타제식조사

나. 협조 기관



다. 지도원 및 조사원

(1) 지도원

각 시도 지방통계사무소장(직원포함)은 지도원으로서 관할지역 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 및 내용검사업무에 종사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2) 조사원

가) 상주조사원

경제기획원 직원인 상주조사원은 광공업동태조사지역내의 지정 사업체에 대한 조사표 배부 및 회수업무와 지정된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나) 임시조사원

신규임용된 조사원으로서 지정된 조사구내의 대상사업체중 일부사업체(우편조사, 중앙조사)를 제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3) 보조원

보조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하에 접수된 조사표류의 내용검사와 품목분류번호의 검사 및 기입과 기타 관계업무를 보조한다.

라. 자계식 조사

증업원 2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3월 1일부터 우편 또는 배포방법에 의하여 자계식 조사로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후 보완(미제출업체의 조사표회수제출)은 각지방통계사무소의 지휘를 받

어 상주조사원이 담당한다.

5. 조사 기간

가. 조사 기준일 ; 1976. 12. 31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6. 1월 1일부터 1976. 12월 31일까지의 1개년

다. 조사실시기간 ; 1977. 4. 1 ~ 4. 30 일까지의 1개월간 (임시직조사원)

; 1977. 4. 1 ~ 5. 31까지의 2개월간 (상주조사원)

6. 조사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5.12.30 개정) 에 따른 대분류 「 2 」 에 해당하는 「 광업 」 과 대분류 「 3 」 에 해당하는 「 제조업 」 이다.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가. 광업의 정의 (定義)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 (석탄가스), 액체 (원유), 고체 (석탄 및 금속) 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채광 (碎斫), 세척 (洗滌), 채질, 선광 (選斫),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 사업자가 하던 간에 포함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비금속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던, 집에서 행하여지던 이를 가리지 않는다.

※ 광업과 제조업을 일관작업으로 하고 있거나 겸업인 경우에는 최종 출하되는 품목의 출하액 비중에 따라 주산업을 결정한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4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漁船) 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아이진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정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판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디셔너, 전등 및 전선 등을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 소매업자 또는 행상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를 가공처리를 하고 가공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출하액 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채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도정업(搗精業)

도정업은 여하한 형태의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賃加工料)만 조사하며 부산물(飼料) 수입만은 원제품으로 조사한다.

② 도살(屠畜)업

도살업도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

산물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B) 수리업(修理業) 또는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류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 서어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재생(再生)하여 출하(판매)하지 않는 한 차주(車主)로부터 주문(注文)에 의한 수선, 정비등은 조사에서 제외하며 단 선박수리는 제조업 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개개의 가정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포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B)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판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B)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업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이) 방위(防衛) 산업과의관관계

- ① 군(軍)에서 직영(直營) 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製造納品)하거나 임의(任意)로 군수품(軍需品)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모두 제조업(製造業)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 ② 군(軍)으로부터 원재료(原材料) 또는 중간제품(中間製品)이나 반제품(半製品)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受託業體)라도 이는 정부와 제조업체 사이에 위탁(委託)받은 경우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원재료를 수탁업자 자신이 구입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조출하하는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7. 조사대상사업체의 결정

1976년 12월 31일 현재 국내(國內)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가. 1976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從業員數)가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다.

나. 1976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지시받은 업체, 즉 조사대상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는 제외

업(廢業) 전업(轉業) 또는 다른 산업에 속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다. 1976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총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라. 1976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조업기간(操業期間)중의 평균총업원수가 5인 이상이었던 사업체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갱생원, 재활원(再活院)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학교 실습장)

8. 조사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공장과 본사 및 광산 등의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동일구내 (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9. 조사사항

가. 조사표 [I] 공장(사업체)용

- | | |
|-------------------------|-----------------|
| ①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 ②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 ③ 창설년월일 | ④ 결산기 |
| ⑤ 조직형태 | ⑥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⑦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⑧ 종업원수 |
| ⑨ 월별 조업일수 | ⑩ 연간 급여액 |
| ⑪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⑫ 연간 주요 생산비 |
| ⑬ 연초 연말 재고액 | |
| ⑭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
| ⑮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

- ⑯ 건설가계정
- ⑰ 조사표 작성근거

나. 조사표 [II] (본사 (본점) 용) 서문사본소, 문주부영인쇄

- ① 본사 (본점) 명 및 소재지
- ② 창설년월일
- ③ 결산기
- ④ 조직형태
-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
- ⑥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⑦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 ⑧ 유형고정 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 ⑨ 건설가계정
- ⑩ 조사표 작성근거
- ⑪ 조사표 작성가능여부
- ⑫ 관할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 [III] 지정사업체용 17개 항목

10. 조사표의 종류 (調查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3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사업체용 조사표 (I)본사 이외의 일반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용 조사표 (II)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 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할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단, 이때에는 5항까지와 11항 및 12항의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Ⅰ)에 작성한다.

다. 지정 사업체용 조사표(Ⅲ)……종업원 200인이상의 지정 사업체에 적용한다.

11. 조사 방법

가.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 적용

일반 사업체에 대하여는 타계식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조사대상사업체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帳簿)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자계식(自計式) 조사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나. 자체식 방법 적용

지정 사업체 (조사구별 사업체명부상 "우편조사"라고 표시된 업체)에 대한 조사는 본부 혹은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우편(郵便) 조사와 인편배부 및 회수방법등 자체식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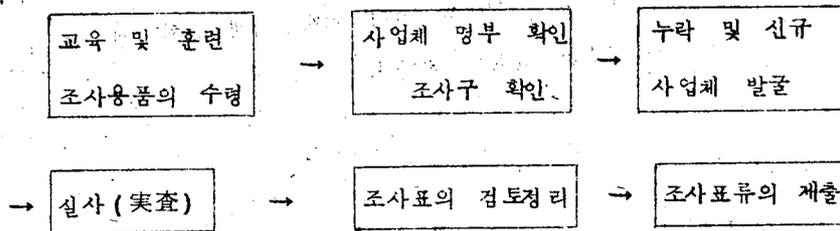
12. 집계 및 공포

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포한다.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요령서

(2) 산업 및 품목분류표

마. 조사용품 및 협조의뢰(지시)공문

3. 사전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읍·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조사원과의 협조를 얻어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교육기간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6년도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폐(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 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를 하여 1976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6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명부 후단·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 한다.

특히 방위(防衛) 산업체 등 특수사업체라도 명부에 누락된 업체를 빠짐없이 발굴보완(發掘補完) 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중복(重復) 등 유고사업체는 명부 표지이면의 유고사업체 정리요령에 의거 유고내용을 기입한 다음 비교란에 일시(日時), 변경된 업종(業種), 중복된 업체의 조사구번호 및 일련번호등을 기입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것은 중복을 비롯한 여하한 유고의 경우라

도 명부를 삭제하지 말고, 정정하거나 유고내용과 비교란에 기록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리) 담당 조사구내에 1977년도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될 때도 명부후단(名簿後段)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7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그러나 조사표 작성대상(作成対象)이 아님을 유의한다.

(리) 신규 혹은 누락사업체를 명부에 새로 적어넣을 경우 조사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일련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부받은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 정정, 추가하여서는 안된다.

4. 면접요령(面接要領)과 실사(実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

접을. 요청 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
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조사는 15번째 조사이
며 지난해와 같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
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
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하여도 시중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實査)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收時)에는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4) 이 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기입한다음 조사표를 1매 더 배부하여 사업체(공장)로 하여금 본사에 조회 혹은 의뢰하여 작성토록 조치한후 재방문하여 완전히 기입된 조사표를 회수한다.

(5) 본사의 조사

(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Ⅲ)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① 조사표(Ⅱ)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표(Ⅲ)는 5항까지와 11항 및 12항의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Ⅱ)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계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 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덕대계 채택광산이란 광업권자가 여러 하청

업자에게 일정한 임대료(賃賃料) 또는 이익분할 조건으로 일정 구역을 채광경영케 하는 제도이다.)

(7) 지정사업체 조사

사업체명부중 조사표번호란에 "우편조사" 또는 "중앙조사"라고 기록된 지정 업체는 우편으로 또는 본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따라서 조사원은 이를 유의하여 중복조사되지 않도록 이를 제외한 일반 사업체에 한하여 조사한다.

다만 이들 지정사업체중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상주조사원은 조사표의 작성을 촉구하여 회수 제출한다.

(8) 방위(防衛) 산업체 조사

(가) 피조사자(被調査者)가 응답을 주저하거나 조사상의 애로가 발생하면 통제조사의 목적과 비밀(秘密)의 보호(保護)를 주지시켜 보안상(保安上)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사표의 항목을 조사한다.

(나) 계속 비협조적이며 불응하면 지도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조사표의 14항중 품목별 완제품의 출하(出荷) 및 재고(在庫)량을 제외한 여타(餘他) 항목을 조사토록하고 이것 역시 불응하면 14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을 반드시 조사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5.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실사지도 및 조사표 심사요령」에 의하여 조사원 입회하에 재심사(再審査)하고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하도록 한다.
- (3)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누락(調査漏落)시킨 사업체를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回收)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정사업체(우편 또는 중앙조사)의 중복(重複) 여부(與否)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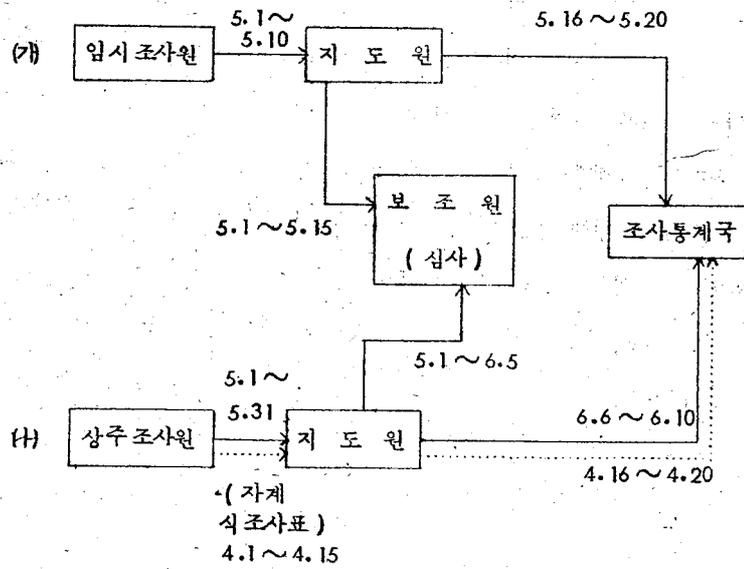
나. 조사표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체명부의 조사표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표지(表紙)에 가압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조사표 제출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완료하여 내검 및 부호기입을 마친 후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표 제출일정



6. 기 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 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転写)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통계법 참조)
- 바. 배부하고 남은 조사용품이나 배부된 책자는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 완료후 재심사, 분류, 집계 등 여러 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도박 도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0과 6, 4와 6, 1과 7, 4와 9, 5와 6, 5와 8, 6과 2, 3과 8 등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14항의 출하단가는 "원"단위이므로 예외)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복선으로(=)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조사표 기재시 착오(錯誤)나 오기(誤記)를 정정(訂正)할 경우를 감안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여백)를 남겨두고 기록한다.
($\frac{1}{2}$ 정도)

자. 단위(單位)는 품목분류표(品目分類表)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相異)할 때는 지정단위(指定單位)로 환산(換算)하여야 한다.

단, 환산이 극히 복잡(複雜)하고 어려울 때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수량으로 기록한 다음 사업체에 문의(問議)하여 그 단위의 규격과(規格) 환산가능(換算可能)한 방법을 모색(摸索)하여 전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차. 각 항목별 합계란의 계산(檢算)을 철저히 하여 계수(計數)의 정확을 기한다.

카.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訂正)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합계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訂正)한다.

타. 사업체의 특수사정 예를들면 결산기가 4월 이후라던가 본사에서

만 조사가 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장부와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표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한 다음 작성책임자로부터 언제까지 작성제출(우송)한다는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유고사업체로 처리하는 동시에 사업체명부와 조사표상의 조사표번호는 부여치 않는다.

따 완제품명, 원재료, 생산공정 등은 반드시 국문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부득이 영문(英文)을 사용한 경우에는 직요란에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업요령

가. 조사표(Ⅱ)의 항목(項目)별 기업요령

- 조사표 번호, 조사구 번호, 사업체 고유번호(사업체 카드번호) 조사구일람표(調査区一覽表) 및 사업체명부(事業体名簿)와 일치되도록 기재하며 사업체 카드번호가 기록되지 않은것은 사업체 고유번호란은 그대로 둔다.

그러나 대상사업체가 유고사업체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하고 당업체의 작성책임자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미완성 조사표에는 조사번호를 기입치 않는다. (사업체명부에도 부여치 않는다)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공장(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공장(사업체)이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공장(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XX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XX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공장(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시 구 로. 동 가 136번지의 16호
충청남 대전 시 은행 구 동 (2통3반)
 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리)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사 (본점) 명 및 소재지

본사 (本社) 가 따로 " 없는가? " " 있는가? " 를 먼저 질문하여 해당란에 " ○ " 포함 다음

(가)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 덕대 " 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할 사업체가 없이 직접 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월일 (創設年月日)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 (設立年) 월일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 (年) 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결산기

결산(決算)기의 마지막 월(月)을 말하며 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입한다.

(5) 조직형태(組織形態)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② 기타 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개인 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 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다) 이 항목은 공장(사업체)이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 법안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내에 ○표 한다.

(6)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出資金)

(가) 이 항목은 주식(株式)회사와 기타 법인(法人)에 한해서만 조사 기입하고 개인사업체(個人事業體)와 비법인조합(非法人組合)은 자본금이 있더라도 조사치 않고 사선(\)을 긋는다.

(나) 1976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공장(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7)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가) 주요 생산품명

①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②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제 14항 원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중

동일한 완제품(完製品)으로서 같은 품목분류번호가 여러 개 주어질 경우에는 같은 번호의 금액끼리 합산하여 큰 순위(順位)를 결정하여야 한다.

㉔ 1976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㉕ 만일 ㉔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㉖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6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㉗ 한 사업체가 벌목과 재제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 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 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재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은 결국 임업(林業) 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㉘ 조사표(Ⅱ)14항의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품목과 주요 생산품명의 ①번 품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품목분류번호(品目分類番号)가 여러 개 주어질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주요 사용 원재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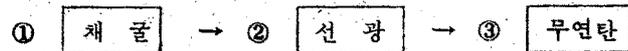
- ① 이 항목은 원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 ②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4종류 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다) 생산공정 (生産工程)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 (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 : (1) 광업의 경우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畝)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14)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 ㉞ 구루타민산 소다(구루타민산 나트륨)를 제조하는 경우

① 전분(澱粉) → ② 당화 → ③ 발효 → ④ 농축
 → ⑤ 산분해(酸分解) → ⑥ 여과 → ⑦ 농축 →
 ⑧ 염산염(鹽酸鹽) → ⑨ 탈색 → ⑩ 결정 → ⑪
 구루타민산소다

㉑ 폴라를 제조하는 경우

① 설탕물 → ② 용해 → ③ 여과 → ④ 첨가불매합
 → ⑤ 여과 → ⑥ 원액저장 → ⑦ 원액주입 → ⑧
 탄산수주입 → ⑨ 타전 → ⑩ 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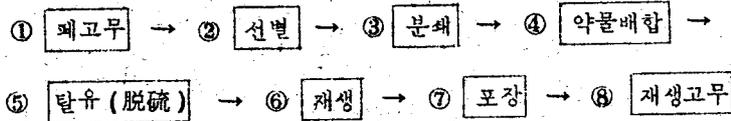
㉒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① 원면(原綿) → ② 면조(綿條: Sliver) → ③ 정방
 (精紡) → ④ 단사(單糸) → ⑤ 합사(合糸) 또는
 연사(撚糸) → ⑥ 면사(綿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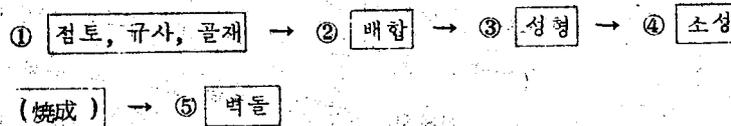
㉓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① 조성(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 → ② 초지(와이
 어에 의한 초지) → ③ 건조 → ④ 완성 → ⑤ 판지

㉔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㉕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8) 종업원수(從業員數)

(가) 3, 6, 9, 12월말중 휴업(休業)한 달은 휴업표시(△)하고 조업(操業)한 3, 6, 9, 12월말(各分期末) 현재의 종업원(從業員)을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事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 생산(生産)종업원, 사무 및 기타(事務 및 其他) 종업원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2분기 이상 휴업한 업체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요란에 기재한다.

(나) 특히 유의할 것은 1월과 2월은 조업(操業)을 하고 3월은 휴업(休業)하였으나 종업원을 해고(解雇)치 않고 급여(給与)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휴업표시(△)한다.

(나) 사업주 및 무급가족(無給家族) 종사자

① 사업체의 소유주(所有主, 出資者包含)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從事)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賃金)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名義)만으로도 사업주(事業主)이고 1주일에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 취업(就業)치 않는 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② 주식회사(株式会社)나 법인(法人)은 사업주가 유급(有給)이므로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個人) 사업체는 사실상의 사업주가 타 직업(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업감독상(監督上) 가족(家族)중의 1인은 1주당 작업시간의 $\frac{1}{3}$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적어도 1인은 있음에 유의한다.

※ 이익금(利益金)과 임금(賃金)을 혼동치 말 것.

(다)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급여(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계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㉔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坑내지주(坑内支柱), 권양(捲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㉔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
(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
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 가)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남, 여 구분없이 포함 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고용자는 남녀별로 구
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9) 월별 조업일수 (月別操業日數)

가) 1976년의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
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
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예; 상업, 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0) 연간급여액 (年間給与額)

- (가) 1976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금·봉급·상여금(賞与金)·각종 수당(品當)·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환산 포함한다.
-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 (다) 1976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6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6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 (라)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사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마) 급여액이 8항의 종업원수(従業員數)와 비교하여 현실적(現實的)인 급여수준(給与水準)에 미달하거나 초과(超過)하는 경우 1인당 월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가를 재 질문(再質問)하여 비교 확인한다.

(가) 일반적으로 결산(決算)상 제조원가보고서의 급여항목은 생산
종업원 급여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급여항목은 사무종업원
급여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11)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가) 1976년 1년간의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폐품(廢品)
출하액, 위탁제조(受託製造) 및 수리수입액(修理收入額)을 말
하며, 1976년 1년간에 일어난 출하(出荷) 및 위탁제조(受
託製造) 또는 수리(修理)에 대한 미수금(未收金)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나) 이 항목의 합계금액은 10항의 연간 급여액과 12항의 연간
주요 생산비 합계액(主要生産費合計額)보다 커야만 정상운영
(正常運營)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작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例)) : 재고증가(在庫增加), 유실(流失), 도난(盜難),
화재(火災)

① 완제품 출하액(完製品 出荷額)

②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他)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중에서, 1976년 1년
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특히 완성품이 아닌 중간제품

(中間製品)이라도 그 공장(업체)의 생산과정(工程)이 종료(終了)되어 다른공장(사업체, 동일기업포함)으로 출하(채투입)되는 것과 위탁판매, 직접 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 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 ㉔ 동일 기업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증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 ㉕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転売)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㉖ 금액은 제조업의 경우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賦渡)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内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 가격에 이 내국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㉗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

특별 출하액란에 기입한다.

- ㉞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㉟ 완제품 출하액은 14항의 (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㊱ 완제품 출하액이 있으면 12항의 연간 주요생산비 조사시 원재료비(原材料費)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출판업(出版業)은 없을 수도 있다.

② 폐품판매액 (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 ㉚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㉓·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1)항의 완제품 출하액에 제상한다.

④ 완제품 출하액중 국내소비세액

㉔ 이 항목은 국내소비세(國內消費稅)의 과세대상품목으로서 원천징수(源泉徵收)된 세액을 말하며 (1)의 완제품 출하액속에 포함된 세액을 기입한다.

㉕ 만약 (1)의 완제품 출하액속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세액을 파악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12) 연간 주요생산비(인건비 제외)

1976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연료비·구입전력비·구입용수비·위탁생산비·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 (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6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 ①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 ② 동일 기업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 부터 무상(無償)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 기입한다.
- ③ 수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 ㉡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 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 때 수탁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 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공장으로 부터 공급받은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나) 연료비 (燃料費)

- ① 1976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 ②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 전력비 (購入電力費)

- ① 1976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6년 1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 ②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2)항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 (購入用水費)

1976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 (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금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 ①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1)항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② 출판사에서 원고 값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 (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였을 때에는 위탁 사업체는 타 사업체 (수탁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 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 (轉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 (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①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 자산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5항 유형고정 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②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5항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3) 연초, 연말 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6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원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와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가)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엔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아직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공장(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의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다) 수탁가공을 위하여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 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라)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은 다음 14 항목의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연초재고액은 76년 1월 1일 현재로 조사되므로 76년도 창설업체(創設業體)는 연초재고가 있을 수 없다.

(14) 연간 완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1-(1)」 완제품 출하액과 「13-(1), (2)의 ①」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1-(1)」과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3-(1), (2)의 ①」과 각각

일치한다.

(가)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나)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다)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라)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애매한 품목(品目)에 대하여 조사원과 응답자(回答者)가 임의(任意)로 결정하여 적당한 품목분류표를 택함으로써 차질(蹉跌)을 초래(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상의 명칭(名稱)과 수량단위(單位)를 기입하고 품목분류번호는 생략(省略)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그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출하단가

원 단위로 기입하되 단일규격 제품일 때에는 년중 최저, 최고 가격을 규격이 다양한 품목일 경우에는 최저가규격의 년중 최저가와 최고가규격의 년중 최고가를 각각 기입한다.

(15) 유형고정 자산의 연간신규취득액, 연간중고취득액, 연간처분 및 손해액

(가) 유형고정 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부대설비와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 자산은 제외한다.

(나) 76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의 유형고정 자산취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계약(賃貸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대상황을 기록한다.

①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垆地), 사택대지(舍宅垆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배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台), 증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③ 기계기구 및 장치(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爐), 가열로(加熱爐), 용광로(熔礦爐),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될 때 집기란 내용 연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와 항공기를 말한다.

(다)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6년 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

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①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② 중고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土地)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中古取得)란에 기입한다.

※ 평가(評価) 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록한다.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名目上)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76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재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지 매매가 없었을 때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時價)에 의한다.

(16)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투입된 당원 재료비등의 투자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인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6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6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5항의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신규와 증고취득액(토지제외) 합계와 같거나 적어

야 한다.

(가)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반드시 △표시를 하고 차액을 기재한다.

(나)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17) 조사표 작성근거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적 요

(가)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도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나)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 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극히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 (다) 적자요인(赤字要因)과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임차경영(賃借經營), 건설가계정(建設假計定)의 연간감소의 내용 등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라) 외국어로 기록한 원재료명, 생산공정, 생산품명등의 자세한 용도를 기술한다.

나. 조사표Ⅱ(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Ⅲ)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있고 그중 1개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5항까지와 11항 및 12항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표 조사표Ⅱ)에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조사표(I)의 제 2항과 동일
- (2) 창 설 년 월 일: 조사표(I)의 제 3항과 동일
- (3) 결 산 기: 조사표(I)의 제 4항과 동일
- (4) 조 직 형 태: 조사표(I)의 제 5항과 동일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조사표(I)의 제 6항과 동일
- (6)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산하공장)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 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8항과 동일하다.

(나)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6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10항과 동일하다.

(7)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8) 유형고정 자산

(가) 유형고정 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 자산에 한한다.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 개축 등의 유형고정 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유형고정 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Ⅰ)의 제 15항과 동일하다.

(9) 건설가계정 : 조사표(Ⅰ)의 제 16항과 동일

(10) 조사표 작성근거

조사결과와 실행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11) 관할사업체(공장)의 조사표 작성가능여부

이 항목은 조사표(Ⅰ) 즉 공장(사업체)용 조사표의 작성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어느 한곳에만 "○"표 한다.

(12) 관할사업체 명부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傘下)사업체(공장)를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Ⅱ)는 조사하지 않는다 (경영청부와 기타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장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다)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음 기입한다.

IV.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요령

- ①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②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점검한다.
- ③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④ 사업체 명부상 조사표 번호 = 요계표 번호 = 조사표상 조사표 번호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⑤ 사업체 명부상 명부 기입요령에 의거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⑥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⑦ 자본금, 출자금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⑧ 주생산품명이 "원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 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⑨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⑪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⑫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⑬ 위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제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⑭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제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⑮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여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⑯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⑰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⑱ 가) 「연간 주요생산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계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급여액의 합계액은 「연말재고액 합계-연초재

고액 합계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⑮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⑯ 연간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완제품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출하단가를 적용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⑰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항(1) 완제품 출하액과 - 14항(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

13항(1), (2)의 ① 완제품 재고액과 - 14항(2), (3)의

품목별 완제품 재고액 합계

⑱ 유형고정자산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유형고정자산과 생산활동에 공여치 않은 개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의 투자 및 처분액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② 제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③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산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부록 1-1) 조사표용 기입예시

15. 1976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의 연건취득액 및 차입액

○ 신규취득액: 한전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행조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 포함)
 ○ 중고취득액: 신규 이외의 중고 자산취득 및 설치비
 ○ 차입액: 예각, 양도, 제해 등에 의한 차입 차분 및 간소액(장기성액에 의한 간소액 포함치 않음)

구분	연간 신규 취득액		연간 중고 취득액		연간 차분 및 손익액	
	액	단위	액	단위	액	단위
① 토지	12	468	36	461	24	464
② 건물 및 구축물	11	510	8	500	3	510
③ 기계, 기구 및 장치	5	000	4	000	1	000
④ 차량인 및 운반구	1	000	1	000	0	000
합계	39	978	49	961	10	1017

16. 건원가계정
 ○ 건원가계정이란 건원중간 유행조정자산(건물)의 건원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건원가계정은 연도별 차분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건취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건증감액만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액	연간 증가		연간 감소		연간 증감(1)-(2)	
	액	단위	액	단위	액	단위
① 건물	12	468	36	461	8	7
② 건물	11	510	8	500	3	10
③ 기계	5	000	4	000	1	000
④ 차량	1	000	1	000	0	000
합계	39	978	49	961	10	1017

17. 조사표 작성 근거

(1) 장 부(△) (2) 일부기역() (3) 기역()

해당연에 ○표

1976. 12. 31 현재 사업장의 연건취득액 및 차입액

○표 (1) 주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1976.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2) 주요사용원재료명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3) 생산공정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생산단계 또는 과정)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본 조사는 지난 12월 1일(1976. 11. 1 ~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총액 계, 생산액 계, 자본계, 이익계, 손익계, 자산계, 부채계, 현금계, 기타 계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성통계 제 17 호
 통계법 제 17 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통계자료에 대한 사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1976년
 공공기업조사표 (I)
 (공공기업조사용)

조사표 번호	14	조사표명	경기시수원(주)의 1976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의 연건취득액 및 차입액
조사구분	☆	사업종류	☆
조사기간	☆	작성연도	☆
작성일자	☆	작성처	☆
작성인	☆	작성일자	☆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경기시 수원(주) (주)수원(주)
 소재지: 경기시 수원(주) 소재지

2. 회사(본점)명 및 소재지
 경기시 수원(주) (주)수원(주)
 소재지: 경기시 수원(주) 소재지

3. 장원년월일
 1976년 12월 31일

4. 결산기간 (결산마감일)
 1976. 12. 31

5. 조직형태
 (1) 주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6. 자본금 또는 출자금(법인에 한함)
 1976.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7.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2) 주요사용원재료명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3) 생산공정 ① 석회 ② 석회 ③ 석회 ④ 석회
 (생산단계 또는 과정)

8.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9.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0.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1.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2.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9.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0.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1.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2.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3.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4.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5.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6.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7.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3.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4.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5.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6.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7.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8.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9.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0.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1.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2.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8.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9.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0.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1.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22. 출원번호: 1976.11.11. 1년 11월 11일 12월 31일

(19일(12월)까지)

(19일(12월)까지)

(부록 1-2) 조사표류 기업예시

제 요

○ 참고사항 (관할사법계의 투쟁, 연간 실적 등항 등)

- (1) 철강 X X 주식회사 수평공장 사원명 등 사원명 제조업체
76형상형 1, 228, 777 원본
- (2) 철강 X X 주식회사 무연공장 사원명 등 사원명, 도비업체
경흥배양형 574, 624 원본
- (3) 철강 X X 주식회사 상하공방 연철명 등 2의 부속물 제조업체
76형상형 422, 624 원본
- (4) 철강 X X 주식회사 수평공장 사원명 등 사원명 도비업체
76배양형 226, 226 원본

조사예 관한 사항				
1. 조사표	2. 용달자 소속	3. 용달자 성명	4. 조사원 성명	5. 지도원 성명
1977년 12월 21일	홍무 과	박성익 ②	윤관동 ①	김준동 ②
	전화 (74-7247)			

본 조사는 국민 1년간 (1976.1.1 ~ 12.31) 취업체의 고용, 급여, 휴식,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동계 제 17호
동계별 제 8호 및 동 9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976년

광공업 통계 조사표 (II)

(본사, 분점 조사용)

조사표번호	18				기업체번호	☆			
조사구번호	☆	본사번호	☆	생산분류	☆	제조형태	☆	자본계급	☆
1112-08	☆				☆				

1. 본사 (본점) 명 및 소재지

본사명 철강 X X 주식회사

제조자명 최발산 (전화 9209249번)

서울특별시 중구 동 5 동 1 5 동 2 번

2. 창립 연월일	1963년 8월 15일	3. 설립 목적 (주식회사인원)	(1) 원1의인원	①	12	명
		원3의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업	(2) 원2의인원	②		명

4. 조차방법

(1) 수직회사 (O) (2) 기타법인 () (3) 개인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함)

1976. 12. 31. 현재 본점이 원본금 금액

법인	실업	취직	원본	원본	실업	취직
1	5	5	9	0	0	0

경 계 기 회 원

본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은 조사동계부 산업동계과 (전화 74-8178) (전화 75-5371 ~ 5375) 문의하십시오.

6.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본에 한함)

- 사업주 및 부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일일적인 작업(경영) 시간의 1/3 이상 종사하거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게는 상용 임시 및 일고용종업원과 계약자, 단기휴가자가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고 장기 절근자 및 근무부자는 제외한다(휴업한 때에는 피고용자가 수 앞에 스로 표시를 한다)
- 연간급여액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을 지급한 것과 이복예를 포함한다(퇴직과 장기 절근자 및 근무부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분	12월 말						연간 급여액
	3월 말	6월 말	9월 말	계	남	여	
사업주 및 부급가족 종사자							연간 급여액만 기재
(1) 피고용자	62	62	61	60	48	12	413,219.6
합계	62	62	61	60	48	12	413,219.6

7.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본사·본점본에 한함)

- 원재료는 원재로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료 재고액만을 기입한다.
- 연료 재고액은 1976.1.1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6.12.31 현재로 기입한다.
-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지 어하는 때는 각자 시가로 평가한다.

구분	(1) 연초 재고액						(2) 연말 재고액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① 원재료												
② 연료		1	8	6								5
합계		1	8	6								5

8.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본사·본점본에 한함)

- 신규취득액: 한해도 사용안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의무으로부러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
- 중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 및 설치비
- 처분액: 매각, 양도, 재해 등에 의한 처분 및 손해액(장가 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구분	(1) 연간신규취득액						(2) 연간중고취득액						(3) 연간처분된손해액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① 토지																		
② 건물 및 구축물			18	62	4													
③ 기계기구및장치																		
④ 차량상반및운반구																		
합계			18	62	4													

9. 전설가계정
(본사·본점본에 한함)

- 전설가계정인 전설금전 유형고정자산(건물)의 전노를 위한 부가 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이 된 또는 도체에 이르기까지 일정액으로 회회하는 제정을 말한다.
- 전설가계정은 연도별 지분회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가액만에 스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백만원	(1) 전설가계정 연감 증가						(2) 전설가계정 연감 감소						(3) 연감 증감 (1)-(2)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8	6	2	4								

10. 조사포착성격 (백만원) ○

(1) 정부(○) (2) 일부기업() (3) 기업() (4) 기타() (5) 기타() (6) 기타()

11. 관할사업체의
공공기관 조사포착
성격 구분()

(1) 사업체에서만 가능하다()
(2)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3) 모두 다 가능하다(○)

12. 관할사업체 명부

- 1976.12.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경제활동 구분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로 표시한다.
- 광공업 또는 광공업외 이(非)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단에 주요 생산품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단에 해당 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무역업, 도매업 등)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경제활동 구분		주요 생산품명
					광업	제조업	
(1) 한국(주)우원광업	최복순	02-4566	경기도 수원시 비안동 266-18	718	○		석탄
(2) 한국(주)부속광업	문갑부	02-4566	경기도 수원시 비안동 266-2	74		○	도매업
(3) 한국(주)한성광업	최복순	02-4566	경기도 수원시 비안동 266-18	186	○		석탄
(4) 우원광업(주)한성광업	신시원	02-4566	경기도 수원시 비안동 266-18	85		○	도매업
(5)							
(6)							
(7)							
(8)							
(9)							
(10)							
(11)							
(12)							
(13)							

광공업 통계조사표작성 및 심사요령도 (조사표 I)

15. 유망고성재료의 연구개발 및 차세대

(15) 중점개발이 실시될 분야

구분	(1) 연구개발 분야	(2) 연구개발 분야	(3) 연구개발 분야
구분	(1) 연구개발 분야	(2) 연구개발 분야	(3) 연구개발 분야
구분	(1) 연구개발 분야	(2) 연구개발 분야	(3) 연구개발 분야

16. 신소재개발

구분	(1) 신소재개발 분야	(2) 신소재개발 분야	(3) 신소재개발 분야
구분	(1) 신소재개발 분야	(2) 신소재개발 분야	(3) 신소재개발 분야
구분	(1) 신소재개발 분야	(2) 신소재개발 분야	(3) 신소재개발 분야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명

2. 본사(본점) 명 및 소재명

3. 생산현황

4. 생산기

5. 소재명

6. 주요생산품명 및

7. 생산종류

8. 주요생산품명 및

9. 생산종류

10. 생산현황

11. 생산기

12. 소재명

13. 주요생산품명 및

14. 생산종류

15. 주요생산품명 및

16. 생산종류

17. 주요생산품명 및

18. 생산종류

19. 주요생산품명 및

20. 생산종류

10. 생산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 실적표작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연구개발 및 기타수입액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연구개발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연구개발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연구개발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연구개발비

(부록 3) 도량형 단위 환산표

< 길이 >

	척(尺)	자(寸)	정(町)	리(里)	미(米)	촌(寸)	척(尺)	마(碼)	리(里)
척(尺)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자(寸)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6	0.667784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미(米)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寸)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척(尺)	1.00582	0.002793	0.00008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마(碼)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里)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량>

	돈 (匁)	관 (貫)	근 (斤)	구람 (匁)	온스 (OZ)	파운드 (LBS)	돈 (兩)	돈 (匁)
돈 (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 (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斤)	160	0.16	1	600	21.1643	1.32277	0.00059	0.000661
구람 (匁)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兩) (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兩) (匁)	241,916	241.916	1,511.97	907,185	32,000	2,000	0.892857	1

< 용 척 >

	홑 (合)	승 (升)	두 (斗)	석 (石)	입방미 (㎥)	리터 (ℓ)	개롱 (영)	개롱 (미)
홑 (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 (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두 (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석 (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입방미 (㎥)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리터 (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개롱 (영)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 (미)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1977년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요령서

(조사원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년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요령서

(조사원용)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계.....	4
5. 조사 기간	5
6. 조사 범위.....	6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0
8. 조사 단위.....	10
9. 조사 사항	11
10. 조사표 종류	13
11. 조사방법.....	13
12. 집계 및 공표	13
II. 조사원의 임무	14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14
2. 조사용품의 수령.....	14
3. 사전 조사	15
4. 면접요령 및 실사	17
5.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0

6. 기 타	21
III. 조사표 기입요령	22
1. 일반적 유의사항	22
2. 항목별 기입요령	23
가. 조사표 I (사업체용) 의 기입요령	23
나. 조사표 II (본사 또는 본점용) 의 기입요령	50
IV.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54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요령	54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56
부록 1. 조사표[1] 기입예시	59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61

I.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광공업부문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의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동부문의 생산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장단기별 제반 경제계획수립과 동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동자료는 당해 분야 개개기업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서도 널리 이용된다.

2. 조사의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2799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17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가.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통계법 제 4 조)

나.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통계법 제 8 조)

다.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통계법 제 9 조)

라.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職務遂行過程)에서 지득(知得)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 17 조, 동 18 조)

3. 조사 연혁

가. 광공업 인센스 (지정통계 제 6호) : 5년주기 (週期)

1973년 제 7회 조사 실시 (1955년 제 1회 실시)

1978년 제 8회 실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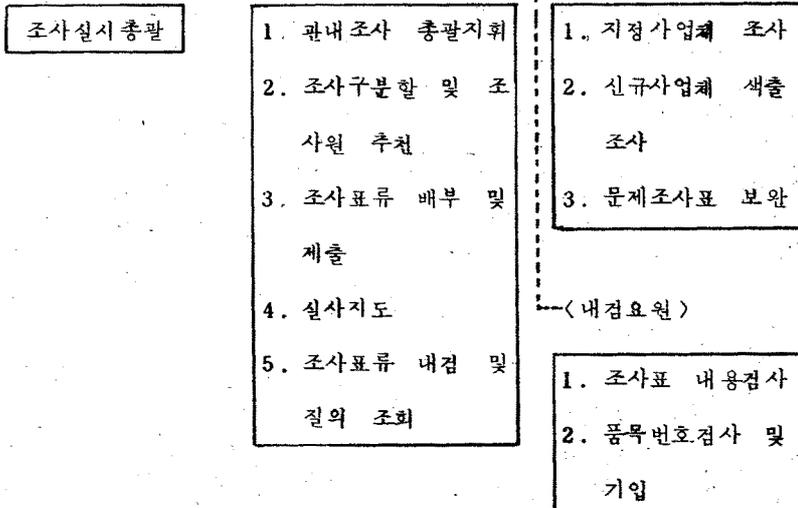
나.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7호) : 1년주기

1977년 제 9회 조사를 실시 중

4. 조사체계(調查體系)

가. 조사체계

〈조사통계국〉 〈각 지방통계사무소〉 〈상주 및 임시조사원〉



나. 지도원 및 조사원

(1) 지도원

각 시도 지방통계사무소장(직원포함)은 지도원으로서 관할지역 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 및 내용검사업무에 종사하며 관하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2) 조사원

가) 상주조사원

본 광공업 통계조사(정태)의 지정된 조사구내의 조사표 배부 및 회수업무에 종사한다.

나) 임시 조사원

임시 임용된 조사원으로서 지정된 조사구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3) 내검요원

내검요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하에 접수된 조사표류의 내용검사와 품목분류번호의 검사 및 기입과 기타 관계업무를 보조한다.

5. 조사 기간

가. 조사기준일 : 1977.12.31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7.1.1일부터 1977.12.31일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임시조사원..... 77.4.1 ~ 77.4.30(30일간)

상주조사원..... 77.4.1 ~ 77.5.10(40일간)

6. 조사 범위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에 해당하는 「광업」과 대분류 「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다.

가. 광업의 정의(定義)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鉱),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 사업자가 하던 간에 포함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비금속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던, 집에서 행하여지던 이를 가리지 않는다.

※ 광업과 제조업을 일관작업으로 하고 있거나 겸업인 경우에는
최종 출하되는 품목의 출하액 비중에 따라 주산업을 결정한다.

(1) 광업과 제조업에 포함되는 산업으로서 유의해야 할 산업

- (가)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
- (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가공제조하는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다)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 하여
주고 가공임을 받는 수탁 사업체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
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 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도정업(搗精業)

도정업은 어떠한 형태의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賃加工料)
만 조사하며 부산물(飼料) 수입만은 완제품으로 조사한다.

② 도살(屠畜)업

도살업도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
물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
한다.

(라) 방위(防衛)산업사업체

- ① 군(軍)에서 직영(直營)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

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製造納品)하거나 임의(任意)로 군수품(軍需品)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모두 제조업(製造業)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 ② 군(軍)으로부터 원재료(原材料) 또는 중간제품(中間製品)이나 반제품(半製品)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受託業體)라도 이는 정부와 제조업체 사이에 위탁(委託)받은 경우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원재료를 수탁업자 자신이 구입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조 출하하는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㉞) 연초(煙草)제조창과 담배 원료공장

「담배 원료공장」은 조사원이 조사하되 「연초제조창」은 중앙조사(전매청)되므로 조사하지 않는다.

(㉟) 선박의 수리업체

(㊱)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체(인쇄시설의 유무와는 관계없음)

(2) 제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대상의 산업)

(가) 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과의 관계

- ① 농가, 어가(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러나 유급 노동자를 4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 ② 어선(漁船) 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③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품을 토지에 고착화시키는 건설업체
(단, 부분품의 제조와 건설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품의 제조과정만을 분리시켜 제조업으로 조사하여
야 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 ①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음식업)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소매업자 또
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
로 본다.)
- ②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
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수리업(修理業) 또는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 용구 (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
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 (단, 선박수리는 제조업)

마)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
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 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가. 1977.12.31 현재 국내(國內)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
(휴업체 포함)로서 조업기간중 평균 종업원수(從業員數)가 5
명 이상인 사업체의 본사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단, 「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는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원(再活院)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8. 조사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공장과 본사 및 광산 등의 사업체(사업소)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와 보조적
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9. 조사사항

가. 조사표〔I〕 공장(사업체)용

- ①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 ②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③ 창설년월일
- ④ 결산기
- ⑤ 조직형태
- ⑥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⑦ 자본금 또는 출자금
- ⑧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⑨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 ⑩ 연간 급여액
- ⑪ 연간 주요 생산비

- ⑫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⑬ 연초 연말 재고액
- ⑭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⑮ 유형고정자산
- ⑯ 건설가계정
- ⑰ 조사표 작성근거
- ⑱ 기숙사의 유무(有無)

나. 조사표(Ⅱ) [본사(본점)용]

- ①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② 창설년월일
- ③ 결산기
- ④ 조직형태
- ⑤ 자본금 또는 출자금
- ⑥ 관할사업체명부 및 사업내용
- ⑦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 ⑧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
- ⑨ 유형고정자산
- ⑩ 건설가계정
- ⑪ 조사표 작성가능여부

10. 조사표 종류(調査票의 種類)

- 가. 사업체용 조사표(I).....본사 이외의 공장, 광산등의 일반사업체
- 나. 본사용 조사표 (II).....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으로서 산하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거나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 적용

조사원이 직접 조사 기재하는 타계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사업체로서 사업체의 원에 의하여 자계식(自計式)으로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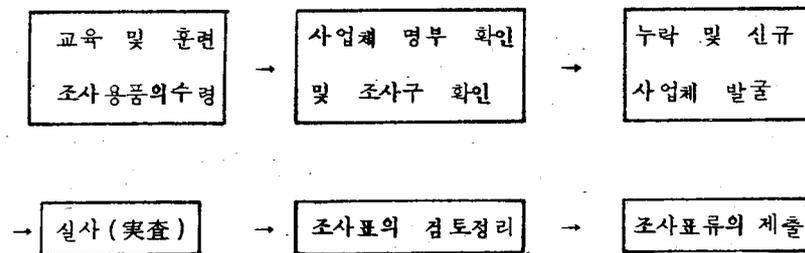
12. 집계 및 공표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및 사업체 위치도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요령서

(2) 산업 및 품목분류표

마. 조사용품 및 협조 공문

3. 사전조사(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2) 인접조사구 조사원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사업체 명부 확인

조사원이 수령한 명부는 1977년 광공업통계조사 실사(美査)를 위하여 여러 자료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보완

-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를 하여 1977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7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명부후단(名簿後段)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 등의 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오

기(誤記)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가) 폐업(廢業), 이전(移轉), 중복(重複) 등 유고사업체는 명부 표지이 권의 유고사업체 정리요령에 의거 유고내용을 기입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부를 삭제하지 말고 정정(訂正)하거나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나)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다) 담당 조사구내에 1978년도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될 때도 명부후단(名簿後段)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8년 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그러나 조사표 작성대상(作成對象)이 아님을 유의한다.

(라) 신규 혹은 누락사업체를 명부에 새로 적어넣을 경우 조사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일련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부받은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 정정, 추가하여서는 안된다.

4. 면접요령(面接要領)과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의 정중한 태도로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협조의뢰공문(지시공문)과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증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생산, 출하되는 전 품목을 작성자와 함께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찾아 품목명과 단위를 미리 지정(指定)해 준다.)
- (4)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절대로 보여서는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과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

위의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實査)

조사원은 조사표기입, 검토 및 정리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고,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의뢰 하여서는 안된다.

(1) 본사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

현지 사업체(공장)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본사 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한 다음, 조사표 1매를 추가로 배부하여 사업체로 하여금 본사 또는 가능한 사업체에 의뢰하여 조사기간내 작성되도록 협조를 구한다.

(본사조사가능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본사 경유 기간내 회수토록 한다.)

(2)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는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한 것은 결산을 기다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기간내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기위 결산된 전기분(전년도)결산서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3)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

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하나, 결산전이거나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가 될 관계서류나 전기분(전년도)결산서에 의거 작성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4) 본사의 조사

(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의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 ①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한다.
- ② 산하공장(사업소)수(數)대로 조사표를 배부하여 각공장분도 함께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의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 본사(또는 본점).....① 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② 조사표(Ⅱ)는 6항까지와 11항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분을 포함하여 (Ⅰ)표로서 조사한다.

(5)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

도저히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공장분과 합산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조사에 관한 사항」란에 합산 작성된 다른 공장의 사업체명, 소재지 총업원수 등을 기록하여 중복조사를 예방한다.

(6) 덕대계 채택광산

덕대계 채택 광산은 덕대 단위로 조사한다. 그러므로 광산조사시는 먼저 덕대계 채광여부를 확인한 다음, 광업권자별 경우에는 출하액 조사시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며,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직접 출하 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였거나 모두 출

하로 조사한다.

(7) 방위산업 사업체 조사

보안상 문제로 조사의 애로가 발생하면, 조사의 목적과 비밀의 보호를 유지시켜 협조를 구하되 방위산업품목에 한하여 기타로 구분하여 세세분류까지 분류한다.

5.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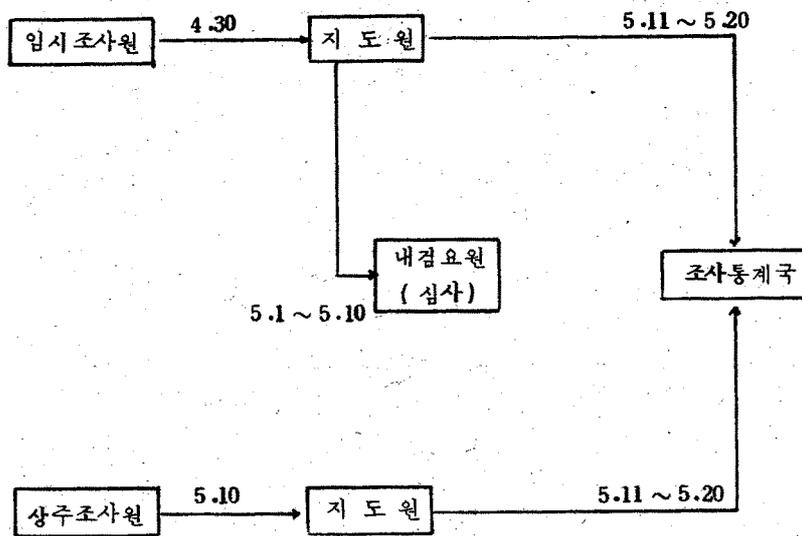
- (1) 조사표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 (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 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실사지도 및 조사표 심사요령」에 의하여 조사원 입회하에 재심사(再審査) 하고, 불안정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하도록 한다.
- (3) 사업체로 부터 조사표 회수시 전항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회수하고 사후 재방문, 전화질의 등, 사업체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조사표 제출

조사원은 조사표의 제출전에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재검토를 마친 다음, 조사표 번호순으로 철하고 조사표 표지와 요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체명부와 함께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한다. 이때에 사업체명부의 조사표작성여부란에 “○”표된 수와 조사표 표지의

조사된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조사표 제출 일정



6. 기 타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다. 사용하고 남은 조사용품이나 배부된 책자는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조사표 기입 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조사표 상의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나.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 다.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 라.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 마.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14항의 출하가격은 “원”단위이므로 예외)
- 바.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그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복선으로 (=) 긋고 그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 아. 조사표 기재시 착오(錯誤)나 오기(誤記)를 정정(訂正)할 경우를 감안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여백)를 남겨두고 기록되되 ($\frac{1}{2}$ 정도) 수정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선(=)을 그어 수정한다.
- 자.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訂正)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합계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訂正)하여 상호 연관되는 항목은 반드시 일치 되도록 한다.

차. 석탄광업을 제외한 광업사업체는 광석의 판매처, 즉 사업체명, 소재지등을 적요란에 명기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I)의 항목(項目)별 기입요령

※ 조사표 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신규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부의 비고란에 "신규 1", "신규 2"라고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그 번호("신규 1")를 조사표 번호란에 이기한다.

1 항;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1) 공장(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공장(사업체)이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공장(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한국××공업주식회사 강릉공장」

「주식회사××산업사 목호공장」

(2)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

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 명
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1동, 2동 명기)
예 ;

강원 시 강릉 구 성남 로, 가 100번지의 1호
 ⑤ ④ ⑤ 구 읍, 면 동 리 (1동 1반)

- (4)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
다.

2항 ; 본사 (본점) 명 및 소재지

본사 (本社) 가 따로 “ 없는가 ? ” “ 있는가 ? ” 를 먼저 질문하여
해당란에 “ ○ ” 표한 다음

-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
라고만 기입한다.
-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
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3) 덕대계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 덕대 ”
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항 ; 창설년월일 (創設年月日)

-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 (設立年) 월일을 기입하고 개인사업

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4)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항; 결산기

결산작업기간이 아니라 회계상 결산마감월을 말하며 연 3회 이상 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록한다.

5항; 조직형태(組織形態)

- (1)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 (2)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6항; 부지 및 건물연면적

- (1)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사택 및 기숙사와 그 매지, 운동장 포함)
- (2) 2층이상의 건물에 2개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는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은 실제

사용중인 연건생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3)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동산투자를 위한 토지와 건물

(나) 타인에게 임대해 준 토지와 건물(임차사용중인 것은 조사에 포함)

(다) 복리후생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설비의 부지와 별개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7항;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

(1) 이 항목은 주식(株式)회사와 기타 법인(法人)에 한해서만 조사 기입한다.

(2) 1개 회사에 2개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본사의 자본금을 공장별로 안배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납입자본금 전액을 기록한다.

8항;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1) 주요 생산품명

(가)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나)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제 14항 제품 출하여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중 동일한 제품(製品)으로서 같은 품목분류번호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는 같은 번호의 금액끼리 합산하여 큰 순위(順位)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용 원재료명

(가) 이 항목은 원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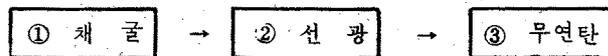
(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4종류 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3) 생산공정(生産工程)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 명을 기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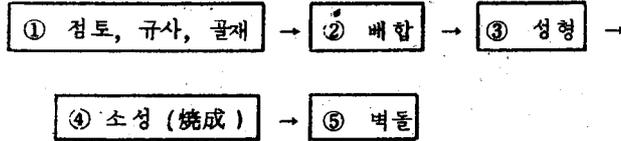
예 : (가) 광업의 경우

-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歛)까지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나) 제조업의 경우

-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9항 : 종업원수 (從業員數),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기간

77년 1년중 휴업(休業)한 달은 휴업표시(△)하고, 조업(操業)한 각월말(各月末) 현재의 종업원(從業員)을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事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 생산(生産)종업원, 사무 및 기타(事務 및 其他) 종업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되 12월말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 사업주 및 무급가족(無給家族) 종사자

- (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所有主, 出資者包含)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써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從事)하고 있거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賃金)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나) 주식회사(株式会社)나 법인(法人)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사업체(個人事業體)는 적어도 1인(人)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피고용자(被雇傭者)

- (가)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는 포함하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나) 일고종업원은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조업일수로 나누어 기록한다.

①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의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 서 제외한다.

②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3) 월별 조업일수(月別操業日數)

(가)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일일 노동투입시간 (日日勞動投入時間)

생산을 위하여 생산종업원(상용, 임시, 일고 포함)이 조업한
1인당 1일간(日間)의 평균 작업시간을 기록한다.

10항 : 연간급여액 (年間給與額)

- (1) 1977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
는 모든 급여 즉 임금·봉급·상여금(賞與金)·각종 수당·생
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급된
것도 환산 포함한다.
- (2)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
여액은 제외한다.
- (3) 1977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7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7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 (4)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
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5) 급여액이 9항의 종업원수(從業員數)와 비교하여 현실적(現實
的)인 급여수준(給與水準)에 미달하거나 초과(超過)하는 경
우 1인당 월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가를 재 질문(再質問)하
여 비교 확인한다.

- (6) 일반적으로 결산(決算)상 제조원가보고서의 급여항목은 생산중
업원 급여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급여항목은 사무종업원 급
여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11항: 연간 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 직접비 (直接費)

1977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단, 운임은 포함) 주요 생산
비를 원재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조사한다.

(1) 원재료비 (原材料費) (副材料包含)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7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부분품 용기(容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구입액(미사용 원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을 조사해서
는 안된다.

(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나) 동일 기업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 부터 무상(無償)
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등을 겸영(兼
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
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 기입한다.

(가) 위탁생산(受託生産)을 하는 경우

- ①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위탁생산을 하는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 ②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공 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2) 연료비(燃料費)

- (가) 1977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炉: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 (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연탄공장에서 무연탄)

(3) 구입 전력비(購入電力費)

- (가)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7년 1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포함한다.
- (나)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4) 구입용수비 (購入用水費)

1977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생산비 (委託生産費)

(가)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1)항의「원재료비」에 포함한다.

(나)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수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는다.

(6) 수리 및 유지비 (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諸費用)을 말한다.

(기계류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産)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제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5항 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5항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감추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2) 간접비(間接費)

간접비는 기업활동에 소요된 모든 경비에서 급여액과 직접비(直接費)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하며 제조원가 보고서(製造原価報告書)의 항목과 일반관리(一般管理) 및 판매비의 항목을 불문하고 동일성질(同一性質)의 비용을 합하여 기재하되 기타에 있어서는 나열된 항목이외의 비용 즉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등을 합산 기록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간접비가 30% 이상일 때는 적요란에 세분기업하여야 하며 다음의 별표를 참조하여 조사한다.

※ 간접비 항목 세부표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 항목	비 고
(7) 복리 후생비	① 구내식당운영보조비 ② 체육행사비 ③ 치료시설유지비 ④ 직원신체검사비 ⑤ 피복비	① 직원식대 ② 재해보상보험료 ③ 치료보조비 ④ 장학금 ⑤ 경조금 ⑥ 각종보조금	
(8) 운임 및 보관비	① 운 임 ② 보관료	① 행정수수료	
(9) 수수료	① 법무 및 회계 수수료 ② 판매수수료 ③ 자료처리비 ④ 감정비 ⑤ 감사비	① 행정수수료	
(10) 임차료	① 집세 (업무용 건물 임차료만 조사) ② 임차료 (유형고정자 산중 기계기구 및 장 치, 차량 선박 및 운반구)	① 집세 중 주거용 건물임차료 ② 지급지대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 항목	비 고
(11)광고 선전비	① 방송(TV, 라디오) 광고 ② 영화광고 ③ 신문광고 ④ 잡지 광고 ⑤ 카렌다광고 ⑥ 기타 인쇄광고 ⑦ 간판제조비 ⑧ 성냥 ⑨ 도자기 유리제품 ⑩ 수건 ⑪ 기타 물품		
(12)연구 개발비	① 순수연구비 ② 시험연구비 ㉞ 시약품비(試藥品費) ④ 위탁연구비 ㉠ 시운전비 ③ 연구운영비		
(13)보험 료	① 화재보험료 ② 기타 손해보험료	① 종업원의 건강 보험	자동차보험 료는 차량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 항목	비 고
		② 종업원의 손해보험	유지비에서 파악
(14)기 타	① 여비교통비 ㉠ 킬도운임 ㉡ 항공료 ㉢ 선박운임 ㉣ 자동차비 ㉤ 숙박비 ㉥ 일당 (日當) ② 통신비 ㉠ 우편료 ㉡ 전신료 ㉢ 전화료 ③ 차량유지비 ㉠ 휘발유 ㉡ 경유 ㉢ 윤활유 ㉣ 주차료 ㉤ 도로사용료	① 조세 공과 (租稅公課) ㉠ 영업세 ㉡ 물품세 ㉢ 재산세 ㉣ 인지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주민세 ㉧ 방위세 ㉨ 권허세 ㉩ 등록세 ㉪ 소방공동시설세 ② 방위성금 ③ 각종기부금	차량수리비 는 직접비 중 수리유 지비에서 조사한다.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항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세차료 ㉟ 자동차보험료 ④ 사무용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류 ㉡ 잉크류 ㉢ 장부노트및사무용지 ⑤ 교세접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음식대 ㉤ 숙박비 ㉥ 오락비 ㉦ 기념품비 ㉧ 다과비 (茶菓費) ⑥ 전본비 ⑦ 포장비 ⑧ 신문도서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료 ㉩ 서적 기타 정기간행물 ㉪ 복사및 기타인쇄물 ⑨ 공장용 소모품비 ⑩ 교육훈련비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항목	간접비에 서게 외할항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교육기관훈련비 ㉟ 군방구물품비 ㊱ 기밀비 ㊲ 수출제비 ㊳ 선적하역료 ㊴ 통관료 ㊵ 검수비 ㊶ 부두사용료 ㊷ 회약비, 잡비(기타) ㊸ 회비 ㊹ 상공회의소비 ㊺ 무역협회비 ㊻ 협회비 ㊼ 조합비 ㊽ 적십자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12항: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이 항목의 합계액은 급여액(10항)과 생산비(11항)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것이 정상운영이며 적은 경우에는 착오기입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상 적자인 경우에는 적자요인을 적요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표 검토 및 정리요령 참조)

(예) 재고증가, 유실(流失), 도난, 화재 등

(1) 제품 출하액

(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특별소비세)을 제외하고 판매이윤이 포함된 금액을 조사하고 사업체의 수입이 되는, 즉 결산에 포함되는 구입상품 매출액은 제외한다.

(나) 동일기업내에 2개이상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별로 최종완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한 공장에서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공장으로 보내서 최종 제품을 제조 출하하는 경우, 사업체에 따라 공장별로 독립채산에 의한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상 문제가 없으나, 통합하여 결산하는 경우 생산비와 출하액 조사에 애로가 있음. 즉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조사에서는 제품은 매출이 아니고 단순한 반출이기 때문에, 금액조사가 어려우나 반드시 금액조사되어야 하며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공장에서는 원재료가 되는 중간제품의 구입비를 조사 파악하여 생산비항목 원재료비에 넣어야 한다.

(다)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

시의 의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가) 제품 출하액은 14항의 (1)「품목별 제품 출하액」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 출하액이 있으면 11항의「연간 주요생산비」조사시 원재료비(原材料費)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출판업(出版業)은 없을 수도 있다.)

(2) 폐품판매액(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실사(屑系),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라고 해도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4) 내국 소비세액 (内国消費稅額)

(가) 이 항목은 77년 상반기 중 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간접세액(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과 하반기 중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과 특별소비세액, 주세액(酒稅額)의 총 합산액을 기재한다.

(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란은 꼭 있어야 한다.

※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 합계액 = 외형 매출 결산액 + 내국소비세액(간접세) - 구입상품매출액」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유념해 둔다.

13항 : 연초, 연말 재고액

(1) 연초 재고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그리고 「원재료」와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1977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있을 수 없다.

(3) 수탁가공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반드시 재고액이 있어야 하며 주문생산이라도 반제품(半製品)과 원재료의 재고(在庫)가 있다.

(4) 수탁가공을 위하여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 제품의 재고의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 (5) 여기에서의 제품 연초, 연말재고액은 다음 14항의 「품목별 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6개월을 1기(期)로 반년(半年) 결산하는 경우는 최종의 6개월(2기분) 결산기의 기말재고액(期末在庫額)을 기재한다.

14항: 연간 제품 출하 및 연초,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2-(1)」 제품 출하액과 「13-(1)(2)의 ①」의 연초, 연말 제품 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따라서, 품목별 제품 출하액 합계는 「12-(1)」과 품목별 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3-(1), ②」의 ①」과 각각 일치한다.

(1) 제품명 (製品名)

(가) 품목구분은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 책자에 수록된 품목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록해서는 안된다.

만약 산업 및 품목분류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명칭으로 기록하되 품목분류번호를 사업체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f) 구입(수입 포함)한 상품에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만 변경하여 그대로 판매(販賣)한 것은 제외한다.

(g) 품목 분류시 「기타」 품목은 총 출하액의 5%미만이 되도록 구체화(具體化)한다.

(2) 단위(單位)

수량단위도 반드시 「품목분류」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 「조사 요령서의 환산표」에 수록된 것은 그대로 환산하고 수록되지 않은 것은 생산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만약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을 적요란에 기록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만을 품목분류에서 지정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치 않은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3) 품목별 제품 연간출하액

이 항목은 앞에서 기술(記述)한바와 같이 앞서의 제품출하액을 품목별로 구분한 것이므로 집계액은 「12-(1)」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결산서상 제품별 수불내역상의 금액은 제조원가로 산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품목별로 매출이윤을 가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4) 단위당 출하가격

단가는 출하액을 출하수량으로 나눈 단가가 아니고 실제 출하 (매출) 가격으로서 1년중 최고규격의 최고가격과 최저규격의 최저가격을 기록하여야 한다. (“원”단위로 기입)

(5) 품목분류 번호

(가)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에 따라서,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생산공정에 따라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 정확한 분류가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나)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매매한 품목(品目)에 대하여 조사원과 응답자(應答者)가 임의(任意)로 결정하여 적당한 품목분류를 택함으로써 차질(蹉跌)을 초래(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상의 명칭(名稱)과 수량단위(單位)를 기입하고 품목분류번호는 생략(省略)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15항 : 유형고정 자산

- (1) 유형고정 자산(有形固定資産)이라 함은 토지(土地)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부대설비와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선박,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 자산은 제외한다.
- (2) 77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의 유형고정 자산취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계약(賃借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록한다.

①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垡地), 사택대지(舍宅垡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水槽),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③ 기계기구 및 장치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집기 포함]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의 반사로(反射炉), 가열로(加

熱炉), 용광로(熔礦炉),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装置)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 년수 1년이상이고 1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의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油槽船) 등의 해상 운반구의 항공기를 말한다.

(3)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7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増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① 신규 취득액(新規取得額)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의 대체금액을 포함한다. (외국으로 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② 중고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土地)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中古取得額)란에 기입한다.

(4)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77년 1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도

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제외한다.

(5) 감가상각액, 년말총액

이항은 종업원수 20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작성하되 77.12
31현재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16 항 :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인 유형고정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투입중
당된 재료비등의 투자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
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
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인수되었
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7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
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7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
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5항의 「유형고정자산(有形
固定資産)」의 「신규」와 「중고취득액(토지제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1)-(2)]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반드시 △표시를 하고 차액을 기재한다.

(4)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17항 : 조사표 작성근거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18항 : 기숙사의 유무(有無)

78.4.1 현재 기숙자수(寄宿者數)가 20명이상인 사업체에 서만 작성하되 「(1)있다」면 남 여 별로 구분하여 기숙자수를 기재한다.

적 요

- (1)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도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 (2)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단위

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극히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 (3) 적자요인(赤字要因)과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입차경영(賃借經營), 건설가계정(建設仮計定)의 연간감소의 내용 등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4) 외국어로 기록한 원재료명, 생산공정, 생산품명 등의 자세한 용도를 기술한다.
- (5)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수량 등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6)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Ⅱ(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Ⅱ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있고 그중 1개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6항까지와 11항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시 조사표Ⅰ에 포함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I)의 제 2항과 동일
- (2) 창 설 년 월 일 : 조사표(I)의 제 3항과 동일
- (3) 결 산 기 : 조사표(I)의 제 4항과 동일
- (4) 조 직 형 태 : 조사표(I)의 제 5항과 동일
- (5) 자본금 또는출자금 : 조사표(I)의 제 7항과 동일
- (6) 관할사업체 명부 및 사업내용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傘下)사업체 (공장)를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II)는 조사하지 않는다. (경영장부와 기타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장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다)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라) 「외형매출액과 기타 수입 총액」란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산 하 각 사업체별로 1년간 총 수입을 억(億)원 단위로 기 입하되 1억(億)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7)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 는 것이므로 기업체(산하공장)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

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1)의 제 9항과 동일하다.

(4)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7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1)의 제 10항과 동일하다.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나)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9) 유형고정자산

(가) 유형고정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 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1)의 제 15항과 동일하나 연말총액은 종업원 규모에 상관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10) 건설가계정

조사표(1)의 제 16항과 동일

(11) 관할사업체 (공장) 의 조사표 작성가능여부

이 항목은 조사표(I) 즉 공장(사업체)용 조사표의 작성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어느 한곳에만 "○"표 한다.

IV. 조사표 검토 및 정리오령

1. 항목별 검토 및 정리오령

- ①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②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점검한다.
- ③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의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④ 사업체 명부의 조사표작성여부란에 "○"표된 수와 조사표 표지의 조사된 조사표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⑤ 자본금, 출자금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⑥ 주생산품명이 "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 중"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⑦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⑧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⑨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개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⑩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제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원재료비란은 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을 참조하여 제상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②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제품 출하액과 비교하며 합리성을 검토한다.
- ③ 연간 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제품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출하가격을 적용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검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2항(1) 제품 출하액과 - 14항(1) 품목별 제품 출하액합계
- 13항(1), (2)의 ① 제품 재고액과 - 14항(2), (3)의 품목별 제품 재고액 합계
- ⑤ 「연간주요생산비+연간금액액」이 제품출하액+제품판매액+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연말 재고액중 ①과 ② - 연초재고액중의 ①과 ② 보다 클 경우(적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 ㉞ 제품 출하액의 매출원가로의 기록(제품수불명세서에 의한 작성) 가능성
이 경우에는 「제품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 ㉟ 원재료비의 중복 산입 가능성
제품 생산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경우 단계마다의 원가계산

으로 중복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투입 원재료비에 부가 재료비만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㉔ 동일기업내의 공장간 계정대체(재고처리)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본 조사의 매출개념과 사업체의 매출 개념의 상이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능한 본 조사의 매출개념으로 조사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를 받은 공장명, 제품명, 수량, 금액등을 적요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㉕ 겸업일 경우 타산업 부문에 자가사용

또문 타 산업 부문의 비용 과다일때; 가능한 타 산업과 구분 조사한다.

㉖ 위탁 생산품의 매출액 누락인 경우

당연히 포함조사 하여야 한다.

㉗ 관세 환급액을 원재료비에서 미 공제하였을 경우

㉘ 미 사용 원재료 재고액을 원재료비에 중복 산입하였을 경우
:미 사용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㉙ 주요품목 이외 기타 품목의 출하액을 누락시켰을 경우(광공업 동태조사대상 사업체에 중점 확인)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 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 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 ② 계열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 분류표」

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 하여 품위는 품위률, 화학계통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액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 ③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익하여 처리한다.

9. 출근인수, 출퇴근 인원수 및 노동생산량

○출근인수: 출근인수(정규직 포함)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출근인수를 집계한다. ○출퇴근 인원수: 출퇴근 인원수(정규직 포함)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출퇴근인수를 집계한다. ○노동생산량: 노동생산량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노동생산량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상임직원	2,200	2,2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 계약직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합	2,731	2,7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10. 연간 급여액

○연간 급여액: 연간 급여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액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상임직원	2,200	2,2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 계약직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531
합	2,731	2,7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2,631

11. 연간 주요 실적

○1977년 1년간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77년 1년간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77년 1년간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생산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판매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이익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2. 연간 총액 및 기타수입액

○연간 총액: 연간 총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액을 집계한다. ○기타수입액: 기타수입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타수입액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기타수입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3.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은 1월 1일 현재의 영업 재고액을 집계한다.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은 1월 1일 현재의 영업 재고액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재고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영업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제품 출하액: 제품 출하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품 출하액을 집계한다. ○재고액: 재고액은 1월 1일 현재의 재고액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제품 출하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재고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5.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은 1월 1일 현재의 영업 재고액을 집계한다. ○연초 영업 재고액: 연초 영업 재고액은 1월 1일 현재의 영업 재고액을 집계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 재고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영업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부록 2) 도량형단위환산표

<길 이>

구 분	척 (尺)	정	리	미 (m)	촌 (in)	척 (ft)	마 (yds)	리 (마일)
척 (尺) (자)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 (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吋) (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척 (尺) (ft)	1.00582	0.002793	0.0000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里) (마일)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보 이>

구	분	평 방 척	경	m ²	in ²	ft ²	yd ²
1	제곱자(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636
1	제곱미터 (m ²)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곱인치 (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곱피트 (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	제곱야드 (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무 계>

구	분	돈 (石)	관 (貫)	근 (斤)	그램 (g)	온스 (oz)	파운드 (lbs)	돈 (噸) (영)	돈 (噸) (미)
돈	(石)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	(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	(斤)	160	0.16	1	600	21.1643	1.32277	0.00059	0.000661
그램	(g)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0.000001
온스	(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	(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 (噸)	(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 (噸)	(미)	241.916	241.916	1,511.97	907,185	32,000	2,000	0.892857	1

<부, 피>

구 분	홉(合)	승(升)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개롱(甬)	개롱(坪)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개롱(甬)	25,2006	2,52006	0.2520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坪)	20,9833	2,09833	0.20983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1978년 광 공 업 센 서 스

조 사 요 령 서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4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제 및 각급기관별 임무	5
5. 조사 기간	5
6. 조사 범위	9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2
10. 조사표의 종류	12
11. 조사 방법	13
12. 집계 및 공표	14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4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14
2. 조사용품의 수령	15
3. 사전 조사	17
4. 면접요령과 실시	20
5.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22
III. 조사표 기입요령	22

1. 일반적 유의사항	22
2. 항목별 기입요령	23
가. 조사표(I)의 기입요령	23
나. 조사표(II)의 기입요령	53
다. 조사표(III)의 기입요령	55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58
1. 일반적인 사항	58
2. 항목별 심사요령	59
V. 조사요령서 요약 (I표기준)	64
1.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64
2. 조사표 기입요령	65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66
4. 조사표 검토 요령	67
부록 1. 조사표(1)의 심사요령도	68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69

I . 조 사 개 요

1 . 조 사 목 적

광업 및 제조업과 전기업, 가스업 및 수도사업부문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동부문의 수준과 구조변동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동부문과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 수립과 동 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 조사의 법적근거

본 센서스는 통계법(법률 제 2799 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6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가.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통계법 제 4 조)

나. 신고의 명령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자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법 제 17 조)

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통계법 제 8 조)

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통계법 제 9 조)

마.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득(知得)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계법 제 17 조, 동 18 조)

3. 조 사 연 혁

가. 광공업 센서스(지정통계 제 6호) : 5년주기

1973년 제 7회 조사실시(1955년 제 1회 실시)

1978년 제 8회 조사실시중

나. 광공업 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7호) : 1년주기

1977년 제 9회 조사실시(1967년 제 1회 실시)

4. 조사 체계 및 각급 기관별 임무

가. 조사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조사담당)→

사업체

나. 각급기관별 임무

○ 경제기획원 : (1) 조사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자료의 집계, 분석 및 공표

(3) 사업체 관리의 총괄

(4)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 총괄

(5) 중앙 교육 실시

(6) 지역별 자료의 기계 집계 협조

○ 시,도 : (1) 본 조사 계획과 관련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시,도단위(구,시,군 대상) 교육실시

(3) 조사용 제품품의 검수, 배부, 관리

(4) 조사의 지도 감독 및 독려

- (5) 조사표류의 회수 제출
- (6) 문제 (불완전) 조사표의 질의 조회
- (7) 지역별 사업체 관리
- (8)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 구,시,군 : (1) 본 조사 계획과 관련된 자체세부 추진계획 수립
- (2) 구,시,군 단위 (동,읍,면대상) 교육 실시
- (3) 조사용제용품의 검수, 배부, 관리
- (4) 조사의 지도감독 및 특수지역의 조사지원
- (5) 조사표의 회수 및 내용심사
- (6) 문제 (불완전) 조사표의 질의조회
- (7) 지역별 사업체 관리

- 동,읍,면 : (1) 자체교육 실시 (조사담당자 대상)
- (2) 실지 조사
- (3) 사업체 명부 정리 및 요계표 작성
- (4) 문제 조사표의 질의 조회
- (5) 지역별 사업체 관리

5. 조 사 기 간

- 가. 조사기준일 : 1978.12.31일 현재
- 나. 조사대상기간 : 1978.1.1일부터 1978.12.31일까지 (1개년간)
- 다. 조사실시기간 : 1979.4.1 ~ 4.30(30일간)

6. 조 사 범 위

본 조사의 범위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2」,「3」,「4」에 해당하는 광업 및 제조업과 전기업, 가스업 및 수도사업이다.

(본 조사요령서에는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서만 언급함)

가. 광업의 정의

광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고체, 액체, 가스등의 광물의 추출(抽出), 손질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廣義)로 사용된다.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광산(地表鑛山), 채석장(採石場) 및 유전(油田)에서 광물추출 활동과 더불어 광석 및 원재료를 손질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든 보조적인 활동 즉 파쇄(破碎), 제질, 세척(洗滌), 선별(選別), 마쇄(磨碎), 부유(浮游), 용해(溶解), 원유토판 및 기타 원재료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한다.

광상(鑛床)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작업과 광물을 시굴(試掘)하는 작업은 여기서 제외하여 각각 대분류(大分類) 5(건설업)와 8414(공학, 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에 분류하고 특정한 절토, 암석 및 광물을 파쇄(破碎), 마쇄(磨碎)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또는 채석활동과 연결되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3699(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그러한 과정이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공(手工)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장 또는 가내(家內)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생산품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되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광업과 제조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거나 겸업(兼業)인 경우에는 최종 출하되는 품목의 출하액 비중에 따라 주산업을 결정한다.

(1) 광업과 제조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서 유의해야할 업종

(가)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

(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가공제조하는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다)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 하여 주고, 가공임(수주 가공임)을 받는 수탁 사업체

이 경우 동일산업간의(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제조업체가 아닌 정부나 공공단체, 도·소매업, 무역업체 기타 건설업등 본 광공업통제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로부터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직접 구입 조달하여 자기명의로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도정업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벼(禾)를 구입 도정하여 출하하는 경우와 부산물(사료) 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마) 도살업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바) 방위(防衛)산업사업체

① 군(軍)에서 직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모두 제조업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② 군으로부터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이나 반제품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受託業體)라도 이는 정부와 제조업체 사이에 위탁받은 경우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원 재료를 수탁업자 자신이 구입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조 출하하는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마) 연초제조창과 담배 원료공장

「담배원료공장」(대부분 전매청에서 개인에게 불하됨)은 조사담당자가 조사하되 「연초제조창」은 중앙조사(전매청)를 하므로 조사하지 않는다.

(바) 선박의 수리업체

(사)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체 (인쇄시설의 유무와는 관계없음)

(2) 제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 (조사대상의 업종)

(가) 농림수산업과의 관계

① 농가, 어가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러나 유급 노동자를 4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③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

(나) 건설업과의 관계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품을 토지에 고착화시키는 건설업체 (단, 부분품의 제조와 건설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품의 제조과정만을 분리시켜 제조업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점책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음식업)
(그러나 점책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도·소매업자 또는 행상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라) 수리업 또는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① 주요 가정용구 (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 (단, 선박수리는 제조업)

(마)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조사대상 사업체 종업원 5인 이상의 전수조사(全數調査) 사업체와 종업원 5인미만의 "표본영세사업체로" 구분한다.

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결정

- (1) 1978.12.31일 현재 국내에 실제(實在)하는 사업체로서
- (2) 1978.12.31일 현재 휴업중인 사업체를 포함하여, 조업기간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인(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포함) 이상인 사업체와 본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의 결정

- (1) 1978.12.31일 현재 국내에 실재하는 사업체로서,
- (2) 1978년 1년중 조업기간의 평균종업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 (3) 1978.10.1일 실시된 상주인구조사시에 작성된 광공업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 명부를 모집단(母集團)으로 하여 표본 사업체를 추출하여 작성한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 명부를 기초로 한다.
- (4) 사업체 명부는 표본 행정동, 읍, 면내의 전체사업체(명부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를 조사하여야 할 조사구(사업체 명부에 진수조사구라 표시)와 표본 행정동, 읍, 면내(內)의 사업체 중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체만을 조사하여야 하는 조사구(사업체명부에 표본조사구라 표시)로 구분된다.

다. 종업원 5인 이상과 미만의 구분조사 한계

- (1)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명부에 등재(登載)된 사업체는 실제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조사표〔Ⅰ〕을 사용하고
 - (2)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는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조사표〔Ⅲ〕을 사용한다.
 - (3) 다만, 양쪽 명부에 중복 기재된 사업체는 조사 당시의 현인원을 기준으로 조사표의 종류를 선택 사용한다.
- 이러한 경우는 양쪽 사업체 명부의 비교란에 위의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1)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 (2) 공공직업보도서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갱생원, 재활원)
-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학교 실습장)
- (4) 비매품(非賣品) 제조업체
(예: 각종 협회보, 종교단체간행물 등)

8. 조 사 단 위

조사 단위는 공장과 본사 및 광산 등의 사업체(사업소)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자 또는 단일관리아래 주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 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內)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내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 제품 생산액 및 출하액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두개의 사업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 있어도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중간제품만을 생산하여 타공장(他工場)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된 사업체(공장)에 포함 조사한다.

다.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는 모두 본사 이외의 사업체로 본다.

9. 조 사 사 항

고용, 급여, 출하, 생산비, 원재료, 유형고정자산 등

10.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Ⅰ〕 ~ 본사 이외의 공장, 광산등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용 조사표〔Ⅱ〕 ~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에 사용하는 조사표로서 본사가 산하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거나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체용 조사표〔Ⅲ〕 ~ 본사 이외의 공장 광산등의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에 적용한다.

11. 조 사 방 법

가. 조사담당자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 기입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또는 법인(法人) 사업체로서 사업체의 원에 의하여 자계식(自計式)으로 할 수도 있다.

나. 자체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품목분류와 내국소비세액을 13항(1)「제품 출하액」에서 제외 할것등 작성전의 사전(事前) 지도와 회수시 내검(內檢)을 하여 사업체를 재방문하거나 전화로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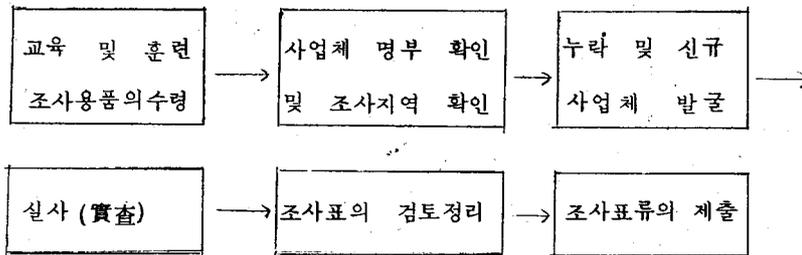
12. 집계 및 공표

전 조사지역의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센서스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조사담당자는 시·도·구·시·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담당자는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협조의뢰 공문

나. 사업체 명부 및 사업체 위치도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3) 조사표 [III]

라. 참고책자

- (1) 광공업 센서스 조사요령서
- (2) 산업및 품목 분류표

라. 기타 조사용품

3. 사 전 조 사

가. 조사지역의 확인

- (1) 조사담당자는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지역의 범위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 (2) 인접조사지역의 조사담당자와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명부 확인 및 보완

(1) 사업체 명부 확인

(가) 조사담당자가 수령한 명부는 1978년 광공업센서스를 위하여 여러 자료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담당자는 담당 조사지역을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명부의 항목 명칭

행정구역분류부호				○○○○-○○					행정구역명		시·도·구·시·군·행정동·읍·면·		
(1)	(2)	(3)	(4)	(5)	(6)	(7)	(8)	(9)	(10) 사업체명	(11) 대표자	(12) 소재지	(13) 생산품명	(14) 비고

- (1) 일련번호 : 0 0 0 (3자리)
- (2) 관할구역 및 사업체번호 : 0 0 0 0 0 0 (6자리)
- (3) 사업체 위치도 번호 : 0 0 0 (3자리)
- (4) 조사표 구분부호 : 0 (1자리)
- (5) 유고사항 부호 : 0 0 (2자리)
- (6) 동태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0 0 0 0 0 0 (6자리)
- (7) 산업분류 : 0 0 0 0 0 (5자리)
- (8) 종업원수 : 0 0 0 0 0 (5자리)
- (9) 전화번호 : 0 0 0 0 0 0 0 0 0 (9자리)

(다) 사업체 고유번호 (11 자리수) 는



시·도, 구·시·군, 행정동·읍·면, 공부상동·리, 사업체번호
로 구성된다. (OOOO-OO-OO까지는 「행정구역별 부호 및 분류표」
참조)

(라) 사업체명부의 (4)의 조사표구분부호 란에는 조사된 조사표의 기호
(I 또는 II)를 기표한다.

(마) 사업체명부의 (5), (6)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2) 사업체 명부 보완

(가) 실지 (實地) 답사를 하여 1978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사
업체명부에 누락된 사업체와 1978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명부후단에 행정동·읍·면별로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등이 중복
되지 않도록 추가 기입한다.

(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행정동·읍·면별로 일련번호, 사업

체번호등을 변경하지 않고 행정동, 읍, 면별로 사업체명부를 다시 분할 작성한다.

(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동·읍·면에서의 신규사업체에 대한 추가번호 부여는 반드시 변경전의 행정구역 단위(명부상 정리된 단위)로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내 동·읍·면간에 협의 하여 기입한다.

(라)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 등의 기입사항을 확인하여 오기사항을 사업체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마) 폐업, 이전, 중복등 유고사업체는 명부 표지이면의 유고사업체 정리요령에 의거 유고내용을 기입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부를 삭제하지 말고 정정하거나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바)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필히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사) 담당 조사구내에 1979년도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된 때도 명부후단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9년 설립"이라고 적어 넣는다. 그러나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님을 유의한다.

4. 면접요령과 실사

가. 면접요령

(1) 조사담당자는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서 임하여야 한다.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여 인사가 끝나면 조사협조 공문과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후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제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3) 대규모 사업체 (장부 비치 사업체) 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생산, 출하되는 전 품목을 작성자와 함께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찾아 품목명과 단위를 미리 지정 해 준다.)

(4)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담당자는 당황하거나 절대로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과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도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구, 시, 군에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 사

조사담당자는 조사표기입, 검토 및 정리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의뢰 하여서도 안된다.

(1) 본사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

현지 사업체 (공장) 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본사 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한 다음 본사 또는 가능한 사업체에 의뢰작성하여 환송케 한다음, 해당 사업체 (공장) 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한다.

(본사조사가능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기간내에 회수토록 한다.)

(2) 결산기가 4월이후인 사업체

결산기가 4월이후인 사업체는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한 것은 결산을 기다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기간내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전기분(전년도) 결산서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이 경우는 적요란에 반드시 전기분 결산서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기입하여야 한다.

(3)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

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하나, 결산전이거나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가 될 관계서류나 전기분(전년도) 결산서에 의거 작성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4) 본사의 조사

(가) 본사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및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관계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본사(또는 본점).....조사표[I]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한다.

(나) 본사가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독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 :

① 본사(또는 본점).....② 조사표[I]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하며

③ 조사표[II]는 6항까지와 11항만 조사한다.

②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분을 포함하여[I]표로서 조사한다.

(5)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공장분과의 합산작성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합산된 자료라도 작성이 되는 곳에서는 합산 조사하되 반드시 적요란에 합산 작성된 다른 공장의 사업체명, 소재지 등을 조사 기입하여 중복조사

을 예방한다. 합산된 자료조차 조사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본
사 또는 다른 공장에 조사표의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작성 제출되
었을 경우에는 제출된 조사표의 사본을 제출한다.

(6) 덕대제 채택광산

덕대제 채택 광산은 덕대 단위로 조사한다. 그러므로 광산조사시는 먼
서 덕대제 채광여부를 확인한 다음, 광업권자인 경우에는 출하액 조사시 직
영광산분만을 조사하며,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직접 출하 하였거나 광업권자에
게 인도하였거나 모두 출하로 조사한다.

(7) 방위산업 사업체조사

보안상 문제로 조사의 애로가 발생하면, 조사의 목적과 비밀의 보호
를 주지시켜 협조를 구하되 방위산업품목에 한하여 15항(제품출하액 및 재
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제품명란에 「기타」 품목으로 구분하여 세세분류(5자
리)까지만 분류조사 한다.

5.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가. 조사용품의 회수 및 정리

(1) 동, 읍, 면

(가) 조사표 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IV. 조사표심사요령 및 정리요령」
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한다.

(나) 사업체로부터 조사표 회수시 전항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회수하고
사후 재방문, 전화질의등 사업체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조사표의 제출전에 「IV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에 의거 재검토

를 마친 다음, 사업체 번호순으로 철하고 조사표 표지와 요계표를 작성한다.

(라) 동, 읍, 면장은 유고율 20% 이상인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유고 내용을 재확인 하여야 한다.

(2) 구, 시, 군

(가) 동, 읍, 면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 요령」에 의하여 조사담당자 임회하여 재 심사하고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나) 유고 사업체의 유고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다) 유고내용이 폐업이나 이전인 것은 새로운 사업체가 전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체 명부에 정리 보완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체의 조사표를 중점 심사한다.

(마) 동, 읍, 면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바) 유고율 20%이상인 동, 읍, 면에 대해서 유고 내용을 확인한다.

(3) 시, 도

(가) 유고내용을 분석한다.

(나)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체를 주로 심사한다.

(다) 구, 시, 군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조사용품의 제출 및 사후관리

(1) 중앙에 제출할 조사용품

(가) 조사표 [I], [II], [III].

(나)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명부 1부.

(다)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명부 1부.

(라) 요계표 및 요계표 총괄표 (5인이상, 미만)

(2) 각급 행정기관에 보관할 조사용품

(가)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명부 5부 (일부지지역 6부) 중 1부는 실지조사용 명부로 활용한후 수정 보완하여 중앙에 제출하고 잔여 4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관리 유지한다.

(나)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행정구역별 부호 및 분류표는 개편이 없는 한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다) 조사요령서, 사업체 위치도, 조사표등 기타 잔여 조사용품은 향후 1년간 각급행정기관에 보관하여 문제조사표 질의조회등에 대비한다.

(라)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 명부 1부는 시, 도에 보관한다.

(마) 사업체에서 회수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구, 시, 군에서 일괄 보관한다. (향후 5년간 사용예정)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조사표상의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본 조사표는 사업체의 결산자료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조사는 금액 중심의 조사이므로 수량(물량)보다 금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사 하여야 한다.

라. 20여 조사 항목중 특히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를 중점 조사한다.

마. 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 분류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품목 색인표」를 병용(並用) 하면 효과적이다.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며 금액

단위의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 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아. 한자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자. 각 수량 및 금액 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15항의 단위당 출하가격은 “원”단위이므로 예외)

차.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횡선으로 (-)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한다.

카. 제품명 및 품목분류번호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타. 조사표 기재시 착오(錯誤)나 오기(誤記)를 정정할 경우를 감안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여백)를 남겨두고 기입한다.($\frac{1}{2}$ 정도)

파.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합계 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하여 상호 연관되는 항목은 반드시 일치 되도록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 (I)의 기입요령

※ 조사표의 명부상 일련번호, 행정구역분류 부호, 관할구역 및 사업체 번호 란은 사업체명 부상의 번호를 그대로 이기(移記)한다.

1항: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1) 공장(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공장(사업체)이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공장(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강릉공장」

「주식회사××산업사 춘천공장」

(2) 일정한 공장(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동, 2 동 명기)

예 :
시 구 로, 동 가 100번지의 1호
강원 강릉 ㉔ 성남 2 구 ㉕ (1 통 1 반)
군 읍, 면 리

(4)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항 :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本社)가 따로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질문하여 해당란에 “○”표한 다음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좌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3)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 항 : 창설년월일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 월일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항 : 결산기

결산작업기간(예 : 1~12월)이 아니라 회계상 결산마감월(예 : 12월)을 말하며 연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입한다.

5항 : 조직형태

(1)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기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하며

(2) 본 조사에서는 크게 주식회사, 기타법인 및 개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은 준법인(準法人)과 개인으로 다시 구분하며 준법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체로서 재무제표(財務諸表)(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산목록 등)를 작성하고 복식부기를 채용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한다.

(3)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인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한다.

6항 : 부지 및 건물연면적

(1)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사택 및 기숙사와 그 대지, 운동장 포함) 계획입지와 자유입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가) 계획입지.....산업기지 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민간공업단지, 수출공업단지의 부지

(나) 자유입지.....상기 계획입지를 제외한 부지를 말한다.

(2) 2층이상의 건물에 2개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는 제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은 실제 사용중인 연건평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3)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동산투자를 위한 토지와 건물

(나) 타인에게 임대해 준 토지와 건물(임차사용중인 것은 조사에 포함)

(다) 복리후생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설비의 부지와 별개의 다른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7항 : 자본금 또는 출자금

(1) 본 항목은 5항의 조직형태가 주식회사의 기타법인에 한해서만 조사 기입한다.

(2) 1개 회사에 2개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을 공장별로 분배하여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납입자본금 전액을 기입한다.

8항 : 광산굴진 실적

- (1) 본 항목은 "석탄광업"에 한하여 조사기입한다.
- (2) 1978년 1년간의 광산의 굴진 실적을 말하며 기업항도(企業抗道)와 경상항도(經常抗道)로 나누며 기업항도는 시설항도를 말하고 경상항도는 생산항도를 말한다.

9항 : 광부작업능력

- (1) 본 항목도 8항과 같이 석탄광업에 한하여 조사한다.
- (2) 광부 1인이 1교대당 평균 생산하는 석탄의 양을 말하며 톤수(TON數)로 기입한다.

10항 :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기간

78년 1년중 휴업한 달은 휴업표시(△)하고, 조업한 각월말 현재의 종업원을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無給家族從事者), 생산 종업원, 사무 및 기타 종업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되 12월말은 남·녀별, 상용, 비상용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주식회사나 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사업체는 적어도 1인(人)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피고용자(被雇傭者)

(가) 피고용자에는 상용고(常備雇), 비상용고(임시 및 일고(日雇)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는 포함하나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계조를 시킨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나) 상용고(常用雇)란 1개월이상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이고 비상용고는 상용고를 제외한 임시, 일고(日雇)종업원을 말한다.

(다) 일고종업원은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조업일수로 나누어 기입한다.

①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하여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3) 생산종업원 월별 조업일수

(가)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조업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1인당 일간 노동투입시간

(가) 생산을 위하여 생산종업원이 조업한 1인당 1일간의 평균 작업

시간을 분(分) 까지 정확히 기입한다.

10항; 연간급여액

(1) 1978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급여 즉 임금,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지급 이외에 현물로 지급
된것도 환산 포함한다.

(2)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
은 제외한다.

(3) 1978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拂)된 것을 1978년에 지급
한 것은 제외하며 1978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금(未支給金)은 포함한다.

(4)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
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
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5) 급여액이 10항의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
달하거나 초과 하는 경우 1인당 월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가를 재질문 하
여 비교 확인한다.

(6) 일반적으로 결산상 제조원가보고서의 급여항목은 생산종업원 급여
여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급여항목은 사무종업원 급여로 산입함이 타당
하다.

12항: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 생산품명

(가) 본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나) 3종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제 15항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중 동일한 제품으로서 같은 품목분류번호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는 같은 품목분류번호의 금액끼리 합산하여 큰 순위들 결정하여야 한다.

(다) 수탁 제조업인 경우도 수탁생산품명을 기입한다.

(2) 주요 사용 원재료명

(가) 본 항목의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업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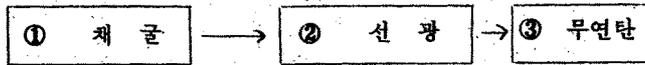
(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4종류 이상의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3)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을 기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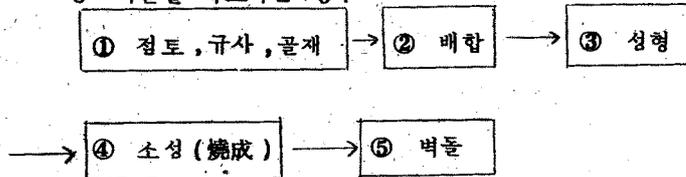
예 : (가) 광업의 경우

○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鑛)까지 일관작업을 하고있는 경우



(나) 제조업의 경우

○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13항 :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본 항목의 (1)+(2)+(3)의 합계액은 급여액 (11항) 과 생산비 (16항) 의 합계액 보다 많은것이 정상운영이며 적은 경우(적자)에는 착오기입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상 적자인 경우에는 적자요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예) 재고증가, 유실(流失), 도난, 화재 등

(1) 제품 출하액

(가) 제품매출원가에 판매이윤을 포함한 매출금액을 기입한다. 제품이 아닌 단순한 구입상품 매출액은 제외한다.

(나) 동일기업내에 2개이상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별로 최종완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한 공장에서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공장으로 보내서 최종 제품을 제조 출하하는 경우, 사업체에 따라 공장별로 독립채산에 의한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상 문제가 없으나, 통합하여 결산하는 경우 생산비와 출하액 조사에 애로가 있다. 즉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조사에서는 제품은 매출이 아니고 단순한 반출이기 때문에, 금액조사가 어려우나 출하로 간주하여 반드시 금액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공장에서는 타공장에서부터 공급받은 중간제품의 구입비를 조사 파악하여 생산비항목의 「원재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라) 제품 출하액은 15항의 (1) 「품목별 제품출하액」항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마) 제품 출하액이 있으면 16항의 「연간 주요생산비」조사시 원재료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출판업은 없을 수도 있다)

(2) 폐품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修理收入額)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수주가공임 수입액)을 말하여,

(나) 광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서어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라고 해도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4) 내국 소비세액

(가) 78년 1년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와 특별소비세, 주세(酒稅)의 총합 산액을 기입한다.

(나) 특별한 업종(業種)(석탄광업, 연탄제조업 등 면세업종 및 영세를 적용업종)을 제외하고는 본란은 꼭 있어야 한다.

14 항: 연초, 연말 재고액

(1) 연초 재고액은 1978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8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며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1978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있을 수 없다.

15항 : 연간 제품출하 및 연초, 연말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3-(1)」 제품 출하액과 「14-(1), (2)의 ①」의 연초, 연말 제품 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구분 기록한다.

따라서 품목별 제품 출하액 합계는 「13-(1)」과 품목별 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4-(1), (2)의 ①」과 각각 일치한다.

(1) 품목분류번호

(가) 별책 「산업및 품목분류표」 및 「품목색인표」를 참고한다.

(나)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에 따라서,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생산 공정에 따라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 정확한 분류가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 반드시 8단위로 기입한다(단, 방위산업 품목은 5단위)

(라)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별책의 「산업및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에매한 품목(品目)에 대하여 조사담당자와 응답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적당한 품목분류를 택함으로써 차질(蹉跎)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상의 명칭과 수량단위를 기입하고 품목분류번호는 생략한다.

이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품목구분은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에 수록된 품목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해서는 안된다.

만약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명칭으로 기입하되 품목분류 번호를 사업체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다) 구입(수입 포함)한 상품에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만 변경하여 그대로 전매(轉賣)한 것은 제외한다.

(라) 품목 분류시 「기타」 품목은 총 출하액의 5%미만이 되도록 구체화 한다.

(3) 단위

수량단위도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 「조사 요령서의 환산표」에 수록된 것은 그대로 환산하고 수록되지 않은 것은 생산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만약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록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만을 「산업 및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치 않은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4) 품목별 제품 연간출하액

(가) 본 항목은 앞에서 기술(記述)한바와 같이 앞서의 제품출하액을 품목별로 구분한 것이므로 합계액은 「13-(1)」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결산서상 제품별 수출내역상의 금액은 제조원가로 산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품목별로 매출이윤을 가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나) 출하액은 물량(수량)과 출하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입한다.

(5) 단위당 출하가격

(가) 출하가격은 출하액을 출하수량으로 나눈 단가가 아니고 1978년 1년간 실제 출하(매출)가격을 말하며

(나) 단일 규격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는 출하가격의 최고, 최저가격을 기입하고 규격이 다른 수(數)종의 동일 제품인 경우에는 최대규격의 최고가격과 최소규격의 최저가격을 기입한다.("원" 단위로 기입)

(6) 품목별 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각 품목별로 출하액과 동일행(同一行)에 기입하여 출하액은 판매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나 재고액은 제조원가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기입한다.

제 16 항 : 연간 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 직접비

1978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1) 원재료비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8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등과 화공약품,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구입액(미사용 원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가) 수탁사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

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나) 동일 기업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등을 경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 기입한다.

(다)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지급 받은 원재료는 수탁생산을 하는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 석유, 비스업, 건설업)나 정부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비는 직접비 합계에 대하여 광업인 경우 평균 70%이므로 20%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체는 재확인 하여 기입한다.

(2) 연료비

(가) 1978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를 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로 구분하여 수량및 금액을 기입하며 기타 연료는 금액만 조사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 의 무연탄)

(3) 구입 전력비

(가)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8년 1년간에 지출할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된 것도 포함한다.

(나)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 (석탄, 유류등) 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4) 구입용수비

1978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5) 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

(가) 위탁생산을 위하여 수탁사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1)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나)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 (原稿料)은 본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수탁 사업체에서 모두 조달하여 생산한 후 위탁사업체에 납품할 경우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체 (수탁사업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위탁생산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6) 수리 및 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을 말한다.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8항 「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8항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2] 간접비

간접비는 기업활동에 소요된 모든 경비에서 급여액과 (인건비) 직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하며 제조원가 보고서 (製造原價報告書)의 항목과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항목을 불문하고 동일성질의 비용을 합하여 기입하되 (14)의 「기타」란에는 조사표에 나열된 비목만 발췌조사하여야 하며 「영업외 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기타」란의 금액이 간접비 총액의 3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적요란에 세분하여 기입한다.

간접비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다음장 (章)의 「간접비 항목 세부표」를 참조한다.

※ 간접비 항목 세부표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 항목	비 고
(7) 복리 후생비	① 구내식당운영보조비 ② 체육행사비 ③ 치료시설유지비 ④ 직원신체검사비 ⑤ 피복비	① 직원식대 ② 치료보조비 ③ 장학금 ④ 경조금 ⑤ 각종보조금	
(8) 운임 및보관비	① 운 임 ② 보관료	① 행정수수료	
(9) 수수료	① 법무 및 회계수수료 ② 판매수수료 ③ 자료처리비 ④ 감정비 ⑤ 감사비	① 행정수수료	
(10) 임 차 료	① 집세 (업무용 건물 임 차료만 조사) ② 임차료 (유형고정자산 중 기계기구및 장치, 차량 선박 및 운반 구)	① 집세중 주거용 건물임차료 ② 지급지대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할 항목	비 고
(11) 광고 선전비	① 방송 (TV ,라디오) 광고 ② 영화광고 ③ 신문광고 ④ 잡지광고 ⑤ 카렌다광고 ⑥ 기타 인쇄광고 ⑦ 간판제조비 ⑧ 성 냥 ⑨ 도자기 유리제품 ⑩ 수 건 ⑪ 기타 물품		
(12) 연구 개발비	① 순수연구비 ② 시험연구비 ③ 시약품비(試藥品質) ④ 위탁연구비 ⑤ 시운전비 ⑥ 연구운영비		
(13) 보 험료	① 화재보험료 ② 기타 손해보험료	① 종업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 험료는차량

	간접비에포함하여야할항목	간접비에서제외할항목	비 고
(14)기 타	① 여비교통비 ㉠ 철도운임 ㉡ 항공료 ㉢ 선박운임 ㉣ 자동차비 ㉤ 숙박비 ㉥ 일당 (日當) ② 통신비 ㉠ 우편료 ㉡ 전신료 ㉢ 전화료 ③ 차량유지비 ㉠ 휘발유 ㉡ 경유 ㉢ 윤활유 ㉣ 주차료 ㉤ 도로사용료	② 종업원의 손해보험 ① 조세공과 (租稅公課) ㉠ 영업세 ㉡ 물품세 ㉢ 재산세 ㉣ 인지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주민세 ㉧ 방위세 ㉨ 면허세 ㉩ 등록세 ㉪ 소방공동시설세 ② 방위성금 ③ 각종기부금	유지비에서 파악 차량수리 비는 직접 비중 수리 유지비에서 조사한다.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할 항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세차료 ㉟ 자동차보험료 ④ 사무용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류 ㉡ 잉크류 ㉢ 장부노트 및 사무용지 ⑤ 교제접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홍음식대 ㉤ 숙박비 ㉥ 오락비 ㉦ 기념품비 ㉧ 다과비(茶菓費) ⑥ 견본비 ⑦ 포장비 ⑧ 신문도서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료 ㉩ 서적 기타 정기간행물 ㉪ 복사 및 기타 인쇄물 ⑨ 공장용 소모품비 ⑩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훈련비 ㉬ 문방구물품비 ⑪ 기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강사료 	

	간접비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	간접비에서 제외 할 항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수출세비 ㉕ 선적하역료 ㉖ 통관료 ㉗ 검수비 ㉘ 부두사용료 ㉙ 회의비, 잡비 (기타) ㉚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㉛ 상공회의소비 ㉜ 무역협회비 ㉝ 협회비 ㉞ 조합비 ㉟ 적십자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외 비용 	

17항 :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1) 본 항목은 「16항의 (1)」의 원재료비와 「14항의 (1),(2)의 ③」의 연초 연말 원재료 재고액에 기입된 총 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2) 따라서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는 「16항 (1)」과, 품목별 원재료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4항 (1),(2)의 ③」과 각각 일치해야 한다.

(3)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명을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 분류표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 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지정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되

(4) 만약 사업체에서 사용한 원재료가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없거나, 어디에 분류할것인지 극히 애매할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명과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경우에는 구분이 힘든 원재료명, 단위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목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분류번호도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품목색인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분류번호를 조사담당자가 직접 기입한다.

(6) 사용액으로 보아서 큰 원재료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7) 사용한 원재료는 생산된 제품과의 투입연관성(投入聯關性)에 유의하여 생산에 관계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거나 사용한 원재료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예 : 맥주에 투입되는 원재료-보리, 호프, 효소, 전분 등)

(8) 사용한 원재료가 외산품(外產品)이면 1에, 국산품이면 2에 O

표하며 동일한 품목으로 외산품과 국산품이 함께 사용된 경우는 일련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입한다.

(9) 외산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것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상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외국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1차 사용되었던 것이나 가공된 것을 구입 사용한 경우에는 외산품(外産品)이라 하더라도 포함 하여서는 안된다.

18 항 : 유형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부대설비와 구축물(構築物),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선박, 운반구등을 말한다.

(2) 78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증고, 또는 신규 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계약(賃借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3)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4) 건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구축물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煙突), 수조탱크,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6) 기계 및 장치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傳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7)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년수 1년이상이고 상당가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8)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등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를 말한다.

(9) 연초 총액

연초 총액이란 1978.1.1 일 현재 장부상의 유형고정자산의 총액을 말하며 각 항목별로 구분 기입한다.

(10) 연간 취득액

연간 취득액이라 함은 1978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① 신규 취득액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그리고 증, 개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비용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의 대체금액을 포함한다.(외국으로 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② 중고취득액

신규취득 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란에 기입한다.

(11)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78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제외한다.

(12) 자산재평가 증감액

1978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체에 한해서 조사 기입하되 재평가후의 총금액을 기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재평가 전(前)의 자산에 비(比)하여 증감된 금액만 기입한다.

(13) 연간 감가 상각액

(가) 본 항목은 물리적 원인(磨滅, 減耗, 破損 등)과 기능적 원인(부적응, 陳腐化)에 따른 감가액을 포함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감가상각액의 계산방법(定額法, 定率法 등)상의 차이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나) 반드시 1978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액만 조사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 잔액 및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14) 연말 총액

1978.12.31 일 현재 장부가액 (연말장부가액) 에 의하여 기입한다.

(15) 등식관계

연말총액 = 연초총액 (1) + 연간신규취득액 (2) + 연간중고취득액 (3) - 연간처분및손해액 (4) ± 자산재평가증감액 (5) - 연간감가상각액 (6) 이 성립함에 유의한다.

19 항 :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투입충당된 재료비등의 투자지출이나 기계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인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말소되는 계정이다. *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록한다.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8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와 「중고취득액 (토지제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1)-(2)]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 앞에 반드시 △표시를 하고 차액을 기재한다.

(4)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 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20 항 : 동력시설 및 자가발전량

동력시설에는 1978.12.31 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력 시설 (수리중인것과 예비용 포함)의 능력을 기입한다.

(1) 전동기

(가) 전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력기계를 말하며 전도(傳導) 벨트에 의하여 기계에 연결되는것 뿐만 아니라 생산 기계에 부착된 것도 포함한다. (단, 생산기계 이외의 기계, 즉 사무기계 및 실내장치에 부착된것은 제외한다)

(나) 단위는 마력 (HP)이다.

(2) 원동기

(가) 전동기 이외의 생산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모든 동력기계를 말하며 발전기용, 차량용 및 선박용의 것은 제외한다.

(나) 단위는 마력 (HP)이다.

(3) 자가발전능력

1시간당 발전 능력을 조사기입한다.(단위: KW)

(4) 자가발전량

1978년 1년간 자가발전한 양(量)을 KWH로 기입한다.

21항: 무형 고정자산

(1) 무형고정자산이란 회계학상 장래의 효익(効益)에 대한 권리, 즉 유형고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同)자산을 소유하므로써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1978.12.31일 현재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의 종류 및 연말 잔액을 기입한다.

(3) 무형고정자산에는 특허권, 저작권(著作權), 상표권, 지상권(地上權), 광업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전화가입권, 전화전용시설이용권, 어업권등이 있다.

22항: 1일 당의 수원별 용수량(水原別用水量)

사업체에서 1일 사용하는 용수량을 말하며 공공수도(공업용수도, 상수도), 지표수(地表水), 지하수, 해수로 구분 조사한다.

(1) 공업용수도~상수도와 연결되어 공급받는 공업용수 및 별도 공업용수도 시설로서 공급받는 용수량을 말한다.

(2) 상수도~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용수량을 말한다.

(3) 지표수~자연수로서 지표면으로 흐르는 물의 용수량을 말한다.

(4) 지하수~지하수를 개발하여 동력에 의하여 물을 뽑아 사용한 용수량을 기입한다.

(5) 해수~바닷물을 수원으로 광공업 활동에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

23항 : 조사표 작성근거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적 요

(1)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명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기입한다.

(2)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상이한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는 사업체 사용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다.

(3) 적자요인과 유형고정자산의 임차경영(賃借經營), 건설가계정의 연간감소의 내용 등 조사표 처리상 참고사항이 될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 외국어로 기입한 원재료명, 생산공정, 생산품명등의 자세한 용도를 기술한다.

(5)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수량등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6)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 (Ⅱ) 의 기입요령

1. 일반 사항

(1) 조사표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 그중 1개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6항까지와 11항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 조사시 조사표 [I] 에 포함 기입한다.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 [I] 의 해당 항목과 동일하다.

2. 항목별 기입요령

1항: 본사 및 소재지	~ 조사표 [I] 의 제 2항과 동일
2항: 창설년월일	~ 조사표 [I] 의 제 3항과 동일
3항: 결산기	~ 조사표 [I] 의 제 4항과 동일
4항: 조직형태	~ 조사표 [I] 의 제 5항과 동일
5항: 자본금또는출자금	~ 조사표 [I] 의 제 7항과 동일
6항: 관할사업체 명부 및 사업내용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 사업체 (공장) 를 기입한다.

(2)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Ⅱ) 는 조사하지 않는다. (경영장부와 기타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장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3)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 품명란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4) 「외형매출액과 기타 수입 총액」란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산하 각 사업체별로 1년간 총 수입을 억(億)원 단위로 기입하되 1억(億)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7항 :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1)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산하공장)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 [I]의 제 10항과 동일하다.

(2)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8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 [I]의 제 11항과 동일하다.

8항 :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1) 본사제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2)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9항 : 유형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은 본사제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2)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 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본사 계정항목에서 제외한다.

(3)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18항과 동일하다.

10 항 : 건설가계정

조사표〔I〕의 제19항과 동일

11 항 : 관할사업체 (공장) 의 조사표 작성가능여부

본 항목은 조사표〔I〕 즉, 공장 (사업체) 용 조사표의 작성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어느 한곳에만 “O” 표 한다.

다. 조사표〔Ⅲ〕의 기입요령

본 조사표상의 조사구 번호란은 행정구역 분류 부호를 말하며 조사표 번호는 사업체 명부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이기 (移記) 한다.

1 항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사표〔I〕의 1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입한다.

2 항 : 주요생산물명 및 생산공정

조사표〔I〕의 12항을 참조

3 항 : 연간 조업월수

- (1) 조업월이라고 함은 월 15 일 이상 작업한 달을 말하며,
- (2) 조업한 월 (月) 은 해당월 (月) 에 “O” 표를 한다.
- (3) 1978년 1년간 조업한 월수 (月數) 를 () 안에 기입한다.

4항 :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1) 1978.12.31 현재의 연말 종업원수와 조업기간 중 평균 종업원수의 해당 숫자에 "O"표 한다.

(2) 월평균 급여액은 종업원 1인당 월간 급여액이 아닌 전(全) 종업원의 월간(月間) 평균 급여액을 말한다.

(3) 본 조사 항목에 대한 정의(定義)는 조사표(I)의 「10항」을 참조한다.

5항 : 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1) 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은 조사표(I)의 13항과는 달리 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액만을 기입한다.(제품판매액 제외)

(2) 제품의 판매량(액)에는 직접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 조사한다.

(3) 타(他)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아 수탁제조한 제품은 제외한다.(6항에 포함)

그러나 타산업(건설업, 무역업, 도·소매업등)과 정부, 공공단체로 부터 수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수탁업체 자신이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4) 품목 분류 번호 및 제품명은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품목색인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품목명칭 과 단위를 기입한다.

6항 : 수탁제조의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1) 타 제조업 사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 제조하여 준 수량(생산량)과 그 대가(代價)로 받은 임가공료(수주가공임, 수입액)를 말하며 임가공료가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2) 제품명 및 단위는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7항: 월평균 주요생산비

(1) 5항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업기간 중 사용한 월평균 생산비를 말하며

(2) 원재료비, 연료비,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가) 원재료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비로서 부재료비, 보조재료비도 포함한다.

(나) 연료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석탄류, 유류 및 기타 연료비를 기입한다.

(다) 기타~조업기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월평균 납부액을 기입하되 가구(家口) 사용분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후자(後者)의 납부액만을 기입한다.

(3) 본 항목의 정의 및 기입 요령은 조사표〔1〕의 16항을 참조한다.

8항: 유형고정자산

조사표〔1〕의 18항을 참조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1. 일반적인 사항

조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조사표회수 책임자는 본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에 의거 조사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업체별로 올바른 조사표(Ⅰ,Ⅱ 또는Ⅲ)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나. 행정구역별로 사업체명부, 위치도, 조사표 및 요계표등의 연관되는 사항이 일치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 조사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사업체명등 모든항목이 정자로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라.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자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마. 일단 작성된 조사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으로 수정한다.

바. 별첨조사표 매수는 조사표철의 뒷부분에 합철한다.

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재검토한다.

아. 동일품목이라도 규격, 품위, 농도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품목은 참고사항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자. 항목별 합계검산을 철저히 한다.

차. 단위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카. 유고사업체의 유고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2. 항목별 심사요령

가. 조사표 [1]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행정구역분류부호, 관할구역 및 사업체 번호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및 신규사업체에 대한 추가번호 부여가 옳바르게 되어있는지 검토한다.

1, 2항 : 사업체 (본사) 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칭은 공식명칭, 소재지는 XX빌딩, XX상가, XX공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3항 : 창설 년 월 일

1978년 창설사업체는 14항 연초재고액이 기입되었는지 18항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이 누락되었는지 재 확인한다.

5항 : 조직형태

(1)주식회사와 (2)기타법인중 공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체는 7항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사업체는 10항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어야 하며 개인사업체는 이와 반대이다.

6항 : 부지 및 건물연면적

부지면적이 없거나 건물연면적보다 작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2층건물은 2층이라 표시)

10, 11 항 :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연간급여액

(1) 조업일수가 있으면 종업원수 및 노동투입시간이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종업원이 있으면 급여액도 기입되어 있는지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이 사업체의 종업원수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한다.

12 항 :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수탁제조업체도 구체적인 생산품명 및 원재료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13 항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 「16항 주요생산비 합계 + 11항 연간급여액 합계」 > 13항(1)제품출하액 + (2)제품판매액 + (3)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 14항(2)연말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 - 연초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의 부등식관계가 성립(적자경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증명확인하고 실제로 적자경영인 사업체는 그사유를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확인 기입한다.

(가) 제품 출하액을 매출원가(제조원가)로 기입하였을 경우 (제품수 불명세서에 의한 작성)

이 경우에는 판매이익이 포함된 「제품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원재료비의 중복 산입

제품 생산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경우 단계마다의 원가계산으로 중복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투입 원재료비에 부가 재료비만

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동일기업내의 공장간 계정대체(재고처리)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본 조사의 매출개념과 사업체의 매출 개념의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능한 본 조사의 매출개념으로 조사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를 받은 공장명, 제품명, 수량, 기타, 금액참고사항등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겸업일 경우 타산업 부문에 자가사용 또는 타 산업 부문의비

용이 과다일때;

가능한 타 산업과 구분조사한다.

(마) 위탁 생산품의 매출액 누락된 경우:

당연히 포함조사 하여야 한다.

(바) 관세 환급액을 원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분 만큼은 공제하여야 한다.

(사) 미 사용 원재료 재고액을 원재료비에 중복 산입하였을 경우:

미 사용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아) 주요품목 이외 기타 품목의 출하액을 누락시켰을 경우:

광공업 동태조사대상 사업체에 중점 확인

(2). 13항-1계 품출하액이 있으면 16항- (1)원재료비가 있어야 하므로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3). 13항- (3)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되어 있고 제 15항의 계 품출하액이 있으면 수탁생산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4).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면서 13항- (4) 내국소비세액이 「0」이거나 (1)+(2)+(3)보다 크거나 (1)의 10%이상과다기입된 사업체는 재검토한다.

15항 :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 (1) 13항(1) 및 14항(1), (2)의 ① 「연초연말 재고액과 15항(1), (2), (3)의 품목별 제품출하액 및 재고합계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2)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가 일치하는지, 출하 및 재고의 수량 및 금액이 동일행에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16항 : 연간 주요생산비

(1) 직접비

(가) 원재료비는 직접비 합계에 대하여 광업은 평균 30%, 제조업은 70%이므로 20%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체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연료비는 석탄류, 유류 및 기타연료의 수량과 금액이 적절히 구분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2) 간접비

어느 한가지 비목이 간접비계에 대하여 30%를 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히 (14)기타에는 조세공과, 감각상각비, 인건비등이 포함되어 있지않은지 확인한다.

17항 : 원재료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 (1) 16항의 (1) 및 14항의 (1), (2)의 ③원재료 사용 및 재고액과 17항의 (1), (2), (3) 품목별내역의 합계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2) 국산과 수입의 구분표시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18항 : 유형고정자산

- (1) ①부터⑦까지의 각행이 다음의 등식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

연말총액(7)=연초총액(1)+연간신규취득액(2)+연간중고취득액(3)-연간처분 및 손해액(4)±자산재평가증감액(5)-연간감가상각액

(2) 연간 신규 및 중고취득액(토지제외) 합계는 반드시 제 19 항의 (2) 연간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액보다 커야하므로 그렇지못할때는 재검토한다.

19 항 : 연간건설가계정

가. (1)연간 건설가계정증가 < (2)연간건설가계정 감소인 경우에는 (3)건설가계정 연간증감란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검토한다.

나. 조사표 [II]

- (1) 본사 또는 본점분에 한하여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 (2) 조사표 [I] 과 공통되는 항목은 조사표 [I]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 (3) 6 항 관할 사업체명부 및 사업내용란에 관할사업체별로 적절히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조사표 [III]

- (1) 조사표 [I] 과 공통되는 항목은 조사표 [I]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 (2) 월평균 급여액은 종업원 전체에 대한 월평균급여액이므로 1 인당 급여액을 기입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V. 調査要領書要約 (I 票基準)

(I) 調査全般에 關한 事項

1. 實査는 早期 着手한다.
2. 本 調査는 調査項目이 複雜하므로 되도록 大規模 事業體는 自計式, 小規模業體는 他計式 中心으로 調査하는 것이 便利하다.
3. 調査對象事業體의 擔當部署는 大개 經理 또는 企劃擔當이 된다.
4. 本 調査의 一次 優先順位는 品目別 出荷額, 在庫額, 生産費, 原材料 等이며 金額資料를 優先한다. 따라서 決算資料 (損益計算書와 附屬明細書) 中心調査가 된다.
5. 本 調査는 從業員 5人以上 鑛工業體에 對하여 每年 實施하고 있으므로 大部分의 事業體에서는 그 內容을 比較的 잘 알고 있다.
6. 本 調査는 調査單位를 個個 事業體 (工場 또는 鑛業所) 로 하고 있으므로 本社에서 傘下事業體分을 作成할 때에는 各 事業體別로 調査票를 分割하여 作成한다.
7. 個別事業體 (工場) 에서의 調査票 作成이 不可能하고 本社에서만 作成 가능한 境遇에는 當該 事業體로 하여금 早速히 本社에 作成 依頼토록 하여 調査 担当者가 回收한다.
8. 調査票는 事業體名簿上 (從業員 5人以上 및 未滿別 I, III票) 指示된 바에 따라 各各 作成한다. 但, 名簿上 漏落事業體를 追加로 調査하는 境遇에는 從業員 5人以上 業體는 I票, 5人未滿業體는 III票를 使用한다.
9. 本 調査票에서 算出 [13項의 (1) + (2) + (3) 의 計 + 14項 (2) 의 ① + ②의 計 - 11項合計 - 16項合計 - 14項(1)의 ①+②] 되는 損益關係는

本 調査와 事業體와의 概念 差異(本 調査에서는 營業外 收益, 購入 商品賣出益, 營業外 費用 等은 各各 收益 및 費用 計定에서 除外함)로 事業體의 損益計算書와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 製品 및 原材料 項目(15 및 17項)의 品目別 品目名, 品目番號 및 數量單位는 반드시 別冊「産業 및 品目分類表」에 依하여야 한다.
11. 産業 및 品目分類表를 利用할 때 品目名稱이 가, 나, 다 順으로 된 索引表를 利用하면 便利하다.
12. 調査指示 事業體 以外の 漏落事業體(名簿上에 없는 業體)도 発掘調査하여야 한다(特히 大規模業體). 但, 零細業體中 標本調査地域은 調査指示 事業體만 調査한다.
13. 調査票 內容을 修正할 때에는 修正前의 記入內容을 알아 볼 수 있도록 修正한다.
14. 有故事業體가 最小限이 되도록 한다.
15. 事業體規模에 따라 比重을 두어 調査하여야 한다.

(II) 調査票 記入要領

1. 事業體의 決算資料와 本 調査의 調査項目의 細部事項이 一致하지 않을 場合에도 本 調査 要領에 依하여 作成한다.
2. 調査票上의 一連番號, 事業體 固有番號는 事業體名簿와 반드시 一致하도록 記入한다.
3. 數量, 金額 等 實數値는 指定된 單位로 單位未滿에서 四捨五入하여 記入한다.
4. 各 項目別 聯關係數가 一致하도록 記入하여야 한다.

5. 原材料費는 事業體 決算書上의 原材料費, 副材料費 및 消耗品費 等 製品生產을 爲하여 投入된 모든 材料費를 包含하지만 關稅 還給額, 內國消費稅 自己 負擔額 等이 除外된 金額이다.
6. 年間主要 生産費中 原材料費에 있어 自家 生産한 中間製品을 使用하여 最終 製品을 生産하는 境遇에는 最初 投入된 原材料費만을 記入한다.
7. 間接費中 其他에는 羅列된 費目만을 算入하여 記入하여야 한다. (減價償却費, 人件費, 租稅公課, 營業外費用 等은 除外)
8. 原材料 使用額의 品目別 內譯 項目中 品名이 同一한 國產 輸入別 原材料를 함께 使用한 境遇에는 各各 다른 칸에 分離하여 記入한다.
9. 內國消費稅額은 自己 負擔한 金額이 아니라 源泉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한 金額임을 留意하여 記入한다.

〔Ⅲ〕 産業 및 品目分類 要領

1. 모든 品目の 分類番號는 8單位로 記入하여야 한다.
2. 單位가 「※」인 品目은 金額만 調査하여도 되지만 되도록 數量도 調査하도록 한다. (實際 品目分類 錯誤인 境遇 再 調査를 豫防하기 爲함)
3. 數量은 반드시 指定한 單位로 調査하고 規格 또는 品位의 差異가 많은 品目은 可及的 分離하여 記入하며 規格 또는 品位를 明示하여야 한다.
4. 分類의 一般 原則은 ① 原材料 ② 性質 ③ 用途 ④ 生産의 過程, 技術 및 組織의 相異에 따라 달리 分類됨을 留意한다.
5. 品目名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品目名稱을 「가, 나, 다」順으로 配列한 附錄中 索引表를 活用하면 便利하다.

(IV) 調査票 検討 要領

1. 調査票 記入 및 審査要領에서 言及한 事項들을 留意하여 検討한다.
2. 調査漏落된 事業體가 있는지 検討한다.
3. 調査漏落된 項目이 있는지 検討한다.
4. 生産費 와 出荷額을 比較하여 赤字 經營인 事業體는 調査票 審査要領에 서 言及한 事項을 重点檢討하여야 한다.
5. 各 項目의 聯關係數가 一致하는지 検討한다.
6. 各 項目의 合計金額 및 數量이 正確한지 検討한다.
7. 總給與額을 年間 平均 從業員數로 나누면 從業員 1人當 年間 給與額이 算出되는 바 이의 妥當性 如否를 檢討한다.
8. 品目別 製品出荷額을 數量으로 나누면 同 品目の 單價가 算出되는 바, 이 의 妥當性 如否를 檢討한다.
9. 原材料費는 直接費 合計에 對하여 鑛業은 30%, 製造業은 70% 水準 인바 20% 以上の 差異가 있을 때에는 妥當性を 檢討한다.
10. 間接費는 直接費의 8% 水準인바 10%를 넘는 境遇에, 는 妥當性を 檢討 한다.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구분	척 (자)	정	리	미 (呎)	촌 (in)	척 (ft)	마 (yds)	리 (마일)
척尺 (자)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정 (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리 (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미 (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촌 (吋)(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척 (ft)	1.00582	0.002793	0.00007	10.304788	12	1	0.33333	0.000189
마 (yds)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리 (里)(마일)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붙임>

구분	평방척	평	m ²	in ²	ft ²	yd ²
I 제곱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I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I 제곱미터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I 제곱인치 (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I 제곱피트 (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I 제곱야드 (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무게>

구분	돈(噸)	관(貫)	근(斤)	그램(尙)	온스(OZ)	파운드(LBS)	돈(噸)(영)	돈(噸)(미)
돈(噸)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0.000004
관(貫)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369	0.004133
근(斤)	160	0.16	1	600	21.1643	1.32277	0.00059	0.000661
그램(尙)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0.000001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7	0.000031
파운드(LBS)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46	0.0005
돈(噸)(영)	270,946	270.946	1,693.41	1016.047	35,840	2,240	1	1.12
돈(噸)(미)	241,916	241.916	1,511.97	907.185	32,000	2,000	0.892857	1

<부피>

구분	홉(합)	승(坪)	두(斗)	석(石)	입방미(㎥)	리터(ℓ)	개롱(영)	개롱(미)
홉(합)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승(坪)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입방미(㎥)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리터(ℓ)	5,543.52	0.55435	0.00554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갈롱(영)	25.2006	2.52006	0.0252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갈롱(미)	20.9833	2.09833	0.02098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1979년 광공업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80 . 5)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제	4
5. 조사 기간	4
6. 조사 범위	4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8
8. 조사 단위	9
9. 조사 사항	9
10. 조사표의 종류	9
11. 조사 방법	10
12. 집계 및 공표	10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1
1. 조사용품의 수령	11
2. 사업체명부 보완 및 정리	11
3. 실지조사	12
4.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14
5. 질의조회	16

Ⅲ. 조사표 기입요령	17
1. 일반적 유의사항	17
2. 항목별 기입요령	18
가. 조사표〔Ⅰ〕의 기입요령	18
나. 조사표〔Ⅱ〕의 기입요령	39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41
1. 일반적인 사항	41
2. 항목별 심사요령	41
Ⅴ. 조사요령서 요약 (Ⅰ표기준)	46
부록1.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	50
부록2. 도량형 단위 환산표	52
부록3. 미국 달러 환산율표	56
부록4. 주요 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	57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근거	3
3. 조사 연혁	4
4. 조사 체계	4
5. 조사 기간	4
6. 조사 범위	4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8
8. 조사 단위	9
9. 조사 사항	9
10. 조사표의 종류	9
11. 조사 방법	10
12. 집계 및 공표	10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1
1. 조사용품의 수령	11
2. 사업체명부 보완 및 정리	11
3. 실지조사	12
4.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14
5. 질의조회	16

Ⅲ. 조사표 기입요령	17
1. 일반적 유의사항	17
2. 항목별 기입요령	18
가. 조사표〔Ⅰ〕의 기입요령	18
나. 조사표〔Ⅱ〕의 기입요령	39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41
1. 일반적인 사항	41
2. 항목별 심사요령	41
Ⅴ. 조사요령서 요약 (Ⅰ표기준)	46
부록1.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	50
부록2. 도량형 단위 환산표	52
부록3. 미국 달러 환산율표	56
부록4. 주요 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	57

I. 조 사 개 요

1. 조 사 목 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생산비 및 유형고정 자산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동 부문의 수준과 구조변동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므로서 동 부문과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수립과 시책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법률 제 2799 호) 에 의한 지정통제 제 17 호임

< 통계법초 (抄) >

① 해당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통계법 제 4 조)

② 신고의 명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는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법 제 17 조)

③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법 제 8 조)

④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법 제 9 조)

⑤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는 1 년이하의 징역이나 1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법 제 17 조, 동 18 조)

3. 조 사 연 혁

가. 광공업 센서스(지정통계 제 6 호) : 5년주기(週期)

1955년 제 1 회 실시

1978년 제 8 회 실시

나. 광공업 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7 호) : 1년주기

1967년 제 1 회 조사실시

1979년 제 10 회 조사 실시중

4. 조 사 체 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조사담당) →
사업체

5. 조 사 기 간

가. 조사기준일 : 1979. 12. 31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9. 1. 1일부터 1979. 12. 31일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80. 5. 1 ~ 5. 31 (31일간)

6. 조 사 범 위

본 조사의 범위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제 4 차 개정 75. 12. 3)」에

따른 대분류 「2」, 「3」에 해당하는 광업 및 제조업(이하 “광공업”이라 함)이다.

가. 광업의 정의

광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고체, 액체, 가스등의 광물의 추출, 손질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된다.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광산(地表礦山), 채석장 및 유전에서 광물추출 활동과 더불어 광석 및 원재료를 손질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든 보조적인 활동 즉 파쇄(破碎), 체질, 세척(洗滌), 선별(選別), 마쇄(磨碎) 부유(浮游), 용해(溶解), 원유토피 및 기타 원재료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한다.

광상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작업과 광물을 시굴하는 작업은 여기서 제외하여 각각 대분류 5(건설업)와 8414(공학, 건축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하고 특정한 점토, 암석 및 광물을 파쇄, 마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광업 또는 채석활동과 연결되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3699(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그러한 과정이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공(手工)으로 이루어지거나 공장 또는 가내(家內)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생산품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되는

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 광업과 제조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거나 겸업(兼業)인 경우에는 최종 출하되는 품목의 출하액 비중에 따라 주산업을 결정한다.

다. 광공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서 유의해야 할 업종

(1)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2)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3) 수탁사업체: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수주가공임)을 받는 사업체

(4) 도정업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물(사료) 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5) 도살업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6) 방위(防衛) 산업 사업체

(가) 군(軍)에서 직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군(軍)의 위탁(委託)에 의하여 제조납품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모두 제조업이므로 조사대상이 된다.

(나) 군으로부터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이나 반제품을 제공받아 제조납품하는 수탁업체라도 조사대상이 된다.

(7) 연초제조창과 담배 원료공장

「담배원료공장」(대부분 전매청에서 개인에게 불하됨)은 조사담

당자가 조사하되 「연초제조창」은 중앙조사(전매청)를 하므로 조사하지 않는다.

(8) 선박의 수리업체

(9)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체 (인쇄시설의 유무와는 관계없음)

라. 광공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조사대상의)

(1) 농림수산업과의 관계

(가) 농가, 어가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나)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의 식품으로의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 (대)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

(2) 건설업과의 관계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품을 토지에 고착화시키는 건설업체(단, 부분품의 제조와 건설업을 일관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품의 제조과정만을 분리시켜 제조업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도·소매업과의 관계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음식점)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주로 도·소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4) 수리업 또는 서서비스업과의 관계

주요 가정용구(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물품을 수선하는 사업체 (단, 선박수리는 조사대상)

(5)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가. 1979. 12. 31 일 현재 국내에 실제 (實在) 하는 사업체 (휴업중인 사업체 포함) 로서

나. 1979년 1년간 조업한 기간중의 평균종업원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가 5인 이상인 사업체와 그의 본사 (본점) 를 대상으로 한다.

다. 따라서 사업체 명부에 등재누락된 사업체도 조사대상이 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군 (軍) 이 직영하는 사업체

(2)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 갱생원, 재활원)

(3)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 학교 실습장)

(4) 비매품 (非 売 品) 제조업체

(예 : 각종 협회보, 종교단체간행물 등)

8. 조 사 단 위

조사 단위는 공장과 본사 및 광산 등의 사업체 (공장) 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동일구내 (同一構內) 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액, 제품생산액 및 출하액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9. 조 사 사 항

고용, 급여, 출하, 생산비, 유형고정자산, 재무구조, 공해방지시설 등 25개 항목

10.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 [I] ~ 본사 이외의 공장, 광산등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용 조사표 [II] ~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 에 사용하는 조사표로서 본사가 산하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거

나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조 사 방 법

조사담당자가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 기입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체에서 회망할 때에는 자계식(自計式)으로 할수도 있다.

12. 집계 및 공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기재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1.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협조의뢰 공문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Ⅰ〕

(2) 조사표〔Ⅱ〕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요령서

(2) 산업 및 품목 분류표

마. 기타 조사용품

2. 사업체 명부 보완 및 정리

가. 일련번호 부여

(1) 누락 및 신규사업체는 사업체 명부의 최종 번호 다음의 번호를 부여한다.

(2) 1개동이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2개동으로 분할 되었을 경우는 각 동 별로 사업체 명부를 재작성하여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 해야 한다.

(3) 그러나 기존명부에 행정구역 분류 착오로 타조사구 관할 사업체가 등재되어, 이를 당해 조사구로 이기할 경우, 각각 유고(기타) 및 신규 사업체로 간주하여 (1)과 같은 요령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1980년도에 신설된 사업체를 신규로 발견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1980년 설립"이라고 기재한다. (조사표작성대상은 아님)

다. 사업체 명부의 정리요령은 "광업 및 제조업체 명부 총괄표"(사업체 명부 표지) 후면을 참조한다.

3. 실 지 조 사

가. 본사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

현지 사업체(공장)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본사 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한 다음 본사 또는 가능한 사업체에 의뢰작성하여 환송케 한 다음, 해당 사업체(공장)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한다.

(본사 조사가능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기간내에 회수토록 한다)

나. 본사의 조사

(1) 본사가 산하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및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관계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 조사표(Ⅱ)로서 해당 사항을 조사한다.

(2) 본사가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독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가) 본사(또는 본점)..... ㉠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

에서 조사표〔Ⅰ〕로서 본사분(7, 10, 11, 12항)을 포함 조사하여야 하며

㉔ 조사표〔Ⅱ〕는 7, 10, 11, 12항을 제외한 항목만 기입한다.

(나) 산하사업체 ……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분(7, 10, 11, 12항)을 포함하여〔Ⅰ〕표로서 조사한다.

다.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

공장별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공장분과의 합산작성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합산된 자료라도 작성이 가능한 곳에서는 합산 조사하되 반드시 조사표의 “조사에 관한 사항”란에 합산 작성된 다른 공장의 사업체명, 소재지, 출하액 구성비(%) 등을 기입하여 중복집계를 예방한다.

합산된 자료마저 조사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본사 또는 다른 공장에 조사표의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작성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된 조사표의 사본을 제출한다.

라.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

결산기가 3월이후인 사업체는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가능한 것은 결산을 기다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기간내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전기분(연간자료) 결산서에 의거 작성한다. 이 경우는 적요란에 반드시 전기분 결산서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주기하여야 한다.

마.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참고가 될 관계서류나 전기분(전년도)결산서에 의거 작성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바. 역대제 채택광산

역대제 채택 광산은 역대 단위로 조사한다. 그러므로 광산조사서는 먼저 역대제 채택여부를 확인한 다음,

- (1) 광업권자인 경우에는 출하액 조사시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며,
- (2)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직접 출하 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였거나 모두 출하로 조사한다.

사. 방위산업 사업체조사

보안상의 문제로 조사의 애로가 발생하면, 조사의 목적과 비밀의 보호를 주지시켜 협조를 구하되 방위산업품목에 한하여 16항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제품명란에 「기타」 품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아.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구·시·군에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4. 조사용품의 회수, 제출 및 사후관리

가. 조사용품의 회수 및 정리

(1) 동·읍·면

(가) 조사표 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IV.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는 명부상 일련 번호순으로 철하고 조사표 표지와 요계표를 작성한다.

(2) 구·시·군

(가) 동, 읍, 면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심사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현지 출장 및 결의조회를 통하여 구·시·군에서 직접 보완한다.

(나) 유고 사업체의 유고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한다.(특히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다) 동, 읍, 면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3) 시·도

(가) 구·시·군별 조사표 접수부 및 요계표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유고 사업체의 유고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특히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

나. 조사용품의 제출 및 사후관리

(1) 중앙에 제출할 조사용품

(가) 조사표 [I], [II]

(나) 정리된 사업체명부 1부

(다) 요계표(구·시·군·동·읍·면) 및 요계표 총괄표(시·도)

(2)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관할 조사용품

(가) 사업체 명부 2부 중 1부는 실지 조사용 명부로 활용한 후 수정보완하여 중앙에 제출하고 잔여 1부는 각 시·도에서 관리 보관한다.

(나) 「산업 및 품목 분류표」와 「행정구역별 부호 및 분류표」는 향후 3~4년간 사용할 예정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다) 조사요령서, 조사표등 기타 잔여 조사용품은 향후 1년간 각급 행정기관에 보관하여 문제조사표 결의조회등에 대비한다.

(마) 사업제에서 회수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구·시·군에서
일괄 보관한다.

5. 질 의 조 회

가. 조사완료되어 제출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내용검토후 회수할 예정인
바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

나. 문제조사표에 대한 질의조회가 있을 경우, 조사담당자는 빠른 시
일내에 재조사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특히 종업원 50인 이상인 문제조사표에 대해서는 구·시·군에서,
종업원 100인 이상인 문제조사표는 시·도에서 현지 출장하여 보완한다.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조사표상의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본 조사표는 79. 1. 1~12. 31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다. 본 조사는 금액 중심의 조사이므로 수량(물량)보다 금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사하여야 한다.

라. 20여 조사 항목중 특히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재무구조를 중점 조사한다.

마. 제품의 품목 분류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품목 색인표」를 병용(並用)하면 효과적이다.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블랙」을 사용하며 금액 단위의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 또박 기입한다.

아. 각 수량 및 금액 단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금액 단위는 백만원이므로 단위 미만은 4사5입 한다(단 13항 생산비는 “만원” 16항 단위당 출하가격은 “원”, Ⅱ항의 수출액은 “천불”, Ⅲ항, Ⅳ항은 “만원”단위이므로 유의한다)

자.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으로 수정한다.

차.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합계란과 항목을 검토 정정하여 상호 연관되는 항목은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조사표〔I〕의 기입요령

※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1), 사업체 고유번호(2)는 사업체 명부상의 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1항 :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1) 공장(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공장(사업체)이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예시> : 「한국××공업주식회사 강릉공장」

「주식회사××산업 춘천공장」

(2)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는 바, ××빌딩, ××상가, ××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조사표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 명칭에 “○”표를 한다(××1동, 2동 명기)

(4) 전화번호란은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항 : 본사(본점) 명 및 소재지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3)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명 좌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 항 : 동일기업 타공장명 및 소재지

동일기업의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명 및 소재지를 다음 <예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하되 난(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요란”을 이용한다.

<예시> “통일산업주식회사”의 산하공장이 부산(본사), 대구, 인천, 광주에 있을 경우의 각 공장에서 본 항목의 기입예시를 보면,

(1) 부산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대구공장 : 대구 북구 침산1동 전화 23-1234
인천공장 : 인천 동구 만석동 전화 7-2538
광주공장 : 광주 동구 지원동 전화 3-0041

(2) 대구 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부산공장 : 부산 중구 광복1가동 전화 22-0401
인천공장 : 인천 동구 만석동 전화 7-2538

〔광주공장: 광주 동구 지원동 전화 3-0041〕

(3) 인천, 광주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4 항: 소속모기업(그룹)명

모기업이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자본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합된 2개 이상의 기업중 지도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체를 말하며,

(1) 일반적으로 XX그룹이라 부르기도 하며 <예시: 1 참조>

(2) XX그룹이라고 불리어지지는 않지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입한다 <예시: 2 참조>

<예시: 1> { 제일모직(주), 삼성전자(주), 전주제지(주) → "삼성"
(주)금성사, (주)럭키, 금성통신(주) → "럭키"

<예시: 2> { 동아제약(주), 라미화장품(주), 동명산업(주) → "동아제약(주)"
화영식품(주), 백화양조(주), 백화산업(주) → "백화양조(주)"

5 항: 창설년월일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 월일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를 기입한다.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4) 동일 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때를 기입한다.

6항 : 조직형태

- (1) 본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기타법인 및 개인의 셋으로 구분한다.
-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 개인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団体)도 포함한다.

7항 : 결 산 기

결산작업기간(예 : 1 ~ 12 월)이 아니라 회계상 결산마감월(예 : 12 월)을 말한다.

<예시> 결산이 연 1 회(결산기간 1 월~12 월)인 경우와 연 2 회(결산기간 1 ~ 6 월, 7 ~ 12 월)인 경우의 기재방법은 각각(12)월(6, 12)월로 기입한다.

8항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1) 6 항의 조직형태가 기타법인은 없을 수도 있다.
- (2) 1 개 회사에 2 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을 공장별로 분배하여 기입하지 않고 79. 12. 31 현재 본사의 납입자본금을 기입한다.

9항 : 부지 및 건물연면적

- (1)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며,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단의 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사택 및 기숙사와 그 대지, 운동장 포함)

(2) 타인에게 임대해 준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나 임차사용분은 포함한다.

(3) 2층 이상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는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은 실제 사용중인 연건평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4) 복리후생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생산설비의 부지와 별개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5) 부지면적이 없거나 건물연면적보다 적은 때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건물이 2층이면 "2층"이라 표시)

10항: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 생산품명

(가) 본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3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나) 수탁제조(임가공)인 경우도 반드시 수탁생산품명(구체적인 품명)을 기입한다.

(2) 주요 사용 원재료명

(가) 본 항목의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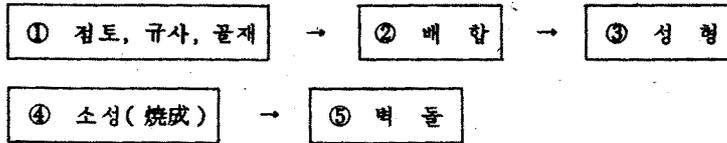
(나) 주요 사용 원재료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3)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을 기

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시>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11항 : 종업원수(외국인은 제외),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기간

(1)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12월말은 남, 여 구분)

(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1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6항의 조직형태가 주식회사나 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으며 개인사업체는 적어도 1인(人)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피고용자(被雇傭者)

(가) 피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및 군복무자와 위탁계 조사된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제외한다.

(나) 일고종업원은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 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평균종업원수로 기입한다.

<예시>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20명씩, 그리고 다음 7일간에 15명씩, 나머지 9일간에 30명씩 근무한 경우의 월 평균·종업원수를 구하면,

$$\ast \text{ 평균종업원수} = \frac{\text{월중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approx 21(\text{명})$$

$$\begin{aligned} \text{월중연근무인원수} &= (10 \text{ 일} \times 20 \text{ 명}) + (7 \text{ 일} \times 15 \text{ 명}) + (9 \text{ 일} \times 30 \text{ 명}) \\ &= 575(\text{명}) \end{aligned}$$

(다) 생산종업원(12월말은 남, 여 구분)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라) 사무 및 기타 종업원(12월말은 남, 여 구분)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자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3) 생산종업원 월별 조업일수

(가) 매월별로 그 월(月)에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79년 1년중 휴업한 월은 휴업표시(△)하고 종업원수는 실제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수란도 "△"표시 한다.

12항 : 연간급여액

(1) 1979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9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금(未支給金)은 포함한다.

(2) 급여액은 세금·저금·근로조합비 등의 모든 공제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 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3) 급여액이 11항의 증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별 지급액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종업원 1인당 월 3만원~40만원을 적정기준으로 본다.

(5) 피고용자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한다.

제 13 항 : 연간 주요생산비(금액 단위 : 만원)

(1) 원재료비

(가)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9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주재료)와 부분품, 용기 등과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나) 그러나 미사용 원재료비가 포함된 구입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다) 동일기업 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또는 반제품)는 사용 당시의 시가(時價)에 운임을 포함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라)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겸營(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로 환산기입 한다.

(마)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는 수탁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계상한다.

② 그러나 광공업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등)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 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탁업체에서 기입하여야 한다.

(2) 연료비

(가) 1979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炉,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비(석탄류, 석유류, 기타 연료등)의 구입가격을 기입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3) 구입 전력비

(가)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비(석탄, 유류등)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나)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과 생산소비분이 각각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조사한다.

(4) 구입용수비

1979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5) 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가)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원고료)은 본 조사에서 「생산비」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위탁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생산한 후 위탁사업체에 납품할 경우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의 재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위탁생산비에 제상하지 않는다.

(6) 수리 및 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을 말한다.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제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17항「유형고정자산 취득」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17항「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14 항 :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본 항목의 금액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1) 제품 출하액

(가) 제품 출하액이란 자사(自社)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위탁생산품 포함) 중에서 79년 1년간 출하(수출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나) 따라서 외국 또는 타사(他社)에서 구입하여 포장만 변경, 출하한 결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다) 제품매출 원가에 판매이익을 포함한 매출금액(매출명세서상 금액)을 기입한다.

(라)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마) 동일기업 내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별로 최종완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한 공장에서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공장으로 보내서 최종 제품을 제조 출하하는 경우

①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乙공장)에서는 제조한 생산품은 매출이 아니고 단순히 반출로 취급하기 때문에 금액조사가 어려울지 모르나 본 조사의 개념대로 매출로 간주하여 금액조사를 하여야 하며

②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공장(甲공장)에서는 타공장(乙공장)으로부터 공급 받은 중간제품의 구입비를 파악하여 13항 생산비 항목의

(1) 「원재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제품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물 즉 파손된 기계 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修理收入額)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말한다.

(나) 광공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수탁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라고 해도 수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15항 : 연초, 연말 재고액

- (1) 1979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있을 수 없다.
- (2) 재고는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6항 :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본 항목에서는 「14항(1)」 제품출하액과 「15항(2)의㉠」 제품 연말 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1) 품목분류번호

- (가)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 및 「품목색인표」를 참고한다.
- (나) 반드시 8단위로 기입한다.
- (다) 「산업 및 품목분류표」중 대분류 1(9면~12면)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라)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제품의 용도 및 생산공정에 따라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하여 분류한다.

<예시> { 사카린(식용) : 31216115 { 의자(나무) : 33201111
 " (공업용) : 35111916 { " (금속) : 38120116

(2) 제품명

(가)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명칭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번호는 사업체 담당자(또는 생산부서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내) 생산제품 종류가 많은 사업체에서는 조사표 16항의 란이 부족하므로 별지를 사용토록 한다.

(대) 제품분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 예시 > { 가구류 (X) → 장농, 식탁, 화강대 등으로
통조림류(X) → 콩치통조림, 고등어통조림, 과실통조림 등으로
세분 기입

(3) 단 위

(가)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단위환산표」에 의하여 그대로 환산하고 수록되지 않은 것은 생산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나)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다) 단위가 「※」인 품목은 금액만 조사하여도 되지만 되도록 수량도 조사 기입하도록 한다(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라)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만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해가 없도록 한다.

< 단위환산 예시 >

① 1본(병)이 190ml인 콜라 219상자(c/s: 24본)를 지정단위

(kl)로 환산하면, $190(\text{ml}) \times 24(\text{본}) \times 219(\text{상자}) = 998,640(\text{ml})$

1 kl = 1000 l = 1,000,000 ml 따라서 $998,640(\text{ml}) \div 1,000,000(\text{ml})$
 $\approx 1(\text{kl})$

② 연탄(22공탄) 5,540 장을 지정단위(%)로 환산하면

22공탄 277장 = 1%. 따라서 $5,540(\text{장}) \div 277(\text{장}) = 20(\%)$

17 항 : 유형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耐久性)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차량·선박 및 운반구 등을 말한다.

(2) 79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중고, 또는 신규 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계약(賃借契約)으로 사용중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3)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조선대(造船台), 송유관, 우물, 조원(造園) 등을 말한다.

(4) 기계·기구 및 장치

각종 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분류탑(分溜塔) 및 전도장치(伝導裝置)와 공구·기구·비품 등을 포함한다.

(5) 차량·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 철도궤도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伝馬船), 화물선, 유조선등

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6)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 [정지, 매립(埋立)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7) 취득액(연간)

취득액(연간)이라 함은 1979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토지에서는 정지, 매립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

(8) 처분 및 손해액(연간)

1979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제외한다.

(9) 감가 상각액(연간)

반드시 1979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액만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10) 연말 총액

1979. 12. 31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18항: 건설가계정

(1) 연간증가

1979. 1. 1 ~ 12.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

제액을 기입한다.

(2) 연간감소

1979. 1. 1 ~ 12. 31 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제액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액은 17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와 「중고취득액(토지제외)」 합제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연간증감 [(1) - (2)] [(1) - (2)]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 앞에 반드시 "△" 표시를 하고 차액을 기재한다.

다음 I항부터 VI항까지는 상공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공
시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항목임

I항 : 기술인력 고용상황

- (1) 본 항목의 생산종업원은 11항(2)의 ①(생산종업원)의 12월말 계(計)와 일치해야 한다.
- (2) 11항(2)의 ①의 12월말 종업원수가 없을 경우(휴업사업체, 계절적업체등)에는 본 항목을 기입하지 않는다.
- (3) 본 항목내 (4)「기타」는 생산종업원중 기술자, 기능공, 견습공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노무자 등을 말한다.

II항 : 연간 수출액

(1) 직접수출

통관기준 F.O.B(본선인도가격)가격으로 하되 거래통화가 미국달러가 아닌 경우에는 (부록3) "미국달러 환산율표"를 참조하여 "달러화"로 환산기입한다.

(가) 자기명의

수출입업 허가업체가 직접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 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위탁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업 허가가 없거나 기타사유 때문에 타업체(수출입업 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할 경우의 수출 면장(또는 내국신용장)금액을 기입한다.

(2) 간접수출

"원"화 금액은 484:1 (79년중 "원"화의 미국달러교환율)로 환산하여 "달러"화로 표시한다.

(가) 내국신용장 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제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제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 수출업체와 물품공급제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반제품 포함)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 또는 입가공액을 기입한다.

(나) 입가공 및 기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입가공 및 기타약정에 의거 공급한 수출용 제품(반제품 포함)의 공급액과 입가공액을 기입한다.

② 계약서상 수출용품이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자사제품이 수출용품을 공급자가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①항에 준하여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기입한다.

■ 항 : 재무구조

(1) 자기자본

(가) 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개인기업의 경우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다) 위 (나)항의 총자산의 평가기준은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가액이 없을 경우는 79.12.3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타인자본

(가) 은행차입금

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79년말 현재 장·단기별 모든 정책자금, 일반자금 및 차관액 등의 차입잔액을 말한다.

②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5개 시중은행(제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지방은행, 한국의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를 말한다.

따라서 제 2.3 금융권(단자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개발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에서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① 외상매입금이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대금중 79년 12월말 현재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② 지급어음이란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거나 자기앞의 환어음을 인수했을 경우 발생하는 상업어음이며 이들은 결산서(대차대조표)상의 "유동부채" 제정을 참조한다.

(다) 개인사채

자연인, 기업인, 제철회사, 모회사, 기타자금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잔액을 기입한다.

(라) 기 타

제 2.3 금융권으로 부서의 차입금, 회사채 미상환액, 영업외미지급금등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IV. 항 : 연간은행차입액

(1) 79년 1년동안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차입한 장·단기별 정책자금, 일반자금 및 차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과 상업어음 할인액을 제외한다.

(3) 79년중 차입하여 79년중 기간만료로 상환한 자금도 포함된 금액이다.

(4)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함은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V 항 : 공해방지시설

(1) 공해발생종류

(가) 공해기준

공해방지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오염물질이 법정허용치 이상 배출될 경우에 한하며, (부록 4)의 "주요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를 참조한다.

(나) 수질오염

본 조사에서는 특히 폐유, 각종 유·무기물, 중금속류, 유기용매, 기타 유독물 및 방사성물질 등을 배출하여 자연 수질원을 오염시킬 경우를 말한다.

(다) 대기오염

사업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가스, 먼지, 매연)이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감을 주거나 해당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라) 발생종류 표시

⑤를 제외한 ①~④중 2종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2개 이상에 "○" 표시 한다.

(2) 공해방지시설

(가) 공해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공해방지용 시설물만을 말한다.

(나)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서 법정허용치 미만의 공해가 발생할 경우는 "① 전부 있다"에 분류하고 법정허용치 이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② 일부 있다"에 분류한다.

(3) 공해방지시설 투자액

(가)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공해방지시설물에 대한 총투자액(79년 12월말까지)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79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이 아남에 유의한다.

(나) 79년 12월말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시설은 79년말까지 투입된 금액을 기재하며 공업단지 등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사 부담금만 기입한다.

Ⅷ항: 생산형태

(1) 내수용 생산이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장 생산은 국내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며

(나) 주문생산은 다른 내수거래 업자나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내수용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형태이다.

(2) 수출용 생산이란 제품을 직접제조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수출용제품을 공급하는 생산형태를 말한다.

나. 조사표(Ⅱ)의 기입요령

※ 일반사항 (12페이지 나, 본사의 조사 참조)

(1) 조사표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2) Ⅰ항(연간수출액), Ⅱ항(재무구조), Ⅲ항(연간은행 차입액)은 본사에서 모든 산하 사업체분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Ⅰ)의 해당 항목과 동일하다.

※ 항목별 기입요령

- 1항:본사 및 소재지 ~조사표(Ⅰ)의 제2항 참조
- 2항:소속모기업(그룹)명 ~조사표(Ⅰ)의 제4항 참조
- 3항:창 설 년 월 일 ~조사표(Ⅰ)의 제5항 참조
- 4항:결 산 기 ~조사표(Ⅰ)의 제7항 참조
- 5항:조 직 형 태 ~조사표(Ⅰ)의 제6항 참조
- 6항:자본금또는출자금 ~조사표(Ⅰ)의 제8항 참조
- 7항: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본사분)

(1) 종업원수

조사표(Ⅰ)의 제11항과 동일.

(2) 연간급여액

조사표(Ⅰ)의 제12항과 동일.

8항:관할사업체 명부 및 사업내용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 사업체(공장)

를 기입한다.

(2) 경제활동 구분상 광공업 및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반드시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명란에 해당 경제 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3) 「의형매출액과 기타 수입 총액」란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산하
각 사업체별로 1년간 총 수입을 억(億)원 단위로 기입하되 1억(億)
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10항: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본사분)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11.12항: 유형고정자산, 건설가계정(본사분)

조사표[I]의 17.18항과 동일

I.Ⅱ.Ⅲ항: 연간수출액, 재무구조, 연간은행 차입액

조사표[I]의 Ⅱ.Ⅲ.Ⅳ항과 동일하며 모든 산하사업체(공장) 분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1. 일반적인 사항

- 가. 사업체별로 정확하게 조사표 [I , II] 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 나. 행정구역별로 사업체명부, 조사표 및 요계표등의 연관되는 사항이 일치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다.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자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라. 별첨조사표는 조사표철의 뒷부분에 합철한다. (광업 및 제조업체명부 총괄표의 [주] ③항 참조)
- 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재검토한다.
- 바.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시킨다.

2. 항목별 심사요령

가. 조사표 (I)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1), 사업체고유번호(2)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및 신규업체에 대한 추가번호 부여가 정확하였는지를 검토한다.

1, 2항: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5 항 : 창설 년 월 일

1979년 창설사업체는 15항 연초재고액이 없어야 하며 17항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

6 항 : 조직형태

(1) 주식회사와 (2)기타법인중 공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체는 8항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이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사업체는 11항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어야 하며 개인사업체는 이와 반대이다.

9 항 : 부지 및 건물연면적

부지면적이 없거나 건물연면적보다 작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2층건물은 2층이라 표시)

10 항 :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수탁제조업체도 구체적인 생산품명 및 원재료명이 기입되어야 하므로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11, 12 항 :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연간급여액

(1) 조업일수가 있으면 종업원수 및 노동투입시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종업원이 있으면 급여액도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이 사업의 규모 및 종업원수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한다.

14항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 [13항 주요생산비 합계 + 12항 연간급여액 합계 > 14항 연간 제품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15항(2)연말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 - (1)연초 재고액중의 ①과 ②의 합계]의 부등식관계가 성립(적자경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확인하고 실제로 적자경영인 사업체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확인 기입한다.

(가) 제품 출하액을 매출원가(제조원가)로 기입하였을 경우(제품수불명세서에 의한 작성)

: 이 경우에는 판매이익이 포함된 「제품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원재료비의 중복 산입

: 제품 생산이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경우 단계마다의 원가계산으로 중복 산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투입 원재료비에 추가 재료비만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겸업일 경우 타산업 부문에 자가사용 또는 타 산업 부문의 비용이 과다일 경우는 가능한 타 산업과 구분조사한다.

(라) 위탁 생산품의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는 포함조사하여야 한다.

(마) 미 사용원재료 재고액을 원재료비에 중복 산입하였을 경우는 미 사용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2) 14항의 (1) 제품출하액이 있으면 13항의 (1) 원재료비가 있어야 하므로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3) 14항의 (3)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되어 있고 16항

의 품목별 제품출하액이 있으면 수탁생산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16 항 :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1) 14 항 (1) 및 15 항 (2)의 ①「제품연말 재고액」과 16 항(1), (2)의 「품목별 제품출하액 및 재고합계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2)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를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출하 및 재고의 수량 및 금액이 동일행에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17 항 : 유형고정자산

(1) 취득액, 처분 및 손해액, 감가상각액, 연말총액 사이에는 등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연간 신규 및 중고취득액 (토지제외) 합계는 반드시 제 18항의 (2) 「연간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액」보다 커야하므로 그렇지 못할때는 재검토한다.

18 항 : 연간건설가계정

(1) 연간 건설가계정 증가가 (2)연간건설가계정 감소보다 적은 경우에는 (3)건설가계정 연간증감란에 “△” 표시가 되어있는지 검토한다.

I 항 : 기술인력 고용상황

본항목의 생산종업원수는 11 항(2)의 ①(생산종업원)의 계(計)와 일치하여야 한다.

II 항 : 연간 수 출 액

본항목의 수출총액은 14항「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Ⅲ항:재 무 구 조

(1)의 자기자본은 8항의 자본금과 같거나 커야한다.

V항:공 해 방 지 시 설

본항목 중 (1)공해발생종류의 ⑤에 “○”표 되어 있으면 (2)공해방지 시설과 (3)공해방지 시설투자액이 없는것이 일반적이다.

나. 조사표〔Ⅱ〕

- (1) 조사표〔Ⅱ〕의 정당사용여부를 검토한다.
- (2) 조사표〔Ⅰ〕과 공통되는 항목은 조사표〔Ⅰ〕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 (3) 8항「관할 사업체명부 및 사업내용」란에 관할사업체별로 적절히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V. 조사요령서 요약 (I 표 기준)

(1) |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1. 조사는 조기에 착수완료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대규모사업체는 자제식, 소규모사업체는 타제식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3. 본 조사표 작성담당은 사업체의 경리, 또는 기획부서가 된다.
4. 본 조사의 1차 우선순위는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재무구조 등이며 수량자료보다 금액자료를 우선한다.
5. 본 조사는 종업원 5인이상 광공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6. 본 조사는 조사단위를 개개 사업체 (공장 또는 광업소) 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신하 사업체분을 작성할때는 각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7. 개별 사업체 (공장) 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고 본사에서만이 작성 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본사에 작성의뢰토록 하여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회수한다.
8. 16항의 품목번호 및 수량단위는 반드시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9. 사업체명부상에 등재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해야 한다.
10. 유고사업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11. 사업체 규모에 따라 비중을 두어 조사한다.
12.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한다.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1.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개념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조사 개념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조사표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3. 금액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단위미만은 4사5입한다.
4.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5.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을 기입하는 사제가 없도록 하며 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6. 수탁사업체인 경우에는 10항의 주요생산품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7. 14항 제품출하액 및 기타수입액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확인한다.
8. Ⅳ항 「연간은행차입액」은 79년 1년간에 신규로 차입한 금액임에 유의한다.
9. Ⅵ항 공해방지시설은 유형의 공해방지시설물만을 말한다.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1.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단위로 기입한다.
2. 단위가 「※」인 품목은 금액만 조사하여도 되지만 되도록 수량도 조사하도록 한다.(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3. 수량은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조사하고 규격 또는 품위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가급적 분리하여 기입하며 그 규격 또는 품위를 명시한다.
4.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과정에 따라 품목분류 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5. 품목명을 찾기 어려울때는 품목명칭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인 「색인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4] 조사표 검토요령

1. 조사누락된 사업체가 없는지 검토한다.
2. 조사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3.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부록 1)

조사표 [I] 으

I. 기술인력고용상황 본항의 합계는 11항(2)의 ①계와 일치해야 한다.		1. 공장명 및 소재지							
II. 연간수출액 본항의 합계는 14항(1)보다 적어야 한다.		2. 본사명 및 소재지	3. 동일기업 타공장명 및 소재지						
III. 재무구조 총 자본 (1) 자기자본 (2) 타인자본 8항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4. 소속 모기업명 (그룹)	<table border="1"> <tr> <th>공장명</th> <th>소재지</th> <th>전화번호</th>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공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IV. 연간은행차입액 79년중 신규 차입액에 한함.		5. 창설년월일 79년 창설이면 일반적으로 15항(1) 연초재고액이 없어야 한다. 17항(1), (2)의 취득액이 없어야 한다.							
VI. 생산형태 반드시 (1)(2)(3) 중 하나만 ○표 되어야 한다.		6. 조직형태 (1) (2) (3) 11항(1)이 없어야 한다. 11항(1)이 있어야 한다.							
V. 공해방지시설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3)		7. 결산기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적요		9. 부지및건물연면적 일반적으로 부지면적이 건물면적보다 크다							
조사표작성근거 (1) (2) (3)		10. 주요생산물명 및 생산공정 (1) ① ② ③ (2) ① ② ③ (3) ① ② ③							
조사에 관한 사항 응답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요령도

11. 종업원수, 월별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3)이 있으면 반드시 (2), (4)가 있어야 하며, 12월말은 남·여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14.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	
(2)	
(3)	
합계	

12항합계 + 13항합계 > 본항의 합계 + 15항(2)의 ①, ② - 15항(1)의 ①, ②의 관계식이 성립하면 재확인해야 한다.

16.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제 품 명	(1) 품목별 제품출하액	(2) 품목별 제품연말재고액	(3) 단위당 출하가격
①	14항의 (1)과 일치해야 한다.	15항 (2)의 ①과 일치해야 한다.	
②			
③			
④			
...			
합계	()	()	

12. 연 간 급 여 액

① 1인당 월3만원미만, 40만원이상이면
② 재확인

13. 연 간 주 요 생 산 비

(1)	
(2)	
(3)	
(4)	
...	
합계	

15. 연 초 연 말 재 고 액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①		
②		
③		
④		
합계	()	()

17. 유 형 고 정 자 산

	(1)	(2)	(3)	(4)	(5)
①	11항(2)의 ①~③합계는 18항의 (2)보다 같거나 커야한다.				
②					
③					
④					
합계					

18. 건 설 가 계 정

(1)	(2)	(3)
-----	-----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이>

구	분	자(尺)	정(町)	리(里)	미터(m)	인치(in)	피트(ft)	야드(yd)	마일
1	자(尺)	1	0.00277	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1	정(町)	360	1	0.02777	109.091	4294.99	357.916	119.304	0.067784
1	리(里)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295.02	2.44033
1	미터(m)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363	0.000621
1	인치(in)	0.083818	0.000232	0.000006	0.025399	1	0.08333	0.02777	0.000015
1	피트(ft)	1.00582	0.002793	0.00007	0.304788	12	1	0.33333	0.000189
1	야드(yd)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3	36	3	1	0.000568
1	마일	5310.73	14752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 넓이 >

구 분	제 품 자 (平方尺)	평 (坪)	제 품 미 터 (㎡)	제 품 인 치 (in ²)	제 품 피 이 트 (ft ²)	제 품 야 아 드 (yd ²)
1 제 품 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 제 품 미 터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 제 품 인 치 (in ²)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 제 품 피 이 트 (ft ²)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1
1 제 품 야 아 드 (yd ²)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무게>

구	분	돈(匁)	관(貫)	근(斤)	그램(ℊ)	온스(OZ)	파운드(Lb)	톤(ton)
1	돈(匁)	1	0.001	0.00625	3.75	0.132277	0.008267	0.000004
1	관(貫)	1 000	1	6.25	3,750	132.277	8.2672	0.00375
1	근(斤)	160	0.16	1	600	21.1647	1.32279	0.0006
1	그램(ℊ)	0.26666	0.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1
1	온스(OZ)	7.55984	0.007559	0.047249	28.3495	1	0.0625	0.000028
1	파운드(Lb)	120.958	0.120958	0.755988	453.592	16	1	0.00045
1	톤(ton)	266.666	266.666	1.6666	1000000	35.273	222.459	1

<부피>

구	분	홉(合)	되(升)	말(斗)	섬(石)	입방미터(㎥)	리터(ℓ)	갈롱(英)	갈롱(美)
1	홉(合)	1	0.1	0.01	0.001	0.00018	0.18039	0.039682	0.047656
1	되(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805	0.476567
1	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섬(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808	47.6567
1	입방미터(㎥)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2	264.1866
1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1	0.264186
1	갈롱(英)	25.2006	2.52006	0.2520	0.0252	0.004545	4.54596	1	1.201
1	갈롱(美)	20.9833	2.09833	0.20983	0.020983	0.003785	3.78543	0.832639	1

미 국 달 러 환 산 율 표

(부록 3)

(1979년의 매월말 집중 기준율의 평균치임)

영	나라명 및 화폐단위		교 환 율	나라명 및 화폐단위		교 환 율
	국	1 파 운 드		벨 기 에	1 벨 기 에 프 램	
서	독	1 마 르 크	0.5492	오 스 트 리 아	1 오 스트리아실링	0.0731
카	나	1 카나다달러	0.8549	노 르 웨 이	1 노르웨이크로네	0.1980
프	랑	1 프랑스프랑	0.2360	네 델 란 드	1 길 다	0.5006
이	탈	100 리 라	0.1206	사우디아라비아	1 리 야	0.2970
스	위	1 스위스프랑	0.6025	쿠 웨 이 트	1 쿠웨이트디나르	2.6173
홍	콩	1 홍콩달러	0.2012	마 레 인	1 바레인디나르	2.6214
스	웨	1 스웨덴크로나	0.2337	아랍토후국연방	1 더 햄	0.2626
호	주	1 호주달러	1.1166	일	본 엔	0.4532
네	마	1 덴마크크로나	0.1902			

(부록 4)

주요 공해물질의 법정허용치(예)

대 기 오 염		수 질 오 염	
암 모 니 아	250 ppm 이하	수 소 이 온 농 도	5.8 ~ 8.6
일 산 화 탄 소	400 "	온 도 (°C)	40° 이하
염 화 수 소	25 "	화학적산소요구량(mg/l)	150 이하
염 소	10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0 "
황 산 화 물(SO ₂ 로서)	1800 "	부 유 물 질 량(°)	150 "
질 소 산 화 물(NO ₂ 로서)	250 "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이 황 화 탄 소	120 "	광 유 류	5 이하
포 립 알 데 히 드	50 "	동 식 물 유 지 류	30 "
황 하 수 소	30 "	폐 놀 류 함 유 량 (°)	5 "
불 소 화 합 물(F 로서)	10 "	시 안 " (°)	1 "
카드뮴화합물(Cd 로서)	1.0mg/Nm ³ 이하	크 롬 " (°)	2 "
연 화 합 물(Pb 로서)	30 "	동 " (°)	3 "
시안화합물(CN 로서)	10 ppm 이하	카 드 뮴 " (°)	0.1 "
크롬화합물(Cr 로서)	1.0mg/Nm ³ 이하	알 킬 수 은 " (°)	검출되어서는안됨
동 화 합 물(Cu 로서)	30 "	수 은 " (°)	"
페놀화합물(C ₆ H ₅ OH로서)	10 ppm이하	유 기 인 " (°)	1 이하
비소화합물(As 로서)	3 "	비 소 " (°)	0.5 "
먼 지	500 mg / Nm ³	연 " (°)	1 "
검 덩	링겔만비탁표 2 도 이하	6 카크롬 " (°)	0.5 "
		용해성망간 " (°)	10 "
		불 소 " (°)	15 "
		P C B " (°)	0.003 "

11. 종업원수, 월별 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사원수 및 근무자총종사자: 주당 일정한 작업(경영)시간의 총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
 ○외고용자: 상용, 임시 및 일고 종업원과 명가사,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근무무자는 제외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기술직, 전문직, 서기적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노동투입일수: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노동투입시간: 전생산종업원의 1인당 매일 평균 조업한 시간을 분까지 각 월별로 기입한다.

구분	월별	★	합계	12월 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01															
(2) 외고용자	① 생산종업원	02															
	② 사무및기타종업원	03															
합계		04															
(3) 생산종업원 월별 조업 일수		05															
(4) 생산종업원 1인당 노동투입시간		06															

14. 연간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금액은 내국소비세액(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제품 출하액은 직접생산한 제품(위탁생산포함) 중에서 1979년 1년간에 출하한 금액을 기입한다.
 ○외상판매, 선분, 선물용, 사무용 및 급여용,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도 포함하며 특히 완성품이 아닌 중간제품(반제품)이라도 그업체의 생산공정이 종료되어 다른업체(동일기업포함)로 공급된 것도 포함한다.
 ○수탁가공이라도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의 수탁인 경우에는 제품출하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합계금액은 외형매출액 - 구입상품매출액.

구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1) 제품출하액: 제품의 외형 매출액(16항의(1)품목별 제품출하액 합계와 일치)								
(2) 제품판매액: 생산비점에서 나온 불합격품 및 폐품등의 판매액								
(3)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수탁 생산하고 받은 가공임, 수리대금으로 받은 금액								
합계								

16.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품목분류번호, 품목명 및 수량 단위는 별책「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품목은 공장 또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 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자세한 내용을 명기한다.
 ○출하가격은 단일 규격제품일 때에는 출하가격의 최저, 최고 가격을 기입하고 규격이 다른 수종의 동일 제품일 때에는 최저단가인 규격품의 출하가격과 최고단가인 규격품의 출하가격을 각각 기입한다.
 ○비광공업 부문으로부터 수탁생산하고 임가공료만을 받은 경우에도 제품의 실매출액으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명기한다.
 ○제품매출명세서(외형매출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제품명	★	단위	(1) 품목별 제품출하액					(2) 품목별 제품연말재고액					(3) 단위당출하가격(원)		
					수량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최저	최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99	합	계		××	××												

14항 (1)과 일치

15항 (2)의 ①과 일치

12. 연간 급여액

○외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원본으로 지급한 것과 미지급금도 포함하며 모든 공제액(소득세, 저축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근무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구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① 생산종업원								
② 사무 및 기타 종업원								
합계								

13. 연간주요생산비

○1979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자가 생산된 중간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최종의 원재료비만 기입한다.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 제조시킨 경우에는 공급한 원재료도 (1)원재료비란에 포함한다.
 ○생산된 원재료와 투입된 원재료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동일 기업내 타사업체(공장)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원재료의 금액도 합산 기입한다.
 ○14, 16항에서와 같이 비광공업 부문으로부터 수탁생산한 원재료 무상으로 공급받은 재료비도 포함 기입한다.

구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1) 원재료비: 생산에 실제 사용된 재료의 사용액으로서 부재료 및 보조재료비 포함								
(2) 연료비: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3) 구입전력비: 전기요금(사무실용 및 미불금 포함)								
(4) 구입용수비: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								
(5) 위탁생산비: 가공임(위탁생산을 위해 제공한 원재료비는 (1)의 원재료비란에 합산)								
(6) 수리유지비: 유형고정자산의 수리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세 비용								
합계								

15. 연초 연말 재고액

○연초재고액은 1979. 1. 1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9. 12. 31 현재로 소재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 소유의 재고품 전부품 상부 가격으로 기입한다.
 ○위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포함하고 수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제외하되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의 수탁인 경우는 포함한다.
 ○제품의 연말 재고액은 16항의 (2)란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만원
① 재 품											
② 반 제 품 및 재 공 품											
③ 원 재 료											
④ 연 료											
합 계											

17. 유형고정자산

○신규취득액: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중고 취득액 포함)
 ○중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 및 설치비
 ○처분 및 손해액: 매각, 양도 및 재해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
 ○가액평가: 상부가격에 의한다.
 ○토지의 신규취득액은 중고취득액란에 기재한다.

구분	취 득 액 (연간)					(3) 처분 및 손해액 (연간)	(4) 감가상각액 (연간)	(5) 연말총액
	(1) 신규		(2) 중고					
	천	백	천	백	십			
① 건물 및 구축물								
② 기계, 기구 및 장치								
③ 차량, 선박및운반구								
④ 토 지								
합 계								

18.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 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원성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연 간 증 가 액	(2) 연 간 감 소 액	(3) 연 간 증 감 액((1)-(2))
천	천	천
백	백	백
십	십	십
억	억	억
천	천	천
백	백	백
만원	만원	만원

통계법 제8조 및 동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지난 1년간(1979. 1. 1~12. 31)기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자료에 의거 조사코자하는 것입니다.

1979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Ⅱ〕

- 본사(본점) 조사용 -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사 명 체 명 부 상			★	★	★	★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1)	사업체고유번호(2)	산 업 분 류	창 설 년	조 직 형 태	자 본 계 층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_____ 국 번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구·동·로·읍·면 _____ 가·동·리 _____ 번지의 호 _____

2. 소속모기업(그룹)명 ()

3. 창설년월일 19년 월 일

4. 결산기 (결산마감월) 월

5.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주식회사() (2)기타법인() (3)개인()

6. 자본금 또는 출자금(법인에 한함)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979.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종업원수에는 중역은 물론 상용, 임시 및 일고 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하고 월별로 기입한다.
○연간급여액에는 종업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과 미지급금도 포함하며 모든 공제액(소득세, 저축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1) 종업원 수												(2)연간급여액										
합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월말	계	남	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다음 I항부터 III항까지는 상공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공시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항목이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61-7011~8교 297)

I. 연간 수출액

○수출금액 기준은 직접수출의 경우 통관기준(FOB)가격으로 간접수출의 경우 원화는 404:1로 환산기입한다.
○자기명의: 수출입업 허가업체의 수출액(수탁수출액은 제외)
○위탁수출: 수출입업 허가가 없는 업체의 허가업체를 통한 수출액.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2, 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타업체에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및 기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는 모든 수출액

수출총액 [(1)+(2)]	(1)직접수출						(2)간접수출								
	①자기명의			②위탁수출			①내국신용장			②임가공및기타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II. 재무구조

○총자산=총자산: 장부가액 기준(장부가액이 없을 경우 79. 12. 31현재 시가에 의함)
○자기자본: 불입자본금+잉여금(개인인 경우는 총자산-부채)
○은행차입금: 금융기관(단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 개발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제 2, 3금융권은 제외)에서의 차입금 및 외국차관액의 잔액을 말한다.
○기타: 영업외 미지급금, 제 2, 3금융권에서의 차입금 및 회사채미상환액 등이 포함된다.

총 자산 [(1)+(2)]	(1)자기자본	(2)타인자본(부채)																				
		합계(①+②+③+④)				①은행차입금				②외상매입금,지급어음				③개인사채		④기타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만

III. 연간은행차입액

○79년중 금융기관(제 2, 3금융권제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외국차관액의 총액.
○용도별 구분은 차입당시 용도에 따라 구분 기입한다.

연간은행차입액 [(1)+(2)]	용도별 구분																
	(1)운전자금						(2)시설자금										
	백억	십억	천만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억	천만	백만	십만	천억	백만	십억	천만	백만	십만

적요: ○참고사항(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실적 및 동향등)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작성년월일	신고자(응답자)소속및성명	조사담당자	구, 시, 군, 확인자
1980년 월 일	과 _____ 전화 _____ 국 번 _____	소속 _____ 성명 _____ ㉠	소속 _____ 성명 _____ ㉠

경제기획원

※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직) 74-8176, 75-7134, (교) 75-5371~5로 문의하십시오. (79식4)

8. 관할 사업체명부 및 사업내용 ○1979. 12. 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경제활동 구분란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한다.
 ○본사의 무역부 또는 사업부나 영업부등에서 관할사업체(공장)와는 별도로 위탁생산등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의 관할사업체로 보아 본 항목을 기입한다.
 ○외형매출액과 기타수입총액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그 사업체의 1년간 총수입을 "억원"단위로 기입하되 1억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주요생산품명란에는 경제활동 구분에서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3개의 주요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무역업, 도매업, 서비스업등)

일련번호	공장(사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명)	경제활동구분			외형매출액과 기타수입총액				주요생산품명			
					광공업	광공업과의겸업	기타	천억	백억	십억	억원	(1)	(2)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합계	××××××××××	×××	××××××××××		×××	×××	×××					×××	×××	×××	×××

9. 관할사업체의 공장별 조사표작성 가능여부
 (해당란에○표)
 (1) 공장(사업체)에서만 가능하다. ()
 (2)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
 (3) 모두 다 가능하다. ()

10.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본사·본점분에 한함) ○연초 재고액은 1979. 1. 1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9. 12. 31 현재로 기입한다.
 ○금액은 장부가가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각각 시가로 평가한다.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1. 유형고정자산 ○신규취득액: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중고 취득액 포함) ○토지의 신규취득액은 중고취득액란에 기입한다.
 ○중고취득액: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 및 설치비
 ○처분및손해액: 매각, 양도 및 재해 도난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
 ○가액평가: 장부가가에 의한다.

구분	취 득 액 (연 간)										(3) 처분및 손해액 (연간)	(4) 감가상각액 (연 간)	(5) 연 말 총 액		
	(1) 신 규					(2) 중 고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① 건물 및 구축물															
② 기계, 기구 및 장치															
③ 차량, 선박 및 운반구															
④ 토 지															
합 계															

12.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등)의 건설을 위한 투자 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연 간 증 가 액					(2) 연 간 감 소 액					(3) 연 간 증 감 액((1)-(2))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1979年 鑛工業 統計調查 調查票 記入要領 (事業体用)

調查票〔I〕의 項目別 記入要領

一般事項

1. 本 調査票는 79. 1. 1~12. 31의 1年間 資料에 依據 作成함을 原則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直近 1年間の 決算資料에 依한다.
2. 本 調査의 1次 優先順位는 品目別 出荷額, 在庫額, 生産費 等이며 物量(數量) 보다 金額 資料를 優先한다.
3. 本 調査를 個別 事業体(工場)에서 調査하기 困難할 境遇에는 本社에 依賴 作成 托록 하고, 本社에서는 同 事業体分만 拔萃作成, 當該 事業体(工場)에 即時 送 付한다.
4. 金額 單位는 各項目別로 다르므로 「자리 數」에 錯誤가 없도록 하며 單位 未滿 은 四捨五入 한다 (13項: 萬圓, 16項中(3)의 單位當 出荷價格: 원, II項: 千弗, III, IV項: 萬圓, 其他項: 百萬圓)
5. 16項의 製品別 「品目分類番號」 및 「單位」는 「産業 및 品目分類表」와 그의 附錄 인 「品目索引表」(가, 나, 다順으로 整理)를 並用하면 効果的이다.
6. 調査票 作成 過程에서 어느 項目을 訂正하였을 境遇에는 이와 關聯되는 項目도 訂正하여 相互 關聯되는 項目은 반드시 一致되도록 한다.
7. 本 調査項目의 概念과 事業体的 概念이 相異할 境遇에는 本 調査概念에 依하여 作成한다.

8項: 資本金 또는 出資金

1. 本 項目은 6項의 組織形態가 (1)株式會社와 (2)其他法人인 境遇에만 記入한다.
2. 本社가 따로 있는 工場(事業体)에서는 本社の 納入資本金 總額을 記入한다.

9項: 敷地 및 建物 延面積

1. 製造業体에 限하여 本 項目을 記入하며
2. 製品生産을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敷地 및 建物の 延面積을 말한다.
(舍宅, 寄宿舍와 그 垜地, 運動場 包含)

10項: 主要生産品名 및 生産工程

主要生産品名: 受託 製造業인 境遇에도 受託生産品中 主生産品 3가지를 記入한다.

11項: 從業員數, 月別操業日數

1. 12月末의 從業員數는 男·女別로 區分記入한다.
2. 休業한 달은 從業員數 및 月別操業日數欄에 休業標識(△)한다.
3. 委託製造시킨 境遇에 受託事業体的 從業員은 除外한다.
4. 被雇傭者中 外國人은 除外시킨다.
5. 日雇從業員은 延人員으로 記入하지 않도록 하며, 延人員일 境遇는 그 달의 操業日數로 나누어 月 平均 從業員으로 換算記入한다.

12項: 年間給與額

1. 給與額은 税金, 貯金, 勤勞組合費 等 모든 控除額을 控除하기 以前의 金額으로 記入한다.
2. 決算書上 人件費(勞務費)項目中 退職金, 福利厚生費는 除外한다.
3. 現物로 支給된 것은 自家生産品일때에는 工場引渡 價格으로, 購入品일 境遇에는 購入價格으로 換算하여 記入한다.

13項: 年間主要生産費

1. 原材料費(副材料費包含)
 - 가. 自家取得과 無償으로 받은 原材料는 使用當時의 時價에 運賃을 包含한 價格으로 換算記入한다.
 - 나. 鑛業 및 製造業 業種內의 다른 業体로 부터 委託을 받아 受託生産하는 境遇, 供給받은 原材料는 受託業体的 原材料費로 計上하지 않는다(委託業体的 原材料費로 計上).
2. 購入電力費
自家發電에 所要된 燃料費(石炭, 油類等)는 13項(2)의 「燃料費」에 包含 한다.
3. 委託生産費(外注加工費)
委託生産을 爲하여 受託事業体에 供給한 原材料는 여가에서 除外하고 13項의 (1) 「原材料費」에 計上한다(上記 13項1.의 “나”번과 比較).

14項: 年間出荷額 및 기타 收入額

1. 本 項目의 合計額은 12項의 「年間給與額」과 13項의 「年間主要生産費」의 合計額 보다 커야만 正常 運營이라는 點에 留意하고 이보다 적을 境遇에는 그 理由(赤字要因)를 摘要欄에 記入한다.
2. 營業外收益(受入利子 및 割引料, 受入配當金, 有價證券利子等)과 特別利益(固定 資産處分利益, 投資有價證券處分利益等)은 除外한다.

3. 製品出荷額

- 가. 製品賣出原價에 販賣利益을 包含한 賣出金額(輸出額包含)을 記入한다.
- 나. 購入(또는輸入)한 商品에 加工을 하지않고 轉賣한 “商品賣出額”은 除外한다.
- 다. 決算書(損益計算書)上 副産物 賣出額으로 記載된 事項도 品目名稱과 金額 區分이 可能한 境遇에는 製品으로 看做하여 그 金額을 合算記入한다.

4. 廢品販賣額

- 가. 製品의 製造過程에서 發生한 廢品中の 販賣額을 말하며,
- 나. 따라서 破損된 機械附屬品이나 使用不能인 事務用品等の 販賣收益은 除外한다.

5.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 가. 鑛業 및 製造業 業種內的 다른 業체로부터 受託製造 또는 修理代金으로 받은 金額을 記入한다.
- 나. 그러나, 鑛業이나 製造業이 아닌 다른 産業의 業체(販賣業, 建設業等)나 政府 및 公共團體로부터 委託받아 受託製造하는 境遇에는 이를 受託製造로 보지 않고 直接 製造出荷한 것으로 하며 따라서 無償으로 받은 原材料라고 해도 受託業체 自身이 原材料를 購入하여 生産出荷한 것으로 看做하여 14項의 (1)「製品出荷額」欄에 記入한다.

16項 : 製品出荷額 및 在庫額의 品目別 內譯

1. 品目名과 單位는 「産業 및 品目分類表」에 依함을 原則으로 하며, 特히 事業체 使用 單位가 指定單位와 相異할 境遇는 指定單位로 換算하여 記入한다.
2. 出荷製品 種類가 많은 事業체에서는 16項의 欄이 不足하므로 別紙를 使用한다.
3. 製品分類가 分明치 않을 境遇에는 事業체에서 實際 使用하는 名稱을 記入하되 可能한한 具體的인 名稱을 記入한다.
(例示) : 家具類(X) → 櫥籠(장농), 食卓, 化粧臺, 冊床 등으로 細分 記入.

17項 : 有形固定資產

年末總額은 減價償却 累計額을 差減한 未償却 殘額을 記入한다.

經濟企劃院

調査票의 I ~ VI項까지는 商工部와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中小企業의 劃期的인 育成發展을 爲하여 設定한 項目임.

II項 : 年間輸出額

1. 直接輸出에서 去來通貨가 美國달러貨가 아닌 境遇에는 달러貨로 換算記入한다.
2. 委託輸出
: 直接 外國商社와 輸出契約을 締結하였으나, 輸出入業 許可가 없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他業체(輸出業許可業체)에 委託하여 輸出한 境遇의 輸出免狀 上의 金額을 말한다.
3. 內國信用狀 輸出
: 自社가 直接 外國商社와 輸出契約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輸出契約을 締結한 國內의 他輸出業체와 物品供給 契約을 맺고 內國信用狀(第2, 3次內國信用狀 包含)에 依據, 輸出用製品(半製品 包含)을 供給한 境遇의 供給額 또는 賃加工額을 記入한다.

III項 : 財務構造

1. 銀行借入金
: 金融機關에서 借入한 79年末 現在, 政策資金, 一般資金 및 借款額의 總借入殘額을 記入한다.
金融機關이라 함은 5個 市中銀行, 地方銀行, 韓國外換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住宅銀行, 輸出入銀行, 外國銀行國內支店, 農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2. 個人社債
: 自然人, 企業人, 系列會社, 其他資金斡旋業者로부터 融通한 資金의 殘額을 말한다.

IV項 : 年間銀行借入額

79年中 金融機關에서 新規로 借入한 長·短期의 政策資金, 一般資金 및 借款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79年 借入額中 79年에 期間滿了로 償還한 資金을 差減하지 않도록 留意한다.

※ 調査票(II)의 I項(年間輸出額), II項(財務構造), III項(年間銀行借入額)은 全傘下事業체(工場)分을 合算하여 記入한다.

본 조사는 지난 1년간 (1978. 1. 1 ~ 12. 31) 귀 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1978년 광 공 업 센 서 스 조 사 표 (Ⅲ)

(종업원 5인미만사업체용)

시정통계 제 6 호

통계법 제 8 조 및 동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조 사 구 번 호	명부상일련번호	사 업 체 번 호	산 업 분 류	조 업 월 수
1118 - 15	4	★	★	★

<p>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소재지만 기입한다.</p> <p>사업체명: _____</p> <p>대표자명: _____</p> <p>전화번호: _____</p> <p>시 구 로·동 가 도 시 구 동 번 지 호 군 읍·면 리 (통 반)</p>	<p>2.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p> <p>(1) 주요생산품명: _____</p> <p>(2) 주요원재료명: _____</p> <p>(3) 생산공정: _____</p> <p>3. 연간조업월수: 조업월이라 함은 월 15일이상 작업한 달을 말한다.</p> <p>(1) 조업월수: (12) 개월 해당란에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4.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는 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 시간의 총합 중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1978. 12. 31 현재의 연말종업원수와 1978년 조업기간중 평균종업원수의 해당숫자에 ○표한다.

○ 월평균 급여액에는 현물로 지급한 것도 지급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종업원 전원에게 대한 지급액)

구 분	연 말 종 업 원 수 (1978. 12. 31 현재)				조업기간중 평균 종업원수 (1978. 1. 1 ~ 12. 31)				월평균 급여액					
	백만	십만	만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1)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0	①	2	3	4	0	①	2	3	4	×	×	×	×
(2) 유급종업원	0	1	②	3	4	0	1	②	3	4	/	0	0	0
합 계	1	2	③	4	1	2	③	4	/	0	0	0		

5. 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 원재료를 직접 구입 또는 자가 생산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중에서 조업기간중 월평균 판매액이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위탁제조한 제품은 제 6 항에 기입한다.

○ 품목분류번호, 품목명 및 수량 단위는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제 품 명	★	단 위	월 평 균 판 매 량	월 평균 판매액			
						억	천만	백만	십만
①	32195111	가 마 니	×	—					300
②	3219								
③									
④									
⑤									
합 계					×	×	×	×	

6. 위탁제조의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위탁제조한 제품 중에서 위탁제조 수입액(가공임)이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 산업부문(무역업, 도매업등)으로 부터의 위탁제조인 경우에는 직접 원재료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 5 항에 기입한다.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제 품 명	★	단 위	월 평 균 생산 량	월 평균 수입액			
						억	천만	백만	십만
①									
②									
③									
④									
⑤									
합 계							×	×	×

7. 월평균 주요 생산비

○ 제 5 항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업기간중 사용된 원재료 생산비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 기타란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을 기입하며 가구사용분이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구분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구 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원재료비: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비			
(2) 연료비: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석탄류, 유류 및 기타연료비				
(3) 기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 및 기타 비용				
합 계				

8. 유형고정자산

○ 연말총액은 1978. 12. 31 현재의 금액으로, 기타의 란에는 1978년 연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 연간 처분액에는 매각, 양도, 및 재해, 도난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을 기입한다.

구 분	(1) 연 말 총 액				(2) 연 간 취 득 액				(3)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억	천만	백만	십만	억	천만	백만	십만	억	천만	백만	십만
① 토지·건물 및 구축물												
② 기계·기구 및 장치												
③ 차량·선박 및 운반구												
합 계												

적요: 구분이 어려운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① 조사표 작성 년월일	② 작성자(응답자) 연락처	③ 작성자(응답자) 성명	④ 조사담당자성명	⑤ 확인자 성명
1979년 4월 일	전화(국 번)	①	①	①

경 제 기 획 원

※ 본 조사표에 관한 문의 사항은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직) 74-8176, 75-7134 (교) 75-5371~5로 문의하십시오.

1978년

광공업센서조사표 [Ⅳ]

(전기사업부문)

지정통계 제 6호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조사대상구분(해당란에 O표)
★	★	① 본 사() ④ 화력발전소-기력() ② 지점() ⑤ 원자력발전소() ③ 수력발전소() ⑥ 변전사업소(전력관리본부)()

1. 사업소명 및 소재지

사업소명: _____

소재지: _____ (전화 국 번)

2. 월말 종업원수 및 월별 조업일수

○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자
 ○ 사무 및 기타종업원: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자
 ○ 월별조업일수: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작업하지 않은날은 제외한다.

구분	합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1) 생산종업원													
(2) 사무및기타종업원													
합계													
(3) 월별조업일수													

3. 연간 급여액

○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을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구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생산종업원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3) 합계								

4. 전기판매수입액 및 기타수입액

○ 전기판매수입액은 한국전력 자체가 사용한 전력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판매전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 기타수입액은 공급잡임을 말한다.

구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전기판매수입액	전 등 용①							
	동 력 용②							
	계 [(1)+(2)]							
(2) 기타수입액								
(3) 내국소비세액 [부가가치납부세액]								
합계 [(1)+(2)+(3)]								

5. 주요 전력량

○ 순발전량 = 총발전량 - 발전소내 소비전력량
 ○ 판매전력량은 한국전력 자체가 사용한 전력도 포함된다.
 ○ 연간순발전량 = 한국전력순발전량 + 경인에너지 및 수자원개발공사 순발전량(수전량)
 ○ 판매전력량 = 연간순발전량 - 종합손실전력량
 = 연간순발전량 - (1차송변전손실 + 2차송변전손실 + 배전손실)
 = 공급전력량 - (2차송변전손실 + 배전손실) = 배분전력량 - (배전손실)

구분	발전량 및 전력량(MWH)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연간순발전량	① 총 발 전 량							
	② 발전소내소비전력량							
	③ 순 발 전 량							
	경인에너지 ④ 순 발 전 량							
	수자원개발공사 ⑤ 순 발 전 량							
	계 [(3)+(4)+(5)]							
(2) 종합손실전력량	① 송 변 전 손 실							
	② 배 전 손 실							
	계 [(1)+(2)]							
(3) 판매전력량	① 전 등 용							
	② 동 력 용							
	계 [(1)+(2)]							

6. 연간주요생산비

○1978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연료비는 발전용 연료비를 말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료비는 연료 유지비에 포함한다.
 ○수전비는 경인에너지 및 산업기재발공사로 부터의 수전량에 대한 지불액을 기입한다.

구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직접비	(1) 연료비(직접재료비)								
	(2) 구입전력비(전력료)								
	(3) 구입용수비(수도료)								
	(4) 수선유지비								
	(5) 연료유지비(난방유지비포함)								
	(6) 수전비								
소계[(1)+(2)+(3)+(4)+(5)+(6)]									
간접비	(7) 복리후생비								
	(8) 운임및보관비								
	(9) 수수료								
	(10) 광고선전비								
	(11) 임차료								
	(12) 보험료								
	(13) 기타 <small>(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비, 수송개발비, 업무수진비, 교육훈련비, 기밀비, 조사분석비, 포상비, 보상비, 잡비) (포계공과제외)</small>								
소계[(7)+(8)+(9)+(10)+(11)+(12)+(13)]									
총계([1] + [2])									

7. 연료사용액 및 재고액

○1978년 1년간에 화력발전을 위하여 사용한 연료사용액을 석탄류, 유류, 기타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과부족 보정액란에는 석탄의 습분함량 및 폐유처분에 대한 금액을 기입한다.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료비는 제외한다.
 ○연초 재고액은 1978. 1. 1 현재로, 연말 재고액은 1978. 12. 31 현재로 소재 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소 소유의 재고품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입한다.

구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연료사용액	석탄류								
	유류								
	기타연료								
	소계								
(2) 연초 재고액									
(3) 연말 재고액									
(4) 과부족보정액									

8. 유형고정자산

○가액평가: 연초, 연말 총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연간취득액은 신규 및 중고의 자산 취득 및 설치비를 말한다.
 ○연간처분 및 손해액: 매각, 양도 및 재해, 도난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

구분	(1) 연 초 총 액					(2) 연 간 취 득 액					(3) 연 간 처 분 및 손 해 액					(4) 연 간 감 가 상 각 액					(5) 연 말 총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① 토지																									
② 건물(건물부속설비포함)																									
③ 구축물																									
④ 기계장치																									
⑤ 공구,기구 및 비품																									
⑥ 차량,운반구																									
합계																									

9.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등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 설비등의 매입을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가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 연 간 증 감((1)-(2))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10. 관할사업체(사업소) 명부

○본사는 전체, 지점, 산하영업소, 출장소, 변전소, 발전소, 전력관리본부는 변전소에 대한 현황을 작성한다.
 ○전력량 및 유형고정자산연말총액은 지점산하 발전소에 한하여 기입한다.

사업소명	종업원수(명)	순발전량(MWH) (5항주요전력량참조)	유형고정자산연말총액 (천원)	전화번호	소재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합계				×××	×××××

적요: 자료이용상 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란을 이용한다.

조사표작성년월일	작성자소속	작성자성명	확인자성명
1979년 4월 일	전화(국번)	인	인

1978년

광공업센서조사표(V)

(가스사업부문)

경제기획원

기정통계
제 6 호

1. 사업소명 및 소재지

사업소명 _____

소재지 _____ (전화 _____)

2. 월말 종업원수 및 월별 조업일수

-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 사무 및 기타종업원: 기술직, 전문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월별조업일수: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닌 데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작업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생산종업원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합계													
③ 월별조업일수													

3. 연간 급여액

·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종업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금을 지급한 것과 기물여를 포함한다.

· 퇴직금과 장기불차 및 조부차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구분	백만원	십만원	만	천	백	십	원
① 생산종업원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③ 합계							

4. 도시가스판매수입액

· 가스판매 수입액은 사업소가 사용한 가스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구분	백만원	십만원	만	천	백	십	원
① 도시가스수입액 (가스수입중 손로 제외)							
② 기타수입액	① 수취금사 부담금						
	② 시설 부담금						
	③ 가스수입중 손로						
소계 (①+②+③)							
합계 (①+②)							

5. 주요 가스량

- 순가스량 = 총가스량 (생산량) - 사업소내 가스소비량
- 판매가스량 = 순가스량 - 종합손실가스량
- 종합손실가스량 = 총가스량 - 판매가스량 (공급소내 가스소비량 포함)
- 판매가스량에는 사업소 자체가 사용한 가스량이 포함된다.

구분	가스량 (m ³)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원
① 연간순가스량	① 총 가스량						
	② 공급소내 가스소비량						
	③ 순가스량 (①-②)						
② 판매 가스량							
③ 종합손실 가스량							

5. 연간 주요 생산비

- 1978년 가스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구분	원재료비		에너지비		수리유지비		제조비		간접비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1) 재료비	원재료비		가스(LPG)							
	부재료비									
	구입용수비 (공공요금중 수도료)									
	구입전력비 (공공요금중 전력비)									
	연료비									
	수리유지비									
(2) 간접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입차료									
합계 [(1)+(2)]										

6. 유형고정자산

- 가액평가 : 연초 연말종액은 장부가액에 의한다.
- 연간취득액 : 신규취득액 및 중고취득액을 말하며 신규취득액은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설치비를 말하고, 중고취득액은 신기이전의 중고자산취득 및 설치비를 말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및 화재, 도난등에 의한 처분 및 손해액

구분	1) 연초종액		2) 연간취득액		3) 연간처분 및 손해액		4) 연감가상각액		5) 연말종액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토지										
건물(건물부속설비포함)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및 제품										
차량운반구										
합계										

7.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리나 기계설비등의 비용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건설가계정은 원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가액에 △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 연감증감 [(1)-(2)]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참고 : 자로이용상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이용한다.

1) 조사표 작성 인력명	2) 작성 장소	3) 작성 일자	4) 확인 일자
1978년 1월 1일	()	1978년 1월 1일	()

7. 연초, 연말 재고량 및 금액

연초 재고량 및 금액은 1978. 1. 1 현재로, 연말 재고량 및 금액은 1978. 12. 31 현재로 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소속의 전부를 기입한다.

(1) 연초, 연말 재고량

구분	1) 연초 재고량 (1978. 1. 1)		2) 연말 재고량 (1978. 12. 31)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가스				
원료				

(2) 연초, 연말 재고액

구분	1) 연초 재고액		2) 연말 재고액	
	백만원	십만원	백만원	십만원
가스				
원료				
합계 (1+2)				

1978년 광공업센서조사표 (VI) (수도사업부문)

지정통계
제 6 호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조사구 번호 ★ —	조사표 번호 ★
------------	----------

1. 기관명 및 소재지

기관명 _____

소재지 _____ (전화 국 번)

2. 월말 종업원수 및 월별 조업일수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자.
○사무 및 기타종업원: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자.
○월별조업일수: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작업하지 않은날은 제외.

구 분	합 계	월 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생산종업원														
(2) 사무및기타종업원														
합 계														
(3) 월별조업일수														

3. 연간 급여액(인건비)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종업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금액으로서 현물을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생산종업원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3) 합 계							

4. 연간 수입액(세입액) (1978. 1. 1 ~ 12. 31)

○1978 회계년도의 총수입액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기타 영업수입액은 급수용구손로수입, 기타수수료수입, 기타 접수입을 말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영업수입액						
① 급수수입액 (출하액 즉 조정액 7항 (3) 금액과 일치)							
② 수탁공사 수입액							
③ 기타수입액 (기타영업수입액, 온천수입액)							
(2) 자본적수입액 : 유동자산수입, 고정자산수입,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을 말한다.							
합 계							

5.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연초재고액은 1978. 1. 1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8. 12. 31 현재로 기입한다.
○원재료는 용수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화학약품등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연료는 1978년 간에 가열로(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의 금액을 말한다.

구 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원 재료 (약품비)														
② 연 료														
합 계														

6. 연간 주요생산비 (주요비용)

○1978년 간 수도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주요비용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인건비는 제 3항에서 조사되므로 이를 제외한다.
○감가상각비는 제 8항에 조사되므로 이를 제외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영업비용 (원·정수비, 배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온천사업비)						
① 원 재료 비 (약품비, 재료비 기타 원수구입비)							
② 연 료 비							
③ 구입 전력 비 (동력비)							
④ 구입 용수 비 (수도사용료)							
⑤ 수 리 비 (수익적 지출의 수선비)							
⑥ 기 타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제외)							
⑦ 수 탁 공 사 비							
(2) 공 사 비 (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⑧ 신 규 확 장 비 (가동설비자산의 대수선비)							
⑨ 보 수 개 량 비 (가동설비자산의 대수선비)							
(3) 기 타 (부채 상환금, 전출금,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의 상환금)							
합 계							

7. 연간출하량(조정량) 및 출하액(조정액) (1978. 1. 1 ~ 12. 31)

○수량의 기입은 소숫점 이하를 사사오입 한다.
○모든 금액은 평균수도요금(부과액/부과량)에 의하여 평가한다.

구 분	수 량 (m ³)	금 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생산량(급수량 또는 배수량)									
(2) 무수량(누수량+유효무수량)									
(3) 출하량(조정량 즉 부과량) [(1)-(2)]									

8. 유형고정 자산

○연말 총액란은 1978. 12. 31 현재의 금액으로 기타의 란에는 1978년말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연간 처분액에는 매각, 양도 및 재해, 도난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을 기입한다.

구분	(1) 연말총액 (년도말잔액)					(2) 연간취득액 (취득가액의 증가분)					(3) 연간처분및 손해액 (취득가액의 감소분)	(4) 연간감가상각액 (감가상각 총당금의 당기증가분)									
						(가) 신규취득액		(나) 중고취득액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원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원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원	십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천 원
① 토지					X	X	X	X	X	X						X	X	X	X	X	X
② 건물 (건물부속설비포함)																					
③ 구축물																					
④ 기계및장치																					
⑤ 공구기구및비품																					
⑥ 차량및운반구																					
합계																					

9.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지출이나 기계설비등의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 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3) 연간 증감[(1)-(2)]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0. 관할사업체(사업장 또는 사업소) 명부

○해당기관과 관할하는 수원지, 정수장, 수도사업소, 수도관리사업소 등을 모두 기입한다.
 ○새마을 사업으로 설립된 간이급수 시설과 심정호, 사설수도, 전용수도는 본 9항에서 제외한다.
 ○관할 사업장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본 조사표에 첨부한다.

사업체명	종업원수(명)	생산량(배수량) (m³) (정수장 및 수원지에 한함)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천원)	전화번호	소재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기타 수도사업단위현황

○해당기관에서 관할하지 않는 수도사업단위의 현황을 기입한다.
 ○수도사업의 단위는 간이 급수시설, 심정호, 사설수도 및 전용수도로 한다. (각 공장의 사설수도 제외)
 ○수도사업 단위가 15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동일한 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기입하고 본 조사표에 첨부 한다.

수도사업단위 구분	수도사업단위명	대표자명	급수량(분/일)	소재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적요 : 자료 이용상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란을 이용한다.

(1) 조사표작성 년월일	(2) 작성자소속	(3) 작성자성명	확인자성명
1979년 4월 일	() 전화 (국 번)		인 인

조사구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총괄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용)

조사구번호														시 · 도		구 · 시 · 군							
조사현황														조사대상지역									
(1) 조사지정 사업체수 (사업체명부상)	(2) 유 고 사 업 체 수											(3) 신규 사업체수 (명부상 누락)		(4) 조사된 사업체수 (4) = (1) - (2) + (3)			계	사업체용 (조사표 I)	본 사 용 (조사표 II)	계	사업체용 (조사표 I)	본 사 용 (조사표 II)	
	계	① 폐업	② 휴업	③ 이전	④ 전업	⑤ 소재 불명	⑥ 합병	⑦ 대상외	⑧ 조사 불능	⑨ 중복	⑩ 합산	⑪ 기타	계	사업체용 (조사표 I)	본 사 용 (조사표 II)	계							사업체용 (조사표 I)
														※ 명부대조확인자		※ 조사표 번호 결번				별첨 조사표매수			
조사원명		인										작성인자명		인									

[주] ① 별첨 조사표 매수란에는 1개 사업체에서 2매이상 조사하였을 경우 조사된 조사표 매수로 계산하지 않은 조사표 및 조사 불능으로 확인만 받은 조사표 등 조사표 매수로 계산할 수 없는 기타의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②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78 서식 4)

《명부정리, 기입 및 유고사업체 정리요령》

1. 명부정리 및 기입요령

- ① 사업체 명칭 또는 사업주만 변경된 사업체는 유고 사업체로 처리하지 않으며, 변경된 사업체 명칭 또는 사업주명만 정정 기입하고 비교란에 변경된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② 1개 사업체에서 2매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였을 때(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경우는 사업체용 I 표를 조사된 조사표 매수로 하고 잔여 조사표(본사용 II)는 별첨 조사표로 계산한다.
- ③ 소재지란에는 법정 동·읍·면 및 리명 이하 ×× 번지 ×× 호까지 상세하게 정정 기입하되 ×× 빌딩 ×× 상가 ×× 지구 등을 반드시 명기한다.

2. 유고 사업체 정리요령

- ① 폐업: 유고 내용란에 폐업이라 기입하고 폐업 년월일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 ② 휴업: 유고 내용란에 휴업이라 기입하고 휴업 년월일을 비교란에 기입하되 78년중 조업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작성한다.
- ③ 이전: 유고 내용란에 이전이라 기입하고 가능한한 추적조사 하여야 하며 이전 소재지를 파악하여 비교란에 기입한다.

- ④ 전업: 동일산업(광공업과 광공업간)으로 전업한 경우에는 조사하여야 하며, 타산업으로 전업하였다더라도 78년 중에 광공업 활동 실적이 있으면 조사하고 전업된 업종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 ⑤ 소재불명: 해당 사업체의 주소가 불명일 경우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소재지를 파악 「③이전」과 동일한 요령으로 추적조사 한다.
- ⑥ 합병: 변경된 사항을 정정기입하고 합병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⑦ 대상외: 광공업 사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유고 내용란에 대상외라 기입하고 구체적인 업종명을 기입한다.
- ⑧ 조사불능: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는 조사가 가능한 때 또는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곳등 자세한 조사불능 사유를 기입하고 작성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⑨ 중복: 사업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 조사구 ×× 번과 중복이라 기입한다.
- ⑩ 합산: 공장 단위로 분리조사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고 내용란에 합산이라 기입하고 합산된 사업체명과 소재지를 기입한다.
- ⑪ 기타: 이상의 유고내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업체는 구체적인 업종명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농림법 제 8 조 및 동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
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지난 1년간(1977. 1. 1~12. 31)
기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자
표에 의거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1977년

광공업통계조사표(I)

—사업체(공장)조사용—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조사표번호	사업체고유번호			
	★			
조사구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	★	★	★
자본계층				
★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번지의 호

도 시 군 읍·면 리 (통 반)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해당란에 ○표

(1) 본사가 따로 없다()면 본란은 사선

(2) 본사가 따로 있다()면 본란을 기재 ----->

본사(본점)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번지의 호

도 시 군 읍·면 리 (통 반)

3. 창설년월일

19 년 월 일

4. 결산기 (결산마감월)

○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입

(1) 연 1회일 경우 ① 월

(2) 연 2회일 경우 ① 월

② 월

5.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6. 부지및건물연면적

부지 평(m²)

건물 평(m²)

7. 자본금 또는 출자금(법인에 한함)

1977.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8.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과정

(1) 주요 생산품명-----① ② ③

(2) 주요사용원재료명-----① ② ③

(3) 생산공정 (생산단계 또는과정)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15. 유형고정자산 ○상위취득액: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한 중고품 포함)

○중고취득액: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 및 설치비(보시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액임)

○처분및손해액:매각, 양도 및 재매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

○가액평가:상부가액에 의한다.

○아래사항은 증업원규모(평균) 200인 이상 사업체만 기재하십시오

구분	(1) 연간 신규 취득액			(2) 연간 중고취득액			(3) 연간처분및손해액			(4) 연간감가상각액			(5) 연 말 총액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① 건물 및 구축물															
② 기계, 기구 및 장치															
③ 차량, 선박 및 운반구															
④ 토지															
합계															

16.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누사시술이나 기계 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 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3) 연간 증감[(1)-(2)]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천억	백억	십억

17. 조사표 작성근거 해당란에 ○표

(1) 장 부() (2) 일부지역() (3) 기 역()

18. 기숙사의 유무(20인이상) 해당란에 ○표

(1) 있다() 면 → (1) 남 자 명

(2) 없다() 면 사선 (2) 여 자 명

계 명

적요: ○적자요인, 구분이 어려운 품목, 사업체 사용단위,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소재지, 품명, 수량 등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체(공장)명	소재지
※ 합산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		
(1) 본 공장분만 작성되었다 ()		
(2) 다른 공장분도 포함해서 작성되었다.()면→		

조사표작성년월일	작성자(응답자)소속	작성자(응답자)성명	조사담당자성명	지도구책임자성명
1978년 월 일	과	①	①	①
	전화(국번)			

경제기획원

통계법 제 8 조 및 동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지난 1년간(1977. 1. 1~12. 31) 기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자료에 의거 조사표에 하는 것입니다.

1977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Ⅱ)

—본사, 본점 조사용—

조사표 번호						기업체 번호	★
조사구 번호	본사 번호	산업 분류	창설 년	조직 형태	자본 계층		
—	★	★	★	★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0. 건설가계정
(본사·본점분에 한함)

○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 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 연간증감[(1)-(2)]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1. 관할사업체의 공장별 조사표작성 가능여부
(해당란에 ○표)

(1) 사업체에서만 가능하다. ()
(2)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
(3) 모두 다 가능하다. ()

적요: ○참고사항(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실적 및 동향 등)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번지의 호

시 구 로·동 가 동 번지의 호

도 시 구 읍·면 리 (통 반)

2. 창설 년 월 일

3. 결산기 (결산마감월)

(1) 연 1 회일 경우 ① 월

(2) 연 2 회일 경우 ① 월

② 월

4. 조직 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함)

1977.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 작성년월일	작성자(응답자) 소속	작성자(응답자) 성명	조사담당자 성명	지도구책임자 성명
1978년 월 일	전화(국 번)	①	①	①

경제기획원

